한-중 FTA 협상에 대비한 SW분야 협상쟁점 연구

Legal Issues of Software Industry for Korea-China FTA Negotiation

주관연구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은희 팀장

연구수행기관 성신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권현호 교수

요 약 문

1. 연구배경 및 목적

2008년 WTO 도하개발의제협상(DDA협상)이 성과 없이 종료되자 세계 각국은 FTA를 통한 무역질서의 재편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한-미 FTA 체결 이후 한-EU, 한-멕시코 등 다양한 국가들과 동시 다발적으로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FTA 체결을 위한 사전논의가 마무리 되고 있음.

이러한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 성장하였으며, 한-중 FTA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어떤 FTA보다 클 수밖에 없음. 또한 중국의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향후 중국에서의 SW의 수요확대가 예상되며, 우리나라의 앞선 경험과 기술력을 고려할 때, 한-중 FTA가 체결시 국내 SW 기업의 대중국 시장진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향후 양국간 FTA 협상 논의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SW산업 분야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한-중 FTA 협상의 전략수립이 시급히 요청됨.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 FTA 협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SW분야에서의 협상쟁점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협상의 의제를 설정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함. 즉, 본 연구는 한-중 FTA 체결 준비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협상 쟁점을 파악하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이러한 기초 작업은 우선 협상 상대국인 중국의 SW산업과 관련된 법제도를 파악하고, 해당 법제도가 WTO 규범 등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통상규범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에서 출발함. 이러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상대국 법제도 검토에 기반하여 협상 쟁점을 선정하는 것이 향후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법과 논리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임. 또한 본 연구는 FTA 협상을 예정하고 있지만 그 협상의 테이블에 SW분야를 올려놓는다는 점을 예단하지 않고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에서 과연 무엇이 보다 합리적으로 올바른 방향인지를 판단하는데 또 다른 목적이 있음. 즉, 만약 우리나라 SW산업의 현실이 중국과의 FTA를 통해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많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회피하는 것 역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이를 논리적으로 준비하는 것 역시 본 연구과제의 목적 중 하나임.

결국 본 연구과제의 일차적 목표는 우선 협상이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도움이 되는 협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1차적 자료와 쟁점을 발굴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표로는 FTA 협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다른 방향에서 해결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음.

2. 연구범위 및 한계

본 연구의 제1차 연구범위는 우리나라 SW산업 분야 기업들이 중국에서 겪는 주요 쟁점들과 더불어, 일반적으로 대 중국 SW 비즈니스를 수행할 때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중국의 관련 법·제도 내용을 분석하여 한-중 FTA 협상을 위한 기본적인 1차 자료를 확보하는 것 역시 본 연구 범위에 포함됨. 특히 본 단계에서는 첫째, 중국의 SW 산업 분류체계 및 정책 방향을 검토함. 이는 현재 중국 정부가 SW산업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 파악하고 향후 이루어질 정책의 변화 등을 예상하는 기초가 될 것임. 둘째, 중국의 SW산업 관련 정부기관 (부처) 및 기능을 검토하고자 함. 이는 SW산업을 관장하는 주요 중국의 정부부처의 성격과 권한, 기능 등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발굴되는 쟁점을 협상으로 이끌어 갈 때 우리나라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협의 채널을 명확히 하는 장점이 있음. 셋째, SW산업 관련 중국의 주요 국내법 내용을 검토함. 이 부분은 제1단계에서의 핵심으로 현재 중국에서 시행 중인 SW산업과 관련된 중국의 국내법을 몇 가지 분야로 나누어 주요 내용을 살펴볼 것임. 마지막으로 앞서 검토한 내용에 기초하여 SW산업 관련 중국 국내법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함.

본 연구의 제2단계는 중국이 가입한 WTO에서 SW분야에 대하여 약속한 양허수준과 중국이 체결한 FTA에서의 양허수준을 각각 검토하는 것임. 이는 중국이 현재 WTO의 다자간 무역질서에서 SW산업과 관련하여 약속의 수준을 파악하고, 해당 산업이 갖고 있는 통상장벽의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중국이 이미 체결한 각종 FTA 및 경제협력협정 등에서 SW 산업과 관련하여 약속한 수준을 파악하고

해당 산업이 갖고 있는 통상장벽 수준을 검토함.

본 연구 내용에서의 핵심인 마지막 제3단계는 향후 한-중 FTA 협상이 시작되는 경우 쟁점 분야를 미리 발굴하고, 각 쟁점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임. 제3단계 협상쟁점 의제발굴은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표준 및 인증, 지적재산권, 경쟁, 및 노동 분야에서 제기될 수 있는 중국 국내법 자체의 모호성에서 나오는 문제, WTO법 또는 기존 FTA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 이행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 등을 중심으로 향후 한-중 FTA 협상쟁점으로서 핵심적인 의제가 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자 함. 또한 이처럼 선정된 쟁점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분석하고자 함.

이러한 연구결과물이 보다 의미 있는 결과에 이르기 위해서는 연구진의 학술적 접근뿐만 아니라 산업계 및 정부기관의 정책적 의견 조율과 토론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즉, 연구의 목적이 국내 SW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한 업계의 진솔한 의견제시와 정부의 정책조율이 뒤따를 때 보다 효과적인 연구결과물이 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본 연구의 또 다른 한계로는 연구의 범위가 협상쟁점의 발굴까지에 제한되며, 보다 구체적인 협상전략의 마련은 이번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임. 이는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서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3. 연구결론 및 제언

서비스 분야에서의 협상 쟁점은 다음과 같음. 협상의 형태로는 서비스 장(chapter)에 서비스 무역의 모든 방식을 포함하고 투자챕터(chapter)에 투자보장 규정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큼. 한편 일부 중국 국내법은 GATT 제III조 4항 및 GATS 제XVII조 내국민대우 위반과, GATS 제VI조 1항에서의 국내규제 위반 가능성이 제기됨. 또한 비록 중국의 양허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한-중 FTA에서는 우리나라 투자자가 100% 지분을 소유하는 외자기업의 설립을 양허 받도록 주장할 수 있을 것임. 그밖에 국제무역에서의 투명성 확보 노력은 협상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될 것임.

투자 분야에서는 한-중 FTA에 투자챕터(chapter)를 포함하는 경우 그 형식과 투

자 보장을 위한 규정의 수준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큼. 또한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과 국산부품 의무사용 문제는 내국민대우와 TRIMs 협정을 위반하며, 소프트웨어 실행 산업의 경우에도 내국민대우 및 이행요건 부과금지, 투명성 등 다양한 법적 쟁점들이 제기될 수 있음.

정부조달 분야에서는 현재 중국이 GPA의 회원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자간 차원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름. 다만, 중국이 체결한 FTA에서는 정부조달 분야가 포함된 사례가 있으므로 우선적 쟁점으로 정부조달 분야를 한-중 FTA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임. 그리고 만약 정부조달 분야가 FTA에 포함되거나 또는 중국이 GPA의 회원국이 되는 경우 가장 크게 제기될 쟁점으로는 내국민대우 위반과 투명성 확보 문제가 핵심쟁점이 될 것임.

기술규정 · 표준 및 적합성 평가 분야에서는 TBT 장(chapter)을 별도로 두고, 이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는 FTA를 체결할 필요성이 제기됨.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WTO TBT협정상의 권리 · 의무를 재확인하면서, 양국간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관련 현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키기도 하며, 양국간 대화채널 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TBT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양국 관련기관이 이를 논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 또한 중국이 일부 IT상품에 요구하고 있는 정보 보안(information security) 기능에 대한 인증과 관련하여, 이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의 부담이 얼마나 증대되는지에 대한 분석 작업이 필요함. 한편 중국이 중국강제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CCC) 마크를 중국 국산품 및 외국산 상품에 적용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산품에 비하여 외국산 상품에 대하여 엄격하게 이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외국산 상품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로 볼 수 있음.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협상 쟁점은 우선적으로 소프트웨어의 등록과 저작권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한 집행 수단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요구됨. 특히 기존에 중국에 저작권법이 없어서 보호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정 및 사법당국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이행의지가 부족한 것이 문제의 핵심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이행수단의 확보가 필요함.

경쟁분야에서의 협상 쟁점으로는 특정한 운영체계에 결합되는 여러 부가적 서비스에 관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끼워 팔기나 구매강제 등의 문제, 부당염매(약탈적 가

격설정)가 발생할 경우 중국 경쟁법상 해석의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음. 또한 시장에서의 지위남용 행위를 막는 것 역시 경쟁 분야에서 주요한 쟁점이 될 것이며, 불법하도급거래 및 불공정 약관의 경우도 문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임.

마지막으로 인력이동 분야에서의 협상 쟁점은 우선 자연인의 이동(인력이동, mode 4)에 대한 시장접근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날 것이며, 상호자격인정이 핵심 쟁점으로 등장할 것임. 이와 아울러 인력이동이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범위와 정도 등은 인력이동에 FTA의 한 분야로 다루어진다면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한-인도 CEPA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인력이동 분야에서의 가장 핵심적 쟁점은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중국의 SW 인력을 얼마나, 어느 정도, 어떤 조건으로 수용하는가 여부가 될 것임.

결국 한-중 FTA 협상을 대비한 SW분야 협상 쟁점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거대한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보다 체계적인 협상 준비와 전략마련을 위하여 산업계 전반의 의견 조율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임.

4.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본 연구의 제1차적 활용방안은 향후 한-중 FTA 협상이 개시될 때 SW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하는데 1차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음. 즉, 협상의 상대국인 중국의 국내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상대국이 갖고 있는 국제통상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을 정립하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자료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본 연구는 그 자체로 대 중국 무역에서의 우리나라 기업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1차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는데 또 다른 장점이 있음. 즉, 중국에서 SW 분야 사업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자칫 소홀히 하기 쉬운 중국의 국내법과 통상관계에서의 기본 규범을 설명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이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본 자료를 통해 1차적으로 파악된 중국의 국내법제도와 국제통상법제도는 우리나라 기업에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물은 그 자체로 1차 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결국 향후 중국과의 FTA 협상을 대비한다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협상의 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파악될 수 있음. 즉, 협상의 상대국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우리나라 법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상대국의 협상에서의 약한 고리를 파악해야 하는 일련의 작업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협상과정에 가장 우선시되는 자료로 평가될 수 있음.

Abstract

1. Background to and objectives of the study

Following the conclusion of the WTO Doha Development Agenda in 2008 without any concrete agreement, each country has been promoting re-arrangement of the trade order through FTAs. Korea is no exception to this, as it is negotiating FTAs with several countries concurrently, such as the Korea-EU and Korea-Mexico FTA negotiations. Pre-discussions with China for the conclusion of a Korea-China FTA are almost finished.

In the context of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conomic environment, China has grown to become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 so the impact of the Korea-China FTA on the Korean economy is likely to be far greater than that of any other FTA. In addition, an increase in S/W demand in China is expected due to the ongoing expansion of the Chinese industrial structure, and it is very likely that local S/W vendors will be able to enter the Chinese market once the Korea-China FTA has been concluded, given the advanced experience and technical skills of the Korean labor force. Therefore, it is urgently necessary to establish a strategy for Korea-China FTA negotiations that reflects the interest of the local S/W industry to the maximum extent, before the negotiations start in earnest.

As a result, this study aims mainly to lay a foundation for understanding negotiation issues in the S/W area when preparing the Korea-China FTA negotiations, and to set the negotiation agenda based on that understanding. As such,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the controversial issues that are expected to be raised while preparing the Korea-China FTA negotiations. Such foundation work as this must begin by acquiring an

understanding of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S/W industry in China – the preferred negotiation counterpart, and by checking whether the legal system in question corresponds to the trade norms - like the WTO regulation - as commonly understoo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approach is required to select negotiation issues based on a review of the counterpart legal system, so at to arrange our laws and logics for future negotiations. In addition, this study assumes that the S/W area would be included in the FTA negotiations, even though it is already determined to be included, in order to understand which direction is more desirable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enterprises. Therefore, excluding the S/W area in the FTA agenda could be an alternative for Korea, if it seems that Korea could lose more from the FTA with China due to the circumstances of the S/W industry in Korea. Logical preparation of this alternative is another objective of this study.

In conclusion,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study lies in determining the primary data and issues in order to identify a negotiation strategy that will be beneficial to Korean enterprises on the assumption that preferred negotiations would be made, while the secondary objective is to collect the basic data to resolve those issues that might not be resolved by the FTA negotiations, and to seek the method of resolution associated with the basic data.

2. Scope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The primary scope of this study includes an objective review of the various legal systems that can be generally encountered when local companies conduct their S/W business in China, besides the other major problems that Korean enterprises in the S/W area experience in China.

Securing the basic data for Korea-China FTA negotiation is also included in the study scope, by analyzing relevant Chinese law and policy content based on those reviews. Firstly, China's S/W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and policy direction will be reviewed at the first stage in particular, in order to obtain the source data needed to understand how the Chinese government views the S/W industry, and to forecast any changes in policy that may occur in the future. Secondly, this study will review Chinese governmental agencies (ministries and offices) and their functions that are related to the S/W industry, which will confer the advantage of clarifying the various channels of negotiation open to the Korean government when attempting to resolve possible issues through negotiation, by reviewing the characteristics, rights, and functions of Chinese ministries and offices. Third, China's major national laws concerning the S/W industry will be reviewed. This part is the core component of the first stage, and the major contents of Chinese national laws currently in force will be analyzed by separating them into distinct areas. Lastly, problems with the Chinese national legal system will be reviewed with regard to the S/W industr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view mentioned above.

The level of concession that is promised for the S/W area in the WTO when China joined the WTO, and that of the FTA which China has already concluded, will be reviewed at the second stage of this study. This review is designed to understand the level of Chinese commitment regarding the S/W industry in the multilateral trade order of the current WTO, and the level of trade barriers imposed on the S/W industry. In addition, the level of commitment to S/W demonstrated by China in various previously concluded FTAs and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s, and the related trade barriers, will be reviewed.

At the third stage, which is the core component of this study, the

expected issue area when the Korea-China FTA negotiations begin will be identified in advance, and the problematic topic in each issue will be reviewed. In this agenda-setting stage, areas which could be the subject of major issues during the Korea-China FTA negotiations will be selected, mainly by studying problems originating from the ambiguity of Chinese national laws, investment, government procurement, standard and certifica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mpetition, and labor; inconsistencies between WTO laws and existing FTAs; and problems that might be raised during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The implications of the selected issues will be analyzed.

To obtain more meaningful results from these study outcomes, a consistently academic approach on the part of the research group, and discussion and the modification of opinions among industries and governmental agencies, are indispensable. That is, as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help local S/W enterprises in Korea, it will only be possible to obtain more effective research outcomes when industry presents honest opinions and the government adjusts its policies accordingly. In addition, further limitations of this study lie in the fact that the scope is limited to the findings of negotiation issues, and that the preparation of more concrete negotiation strategies is not covered by this study. A follow-up study would most likely be able to compensate for these shortcomings.

3. Conclusion and suggestions

The negotiation issue in the service sector is as follows. As regards the type of negotiation, it is likely that the method whereby all service trade methods are included in the service chapter will be adopted, while

investment guarantee regulations are included in the investment chapter. On the other hand, it was pointed out that some Chinese national laws might violate Article III, paragraph 3, GATT; Article XVII, GATS, National Treatment, and Article VI, paragraph 1, GATS, Domestic Regulations. In addition, even though China's concession plan has not yet been confirmed, we might be able to request concession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foreign companies wholly owned by Korean investors, during the Korea-China FTA negotiations. Furthermore, the issues surrounding the need to conduct efforts to secure transparency in international trade will be raised constantly during the negotiations.

If the investment chapter is included in the Korea-China FTA,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 type and level of regulation required to guarantee the investment could be a problem in the investment area. In addition, the issue of VAT refunding and the obligatory use of local parts with regard to package software could violate the article on national treatment and the TRIMs agreement. For the software implementation industry, various legal issues could be raised, such as national treatment, the prohibition of imposing implementation requirements, and transparency.

In the government procurement area, it is difficult to apply th multiparty level criteria as China is not currently a member of the GPA. However, some FTAs concluded by China already include the government procurement area. As a result, the mere inclusion of the government procurement area in the Korea-China FTA could be a most controversial issue. In addition, the violation of national treatment and the securing of transparency could constitute a critical issue if the government procurement area is included in the FTA, or if China joins the GPA.

In the technical regulation, standard, and suitability assessment area, the need to prepare the TBT chapter separately and conclude an FRA that

regulates the content regarding the TBT chapter was raised. During this process, the rights and obligations in terms of the WTO TBT agreement will be generally reviewed again, and the current issue concerning technical barriers to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if any, could be included. Also, the dialog channels between the two countries or their various respective committees could be organized, to enable the relevant agencies in both countries to discuss the TBT-related issue. In addition, regarding the certification of the information security function, which is required for some IT products by China, we need to analyze how great a burden will be imposed on Korean companies. On the other hand, despite the obligation to attach the 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to both Chinese local products and products of foreign origin, the Chinese government applies this regulation to foreign products more strictly than it does to local products, which could be regarded as a means of discriminating against foreign products.

As regards the negotiation issue in the area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ecuring a transparent and fair means of execution for software registration and copyright is the most urgent requirement. In particular, the core problem lies in the fact tha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not been protected properly in China because of the weak intentions of China's administrative and judicial authorities, rather than because of the absence of the law related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erefore, a means of strict implementation is urgently required.

With regard to negotiations over competition, the problem of interpreting China's competition law may be raised if unfair discount sales (predatory pricing) occur, besides tie-in sales or the compulsory purchase of various additional services associated with a particular operating system. In addition, preventing the misuse of the dominant position in the market

could be another critical issue, and it is highly likely that illegal subcontracting and unfair terms and conditions could be pinpointed as problematic practices.

Lastly, the availability of market access regarding the transfer of natural persons (personnel movement, mode 4), as well as the mutual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would be the issue of personnel movement. Also, the scope and degree of services that experience personnel transfer are expected to be a major issue likely to foment heated discussion, if personnel movement is included as an area of the FTA negotiation area. Judging from the experiences of the Korea-India CEPA, the core issue with regard to personnel movement will be how many, to what degree, and according to what conditions will Chinese S/W personnel be accommodated by Korea.

In conclusion, the core negotiation issues in terms of S/W when preparing for the Korea-China FTA negotiations will most likely encompass the various areas discussed above, so the adjustment of opinion throughout industry should be performed without fail, in order to prepare the negotiations and the related strategy more systematically.

4. Method of utilization and anticipated effect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ould be utilized as the primary data to establish our position in the S/W area, one the Korea-China FTA negotiations begin. As such, a review of the problems posed by the national laws of China – the negotiation partner - and a full understanding of the problems posed by international trade laws, which is conformed by China, could provide data that is both fundamental and critical to adopting the most favorable position in the negotiations.

Additionally, this study contains primary data that could assist Korean enterprise with their trade with China. Indeed, this study provides the grounds for a clearer understanding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that are granted/imposed on Korean enterprise engaged in S/W business in China, by explaining those Chinese national laws and basic norms in trade relations of which Korean enterprises are likely to be ignorant or uninformed.

Lastly, the outcome of this study can serve as the primary data, but it may also be understood as part of the process for establishing a negotiation strategy from the perspective of coping with FTA negotiations with China in the future. That is, this study belongs to the first stage in a series of works intended to identify weaknesses in negotiations with the counterparty by understanding the status and problems of the counterparty and by comparing with the legal system of Korea. The resultant data of this study could be evaluated as having great significance and importance for the future negotiation process.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 2

제 2 절 연구범위 및 한계 ····· 3

제2장 중국의 국내법 · 제도 분석 ····· 7

제 1 절 중국의 SW산업 분류체계 및 정책 방향 ····· 8

1. 중국의 SW산업 분류체계 ····· 8
2. 중국의 SW산업 정책방향 ····· 9

제 2 절 중국의 SW산업 관련 정부기관(부처) 및 기능 ····· 11

1. 공업 · 정보화부 ····· 11
2. 국가판권국 ····· 13
3. 기타 부처 ····· 14

제 3 절 SW산업 관련 중국의 주요 국내법 내용 ····· 14

1. 일반 ····· 15
2. 소프트웨어 산업화 ····· 24
3. 핵심 소프트웨어기업 지원 ····· 27
4. 기업기술혁신 ····· 37
5. 수출촉진 ····· 39
6. 세수 ····· 46
7. 지적재산권보호 ····· 48
8. 인재양성 ····· 55
9. 산업통계 ····· 56

제 4 절 SW산업 관련 중국 국내법제도의 문제점 ····· 59

1. 법체계의 혼란 ····· 59
2. 내국민대우 관련 ····· 59
3. 수출보조금 관련 ····· 60

4. 정부구매 관련 ····· 62

제3장 WTO 서비스 양허안 및 TPR 보고서 분석 ····· 65
제 1 절 SW산업 관련 중국의 서비스협상 내용 분석 ····· 66
1. 개요 ····· 66
2. 수평적 약속 ····· 68
3. 분야별 약속 ····· 72
제 2 절 SW산업관련 중국의 무역장벽 내용 분석 ····· 77
1. WTO 무역정책검토 보고서 ····· 77
2. 미국의 국별무역장벽보고서 ····· 94
제 3 절 중국의 SW 분야 법적용의 문제점 ····· 122

제4장 SW분야 중국의 FTA 내용 분석 ····· 129
제 1 절 서비스 ····· 130
1. 중-ASEAN FTA ····· 130
2. 중-칠레 FTA ····· 130
3. 중-홍콩 CEPA ····· 131
4. 중-뉴질랜드 FTA ····· 131
5. 시사점 ····· 132
제 2 절 투자 ····· 134
1. 중-ASEAN FTA ····· 134
2. 중-칠레 FTA ····· 135
3. 중-파키스탄 FTA ····· 135
4. 중-뉴질랜드 FTA ····· 137
5. 시사점 ····· 139
제 3 절 정부조달 ····· 140

1. 중-칠레 FTA ····· 140
2. 시사점 ····· 140
제 4 절 표준 및 인증 ····· 140
1. 중-뉴질랜드 FTA ····· 140
2. 시사점 ····· 142
제 5 절 지적재산권 ····· 142
1. 중-칠레 FTA ····· 142
2. 중-뉴질랜드 FTA ····· 143
3. 시사점 ····· 143
제 6 절 경쟁 ····· 144
1. 중-파키스단 FTA ····· 144
2. 중-칠레 FTA ····· 144
3. 중-뉴질랜드 FTA ····· 144
4. 시사점 ····· 144
제 7 절 자연인의 이동 ····· 145
1. 중-뉴질랜드 FTA ····· 145
2. 시사점 ····· 146
제 8 절 원산지규정 ····· 147
1. 중-ASEAN FTA ····· 147
2. 중-칠레 FTA ····· 149
3. 중-파키스탄 FTA ····· 151
4. 중-뉴질랜드 FTA ····· 152
5. 중국이 체결한 FTA의 특징 ····· 154
6. 시사점 ····· 154
제 9 절 중국이 체결한 FTA가 주는 시사점 ····· 155

제5장 한-중FTA 협상을 대비한 SW분야 협상쟁점 ····· 159
제 1 절 서비스 분야 협상 쟁점 ····· 160
1. 협상 쟁점의 범위 ····· 160
2. WTO 양허 이행 관련 쟁점 ····· 160
3. 중국의 DDA 양허안 ····· 162
4. 중국의 FTA 관련 쟁점 ····· 163
5. 한-중 FTA에서 추가될 쟁점 ····· 164
제 2 절 투자 분야 협상 쟁점 ····· 165
1. 협상 쟁점의 범위 ····· 165
2. 투자 챕터의 방식 ····· 165
3. 패키지 서비스 관련 쟁점 ····· 169
4. 소프트웨어 실행 산업 관련 쟁점 ····· 170
제 3 절 정부조달 분야 협상쟁점 ····· 174
1. 개요 ····· 174
2. 중국의 GPA 가입 ····· 174
3. 내국민대우 ····· 177
4. 투명성 확보 ····· 179
5. 중국이 체결한 여타 FTA협상과 관련된 시사점 ····· 179
6. 기타 고려해야 할 사항 ····· 181
제 4 절 기술규정 · 표준 및 적합성평가 분야 협상쟁점 ····· 181
1. 개요 및 현황 ····· 181
2. 투명성 등 TBT협정상의 의무 ····· 183
3. 일부 IT 상품에 대한 의무적인 테스팅 및 인증 ····· 185
4. 중국강제인증마크 부착 및 적합성 평가절차 ····· 186
5. 기타 FTA에서의 기술규정 · 표준 · 적합성평가절차 규정 방식 ····· 187
제 5 절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쟁점 ····· 189

1. 소프트웨어 등록의 문제 ····· 189
2. 프로그램 저작권 귀속의 문제 ····· 191
3. 제3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P2P파일공유 소프트웨어 배포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 191
4.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의 저작권 문제 ····· 193
5. 지적재산권 보호조치 관련 ····· 194
제 6 절 경쟁 분야 협상 쟁점 ····· 195
1. 중국의 경쟁법 규정 ····· 195
2. 끼워팔기 ····· 195
3. 부당염매 ····· 197
4. 차별취급과 행정독점 ····· 199
5. 소프트웨어 사업의 하도급 거래 관련 이슈 ····· 200
6. 불공정한 약관의 문제 ····· 201
제 7 절 인력이동 분야 협상쟁점 ····· 203
1. 개요 ····· 203
2. 자연인의 이동(mode 4)의 양허 여부 ····· 204
3. 상호자격인정 여부 ····· 206
4. 인력이동 개방의 범위와 정도 ····· 206
5. 한-인도 CEPA의 인력이동 ····· 207

제6장 결론 ····· 211

Contents

1. Introduction ····· 1

1.1 Background and objective of the study ····· 2

1.2 Scope and limitation of the study ····· 3

2. Analysis of Chinese national laws and policies ····· 7

2.1 Chinese S/W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and policy direction ····· 8

1. Chinese S/W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 8

2. Chinese S/W industry policy direction ····· 9

2.2 Chinese governmental agencies (ministries and offices) and function related to the S/W industry ····· 11

1.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11

2. National Copyright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13

3. Other ministries and offices ····· 14

2.3 Content of Chinese major national laws related to the S/W industry ····· 14

1. General ····· 15

2. S/W industrialization ····· 24

3. Core S/W Vendor Support ····· 27

4. Enterprise Technical Innovation ····· 37

5. Export promotion ····· 39

6. Tax Revenue ····· 46

7. Protec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 48

8. Personnel nurturing ····· 55

9. Industrial statistics ····· 56

2.4 Problems of Chinese national laws related to the S/W industry ····· 59
1. Confusion in the legal system ····· 59
2. Issues related to national treatment ····· 59
3. Issues related to export subsidy ····· 60
4. Issues related to government procurement ····· 62

3. WTO service concession plan and TPR report analysis ····· 65
3.1 Analysis of the Chinese service negotiation content related to the S/W industry ····· 66
1. Overview ····· 66
2. Horizontal commitment ····· 68
3. Commitment by area ····· 72
3.2 Analysis of Chinese trade barrier related to the S/W industry ····· 77
1. WTO trade policy review report ····· 77
2. U.S. trade barrier report by country ····· 94
3.3 Problems of Chinese law application in the S/W area ····· 122

4. Analysis of the Chinese FTA content in the S/W area ····· 129
4.1 Service ····· 130
1. China-ASEAN FTA ····· 130
2. China-Chile FTA ····· 130
3. China-Hong Kong CEPA ····· 131
4. China-New Zealand FTA ····· 131
5. Implications ····· 132
4.2 Investment ····· 134
1. China-ASEAN FTA ····· 134

2. China-Chile FTA ····· 135
3. China-Pakistan FTA ····· 135
4. China-New Zealand FTA ····· 135
5. Implications ····· 139
4.3 Government procurement ····· 140
1. China-Chile FTA ····· 140
2. Implications ····· 140
4.4 Standard and certification ····· 140
1. China-New Zealand FTA ····· 140
2. Implications ····· 142
4.5 Intellectual property right ····· 142
1. China-Chile FTA ····· 142
2. China-New Zealand FTA ····· 143
3. Implications ····· 143
4.6 Competition ····· 144
1. China-Pakistan FTA ····· 144
2. China-Chile FTA ····· 144
3. China-New Zealand FTA ····· 144
4. Implications ····· 144
4.7 Movement of natural persons ····· 145
1. China-New Zealand FTA ····· 145
2. Implications ····· 146
4.8 Origin regulations ····· 147
1. China-ASEAN FTA ····· 147
2. China-Chile FTA ····· 149
3. China-Pakistan FTA ····· 151

4. China-New Zealand FTA ····· 152
5. Characteristics of FTAs concluded by China ····· 154
6. Implications ····· 154
4.9 Implication of FTAs concluded by China ····· 155

5. S/W area negotiation issues to cope with Korea-China FTA negotiation ····· 159
5.1 Negotiation issues in the service area ····· 160
1. Scope of negotiation issues ····· 160
2. Issues related to WTO concession implementation ····· 160
3. Chinse DDA connection plan ····· 162
4. Issues related to Chinese FTA ····· 163
5. Issues to be added in Korea-China FTA ····· 164
5.2 Negotiation issues in the investment area ····· 165
1. Scope of negotiation issues ····· 165
2. Type of the investment chapter ····· 165
3 Negotiation issues related to service package ····· 169
4. Issues related to the S/W implementation industry ····· 170
5.3 Negotiation issues in the government procurement area ····· 174
1. Overview ····· 174
2. China's GPA joining ····· 174
3. National treatment ····· 177
4. Securing transparency ····· 179
5. Implications related to other FTA negotiation that China concluded ····· 179
6. Other items to consider ····· 181

5.4 Negotiation issues in the technical specification, standard, and suitability assessment area ····· 181
1. Overview and status ····· 181
2. Obligation according to the TBT agreement like transparency ····· 183
3. Obligatory testing and certification for some IT products ····· 185
4. CCC mark attachment and suitability assessment procedure ····· 186
5. Technical regulations, standards, and suitability assessment definition procedures in other FTAs ····· 187
5.5 Negotiation issues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rea ····· 189
1. S/W registration issue ····· 189
2. Program copyright attribution issue ····· 191
3. P2P file sharing S/W distributor's responsibility for copyright violation with regard to third party's copyright infringement ····· 191
4. Copyright issue of S/W streaming service ····· 193
5. Issue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 protection measures ····· 194
5.6 Negotiation issues in the competition area ····· 195
1. Chinese competition laws and regulations ····· 195
2. Tie-in sales ····· 195
3. Unfair discount sales ····· 197
4. Discriminatory treatment and administrative monopoly ····· 199
5. Issues related to S/W business subcontracting ····· 200
6. Unfair terms issue ····· 201
5.7 Negotiation issues in the personnel movement area ····· 203
1. Overview ····· 203
2. Concession status of natural person's movement (mode 4) ····· 204
3. Status of mutual qualification recognition ····· 206

4. Scope and degree of personnel movement opening ····· 206
5. Personnel movement in Korea-India ····· 207

6. Conclusion ····· 211

References ····· 219

표 목 차

〈표 II-1〉 중국의 SW산업 관련 주요 국내법 목록 ····· 62
〈표 III-1〉 CPC 분류체계에서의 SW 및 IT 관련 서비스 ····· 72
〈표 III-2〉 중국 수평적 약속 양허표 ····· 126
〈표 III-3〉 중국의 개정된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양허표 ····· 128
〈표 IV-1〉 중국의 기체결 FTA간의 규율대상 비교 ····· 133
〈표 IV-2〉 인력이동에 대한 뉴질랜드의 양허(Temporary Employment) ····· 146
〈표 V-1〉 IT인력 국적선호 ····· 208

제1장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범위 및 한계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2008년 WTO 도하개발의제협상(DDA협상)이 성과 없이 종료되자 세계 각국은 FTA를 통한 무역질서의 재편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다. 즉, 2001년 11월 합의된 DDA 협상은 매번 협상 시한을 연장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들은 DDA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협상보다 FTA라는 지역주의를 통한 양자간 무역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한-미 FTA 체결 이후 한-EU, 한-멕시코 등 다양한 국가들과 동시 다발적으로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FTA 체결을 위한 사전논의가 마무리 되고 있다.[1)]

이러한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 성장하였으며, 한-중 FTA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어떤 FTA보다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중국의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향후 중국에서의 SW의 수요확대가 예상되며, 우리나라의 앞선 경험과 기술력을 고려할 때, 한-중 FTA가 체결시 국내 SW 기업의 대중국 시장진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양국간 FTA 협상 논의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SW산업 분야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한-중 FTA 협상의 전략수립이 시급히 요청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 FTA 협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SW분야에서의 협상쟁점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협상의 의제를 설정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한다. 즉, 본 연구는 한-중 FTA 체결 준비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협상 쟁점을 파악하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기초 작업은 우선 협상 상대국인 중국의 SW산업과 관련된 법제도를 파악하고, 해당 법제도가 WTO 규범 등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통상규범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상대국 법제도 검토에 기반하여 협상 쟁점을 선정하는 것이 향후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법과 논리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FTA 협상을 예정하고 있지만 그 협상의 테이블에 SW분야를 올려놓는다는 점을 예단하지 않고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에서 과연 무엇이 보다 합리적으로 올바른 방향인지를 판단하는데 또 다른 목적이 있다. 즉, 만약 우리나라 SW산업의 현실이 중국과의 FTA를 통해서 얻는 이익보다

1)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fta.go.kr 참조.

손해가 더 많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회피하는 것 역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이를 논리적으로 준비하는 것 역시 본 연구과제의 목적 중 하나이다.

결국 본 연구과제의 일차적 목표는 우선 협상이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도움이 되는 협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1차적 자료와 쟁점을 발굴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표로는 FTA 협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다른 방향에서 해결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제 2 절 연구범위 및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3단계로 설계되었으며,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선 제1단계는 중국의 국내 법 · 제도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SW산업 분야 기업들이 중국에서 겪는 주요 쟁점들과 더불어, 일반적으로 대 중국 SW 비즈니스를 수행할 때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중국의 관련 법 · 제도 내용을 분석하여 한-중 FTA 협상을 위한 기본적인 1차 자료를 확보하는 것 역시 본 연구 범위에서 해야 할 일이다.

특히 본 단계에서는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중국의 SW산업 분류체계 및 정책 방향을 검토한다. 이는 현재 중국 정부가 SW산업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 파악하고 향후 이루어질 정책의 변화 등을 예상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또한 SW의 특성상 상품 또는 서비스로 분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유리한 분류체계의 논리 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둘째, 중국의 SW산업 관련 정부기관 (부처) 및 기능을 검토한다. 이는 SW산업을 관장하는 주요 중국의 정부부처의 성격과 권한, 기능 등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발굴되는 쟁점을 협상으로 이끌어 갈 때 우리나라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협의 채널을 명확히 하는 장점이 있다. 셋째, SW산업 관련 중국의 주요 국내법 내용을 검토한다. 이 부분은 제1단계에서의 핵심으로 현재 중국에서 시행 중인 SW산업과 관련된 중국의 국내법을 몇 가지 분야(예: 투자, 지적재산권, 원산지, 경쟁, 표준 및 인증, 정부조달, 노동 등)로 나누어 주요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검토한 내용에 기초하여 SW산업 관련 중국 국내법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한다. 즉, 앞서 검토한 사실적 내용을 통해 현재 중국이 갖고 있는 법제도 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국제규범과의 일치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법적 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제2단계는 중국이 가입한 WTO에서 SW분야에 대하여 약속한 양허수준과 중국이 체결한 FTA에서의 양허수준을 각각 검토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현재 WTO의 다자간 무역질서에서 SW산업과 관련하여 약속의 수준을 파악하고, 해당 산업이 갖고 있는 통상장벽의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이 이미 체결한 각종 FTA 및 경제협력협정 등에서 SW 산업과 관련하여 약속한 수준을 파악하고 해당 산업이 갖고 있는 통상장벽 수준을 검토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 범위에서는 우선 SW산업 관련 중국의 WTO 서비스협상 내용 분석하여 SW산업을 서비스 산업으로 분류하는 경우 중국이 현재 국제 사회에 약속한 시장개방의 내용과 정도를 WTO 서비스협상의 결과인 양허표를 기준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두 번째로 SW산업 관련 중국의 무역장벽 내용을 분석하는 것으로 현재 WTO 또는 미국에서 중국의 SW산업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는 각종 무역장벽의 내용을 TPR보고서 또는 미국의 NTE보고서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WTO 양허안과 TPR 보고서 등 자료를 통해 나타난 중국의 SW 산업 관련 법제도 운용상의 문제점을 결론적으로 제시한다. 한편 중국-홍콩 CEPA, 중국-마카오 CEPA, 중국-아세안 FTA, 중국-칠레 FTA, 및 중국-뉴질랜드 FTA 등 기존에 중국이 체결한 FTA를 통해 중국이 SW산업에 대해 취하고 있는 통상장벽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본 연구의 제2단계 연구범위에 포함된다.

한편 본 연구 내용에서의 핵심인 마지막 제3단계는 향후 한-중 FTA 협상이 시작되는 경우 쟁점 분야를 미리 발굴하고, 각 쟁점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제3단계 협상쟁점 의제발굴은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표준 및 인증, 지적재산권, 경쟁, 및 노동 분야에서 제기될 수 있는 중국 국내법 자체의 모호성에서 나오는 문제, WTO법 또는 기존 FTA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 이행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 등을 중심으로 향후 한-중 FTA 협상쟁점으로서 핵심적인 의제가 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자 한다. 또한 이처럼 선정된 쟁점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소 분과별 전문가 활용하여 현재 고려대상이 된 서비스, 투자, 원산지,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를 섭외하여 각 분야의 쟁점 분석과 향후 전략 마련을 위한 1차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각 전문가들은 각 해당 분야의 연구책임자가 되고, 세부적인 쟁점파악과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며, 이를 전체 전문가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는 2중적 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본 연구과제 진행에서의 특징이다. 또한 각 분과별 전문가들과, 정보통신진흥원, 지식경제부 및 이해 관련 업체 등의 담당자들이 함께 전체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기 위한 전문가 협의 회의를 개최하며, 필

요한 경우 이러한 전문가 협의회의 이전에 수시로 소규모 전문가 회의나 간담회가 개최될 필요성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출된 연구결과는 다자적 측면에서의 무역장벽과 양자적 측면에서의 중국의 무역장벽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FTA 협상에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다 직접적으로 SW분야와 관련한 여러 분야에서의 쟁점을 발굴하여 FTA 협상에서 도움이 되고, 국내 관련 기관 및 업체에게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러한 연구결과물이 보다 의미 있는 결과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연구진의 학술적 접근뿐만 아니라 산업계 및 정부기관의 정책적 의견 조율과 토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즉, 연구의 목적이 국내 SW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한 업계의 진솔한 의견제시와 정부의 정책조율이 뒤따를 때 보다 효과적인 연구결과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연구진의 연구내용이 단지 학문적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다 직접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이러한 다른 주체들의 도움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의 또 다른 한계로는 연구의 범위가 협상쟁점의 발굴까지에 제한되며, 보다 구체적인 협상전략의 마련은 이번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서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2장 중국의 국내법 · 제도 분석

제 1 절 중국의 SW산업 분류체계 및 정책 방향
제 2 절 중국의 SW산업 관련 정부기관(부처) 및 기능
제 3 절 SW산업 관련 중국의 주요 국내법 내용
제 4 절 SW산업 관련 중국 국내법제도의 문제점

제 1 절 중국의 SW산업 분류체계 및 정책 방향

1. 중국의 SW산업 분류체계

2002년 제정된 중국의 국가기준 GB/T4754-2002『국민경제산업분류』(國民經濟行業分類)에 따르면, 중국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은 대체로 서비스산업 중 G(정보전송, 컴퓨터서비스와 소프트웨어산업)분류의 62(소프트웨어산업)에 귀속된다. 해당 정의에 의하면, "소프트웨어산업"이란,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1)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설계, 프로그램의 제작 · 분석 · 테스트 · 수정 · 자문에 전문 종사하는 활동 (2) 인터넷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소프트웨어의 설계와 기술규범을 제공해주는 활동 (3) 소프트웨어가 지원하는 시스템 및 환경에 대해 자문, 협조와 지도를 해주는 활동 (4) 하드웨어 내장형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에 대해 자문, 설계, 감정 등을 제공해주는 활동 등이다.

한편 다음의 경우는 소프트웨어산업에서 제외된다. (1) 소프트웨어의 판매(이는 도매와 소매 산업의 컴퓨터 · 소프트웨어 및 보조설비의 도매와 소매에 포함됨) (2) 소프트웨어의 대량 복제(이는 제조업의 기록매개의 복제에 포함됨) (3)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조합식 시스템에 대한 설치와 테스트(이는 정보전송, 컴퓨터서비스와 소프트웨어산업의 컴퓨터시스템 서비스에 포함됨) (4) 하드웨어와 관련된 자문(이는 정보전송, 컴퓨터서비스와 소프트웨어산업의 기타 컴퓨터서비스에 포함됨)

소프트웨어산업은 다시 공공 소프트웨어서비스와 기타 소프트웨어서비스로 분류되며, 전자는 다시 기초 소프트웨어서비스와 응용 소프트웨어서비스로 분류된다.

"공공 소프트웨어서비스"란, 일반 고객에 대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서비스를 가리킨다. "기초 소프트웨어서비스"란, 일반 컴퓨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의 설계, 제작, 분석 및 테스트 등 서비스를 가리키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스템 소프트웨어서비스 (2)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서비스 (3) 네트워크 관리 소프트웨어서비스 (4) 안전 및 안티 바이러스 소프트웨어서비스 (5) 도구 소프트웨어서비스 (6) 데이터베이스관리 소프트웨어 (7) 보편사용 소프트웨어(사무, 영상처리, 영상제작, 게임 등 소프트웨어) (8) 기타 기초 소프트웨어에 대한 서비스. "응용 소프트웨어서비스"는 전문분야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서비스 및 최종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제품 중의 내장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서비스를 가리키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산업 응용 소프트웨어서

비스: 재무, 회계감사, 세무, 통계, 금융, 증권, 통신, 에너지, 공업통제, 교통 등 소프트웨어 서비스 (2) 언어처리 소프트웨어서비스: 정보검색, 문서처리, 어음응용, 사전, 언어 자료 보관소, 언어번역 등 소프트웨어 서비스, 삽입식 소프트웨어 서비스(가전제품, 휴대폰, 절차통제교환기, 기지국 등). 기타 응용 소프트웨어서비스.

"기타 소프트웨어서비스"는 특정한 고객에게 소프트웨어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자문 등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가리키며, 다음의 세 가지가 포함된다. (1) 고객의 특수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서비스 (2) 소프트웨어의 자문활동 (3) 기타 소프트웨어 서비스(예를 들어 소프트웨어에 대해 판매 후 훈련 양성 제공 등 활동을 가리킨다). 단지 판매와 무관한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훈련양성은 포함하지 않는다.[2)]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중국의 경우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의 대량 복제는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나머지 경우는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23(인쇄업과 기록매개물의 복제)하의 233(기록매개물의 복제)에 포함되는데, 구체적으로 오리지날 테이프, 마더보드 상의 정보에 대해 대량 복제하는 제조활동을 가리키며,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녹음 · 녹화 · 데이터 테이프의 복제. (2) 디스켓, 하드디스크의 복제. (3) CD의 복제. (4) 비 정제 소프트웨어의 복제. (5) 영화필름의 복제. 다만 다음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1) 공백 테이프, 자기 디스크, CD의 제조 (2) 인쇄제품의 복사. 또한 소프트웨어산업이 음향제품, 전자출판물 및 기타 문화와 관련된 기록매개의 복제와 관련되는 경우, 문화 및 관련 산업으로도 분류를 하고 있으며,[3)]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을 정보관련 산업으로도 귀속을 시키고 있다.[4)] 이 밖에 공공 소프트웨어서비스는 또한 하이테크산업으로도 분류를 하고 있다.[5)]

2. 중국의 SW산업 정책방향

소프트웨어산업은 국가의 기초적이고 전략적인 산업으로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무원에서는 2000년에 『소프트웨어산업과집적회로산업의발전을고무하는것에관한약간의정

2)『國民經濟行業分類』C 製造業 및 G 信息傳輸, 計算機服務和軟件業.
3)『文化及相關産業分類』.
4)『統計上劃分信息相關産業暫行規定』.
5)『高技術産業統計分類目錄』.

책』(關于鼓勵軟件産業和集成電路産業發展的若干政策)을 시행하였으며, 2002년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행동개요(2002-2005)』(振興軟件産業行動綱要)를 공포하였다.

2006-2010년의 소프트웨어산업 발전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중국의 정책조치는 다음의 여섯 가지로 귀결된다.

첫째, 산업정책과 법률체계를 완성하고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국무원의 상술한 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산업정책의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며 『소프트웨어와 집적회로산업 발전조례』 등 법률법규를 마련한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소프트웨어 시장질서를 정돈 및 규범화하며 공평 · 공정 · 공개적인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동시에 『정부구매법』의 시행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소프트웨어 구매정책조치를 완성화하며 국산소프트웨어의 시장공간을 확대한다.

둘째, 다각적인 투자 및 융자시스템을 구축하며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한다. 투자 및 융자환경 건설을 강화하고 정부재정 · 산업자본 · 벤처투자 · 금융자본 · 민간자본을 포함한 다각적인 투자 및 융자환경을 마련한다. 국가의 중대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중앙자금지원과 지방투자를 결부시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지원을 촉진한다. 벤처투자 퇴출시스템을 완성화하며 소프트웨어기업의 상장에 대해 적극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셋째, 각 부처의 자원을 정합하며 중점을 틀어쥔다. 현재 각 부처에서 각자 투자하는 현황을 개변하여 비교적 완정한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체계의 구축을 목적으로 연구 · 개발과 산업화에 있어서 중점을 지원한다. 소프트웨어산업에 있어서 약한 고리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소프트웨어기술의 산업화를 다그치며, 국내 산업고리에 있어 각 분야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넷째, 인재양성을 강화하고, 해외인재를 적극 유치한다. 소프트웨어 인재의 훈련과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러 단계의 인재를 키우며, 중점적으로 국제적이고 수준이 높은 복합형 소프트웨어인재를 양성한다. 소프트웨어대학과 소프트웨어직업기술대학을 발전시키고, 인재교육시스템을 구축하며, 능력을 갖춘 소프트웨어기업에서 기업제품에 대한 훈련 양성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한다. 국내외의 우수한 소프트웨어인재를 적극 유치한다. 경쟁과 장려시스템을 도입하여 인재의 발굴에 유리한 장려정책과 분배시스템을 도입하며, 소프트웨어인재의 발전에 유리한 외부환경을 마련한다.

다섯째, 소프트웨어 표준시스템을 완성하고, 표준의 시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중국에서 자체 개발한 기초 소프트웨어, 지원 소프트웨어, 도구 소프트웨어와 내장 소프트웨어 등을 중심으로, 국제기준을 참조하여, 기준의 연구와 제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중국 소프트웨어 기준의 집행과 감독을 계속하여 틀어쥐며, 국내의 소프트웨어기업들이 국제소프트웨어기준의 제정, 교류와 협력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한다.

여섯째, 공공기술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공서비스시스템을 완성한다. 정부의 지도, 기업의 참여, 국제협력 등 방식을 통하여 각종 자원을 통합하고, 공공기술플랫폼의 구축을 추진하며, 중국의 소프트웨어 기업을 위해 개방적이고 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을 도와 자체 연구 중 부딪친 핵심문제와 공동문제를 해결하여 주고, 소프트웨어협회의 관련 연구를 지원한다. 전문적으로 소프트웨어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력촉진센터, 소프트웨어표준화추진센터, 소프트웨어재산권거래시장 등 중개서비스기관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6)]

제 2 절 중국의 SW산업 관련 정부기관(부처) 및 기능

1. 공업 · 정보화부

현재 중국의 소프트웨어산업은 주로 공업 · 정보화부(工業信息化部)에서 관장하고 있다. 2008년 3월 15일 통과된『국무원기구개혁방안』(國務院機構改革方案)에 의하여, 기존의 정보산업부(信息産業部)는 공업 · 정보화부[7)]로 변경되었으며, 정보통신업과 공업을 전부 당해 부서에서 관할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동 부처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형 공업화 발전전략과 정책을 제정하고, 신형 공업화 과정 중의 중대한 문제를 조정 및 해결하며, 공업 · 통신업 및 정보화의 발전계획을 작성한다. 산업구조전략조정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정보화와 공업화의 융합을 추진하며, 군사기능과 민간기능이 결부된 무기장비의 과학연구 · 생산체제 건설을 추진한다. (2) 공업, 통신업의 산업계획과 산업정책을 제정 및 시행하고, 산업분포 및 구조의 개선에 대한 정책건의를 제출하며, 관련 법률과 법규의 초안을 작성한다. 산업기술규범과 기준을 작성 및 시행하며, 산업품질 관리업무를 지도한다. (3) 공업과 통신업의 발전추세를 모니터링 및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통계 및 공포하며, 정보예측과 사전경보 및

6)『軟件産業十一五專項規劃』.

7)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정보산업부, 국무원정보화사업관공실 철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공업관리기능을 당해 부처로 이동함.

정보지도를 수행한다. 산업 발전 중의 관련문제를 해결하고 정책건의를 제출하며, 공업 및 통신업의 응급관리, 산업안전 및 국방동원을 책임진다. (4) 공업, 통신업과 정보화 고정자산 투자규모와 방향을 책임지고, 중앙 재정 건설자금의 배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며,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국가계획 내 연도계획 규모의 고정자산투자항목에 대한 심사, 허가를 수행한다. (5) 하이테크 산업 중에 생물의약, 신소재, 항공과 우주비행, 정보산업 등과 관련된 계획, 정책과 기준을 수립 및 시행하고, 산업기술혁신과 기술진보를 지도하며, 선진기술로 전통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국가 과학기술과 관련된 중대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관련 과학 연구성과를 산업화시키며, 소프트웨어산업, 정보서비스산업과 신흥산업의 발전을 추진한다. (6) 장비제조업의 진흥을 담당하고, 중대 기술장비 발전과 자주혁신에 관한 새로운 계획, 정책을 수립하며, 국가의 중점 프로젝트건설을 기초로 중대 프로젝트의 시행을 조정한다. 중대한 기술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중대 기술장비의 도입을 지도한다. (7) 공업 및 통신업의 에너지절약과 자원의 종합이용, 청정생산촉진정책을 수립하고, 에너지절약과 자원의 종합이용 및 청정생산촉진계획의 수립에 참여하며, 관련 중대 시범공정과 새로운 제품, 설비, 소재의 보급을 조직한다. (8) 공업 및 통신업의 체제개혁과 관리혁신을 추진하고, 산업의 종합자질과 핵심 경쟁력을 높이며, 관련 산업의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한다. (9) 중소기업의 발전에 대해 거시적 지도를 하고, 관련 부서와 함께 중소기업의 발전과 비 국유경제의 발전에 관한 관련정책과 조치를 마련하며, 관련 중대 문제를 해결한다. (10) 국가의 정보화업무를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책을 제정하며, 정보화건설에서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한다. 전신, 방송, 텔레비전과 컴퓨터네트워크의 융합을 촉진하고, 전자정무의 발전을 추진하며, 여러 산업 간의 연결 및 중요한 정보자원의 개발이용과 공유를 촉진한다. (11) 공용통신네트워크, 인터넷, 전용통신네트워크를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법에 따라 전신과 정보서비스시장을 감독 및 관리하며, 관련부서와 함께 전신업무요금정책과 기준을 제정 및 시행한다. 통신자원의 분배와 관리 및 국제조화를 책임지고, 전신 보편서비스를 추진하며, 중요한 통신을 보장한다. (12) 무선전신 주파수 자원을 통일적으로 배치 및 관리하고, 법에 의해 무선전신국을 감독 및 관리하며, 위성궤도 위치의 관리를 책임진다. 군대와 지방 간 무선전신 관리에 대한 관련사무를 조정하고, 무선전 검사를 책임지며, 방해를 제어한다. 공중주파수의 질서를 유지하고, 법에 따라 무선전 규제를 시행한다. (13) 통신네트워크안전 및 관련정보의 안전관리업무를 책임지고, 국가정보안전과 국가정보안전 보장체제의 건설을 책임지며, 정부부처, 중점산업의 중요한 정보시스템과 기초 정보네트워크의 안전보장을 책임진다. 네트워크와 정보안전에 관한 중대한 사건을 책임지고 처리한다. (14) 공업,

통신업과 정보화의 대외협력과 교류를 전개하고, 국가를 대표하여 관련 국제기구에 참여한다. (15) 국무원에서 맡긴 기타 사항을 책임진다.

공업 · 정보화부의 산하에 24개의 기능기관이 존재하며, 이 중 전문적으로 소프트웨어서비스업사(軟件服務業司)를 두고 있다. 그 기능은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지도하고,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집성 및 서비스의 기술규범과 기준을 작성하며, 소프트웨어 공공서비스 체계건설을 추진하고,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외주를 추진하며, 정보안전기술개발을 지도 및 협력하는 것이다.[8] 동 사의 산하에 또한 종합처, 소프트웨어산업처, 소프트웨어응용처, 정보서비스업처 등 4개의 처(處)가 있다.[9]

2. 국가판권국

국가판권국(國家版權局)은 국무원의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이며, 전국의 저작권관리업무를 담당하는데,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등록 역시 그 업무범위에 속한다. 그 주요직책은 다음과 같다. (1) 저작권 법률, 법규를 시행한다. 저작권과 관련한 법률, 법규의 초안을 작성한다. 저작권 관리에 대한 규장과 중요한 관리조치를 제정하며, 시행 및 감독과 검사를 수행한다. (2) 저작권 집단관리기관을 심사, 비준하며, 저작권 섭외기관, 국외 저작권 인증기관, 외국과 국제저작권기구의 중국 내 대표기관 설립을 심사, 비준한다. (3) 지방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의 업무를 지도함. 중대한 영향이 있는 저작권 침해사건을 검사, 처리함. 국가를 대표하여 섭외 저작권 관계를 처리하며, 저작권과 관련된 양자 또는 다자 조약과 협정의 협상, 체결과 국내에서의 이행을 담당한다. (4) 저작권관리업무에 대한 전국적 홍보, 교육 및 장려활동을 책임진다.

국가판권국(國家版權局)은 그 산하에 판권관리사를 두고 있으며, 판권관리사 산하에 또한 판권처, 법률처, 정보홍보처, 종합처(국제처)가 있다. 이 중 판권처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저작권과 관련한 행정적 법 집행 및 사회감독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전국적으로 중대한 저작권침해 사건과 중대한 섭외 저작권 사건을 조사, 처리한다. (2) 저작권과ㄴ 관련한 행정적 법 집행을 감독, 지도한다. (3) 저작권 집단관리기관과 섭외대리기관의 심사, 비준을 담당하고, 그 업무를 감독 및 지도한다. (4) 섭외 저작권 계약의 등기와 저작권 인

8) 國務院辦公廳 2008年 7月 11日 公布, "工業和信息化部主要職責內設機構和人員編制規定"(國發[2008]11號).

9) http://rjfwys.miit.gov.cn/n11293472/n1298028/index.html.

증업무를 감독, 지도하며, 작품의 저작권 등기업무를 감독, 관리한다. (5) 저작권 섭외기관의 설립을 담당하고, 국외 저작권 권리인증기관을 지정하며, 외국과 국제 저작권기구가 중국에 설립하는 대표기관의 심사, 비준을 담당한다. (6) 법정허가로 사용하는 작품을 관리하며, 국가가 저작권을 갖는 작품의 사용을 관리한다. (7) 외국작품을 강제로 재차 인쇄 또는 번역하는 것과 관련한 신청을 심사, 비준하며, 강제허가증서를 발급한다.

3. 기타 부처

상술한 두 개의 부처 외에도, 다양한 부처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의 정책제정 및 그 시행에 관여하고 있다. 즉 재정부(財政部)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국가세무총국(國家稅務總局)은 세수와 관련하여, 상무부(商務部)는 대외무역과 관련하여, 해관총서(海關總署)는 통관과 관련하여, 과학기술부(科學技術部)는 산업기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국가통계국(國家統計局)은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통계와 관련하여, 국가외환관리국(國家外匯管理局)은 외환정책과 관련하여, 교육부(教育部)는 소프트웨어인재에 관한 교육체제 수립과 관련하여, 인력자원 · 사회보장부(人力資源和社會保障部)는 소프트웨어인재의 육성과 유치 등과 관련하여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제 3 절 SW산업 관련 중국의 주요 국내법 내용

중국은 2000년 6월 24일 국무원에서 공포한 『소프트웨어산업과집적회로산업의발전을장려하는것에관한약간의정책』을 시작으로 대량의 법령과 정책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위에서 언급한 국무원의 정책과 같이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이 있는가 하면, 『국가소프트웨어산업기지관리방법』과 같이 한 개 측면에서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정책을 규정한 법령도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중국의 법령에 대해 법령일반, 소프트웨어 산업화정책, 핵심 소프트웨어기업 지원, 기업기술혁신, 수출촉진, 세수, 지적재산권보호, 인재양성, 산업통계 등 세부분야로 나누어 중국의 관련 법령의 주요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다만 이하에서는 각 법령의 비교를 위해 문장 서술을 개조식으로 요약하여 정리한다.

1. 일반

A. 소프트웨어산업과집적회로산업의발전을장려하는것에관한약간의정책 (關于鼓勵軟件産業和集成電路産業發展的若干政策)

(1) 제정목적

중국 소프트웨어산업과 집적회로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정보산업의 창조능력과 국제경쟁력을 보강하며, 전통산업의 개조와 제품의 승급교체를 선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 · 신속 · 건전한 발전을 가일층 촉진하기 위하여 동 정책을 제정함.

(2) 시행일시

2000년 6월 24일 공포 및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함.

(3) 주관부서

국무원.

(4) 주요내용

1) 적용범위

중국 경내에 설립한 소프트웨어기업과 집적회로기업은 그 소유제 성격을 불문하고 모두 이 정책을 적용할 수 있음.

2) 투자 및 융자정책

다방면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투입을 강화해야 함. (1) 소프트웨어산업의 벤처투자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벤처투자를 권장함. 국가의 지지하에 벤처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벤처투자기금을 설립함. 초기에 국가는 일부 종자자금을 안배하는 동시에 사회를 통하여 주식을 지정 모집하거나 국내외 벤처투자기금을 유치하는 등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음. 벤처투자회사는 벤처투자 운영규칙에 따라 기업화 운

영 관리를 실시하고 그가 소지한 소프트웨어기업의 주식은 당해 소프트웨어기업의 상장 당일에 바로 시장에서 유통할 수 있음. 단 벤처투자회사가 당해 소프트웨어기업의 발기인일 경우에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함. (2) "10·5" 계획에 일부 예산 내 기본건설 자금을 설정하여 소프트웨어산업과 집적회로산업의 사회간접자본 및 산업화 프로젝트에 돌림. 대학교, 연구소 등 과학연구 인재가 집중된 지역에 국가가 지원하는 몇 개 소프트웨어단지를 건설함. 국가계획위원회, 재정부, 과학기술부, 정보산업부에서 연도계획을 배정할 때 그가 장악한 과학기술발전자금에서 일부를 인출하여 기반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사용하거나 또는 소프트웨어산업의 부화 개업자금으로 해야 함.

소프트웨어기업의 국내외 상장 융자에 조건을 마련해 줌. (1) 증권시장 창업판을 신속히 개발함. 소프트웨어기업의 소유제 성격을 불문하고 증권시장 창업판 상장조건에 부합되기만 하면 우선 안배해야 함. (2) 양호한 시장전망 및 인재우세를 확보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기업에 대하여는 그 자산평가에서 순자산 중 무형자산이 점하는 비율을 투자 각 측에서 자율적으로 협상하여 결정할 수 있음. (3) 소프트웨어기업의 경외 상장 융자를 지지함. 심사를 거쳐 경외 상장자격에 부합되는 소프트웨어기업은 모두 경외에서의 상장 융자를 신청할 수 있음.

3) 조세정책

국가는 중국 경내에서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생산을 권장함.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가 그가 개발 생산한 자사 소프트웨어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2010년 전에는 17%의 법정세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실제 세부담에서 3%를 초과한 부분은 징수 즉시 환급하여 기업이 소프트웨어제품의 R&D 또는 재생산 확장에 사용하도록 함.

중국 경내에 설립한 소프트웨어기업은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적용할 수 있음. 새로 설립한 소프트웨어기업은 인증을 거쳐 이윤 발생연도부터 "2년 면제, 3년 반감"의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적용함.

국가 계획내의 중점 소프트웨어기업에 대하여는 당 연도에 면세 우대를 향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10%의 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감소 징수함. 국가 계획내의 소프트웨어기업 명부는 국가발전계획위원회와 정보산업부,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국가세무총국이 공동으로 확정함.

소프트웨어기업에 소요되는 자사 설비와 계약에 따라 설비와 함께 수입하는 기술(소프트웨어 포함) 및 부대품·스페어 수입시 『면세하지아니하는외국투자프로젝트수출입상품목록』

과 『면세하지아니하는국내투자프로젝트수출입상품목록』의 상품을 제외하고 모두 수입관세와 수출단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기업직원의 임금과 훈련비용은 실지 발생액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차감하기 전의 이익에 계산함.

4) 산업기술정책

중대 공성 소프트웨어와 기초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지지함. 국가 과학기술경비는 기초성과 전략성, 전망성, 중대 관건적인 공성 소프트웨어기술의 R&D를 중점적으로 지지하며 주로는 오퍼레이팅시스템, 대형 데이터탱크 관리시스템, 네트워크플랫폼, 플렛폼개발, 정보안전, 내장식 시스템, 대형 응용소프트웨어시스템 등 기초 소프트웨어와 공성 소프트웨어를 포함함. 국가가 지지하는 상기 소프트웨어 R&D프로젝트에 속할 경우에는 기업을 주도로 하고 기업 · 대학교 · 연구소의 결합으로 공개 입찰방식을 통하여 우수한 프로젝트담당자를 선정함.

국내기업, 과학연구소, 대학교가 외국기업과 연합으로 R&D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지지함.

5) 수출정책

소프트웨어수출을 중국 수출입은행 업무범위에 넣는 동시에 우대이율의 대부금 지원을 받음. 그리고 국가 수출신용보험기구는 수출신용보험을 제공해야 함. 소프트웨어제품 연 수출액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소프트웨어기업은 소프트웨어 수출경영권을 향유할 수 있음.

해관은 소프트웨어 생산개발업무에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국가가 지지하는 소프트웨어단지 내에서 국외 고객의 소프트웨어개발 및 서비스 청부를 목적으로 R&D센터를 설립할 경우 에뮬레이트사용자 환경에 사용되는 설비에 대하여 보세조치를 취함.

국제거래에 참여하는 중점 소프트웨어기업의 실지 수요에 따라 기업 고 · 중급 관리임원과 고 · 중급 기술직원의 출입국 심사 비준수속을 간소화하며 유효기간을 적당히 연장함. 구체 방법은 외교부에서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별도로 제정함.

소프트웨어 무역특징에 부응하는 외환관리방법을 취함. 소프트웨어제품의 거래(소프트웨어 대외청부가공 포함)특징에 따라 소프트웨어제품 수출에 대하여 기타 제품과 다른 대외무역, 해관, 외환관리방법을 실시함으로써 소프트웨어기업이 국제상무활동의 수요에 적응하도록 해야 함.

소프트웨어 수출형 기업이 GB/T19000－ISO9000 시리즈 품질보증체계 인증과 CMM (능력 성숙도 모형) 인증을 취득하는 것을 권장함. 그 인증비용은 중앙 대외무역 발전기금에서 적당히 지원함.

6) 수입 분배정책

소프트웨어기업은 국가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본 기업의 경제효익과 사회평균임금에 근거하여 기업의 임금총액과 임금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기업 과학기술직원의 수입분배 권장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특수 기여를 한 과학기술직원에 대한 기업의 대상 포상을 권장함.

소프트웨어기업은 기술특허와 과학기술을 지분으로 평가하여 출자할 수 있으며 당해 지분을 발명자와 유공자에게 배당할 수 있음. 기업이 성취한 과학기술성과는 『과학기술성과 전화촉진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3년~5년 전 과학기술성과의 전화로 취득한 이윤을 규정 비율에 따라 지분으로 환산하여 분배할 수 있음. 집단 또는 개인이 기업외에서 들여온 특허기술과 노하우는 기업에서 직접 지분으로 평가하여 분배할 수 있음.

창업판에 상장한 소프트웨어기업이 기업내부 고급관리임원과 기술골간의 주식청약권을 실시할 경우에는 주식모집설명서에 상세히 피로해야 하며 동시에 창업판 상장규칙 요구에 따라 증권거래소에 필요한 설명자료를 제공해야 함. 공개 발행주식 내에서 상기 주식청약권의 지분 비율은 회사 이사회에서 결정함.

7) 인재유치 및 훈련정책

국가 교육부서는 시장수요에 따라 소프트웨어 인재 훈련규모를 가일층 확대하는 동시에 대학교, 과학연구소에 의탁하여 일정 수의 소프트웨어 훈련기지를 구축함. (1) 국내 교육자원 우세를 발휘하여 현존 대학교, 중등전문학교에서의 소프트웨어과 모집 규모를 확대하고 다차원의 소프트웨어인재를 훈련시킴. 당면하게는 신속히 석사·박사·박사후 등 고급 소프트웨어인재 훈련규모를 확대하고 조건을 구비한 대학교들에 대하여는 소프트웨어대학을 설립하도록 권장함. 이공과대학의 비컴퓨터과에 소프트웨어응용과를 설치하여 복합형 인재를 양성해야 함. (2) 성인교육과 과외교육(텔레비전대학 등)은 소프트웨어과를 설치하거나 보강해야 하며 기업과 과학연구소, 사회역량이 각종 소프트웨어 기술훈련을 전개하도록 적극 지지하고 재직 종업원의 지식갱신과 재교육을 강화해야 함.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부서

와 지역은 현대적 원격교수를 적극 추진해야 함. 공정기술직원의 기술직명 및 평가는 점차적으로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응용지식을 고시범위에 넣어야 함. (3) 국가 외국전문가국과 교육부는 공동으로 전문기금을 설치하고 고차원 소프트웨어 과학연구자들의 출국 연수, 중국에서 학술강연 및 작업을 위한 외국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초빙을 지원함.

국가가 지지하는 소프트웨어단지에 근무하는 소프트웨어시스템 분석요원과 시스템엔지니어가 중급이상 기술직명이 있거나 중대 발명창조가 있을 경우에는 본 단위에서 추천하고 관련부서의 고시에 합격되면 당사자와 그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가 당해 소프트웨어단지 소재지에 호적을 들여오도록 허가해야 함.

글로벌화 인재전략을 실시하고 국내외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을 유치하여 국내에서 소프트웨어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권장함. 국내 대학교, 과학연구소의 과학기술자들이 소프트웨어기업을 설립할 경우 관련 부서는 일정한 자금지원을 하고 인원유동 면에서도 허락해주어야 함. 국외 유학생과 외국적 인원이 국내에서 소프트웨어기업을 설립할 경우에는 소프트웨어기업에 대한 국가 제반 우대정책을 적용함.

8) 구입정책

국가가 투자한 중대공사와 중점 응용시스템은 국내기업이 우선적으로 건설해야 하며 성능가격을 대비하여 조건이 동등할 경우에는 국산 소프트웨어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함. 공사예산 작성시에는 소프트웨어와 기술서비스를 단독 예산항목으로 하는 동시에 경비조달을 확보해야 함.

기업 · 사업단위에서 구입하는 소프트웨어의 구입원가가 고정자산기준에 도달하거나 무형자산을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고정자산 또는 무형자산에 따라 채산할 수 있으며 세무부서의 비준을 받고 그 감가상각 또는 판매연한을 적당히 단축하여 최저 2년으로 할 수 있음.
정부기구가 구입하는 소프트웨어, 국가 주권 및 경제안전과 관련되는 소프트웨어는 정부 구입방식을 취해야 함.

9) 소프트웨어기업 인증제도

소프트웨어기업인증기준은 정보산업부가 교육부, 과학기술부, 국가세무총국 등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함.

소프트웨어기업은 연차검사 제도를 실시함. 연차검사 불합격기업은 소프트웨어기업자격

을 취소하며 더는 관련 우대정책을 향유하지 못함.

소프트웨어기업의 인증과 연차검사 조직작업은 상급 정보산업 주관부서로부터 수권한 지구(시)급이상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또는 관련 협회에서 구체적으로 책임짐. 소프트웨어기업 명부는 산업협회에서 초보적으로 선정한 다음 동급 정보산업부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는 동시에 동급 세무부서와 회동하여 비준한 후 정식 공표함.

정보산업부, 국가품질기술감독국은 소프트웨어제품 국가표준의 작성을 책임짐.

10) 지적재산권 보호

국무원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제도를 규범화 및 강화하고 소프트웨어 저작권등록을 권장하며 국가 법률에 따라 이미 등록한 소프트웨어를 중점적으로 보호해야 함.

중외 저작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단위도 그 컴퓨터시스템에 수권허가를 받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제품을 사용하지 못함.

밀수 또는 해적판 소프트웨어에 대한 단속 강도를 제고하고 해적판 소프트웨어의 제작, 생산, 판매활동을 엄격히 조사 처리해야 함. 2000년 하반기부터 공안부와 정보산업부, 국가공상국, 국가지적재산권국, 국가판권국, 국가세무총국은 정기적으로 해적판 소프트웨어 연합 단속활동을 전문 벌려야 함.

11) 산업조직과 산업관리

각급 정보산업 주관부서는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산업관리 및 감독을 실시함.

정보산업 주관부서는 시장조사, 정보교환, 자문평가, 산업자율, 지적재산권보호, 자질인정, 정책연구 등 면에서의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함.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의 활동 경비는 주로 협회구성원이 공동 부담하며 주관부서에 신청하여 재정에서 적당히 지원할 수도 있음.

소프트웨어 산업협회는 반드시 공개 · 공정 · 공평 원칙에 따라 그가 감당한 소프트웨어기업 인정기능을 이행해야 함.

소프트웨어제품매출액과 수출액은 국가 관련 통계범위에 넣고 정보산업 목록에 단독으로 나열함.

B. 중국소프트웨어산업기본공약(中國軟件行業基本公約)

(1) 제정목적

중국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공정한 소프트웨어 시장환경을 구축 및 유지하며, 소프트웨어기업과 광범한 이용자의 합법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와 규장에 근거하여 동 공약을 제정함.

(2) 주관부서

중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3) 주요내용

1) 적용범위

동 공약은 중국 경내에서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 생산, 판매, 서비스, 훈련 양성, 매체홍보 및 기술수출입 등 각종 소프트웨어 경영활동에 있어서 행위준칙과 행위규범을 제공함.

무릇 중국 경내에서 상술한 소프트웨어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외국기업이 중국에 설치한 지사 포함), 사업단위, 사회단체 등 단위(아래 소프트웨어경영업체로 약칭)는 소프트웨어 경영활동에 종사함에 있어서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하는 외에, 모두 동 공약의 구속과 보호를 받음.

2) 협회의 권리와 의무

산업발전, 진보를 방해하거나 산업의 공동이익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든지, 소프트웨어 경영업체와 중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및 지방협회는 모두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와 동 공약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제지시킬 권한을 가짐.

동 공약을 위반한 소프트웨어경영업체에 대하여 중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및 지방협회는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 약속위반행위를 정지하도록 권고하며, 영향을 제거하도록 명함. (2) 그 행위로 인하여 관련업체에 야기한 손실을 배상하도록 요구함. (3) 동 산업 내에서 통보, 비평함. (4) 매체 또는 사이트를 통하여 그 계약위반행위를 공포함. (5) 중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또는 지방협회 회원의 계약위반행위의 상황

이 심각한 경우, 그 협회회원자격을 취소함. (6)『소프트웨어기업인증기준및관리방법(시행)』의 관련규정에 따라, 관련부서에 그 소프트웨어기업 인정자격을 취소하도록 건의함. (7) 누차 계약을 위반하고, 상황이 심각한 소프트웨어경영기업의 경우, 중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지방협회회원업체 및 전 산업에 호소, 조직하여 공동으로 배척하도록 함.

중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각 분회, 각 지방의 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동 공약에 근거하고, 당해 분회 또는 지역의 특점과 결부하여, 당해 분회 또는 당해지역에서 동 공약을 시행하는 세칙 또는 행위규약을 제정할 수 있음. 각 분회, 각 지방의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제정한 세칙 또는 행위규약은 중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송부하여 보고하여야 함.

3) 경영업체의 권리와 의무

소프트웨어경영업체는 동 공약의 시행 중 발생한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또는 지방협회에 도움 및 지도를 요청할 수 있음. 기타 소프트웨어경영업체가 동 공약을 위반하여, 그 이익이 침해당하는 경우, 소프트웨어경영업체는 중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또는 지방협회에 고발함으로써, 그 합법적 권익을 보합법, 신의성실, 공평과 등가유상의 원칙에 따라, 소프트웨어경영업체 간의 서로 이득을 보고 서로 돕는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중국 소프트웨어의 수준과 경쟁력을 높일 것을 제창함. 소프트웨어경영업체 간에 양자 또는 다자간 기술교류와 업무협력을 수행하는 것을 고무하며,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타인의 소프트웨어기술과 성과를 참조 및 사용하는 것을 고무함. 소프트웨어경영업체는 당해 업체의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가 이용자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경우, 주동적으로 이용자에게 기타 관련제품과 서비스를 추천하여, 선택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호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경영업체는 소프트웨어 경영활동에 종사함에 있어, 사회 공공이익과 산업 내 공정경쟁의 시장환경을 보호하여야 하며, 다음의 부정당 경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1) 매체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하여 자신의 제품, 기술에 대해 허위 홍보를 하거나, 허위정보를 날조 또는 유포하여 경쟁상대의 기업이미지, 상업적 신망 및 그 제품 또는 기술의 명성을 훼손하는 행위. (2) 뇌물을 주거나, 중개료를 주는 등 수단을 통하여, 프로젝트를 수주하거나, 시장판매 비율을 취득함으로써, 정당한 경쟁을 통하여 취득할 수 없는 이익 또는 시장지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행위. (3) 위협이나 유인 또는 업계 내에서의 독점지위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제품, 기술과 서비스를 구매, 사용하도록 강제하거나, 기타 소프트웨어경영업체가 그 제품을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4) 공개가격의 기초에서 대폭 할인하거나 원

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판매 함으로서, 기타 소프트웨어경영업체의 합법적인 시장활동을 방해 또는 파괴하는 행위. (5) 정부기관의 명의를 거짓 이용하여, 매체에서 기업이미지, 제품 광고를 하며, 강제적으로 그 제품, 기술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행위. (6) 소프트웨어 공개 입찰 시, 서로 공모 또는 비 공개 등 정당하지 않은 수단으로 기타 경쟁상대를 배척하는 행위.

소프트웨어경영업체가 이용자에게 제공한 소프트웨어제품 및 서비스는 국가의 관련 기술, 안전기준에 부합되어야 함.

소프트웨어경영업체는 광범한 이용자의 합법권익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하며, 제품품질을 제고하고, 우질의 기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1) 이용자에게 제공한 소프트웨어제품은『소프트웨어제품관리방법』에 따라 등기절차를 거쳤어야 함. 시스템 집적서비스에 종사하는 소프트웨어경영업체의 경우, 이용자에게 그 시스템 집적자격등급을 명시하여야 함. (2)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제품은 그 제품소개 또는 제품공급계약에서 약속한 기능과 품질기준에 부합되어야 함. (3) 서면형식으로 이용자에게 기술서비스의 내용, 방식과 서비스요금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마음대로 무료서비스 기한을 변경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경영업체는 타인이 향유하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및 상업비밀을 존중하여야 하며, 자각적으로 국가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정부의 관련부서와 중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및 지방협회는 침권행위와 해적판활동을 타격함. 소프트웨어경영업체는 그 컴퓨터시스템 내에 허가 받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며, 타인을 도와 침권 소프트웨어를 제작, 사용하지 못함. 모든 형태의 해적판 소프트웨어 제작, 판매, 수출입 행위를 금지하며, 기타 방식으로 타인에게 해적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

소프트웨어경영업체는 당해 산업 내의 기술과 관리인원의 유통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하여야 함. (1) 기타 업체에서 근무하는 인원을 임용하는 경우, 기존 업체에서 이의를 제출하고 동시에 당해 인원이 위법 또는 직업도덕을 심각히 위배한 행위를 하였음이 증거에 의해 입증된다면, 일반적으로 임용하지 아니함. (2) 기타 업체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인원을 임용하는 경우, 기존 업체의 합법권익을 존중하여야 하며, 높은 임금 등 부정당한 수단으로 기존단위의 기술성과, 지적재산권과 상업비밀을 취득, 사용, 누출 또는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허가하여서는 아니됨.

소프트웨어경영업체는 동 공약을 대폭 홍보할 의무를 가지며, 그 직원에게 당해 공약에 따라 업무활동에 종사하도록 교육하며, 업체 내에 관련한 규장제도를 마련하여, 동 공약의

시행을 담보하여야 함.

4) 이용자의 권리

소프트웨어 이용자는 소프트웨어경영자가 동 공약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에게 피해를 야기한 경우, 중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또는 지방협회에 고발함으로써, 그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

2. 소프트웨어 산업화

A. 국가소프트웨어산업기지관리방법(시행)(國家軟件産業基地管理辦法)(試行)

(1) 제정목적

국무원의『소프트웨어산업과집적회로산업의발전을장려하는것에관한약간의정책』에 근거하여, 국가 소프트웨어산업기지의 건설과 관리를 규범화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양호한 발전 환경을 마련하며, 중국 소프트웨어산업이 새로운 발전을 하도록 추진하고, 정보화의 발전으로 공업화의 발전을 이끌어나가기 위하여 동 관리방법을 제정함.

(2) 주관부서

국가계획위원회, 정보산업부.

국가계획위원회와 정보산업부는 국가 소프트웨어산업기지에 대한 거시적 지도를 책임지고, 동시에 국가 소프트웨어산업기지의 인정, 심사와 감독업무를 책임짐.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계획위원회, 정보산업 주무부서는 국가소프트웨어산업기지의 예비심사와 추천업무를 책임짐.

(3) 시행일시

2001년 12월 31일부터 시행.

(4) 주요내용

1) 정의

"국가소프트웨어산업기지"는 국가가 대학교, 과학연구소 등 과학연구자가 집중되고, 소프트웨어산업이 이미 상당한 기초와 규모를 갖춘 지역에서 소프트웨어산업(집적회로설계업 포함)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소프트웨어개발, 생산, 서비스와 수출을 주요임무로 하는 산업기지를 중점 건설하는 것을 가리킴. 국가소프트웨어산업기지는 대형 핵심 소프트웨어기업을 중점 배양하여야 하고, 명백한 기술특색이 있는 중소형 소프트웨어기업을 지원하며, 국민경제 정보화건설에 급히 필요한 소프트웨어제품의 개발 및 전반적인 해결방안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2) 인정조건

국가소프트웨어산업기지의 인정을 신청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음. (1) 당해 지역에 대학교와 과학연구소가 집중되고, 소프트웨어 인재자원이 풍부하며, 상당한 소프트웨어 산업기초와 규모를 갖추었으며, 당지 정부의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정책이 수행되고, 조치가 구체적이고 적절하여야 함. (2) 당해 지역의 소프트웨어산업기지의 건설 및 발전환경이 훌륭하고, 기지건설이 이미 일정한 규모를 갖추었으며, 비교적 훌륭한 기초시설을 갖추었고, 산업특성이 명백하고, 서비스시스템이 완비하며, 대형 핵심 소프트웨어기업의 양성과 중, 소형 소프트웨어기업의 부화요건을 갖추었으며, 당해 지역 및 주변지역의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이끌수 있음. (3) 소프트웨어산업기지에 이미 일정한 수량의 대형 핵심 소프트웨어기업이 있고, 상당한 수량의 잠재력이 있는 중, 소형 소프트웨어기업과 비교적 높은 기술개발수준을 가진 연구기관이 있으며, 기지 내의 기업은 현대화기업제도의 요구에 따라 설립되었고, 시장경제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야 함. (4) 자주적인 지적재산권을 가진 국산 소프트웨어가 당해 기지제품 구조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여야 하고, 이미 일부 시장점유비중이 비교적 높은 핵심 소프트웨어제품을 갖고 있으며, 일정한 소프트웨어 수출능력을 갖추어야 함. (5) 소프트웨어산업기지의 지리적 경계선이 명확하고, 소프트웨어기업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었으며, 기지의 건설, 관리와 발전이 국제와 연결되어야 함. (6) 훌륭한 국제투자와 협력환경을 갖고 있고, 소프트웨어산업기지의 외국인투자흡수, 협력의 조건이 좋으며, 일정한 수량의 소프트웨어 3자기업과 연구개발센터를 갖고 있어야 함. (7) 소프트웨어산업기지를

가일층 발전시킬 사고방향이 명백하고, 계획이 실현 가능하며, 중장기 발전목표가 명확하여야 함.

3) 인정절차

국가 소프트웨어산업기지는 정기적으로 재 신청하며, 무릇 동 관리방법 제2장에 열거된 조건을 만족하는 소프트웨어기지는 모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속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위원회와 정보산업부 주무부서의 추천을 거쳐, 국가계획위원회와 정보산업부에 국가 소프트웨어산업기지 신청을 함.

국가계획위원회와 정보산업부는 국가소프트웨어산업기지 전문가소조를 조직하며, 동 관리방법에 근거하여, 신청한 기지에 대해 심사를 하며, 최종적으로 국가계획위원회와 정보산업부의 연구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함. 허가된 후, 국가소프트웨어산업기지목록에 열거하며, 현판을 부여하고, 동시에 국가에서 해당하는 지원을 하여 줌.

4) 관리와 심사

국가소프트웨어산업기지가 속한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계획위원회와 정보산업 주무부서는 기지건설과 발전의 구체적인 지도와 협력을 책임짐.

국가소프트웨어산업기지는 소프트웨어기업의 정보통계업무를 강화하여야 하고,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전제 하에, 정기적으로 기지건설과 산업발전상황 및 관련 통계수치를 국가계획위원회와 정보산업부에 보고하여야 함.

국가소프트웨어산업기지에 대해 정기검사와 동태적 평가제도를 시행하며,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수행함. 국가계획위원회, 정보산업부는 국가소프트웨어산업기지 전문가소조를 구성하여, 동 방법과 평가지표에 근가하여, 국가소프트웨어산업기지에 대해 지도, 평가와 재심사를 수행하고, 평가와 재심사결과를 국가계획위원회와 정보산업부에 보고함.

평가의견을 근거로 하고, 국가계획위원회와 정보산업부의 심사를 거쳐, 우수로 평가된 국가소프트웨어산업기지에 대해서는 장려하고, 불 합격으로 평가된 경우, 국가소프트웨어산업기지자격을 취소하고 현판을 회수함.

3. 핵심 소프트웨어기업 지원

A. 국가계획분포내의중점소프트웨어기업인정관리방법(시행)
(國家規劃布局內的重點軟件企業認定管理辦法(試行))

(1) 제정목적

국무원에서 공포한『소프트웨어산업과집적회로산업의발전을장려하는것에관한약간의정책』을 이행하고, 국가계획분포내의 중점 소프트웨어기업을 합리적으로 확정하며, 중국 소프트웨어산업의 빠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방법을 제정함.

(2) 시행일시

2001년 7월 24일 공포 및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함.

(3) 주관부서

국가계획위원회, 정보산업부,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국가세무총국.

(4) 주요내용

1) 정의

"국가계획분포내의 중점소프트웨어기업"이란 이미 소프트웨어기업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았고,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시키는 소프트웨어기업을 가리킴. (1) 소프트웨어 연간 영업수입이 인민폐 1억 위안 이상인 경우. (2) 연간 수출액이 50만 달러 이상이며, 소프트웨어의 수출이 당해 기업의 연간영업수입 중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소프트웨어 수출액이 당해 기업 연간 영업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국가소프트웨어산업발전계획의 요구에 근거하여, 국가의 소프트웨어산업 투자지침에 부합되고, 일부 소프트웨어 중점분야에서의 판매수입이 5위 내에 속하는 경우.

2) 신청 및 심사

국가계획분포 내의 중점 소프트웨어기업을 신청하는 경우, 인정기관에 다음의 자료를 제

출하여야 함. (1) 소프트웨어기업의 인정증서. (2) 국가계획분포내의 중점 소프트웨어기업 인정신청서(대차 대조표, 손익표, 현금유동표, 기업소득세 납세신청서, 인원배치표, 소프트웨어개발환경과 기업경영상황 등 관련내용을 포함함). (3) 당해기업의 그해 소프트웨어수출총액. (4) 국가주무부서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국가계획위원회는 정보산업부,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국가세무총국과 함께 심사한 후, 국가계획분포내 중점 소프트웨어기업 인정명단을 공포하며, 인정증서를 발급함.

3) 연도심사

국가계획분포내의 중점소프트웨어기업에 대해 연도심사제도를 시행함. 중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동 방법에 근거하여 국가계획분포내의 중점소프트웨어기업에 대한 연도심사를 수행하며, 연도심사결과를 국가 관련부서에 보고하여 허가 받음. 연도심사에 합격된 기업의 경우, 중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국가계획분포내의 중점 소프트웨어기업 인정서에 연도심사 합격 도장을 날인하며, 연도심사에 합격되지 못한 기업의 경우, 그해에 10%의 소득세 특혜정책을 향수하지 못함.

인정을 거친 국가계획분포내의 중점소프트웨어기업은 그해 발급한 인정증서 또는 연도심사합격증명서를 소지하고, 세무부서에 가서 그해 연도 소득세 감면절차를 밟음.

기업이 인정결과 또는 연도심사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가 공포된 후 60일 내에 국가의 주무부서에 재심사 신청을 할 수 있음. 재심사를 신청한 소프트웨어기업은 국가의 주무부서에 재심사신청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주무부서는 재심사 신청을 받은 후 5일 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재심사신청을 수리한 후, 정보산업부는 즉시 국가계획위원회에 재심사건의와 재심사의견을 제출함. 국가계획위원회는 정보산업부,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국가세무총국과 함께 연구한 후 재심사결정을 내림.

기업은 국가계획분포내의 중점소프트웨어기업 신청 또는 연도심사 과정에 여실히 자료를 제공하며, 내용과 데이터의 정확성과 확실성을 담보함. 허위적인 자료 또는 내용을 제출하거나, 데이터가 허위적인 경우, 중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그 인정신청을 중지하며, 국가 주무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함. 또한 3년 내에 국가계획분포내의 중점소프트웨어기업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며, 이미 인정을 취득한 경우, 그 국가계획분포내 중점소프트웨어기업자격을 취소하며, 3년 내의 신청자격을 박탈함.

B. 소프트웨어기업인정기준및관리방법(軟件企業認定標準及管理辦法)

(1) 제정목적

중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정보산업부의 창조 능력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원의 『소프트웨어산업과집적회로산업의발전을장려하는것에관한약간의정책』(이하 "정책"으로 약칭)에 근거하여 동 방법을 제정함.

(2) 시행일시

동 방법은 정보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세무총국에서 2000년 10월 16일 공포 및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함.

(3) 주관부서

정보산업부는 교육부, 과학기술부, 국가세무총국 등 관련부서와 함께 소프트웨어 기업 인정기준 및 관리 방법을 제정하고 정보산업부는 전국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해 업종 관리와 감독을 진행하며 전국 소프트웨어 기업인정 업무를 협조 및 관리함.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정보산업부 주관 부서는 동 행정지역 내의 소프트웨어기업 인정 업무를 책임 관리함. 동 방법은 정보산업부가 책임 해석함.

(4) 주요내용

1) 소프트웨어 상품의 정의

동 방법에서 말하는 "소프트웨어 상품"은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보 시스템 또는 설비 중 삽입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 통합, 응용 서비스 등에 제공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말함.

2) 정보산업부의 직무

정보산업부의 주요 직무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정보산업부 주관 부문의 건의에 근거하여 각 지역 성급 소프트웨어 기업인정기관를 확정하고 그 권리 부여 및 철회의 권리를 부여하며 소프트웨어 기업인정기관 명단을 공포하는 것, 전국 소프트웨어 기업인정 업무를 지

도 및 감독 검사하는 것, 인정 결과와 연도 심사 결과의 재심사 신청을 접수하는 것 등임.

3)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정보산업부 주관부서의 직무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정보산업부 주관 부서의 직무로는 동 행정구역 내의 소프트웨어 기업인정 업무의 감독감찰과 동 행정지역 (시)급 소프트웨어기업인정기관을 확정하는 것, 동급 세금행정부서와 함께 동 행정지역 내 소프트웨어 기업을 심사비준하고 인정 명단을 공포하는 것, 동 행정지역 내의 인정 명단을 공포하고 소프트웨어기업인정증서를 발급하는 것, 동 행정지역내의 인정결과와 연도 검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을 접수하는 것 등임.

4) 소프트웨어 기업인정기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정보산업부 주관 부서의 심사 추천을 거쳐 정보산업부에서 위임받은 소프트웨어기업협회 또는 관련 협회를 소프트웨어 기업인정기관로 함. 소프트웨어 기업인정기관는 동 방법 제6조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함.

동 방법 제6조 규정을 갖추지 않고 설립한 소프트웨어 기업인정기관의 기본 조건은 성, 자치구, 직할시는 일시적으로 중국소프트웨어협회가 대리로 관련 인정 업무를 수행함.

5) 소프트웨어 기업인정기관의 직무

소프트웨어 기업인정기관는 지역 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인정과 연도심사의 조직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함. 그 직무로는 지역 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인정 신청을 접수 위임받는 것, 소프트웨어 기업인정의 심사와 연도 심사를 조직하는 것, 구역 내 소프트웨어 기업인정과 연도 심사의 1차 심사 명단을 제출하는 것, 1차 심사 명단을 해당 지역 정보산업부 부서에 보고하여 심사를 거치는 것, 정보산업부 부서가 위탁한 기타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것 등임.

6) 중국소프트웨어기업협회의 업무

동 방법 제9조의 상황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인정과 연도 심사의 조직업무는 중국소프트웨어기업협회가 책임지고 맡아 함. 1차 심사 명단은 정보산업부에 보고하여 심사를 거침.

중국소프트웨어기업협회는 정보산업부의 위탁을 받아 각지의 소프트웨어 기업인정기관의 인정 업무에 대해 업무 지도 · 감독 · 심사 진행을 맡음.

7) 소프트웨어 기업의 인정기준

소프트웨어 기업의 인정기준은 동 방법 제12조에 의함.

8) 인정을 신청한 기업의 제출자료

인정을 신청한 기업은 소프트웨어 기업인정 기관에 동 방법 제13조에 열거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9) 소프트웨어 기업인정기관의 심사

소프트웨어 기업인정기관는 제12조의 기준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 기업의 인정 신청자에 대해 심사를 진행함. 심사는 형식 심사를 위주로 하고, 필요시 전문가를 조직하여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 심사에 합격한 소프트웨어 기업은 인정기관가 제출하는 1차 명단에 포함되며 동급 정보산업부 주관 부문에 보고하여 심사비준 함.

10) 소프트웨어 기업인정 명단

소프트웨어 기업인정 명단은 인정기관의 동급 정보산업부 부문의 심사와 세무 부문의 허가 공포를 거친 후 소프트웨어 기업 인정 증서를 발급하고 상급 정보산업주관 부문에 보고하여 등기 비치함.

11) 연도심사제도

소프트웨어 기업 인정은 연도 심사 제도를 실시함. 각 지역 인정기관은 반드시 동 방법 제12조 규정 기준에 의거하여 구역 내의 소프트웨어 기업에 연도 심사를 진행함. 연도 심사 결과는 인정 기구의 동급 정보산업주관 부문의 심사 후 동급 세무 부문의 허가를 거치고, 상급 정보산업 부문에 보고하여 등기 비치함.

연도 심사에 합격한 소프트웨어 기업은 정보산업주관 부문에 의해 공고되고 소프트웨어 기업인정 증서에 연도 심사 합격 인장을 받음. 연도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기업은 해당 연도의 '정책'이 규정한 관련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없음.

12) 인정결과 또는 연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기업은 인정 결과 또는 연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 발표 1개월 이내에 소재

지 성, 자치구, 직할시 정보산업주관 부서 또는 정보산업부에 재심사 신청을 할 수 있음.

재심사를 신청한 소프트웨어 기업은 반드시 재심사 신청서 및 관련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를 받은 기관은 재심사 신청 후 15일 이내에 신청 접수 여부를 결정해야 함.

접수 기관은 반드시 재심사 신청에 대해 신중히 조사 확인하여야 하며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재심사 결정을 내려야 함.

13) 인정기업의 변경

인정을 거친 소프트웨어 기업이 조정, 분리, 합병, 등의 이유로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 사실을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소재지 인정기관에 변경 수속 또는 인정 신청을 새로 해야 함.

14) 인정자격의 취소

소프트웨어 기업이 불법 소프트웨어 제작, 생산, 판매 활동을 하거나 또는 허가를 거치지 않은 소프트웨어 상품을 사용하는 경우 관련 기관이 법에 의거해 처리하는 것 이외에 인정기관은 반드시 동급 정보산업주관 부문에 해당 소프트웨어 기업 인정 자격의 취소를 제청하고 상급 정보산업 부문에 보고하여 등기 비치함.

인정기관은 동 조 앞에 열거한 소프트웨어 기업의 사건의 경중에 따라 1년에서 3년간은 인정 신청을 받지 않음.

16) 허위자료제출에 대한 제재

기업이 소프트웨어 기업 인정 또는 연도심사를 받을 때 반드시 동 방법이 요구하는 자료와 내용을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함. 만약 허위 자료 또는 허위 내용을 제출하였을 경우 조사하여 사실이면 인정기관은 해당 인정 신청 접수를 정지하거나 또는 정보산업주관 부문에 보고하여 해당 기업의 당해 연도 우대 '정책'을 취소하고 상급 정보산업부문에 보고하여 비치함.

17) 동 방법을 위반한 인정기관에 대한 제재

동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인정기관에 대하여 위임한 정보산업주관부문은 기한 내에 수정을 명하고 기한이 도래하여도 개정하지 않은 경우 그 인정기관의 자격을 취소함.

C. 소프트웨어제품관리방법(軟件産品管理辦法)

(1) 제정목적

소프트웨어 상품의 관리를 강화하고, 중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가 관련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 『소프트웨어산업과집적회로산업의발전을장려하는것에관한약간의정책』(이하 "산업정책"으로 약칭)에 근거하여 동 방법을 제정함.

(2) 시행일시

동 방법은 2009년 3월 1일 공포, 2009년 4월 10일 시행함.

기존 정보산업부가 2000년 10월 27일 발표한 『소프트웨어상품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됨.

(3) 주관부서

공업 · 정보화부는 전국 소프트웨어 상품의 관리를 맡음.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 배정시의 소프트웨어산업 주관 부문은 동 행정 지역 내 소프트웨어 상품의 등기, 기록 및 관리업무를 책임짐.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 배정시 소프트웨어산업 주관부서는 소재지의 소프트웨어 제품 등록기관에 소프트웨어제품 등록 신청의 수리 및 심사를 위임할 수 있음.

(4) 주요내용

1) 적용범위

중국 국경 내의 소프트웨어 상품(국산 소프트웨어와 수입 소프트웨어 포함)의 경영과 관리 활동 시 동 방법을 적용함.

단위 또는 개인이 개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및 타인에게 위탁하여 개발한 개인전용 소프트웨어는 동 방법을 적용하지 않음.

2) 소프트웨어 상품의 정의

동 방법에서 말하는 “소프트웨어 상품”은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보 시스템 또는 설비 중 삽입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 통합, 응용 서비스 등

의 기술 서비스에 제공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말함.

동 방법에서 말하는 “국산 소프트웨어”는 중국 국경 내에서 개발 생산되는 소프트웨어 상품임.

동 방법에서 말하는 “수입 소프트웨어”는 중국 국경 외에서 개발되고 각종 형식으로 중국 내에서 생산, 경영되는 소프트웨어 상품을 말함.

3) 금지되는 행위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범하거나, 컴퓨터 바이러스를 포함하거나, 컴퓨터 시스템의 보안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거나, 국가의 소프트웨어 표준규범에 부합되지 않거나, 법률 및 행정법규 등에서 금지되는 내용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상품을 개발, 생산, 판매, 수출입 하여서는 아니됨.

4) 공업 · 정보화부의 주요직무

공업 · 정보화부는 전국의 소프트웨어제품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고 처리하며, 그 주요직책은 아래와 같음. (1) 소프트웨어제품 테스트표준과 규범을 제정 및 공포. (2)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 배정시 소프트웨어산업 주관부서에 등록된 소프트웨어제품을 기록부에 등재. (3) 전국의 소프트웨어제품 관리업무를 지도, 감독 및 검사. (4) 중국 소프트웨어제품의 표준규범과 테스트표준 및 규범에 따라 부합성 검측을 실시하도록 소프트웨어제품 검측기관을 지도 및 감독. (5) 전국적으로 통일된 소프트웨어등록번호 체계를 제정하고 소프트웨어제품 등록증서를 제작. (6) 소프트웨어제품의 등록 공고를 발표.

5) 등기의 효력

소프트웨어 상품은 등기와 등기비치 제도를 실행함.

동 방법의 규정에 부합하고 등기와 등록을 거친 국산 소프트웨어 상품은 “산업정책”이 규정한 관련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음. 수입 소프트웨어 중 중국 경내에서 현지화 개발 생산한 제품은, 그 중국 경내에서 개발한 부분은 저작권자와 기존 개발단위가 중국 경내에서 개발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아울러 동 방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 등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 등기를 거친 후에야 “산업정책”에서 규정한 관련 장려 장책을 적용할 수 있음.

6) 소프트웨어 상품의 등기신청절차 및 제출자료

국산 소프트웨어 상품의 등기와 등기비치는 반드시 해당 소프트웨어 상품의 개발, 생산 단위에서 신청해야 하며, 동 방법 제8조에 열거된 자료를 제출해야 함.

수입 소프트웨어제품을 등록 등기 수속을 밟을 시에는 수입단위가 동 방법 제10조에 열거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7) 소프트웨어 상품에 대한 심사 및 등기비치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 배정시 소프트웨어제품 등록기관은 동 방법 제8조, 제10조 열거한 신청서류를 심사함. 심사를 거쳐 신청서류가 완비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계획단독 배정시 소프트웨어산업 주관부서에 송부하여 공업 · 정보화부에 등록해야 함. 공업 · 정보화부는 지정된 매체에 등록 신청 소프트웨어제품을 공시해야 하며, 7일 근무일의 공시를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계획단독 배정시 소프트웨어산업 주관부서에서 소프트웨어제품 등록번호와 소프트웨어제품 등록증서를 발급함.

8) 등록의 유효기간

등록된 소프트웨어제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을 신청할 수 있음.

9) 상품에 대한 권리자의 허가

소프트웨어 상품 생산 업체에서 생산하는 소프트웨어 상품은 동 업체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저작권자 또는 기타 권리자의 허가를 거쳐 생산한 것이어야 함.

10) 소프트웨어 상품에 표기되어야 할 내용

사용자에게 제공될 소프트웨어 상품은 반드시 그 외부 포장에 해당 소프트웨어의 이름, 판본 번호, 소프트웨어 저작권자, 소프트웨어 상품 등기번호, 소프트웨어 생산 기관(또는 수입 기관) 및 기관 주소, 생산 일자가 표기되어야 하고, 반드시 중문 설명서, 사용 책자 등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상품, 설명서 또는 서면 형식의 기타 문서에 기술 서비스 기관과 내용, 방식을 표기하여야 함.

11) 직접 판매

소프트웨어 상품의 개발자와 생산자는 해당 소프트웨어 상품에 대해 직접 경영 판매할 수 있음.

12) 대리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대리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상품을 판매할 경우 대리인측(소프트웨어 상품 판매 기관)과 피대리인측(소프트웨어 상품 개발자 또는 생산자) 간, 총 대리상과 지역 대리상 간에는 반드시 대리 계약에 관한 서면 계약이 있어야 함. 대리 계약서에는 반드시 대리 권한, 지역, 기한, 기술 서비스 및 공업 · 정보화부가 규정한 기타 필요 내용을 정확히 규정하여야 함.

대리상은 그 경영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대리자격증서를 부착하고 내용에는 반드시 대리권한, 대리 기한, 지역, 대리 등급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대외 홍보, 광고 중에 상기 내용을 사실에 따라 발표하여야 함.

13) 허가증무역의 형식으로 소프트웨어 상품을 경영하는 경우

허가증무역의 형식으로 소프트웨어 상품을 경영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상품 경영업체는 생산업체와 서면허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소프트웨어 경영업체가 소프트웨어 상품 판매 시 사용자에게 허가증 협의 내용을 숙지하도록 고지하고 사용자에게 동의 여부를 물음.

14) 소프트웨어 상품 경영단위가 상품을 판매할 경우

소프트웨어 상품 경영단위가 소프트웨어 상품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동 방법 제21조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서면 또는 문서의 형식으로 사용자에게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서비스 내용, 서비스 방법과 비용 등을 알려주어야 함. 만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 관련 기술적 서비스는 해당 소프트웨어 상품 판매기관이 제공하는 것으로 봄. 만약 반드시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비용과 서비스비용의 금액을 명기하지 않은 경우 관련 기술 서비스의 비용은 소프트웨어 상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함.

15) 테스트버전

소프트웨어제품의 테스트버전은 명확히 표시하고 무료로 제공해야 하며, 영리성 판매는 허용하지 않음.

16) 감독기관

공업 · 정보화부는 국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전국 소프트웨어 상품의 개발, 생산, 경영, 수출입 등의 활동을 감독 검사함.

각급 소프트웨어산업 주관 부서는 해당 지역 주관 부서와 함께 동 행정 지역 내의 소프트웨어 상품의 개발, 생산, 경영, 수출입 등의 활동을 감독 · 검사함.

17) 동 방법 등을 위반한 상품에 대한 제재

만약 이미 등기된 소프트웨어가 동 방법의 제4조에 열거한 내용을 포함하거나 또는 허위 내용의 등기 자료를 제출하여 소프트웨어 상품 등기를 발급 받은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 배정시 소프트웨어산업 주관부서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등기번호와 등기증서를 취소함. 세금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은 경우 환급하도록 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 배정시 소프트웨어산업 주관부서는 이를 공업 · 정보화부에 보고함. 공업 · 정보화부는 이에 경고를 주고 아울러 공개함.

해당 소프트웨어 상품이 중국 기술 표준, 규범과 동 방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또는 사용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표기, 약속된 기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 배정시 소프트웨어산업 주관부서는 공업 · 정보화부에 보고해야 함. 공업 · 정보화부는 관련부서와 함께 법에 따라 당해 소프트웨어제품의 생산단위를 처벌함.

4. 기업기술혁신

A. 중국소프트웨어기술혁신능력을제고하는것에관한시행의견 (關于進一步提高我國軟件企業技術創新能力的實施意見)

(1) 제정목적

『소프트웨어산업과집적회로산업의발전을장려하는것에관한약간의정책』과 『소프트웨어산업의진흥에관한행동개요』를 시행하고, 소프트웨어 핵심기술을 장악하며, 소프트웨어기술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중국 소프트웨어기업의 기술혁신능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며, 중국 자주의 소프트웨어 산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동 의견을 제정함.

(2) 시행일시

동 통지는 2004년 4월 20일 공포, 시행함.

(3) 주관부서

과학기술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정보산업부, 국가표준위원회.

(4) 주요내용

1) 주요조치

국가하이테크연구발전계획(863계획)의 경비는 소프트웨어개발 플랫폼, 미들웨어 및 그 핵심기술, 내장식 운영시스템, 부품저장고, 소프트웨어품질공정 플랫폼, 산업응용 미들웨어 플랫폼 및 해결방안과 시스템원형 형태로 나타난 핵심지주기술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함. 소프트웨어기업을 중심으로 863계획 정보분야의 프로젝트와 소프트웨어 전문 중점프로젝트를 신청하는 것을 고무함. 과학기술형 중, 소기업의 혁신기금은 점차 소프트웨어기업의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 비중을 기금총액의 20%에까지 이르게 함.

표준제정, 품질담보체계와 중개기구의 건설을 강화함.

소프트웨어산업기지 건설을 계속 강화함. 국가는 중점적으로 일부 소프트웨어 전문 부화기를 지원하며, 새로운 소프트웨어기업을 양성함.

조건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제품의 연구제작 및 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관리비용으로 산입하는 것을 허가함. 이윤 창출 소프트웨어기업이 그해 기술개발에 투입한 비용이 실제로 10% 이상 증가했을 경우, 동 기업의 그해 실제 발생한 금액은 규정에 따라 열거하는 외에, 연말 주관 세무기관의 허가를 거쳐, 실제 발생 액수의 50%에 상당하는 한도에서 그해 납세 소득액을 공제함. 만약 세수 공제액이 그해 납입해야 하는 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은 더 공제하지 않음. 기업이 소프트웨어기술양도, 기술개발업무 및 이와 관련되는 기술자문과 기술서비스를 통하여 취득한 수입은 영업세를 면제함.

다국적회사가 중국에서 국내의 기업, 대학교, 과학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연구개발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장려함.

정부가 정책과 자금 등 자원배치에 있어서의 우세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기술혁신 핵심

기업을 중점적으로 양성 및 지원하고, 일부 새로운 국가소프트웨어프로젝트센터를 설립하며,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기술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함.

5. 수출촉진

A. 소프트웨어수출관리와통계방법(軟件出口管理和統計辦法)

(1) 제정목적

소프트웨어 수출에 관한 국가의 각종 장려정책을 실현하고, 소프트웨어 수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대외무역법』과 기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동 방법을 제정함.

(2) 시행일시

동 방법은 2001년 10월 25일 공포, 시행함.

(3) 주관부서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과학기술부, 정보산업부, 국가통계국, 국가외환관리국.

(4) 주요내용

1) 적용범위

동 방법은『대외무역법』을 근거로 대외 경제 무역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법인과 기타 조직이 통관 또는 인터넷 전송방식으로 중국 경외로 소프트웨어 제품 수출, 소프트웨어 기술 양도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 적용됨. 관련 서비스 제공은 아래의 각 호를 포함함. (1) 소프트웨어 기술의 양도 또는 허가. (2)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보 시스템 또는 설비에 내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 IC, 응용서비스 등 기술서비스를 제공할 시 제공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3) 정보 데이터와 관련된 서비스거래. 즉, 데이터의 개발, 저장과 인터넷 연결 시간 순서, 데이터 처리, 제표 및 시간(시 단위)별로 계산하는 데이터 처리 서비스, 관련 설비에 대한 대인 연속 관리, 하드 자문, 소프트웨어 조립, 고객의 요구에 따라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설계, 개발 및 편제, 컴퓨터와

주변기기의 수리 및 기타 소프트웨어 가공 서비스를 포함함. (4) 설비와 함께 수출하는 등 기타 형식의 소프트웨어 수출.

2) 등기의무

산업 주관부서의 인정을 거치고 등록자금이 인민폐 100만 위안에 달한 소프트웨어 기업은 자가 수출 경영자격을 향유하고 속지원칙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열시 대외무역경제합작청(위, 국)에서 등기를 하여야 함.

정부 부서간의 업무협조를 강화하고, 소프트웨어 수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과학기술부, 정보산업부, 국가통계국, 국가외환 관리국과 외환지정은행은 연합하여 “소프트웨어 수출계약서 등기관리센터”를 설립함.

소프트웨어 수출 계약서가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한 후, 소프트웨어 수출 기업은 “소프트웨어 수출계약서 등기관리센터”에서 소프트웨어 수출 계약서를 온라인 등기하여야 함. 또한 속지원칙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 소프트웨어 수출계약서 정본을 가지고 당해 지역의 대외무역경제합작청(위, 국)에서 “소프트웨어 수출계약서 등기증서”를 수령함. 소프트웨어 수출 기업은 소프트웨어 수출 계약서에 소프트웨어 수출방식 즉 “세관통관방식” 또는 “인터넷 전송방식”을 명확히 하여야 함.

각 지방 대외무역경제합작청(위, 국)은 해당 지역의 소프트웨어 수출 관리업무를 책임짐. 소프트웨어 수출 기업이 제출한 소프트웨어 수출계약서 정본을 근거로 그 소프트웨어 수출계약서에 대한 인터넷 등기의 진실성을 검사함. 확인을 거친 후 기업에 “소프트웨어 수출계약서 등기증서”를 발급함. 중앙에서 관리하는 기업에 대하여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속지원칙에 따라 각 지역 대외무역경제합작청(위, 국)에 그 소프트웨어 수출계약서에 대한 인터넷 등기 진실성 검사를 위탁하고 “소프트웨어 수출계약서 등기증서”를 발급함.

3) “해관통관방식” 의 소프트웨어 수출 관리

물질매체가 있고 통관방식으로 수출하는 소프트웨어 수출 기업은 해관에서 소프트웨어 수출 통관 수속을 할 경우 “소프트웨어 수출계약서 등기증서”, 효력이 발생한 “소프트웨어 수출계약서”(정본)와 외환관리국에서 발급한 “수출수금심의단”을 제시하여야 함. 해관은 해관 법률, 법규, 규정 등에 따라 상응한 통관수속을 함.

소프트웨어 수출 기업이 수출하고 외환을 수금한 후 외환지정은행은 『수출수금심의관리

방법시행세칙』의 요구에 따라 기업에 “수출수금심의전용연”을 발부함.

소프트웨어 수출 기업은 “소프트웨어 수출계약서 등기증서”, “소프트웨어 수출계약서”(정본), “수출통관서”, “수출수금심의단”, “수출수금심의전용연”, INVOICE 등 증빙문건을 가지고 외환 관리국에 가서 수출 수금 심의 수속을 함. 외환 관리국은 “소프트웨어 수출계약서 등기관리센터”의 확인을 거친 후 수출수금 심의 수속을 하며 “수출수금심의단 환급전용연”을 발부함.

소프트웨어 수출 기업은 “소프트웨어 수출계약서 등기증서”, “소프트웨어 수출계약서”(정본), “수출통관서”, “수출수금심의단”, “수출수금심의전용연”과 부가가치세 영수증, 세급납부서 등 증빙문건을 가지고 세무국에 가서 수출 환급 수속을 함. 세무국은 “소프트웨어 수출계약서 등기관리 센터”의 확인을 거친 후 수출 환급 수속을 함.

4) “인터넷 전송방식” 의 소프트웨어 수출 관리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는 소프트웨어 수출은 소프트웨어 수출 기업이 외환을 수금한 후 “소프트웨어 수출계약서 등기증서”와 효력을 발생한 “소프트웨어 수출계약서”(정본)를 가지고 직접 외환지정은행에 가서 외환 수령 수속을 함.

은행은 “소프트웨어 수출계약서 등기관리센터”에서 “소프트웨어 수출계약서”의 등기 유효성, 소프트웨어 수출방식 등에 대한 확인이 끝난 후 외환결재 또는 입금수속을 하고 “소프트웨어 수출 외환 기수령 증명”을 발부함.

5) 통계범위

소프트웨어 수출 통계는 소프트웨어 기업 자가 수출 경영권 처리 통계, 소프트웨어 수출계약서 통계, 해관통관 방식을 취한 소프트웨어 수출 통계, 인터넷 전송방식을 취한 소프트웨어 수출 통계, 소프트웨어 수출 외환수령 통계를 포함함.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정보산업부, 해관총서, 국가외환관리국은 각자 업무범위 내의 통계를 책임지고, 통계 데이터를 대외무역경제합작부(과학기술사)에 보고하여 통합시킴.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국가통계국과 회동하여 상기 통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총괄, 분석하고 정기적으로 대외에 공고함.

6) 권리와 의무

“소프트웨어 수출계약서 등기관리센터"에 등기하고 “소프트웨어 수출계약서 등기증서”를 수령한 기업은 국가의 소프트웨어 수출 정책을 향유함.

소프트웨어 수출계약서를 위조하고, 허위로 보고하고, 가짜를 만들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소프트웨어 수출 기업에 대하여는 조사를 거쳐 사실을 확인하면 경고, 그 수출 경영자격의 잠정적인 중지, 말소 처분을 함.

B. 소프트웨어수출에관한통지(關于軟件出口有關問題的通知)

(1) 제정목적

국무원의 『소프트웨어산업과집적회로산업의발전을장려하는것에관한약간의정책』(이하 “산업정책”으로 약칭)을 시행하고, 중국 기업들로 하여금 국제, 국내의 두 가지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도록 하며, 두 개의 시장을 개척하고, 소프트웨어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함.

(2) 시행일시

동 통지는 2001년 1월 4일 공포, 시행함.

(3) 주관부서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정보산업부,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 국가외환관리국, 국가통계국.

(4) 주요내용

1) 소프트웨어수출의 정의

“소프트웨어수출”이란 『대외무역법』에 따라 대외무역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법인과 기타 조직이 통관 또는 온라인 전송 방식으로 국외에 소프트웨어제품을 수출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키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함. (1) 소프트웨어기술의 양도 또는 허가. (2)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또는 설비 중 내장된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정보시스템 집성, 응용 서비스 등 기술서비스를 제공할 때 함께 제공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3) 정보데이터와 관련된 서비스거래. (4) 설비와 함께 수출하는 등 기타 형태의

소프트웨어 수출.

2) 소프트웨어수출경영 자격요건

등록자본금이 인민폐 100만 위안 이상인 소프트웨어기업은 소프트웨어의 수출을 직접 경영할 수 있음.

3) 소프트웨어수출 특혜 정책

소프트웨어수출기업은 대외무역경제 주관부서에 중소기업과 국제시장개척자금을 신청함으로써, 소프트웨어수출과 국제시장개척을 확대할 수 있음.

GB/T19000-ISO9000인증과 CMM인증을 취득한 소프트웨어수출업체는 대외무역경제 주관부서에 인증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수출은 중국수출입은행의 업무범위에 귀속되며, 특혜 이자율의 신용대출지원을 받음. 동시에 국가수출신용보험기관은 수출신용보험을 제공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수출기업은 소프트웨어제품을 수출한 후, 수출 세금반환비율이 세금징수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세무총국의 허가를 거쳐 세금징수비율에 따라 환급을 해줄 수 있음.

소프트웨어수출기업의 경상항목 외환수입은 관련 서류에 의해 직접 은행에서 외화결제 및 기장이 가능함. 수출 외환회수 심사를 거쳐 영예기업으로 확정된 국내투자 소프트웨어 직접 경영기업은 외환결제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그 한도는 당해 기업이 전년 수출총액의 15%임.

4) 소프트웨어수출 관리 정책

소프트웨어수출기업은 소프트웨어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소프트웨어수출계약 온라인등기관리센터에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국가가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원구 내에서 국외 이용자의 소프트웨어설계와 서비스를 수주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해관은 이용자 환경을 모방한 수입설비에 대해 잠시 수입하는 화물로 취급함.

중국기전제품수출입상회와 중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소프트웨어수출의 경영질서를 유지함.

국가의 규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는 소프트웨어수출기업은 국가의 소프트웨어산업발전을

촉진하는 관련 융자, 세수, 산업정책, 수출입 등 특혜정책을 향유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수출업무를 허위로 보고하고, 온라인 등기를 하지 않으며, 불량행위기록이 있거나 소프트웨어협회의 연도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소프트웨어수출기업의 경우, 관련 특혜정책을 향유하지 못함.

네트워크를 통하여 직접 전송, 수출하는 소프트웨어의 출입국 관리방법은 별도로 규정함.

C. 소프트웨어및관련정보서비스수출에관한지도의견
(關于發展軟件及相關信息服務出口的指導意見)

(1) 제정목적

『국민경제와사회발전의제11차5년계획개요』에서 제출한 2010년에 서비스무역 총액이 4000억 달러에 이르는 발전목표를 실현하고, "무역대국"에서 "무역강국"으로의 발전을 이룩하며, 현재 새로운 세계적 산업이전과 구조조정의 기회를 맞아, 소프트웨어 및 관련 정보서비스의 수출을 적극 확대하며, 대외무역의 성장모델을 이전시키고, 중국 신흥 서비스무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

(2) 시행일시

동 통지는 2006년 9월 19일 공포, 시행함.

(3) 주관부서

상무부, 정보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 통계국, 외환국.

(4) 주요내용

1) 수출촉진과 서비스체계의 구축

조건을 구비한 지방에서 산업, 시장과 인재집중 우세를 발휘하여, 소프트웨어 및 관련 정보서비스의 수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수출 다양화를 구축하고, 지역분포와 산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고무함.

2) 세수지원정책

소프트웨어와 관련 정보서비스의 수출에 필수적인 잠정 수입화물에 대해 해관의 관련규정에 따라 출국기간을 연정하여 줄 수 있음.

3) 재정금융지원정책

여러 관련부서는 기존 자금도경을 통하여, 계속 국가급 소프트웨어산업기지와 소프트웨어수출기지에 대한 자금투입을 강화하며, 기지의 발전상황에 근거하여 매년 증가시킴.

자금지원과 지도를 강화하고, 중앙 대외무역발전기금과 국가하이테크연구발전계획기금을 이용하며, 소프트웨어기업의 혁신을 진행하고 국제기준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을 수행하도록 고무하고, 기업이 국제시장을 개척하는 것과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국가의 정책은행이 소프트웨어와 정보서비스수출항목에 대해 중, 단기 유동자금대출을 제공하는 것을 고무하며, 소프트웨어기업의 특점에 따라 지원을 제공함. 정책신용보험회사가 기업에 무역융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무함.

소프트웨어 및 관련 정보서비스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소프트웨어 및 관련 정보서비스기업이 실제 경영수요에 따라 외환을 보류하는 것을 허가함.

4) 소프트웨어수출의 통계분석

소프트웨어수출에 대한 통계분석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 수출계약의 등기시스템을 완성화하며, 소프트웨어 수출에 대해 효과적인 관리를 수행함. 통계수치는 각지 및 관련 기업이 각종 소프트웨어 수출관련 특혜정책을 향유하는 근거로 활용됨.

소프트웨어 및 관련 정보서비스의 수출통계기준을 자세히 확정하고, 내장식 소프트웨어의 수출과 인터넷전송방식으로 진행되는 소프트웨어수출의 통계방법을 연구하며, 부서 간 수출 데이터의 분석 및 교류제도를 구축하여, 관리와 결정에 대해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제공함.

5) 소프트웨어산업의 인재양성

소프트웨어인재수요를 목표로, 소프트웨어대학과 소프트웨어직업기술대학을 핵심으로 하는 실용적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프트웨어 직업교육체계 건설을 촉진하며, 업무요

원에 대한 훈련과 양성을 강화함.

6) 지적재산권 보호

각 부서는 함께 소프트웨어 및 관련 정보서비스기업의 신용체제건설을 추진하고, 기업의 신용도를 높이며, 인원이동으로 인한 지적재산권 누출을 감소하여야 함.

계속하여 소프트웨어 정품사용을 추진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수출기지에 국외지적재산권 정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프트웨어기업이 해외에서의 특허, 저작권, 상표 등 지적재산권을 신청하도록 지원 및 지도하며, 신청과 유지비용, 대리비용 등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함.

6. 세수

A. 소프트웨어산업과집적회로산업발전에있어세수정책과관련된문제에대한통지 (關于考慮軟件産業和集成電路産業發展有關稅收政策問題的通知)

(1) 제정목적

『소프트웨어산업과집적회로산업의발전을장려하는것에관한약간의정책』을 이행하고, 중국 소프트웨어산업과 집적회로산업의 발전을 추진하며, 정보산업의 창조능력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2) 시행일시

2000년 9월 22일 시행.

(3) 주관부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

(4) 주요내용

1) 세수정책

2000년 6월 24일부터 2010년 말까지,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가 자체 개발, 생산한 소프트웨어제품을 판매한 경우, 17%의 법정세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후, 그 부가가치세의 실제 세금징수액이 3%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즉시 환급하여 줌. 환급한 세금은 기업이 소프트웨어제품의 개발, 연구와 확대재생산에 사용하며, 기업소득세 징수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음.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가 수입한 소프트웨어를 전환 등 현지화 개조를 거쳐 외부에 판매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는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제품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술한 세수우대정책을 향유할 수 있음. 여기에서 "현지화 개조"란 수입소프트웨어에 대해 재 설계, 개선, 전환 등을 수행하는 것을 가리키며, 수입소프트웨어에 대해 한자식 처리 후 재 판매하는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음. 기업이 자체 수출 또는 수출기업에 위탁, 판매하여 수출하는 소프트웨어제품은 상술한 세수특혜를 향유하지 않음.

중국 국내에 새로 설립한 소프트웨어생산기업은 인정을 거친 후, 이익을 창출하는 연도로부터 시작하여, 첫 두 해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며, 세 번째 해로부터 다섯 번째 해까지는 기업소득세를 절반 감면함.

국가계획분포내의 중점소프트웨어생산기업의 경우, 그해 면세혜택을 향유하지 못하였다면 10%로 세율을 조정하여 기업소득세를 징수함.

소프트웨어생산기업의 노임과 훈련양성비용은 실제 발생한 액수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소득액에서 공제하여 줌.

인정을 거친 소프트웨어생산기업이 필요한 자체사용설비를 수입한 경우, 계약에 따라 설비와 함께 수입한 기술(소프트웨어 포함) 및 기타 부품 등은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투자총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관세와 수입절차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기업 또는 사업단위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함에 있어, 구입원가가 고정자산기준에 이르거나 또는 무형자산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고정자산 또는 무형자산에 의해 계산함.

2) 세무관리

소프트웨어기업의 인정기준은 정보산업부에서 교육부, 과학기술부, 국가세무총국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함. 도시급 이상의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또는 관련 협회의 예비선정을 거쳐, 동급 정보산업 주관부서에 보고하며, 동급 세무부서의 허가를 거쳐, 공포하는 명단에 포함된 후, 세수특혜정책을 향유함. 국가계획분포내의 중점소프트웨어기업 명단은 국가계획위원회, 정보산업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국가세무총국에서 함께 확정함.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가 컴퓨터소프트웨어, 집적회로를 판매하는 동시에 기타 화물을

판매하여, 그 컴퓨터소프트웨어, 집적회로에 대해 단독 계산이 어려운 경우, 컴퓨터소프트웨어, 집적회로를 개발, 생산하는데 필요한 실제원가 또는 판매수입 비례에 따라 그 액수를 확정함.

소프트웨어기업과 집적회로생산은 연도심사제도를 수행하며, 연도심사에 합격되지 못한 기업에 대해 그 소프트웨어기업 또는 집적회로 생산기업자격을 취소하며, 더는 관련 세수특혜정책을 향유하지 못함.

7. 지적재산권보호

A.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計算機軟件保護條例)

(1) 제정목적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컴퓨터소프트웨어의 개발, 전파와 사용 중 발생하는 이익관계를 조정하고 컴퓨터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응용을 격려하고 소프트웨어 산업과 국민경제정보화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저작권법』에 근거하여 동 조례를 제정함.

(2) 시행일시

동 조례는 2001년 12월 20일 공포,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1991년 6월 4일 국무원에서 공포한『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는 동시에 폐지함.

(3) 주관부서

국무원 저작권 행정관리부서

(4) 용어 정의

동 조례에서 지칭하는 "컴퓨터소프트웨어"란(이하 소프트웨어)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관련 문서를 의미함. 컴퓨터소프트웨어, 서류, 소프트웨어개발자, 소프트웨어 저작권자 등 용어의 함의는 동 조례 제3조에 의함.

⑸ 주요내용

1) 보호 받는 소프트웨어

동 조례의 보호를 받은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개발자가 독립적으로 개발하여야 하며 동시에 어떠한 유형물체에 고정된 것을 의미함.

동 조례에 따른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하여 사용된 사상, 처리과정, 조작방법 또는 수학개념에는 확대 적용되지 않음.

2) 동 조례에 의해 보호 받는 자

중국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그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발표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동 조례에 따른 저작권을 향유함.

외국인, 무국적인의 소프트웨어가 중국 내에서 우선적으로 발행하였을 경우 동 조례에 따른 저작권을 향유함.

외국인, 무국적인의 소프트웨어가 개발자의 소속국 또는 일상 거주지국과 중국사이에 체결한 협약 또는 중국이 참가한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저작권을 향유하면 동 조례의 보호를 받음.

3) 등기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국무원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인정한 소프트웨어 등기기구에 등기 할 수 있음.

4)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권리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발표권, 서명권, 수정권, 복제권, 발행권, 임대권,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번역권, 기타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향유하여야 할 기타 권리 및 타인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행사하도록 허가할 권리, 소프트웨어저작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권리, 보수를 받을 권리 등 동 조례 제8조의 각 권리를 향유함.

5) 저작권의 귀속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동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자에게 귀속됨. 반대의 증명이 없을 경우 소프트웨어에 서명한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개발자임.

6) 합작하여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귀속

둘 이상의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합작하여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의 귀속 문제는 합작개발자가 체결한 서면계약에 의하여 약정됨.

서면계약이 없거나 또는 계약에 명확한 약정을 하지 않을 경우 합작하여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발자는 각자 개발한 부분에 대하여 단독으로 저작권을 향유할 수 있음. 하지만, 저작권을 행사할 경우 합작하여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전부에 대하여 확장할 수 없음.

합작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그 저작권은 각 합작개발자가 공동으로 향유, 협상을 하여 행사하며 협상이 합의를 보지 못하고 동시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여하한 일방도 타방이 양도권 이외의 기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저지할 수 없으며 단, 수익은 합리적으로 기타 합작개발자에게 배분하여야 함.

7) 타인의 위탁을 받아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귀속

타인의 위탁을 받아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위탁인과 수탁인이 체결한 서면계약의 약정에 따르며 서면계약이 없거나 또는 계약에 명확한 약정이 없을 경우 그 저작권은 수탁인이 향유함.

8) 국가기관이 하달한 임무에 따라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귀속

국가기관이 하달한 임무에 따라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의 귀속과 행사는 프로젝트 임무서 또는 계약의 규정을 따름. 프로젝트 임무서 또는 계약에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임무를 접수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서 향유함.

9) 자연인이 법인 등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귀속

자연인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서 재직기간에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동 조례 제13조에 열거한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동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동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서 향유하며 동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자연인에 대하여 장려를 할 수 있음.

10) 저작권의 보호기간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소프트웨어가 개발완성 된 일부터 발생함. 자연인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기간은 자연인이 사망한 후 50년이며, 자연인이 사망한 후 제50년이 되는 12월 31일까지 임. 소프트웨어가 합작하여 개발되었을 경우 나중에 사망한 자연인이 사망 후 제50년이 되는 12월 31일까지임.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50년이며 소프트웨어가 처음으로 발표된 때부터 제50년이 되는 12월 31일까지임. 단, 소프트웨어가 개발완성 후 50년이 될 때까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동 조례는 더는 보호를 하지 않음.

11) 저작권의 상속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자연인에게 귀속될 경우 동 자연인이 사망한 후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기간 내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상속인은『승계법』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동 조례 제8조에 규정한 서명권을 제외한 기타 권리를 상속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귀속될 경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변경, 종료 후 그 저작권은 동 조례 규정에 따른 보호기간 내 동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향유하며 동 권리의무를 승계할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없을 경우 국가가 향유함.

12) 합법적 복제품 소유자의 권리

소프트웨어의 합법적 복제품 소유자는 동 조례 제16조에 열거된 권리를 향유함.

13) 허가사용계약의 체결

타인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행사하도록 허가할 경우 허가사용 계약을 작성하여야 함. 사용허가계약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허가한 권리를 명확히 하지 않았을 경우 피허가인은 행사하지 못함.

14) 소프트웨어 저작권 전문사용을 허가할 경우

소프트웨어 저작권 전문사용을 타인에게 허가할 경우 당사자는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또는 계약에 전문허가 약정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허가된 사용권리는 전문사용권리가 아닌 것으로 간주함.

15) 저작권의 양도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양도할 경우 당사자는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16) 외국인에게 사용허가 또는 양도할 경우

중국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외국인에게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사용허가 또는 양도할 경우『기술수출입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17)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저작권법』 또는 동 조례에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동 조례 제23조에 열거된 권리침해행위가 있을 경우 사정에 근거하여 침해정지, 영향제거, 사죄, 손실배상 등 민사책임을 짐.

18)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및 형사책임

『저작권법』, 동 조례 또는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동 조례 제24조에 열거된 권리침해행위가 있을 경우 상황에 근거하여 침해정지, 영향제거, 사죄, 손실배상 등 민사책임을 지고, 동시에 사회공공이익을 침해하였을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에서 권리침해행위 정지를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권리 침해 복제품을 몰수, 소각하며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사정이 심각한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에서 권리침해 복제품을 제작하는데 사용한 재료, 도구, 시설 등을 몰수할 수 있으며 형사법률을 위반하였을 경우 저작권을 침범한 죄, 권리를 침해한 복제품 판매죄 등에 관한 형법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함.

19) 권리침해행위의 정지 및 재산보전조치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타인이 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실시 또는 실시하려고 하는 증거가 있을 경우 즉시 제지하지 않으면 합법적 권익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발생할 경우『저작권법』 제4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소송을 하기 전 인민법원에 관련 행위를 정지하고 재산을 보전할 것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20) 증거보전신청

권리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증거가 소멸가능하거나 또는 이후에 취득하기 어려울 경우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저작권법』제5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전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음.

21) 저작권 침해 분쟁의 조정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분쟁은 조정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 저작권 계약 분쟁은 계약 중의 중재조항 또는 사후 서면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음. 당사자가 계약에 중재조항을 제정하지 않았거나 사후에 서면으로 중재협의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B.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등기방법(計算機軟件著作權登記辦法)

(1) 제정목적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제정함.

(2) 시행일시

2002년 2월 20일 공포 시행.

(3) 적용범위

소프트웨어저작권의 등록, 소프트웨어 저작권 전문소유 허가 계약, 양도계약 등록에 대해서 적용함.

신청시 일방 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에 적용함.

(4) 주요내용

1) 담당기관

국가저작권국은 전국 소프트웨어 저작권등기와 동 방법의 개정과 해석을 담당하고, 중국

저작권보호센터는 소프트웨어 등록기관이며, 중국저작권보호센터는 지방의 등록사무기구를 설립할 수 있음.

2) 등록 가능한 소프트웨어

독자 개발한 것이나, 원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 기능 또는 성능에서 중대한 발전이 있는 소프트웨어.

3) 등록신청의 당사자

합작개발한 경우, 전체저작권자의 합의로 대표가 등기하도록 하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다른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각자 등록가능함.

4) 등록시 제출서류

소프트웨어 저작권등록신청서, 소프트웨어 감별서류(제10조, 제12조 참고)
기타 서류(제11조 참고).

5) 기타의 등록절차

신청자는 등록비준 전에 신청을 취소할 수 있음.
신청서는 중국저작권보호센터의 서식을 사용하여 신청자가 날인(서명)하며, 방문신청, 등기우편신청을 할 수 있음.

6) 등록신청의 심사와 비준

서류를 접수한 일을 접수일로 함.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필요한 경우, 30일 내에 보정을 요구할 수 있음.
등록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확정판결이 있거나, 저작권행정관리부서의 행정처벌결정이 있는 경우, 등록을 불허 또는 취소함.

7) 등록의 공고

저작권의 등록, 저작권계약의 등록사항. 등록의 취소, 기타 사항에 대하여 공고 열람할 수 있음.

8) 비용의 납부

소프트웨어 등록신청 또는 기타의 신청의 경우, 일정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함(제28조 참고). 구체적인 기준은 국가저작권국과 국무원의 가격주관부서가 규정하고 공포한 비용수급 표준 참고.

9) 기간의 준수

동 방법에서의 기간 계산은 초일불산입하며, 말일이 공휴일일 경우, 공휴일이후 첫 영업일을 만기로 함.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소인일을 제출일로 하고, 불명확할 경우, 증명을 거치거나, 또는 도시, 자치구 소재지 도시 및 직할시의 경우 15일내, 기타 지역의 경우 21일내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추정.

8. 인재양성

A. 소프트웨어인재양성과대오건설에관한일부의견 (關于加快軟件人才培養和隊伍建設的若干意見)

(1) 제정목적

인재강국전략을 시행하고, 『소프트웨어산업과집적회로산업의발전을장려하는것에관한약간의정책』과 『소프트웨어산업의진흥에관한행동개요』의 요구에 따라 동 의견을 제정함.

(2) 시행일시

동 의견은 2003년 11월 21일 공포, 시행함.

(3) 주관부서

교육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인사부, 노동사회보장부, 정보산업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국가외국전문가국.

(4) 주요내용

1) 주요조치

기능이 완비한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시스템을 구축함.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인재전략을 시행함. 소프트웨어 전문 기술인원과 소프트웨어 기능요원의 직업자격증서제도를 구축함.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의 산학연 결부를 추진함. 전 사회적으로 소프트웨어 인재양성과 대오건설을 고무함.

2) 외부 정책환경의 마련

여러 측면에서 자금을 조성하여, 소프트웨어 인재건설을 강화함. 국가에서 제정한 교육 관련 세수 특혜정책을 시행함. 인재유치정책을 추진함. 소프트웨어 인재양성과 대오건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함.

9. 산업통계

A. 소프트웨어산업통계관리방법(시행)(軟件業統計管理辦法(試行))

(1) 제정목적

중국 소프트웨어산업 소프트웨어제품 개발과 서비스의 실제 상황을 정확하고 적시에 반영하기 위하여『통계법』및 그 시행세칙과 국무원 판공청『소프트웨어산업진흥행동개요』의 정신에 따라 동 방법을 제정함.

(2) 시행일시

동 방법은 2004년 6월 11일 공포, 시행함.

(3) 주관부서

국가통계국, 정보산업부,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외환관리국.

⑷ 주요내용

1) 적용범위

동 규정은 소프트웨어산업으로 등기 등록한 기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 · 제작활동의 대외 경영을 주로 하는 소프트웨어산업 활동기관에 적용됨.

소프트웨어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법인기관을 가리키고 동시에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함. (1) 법에 따라 설립되고 자체 명칭, 조직기구와 소프트웨어 개발과 서비스에 종사하는 장소가 있어야 하고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함. (2) 독립적으로 자산을 소유하고 사용하며(또는 권한을 부여받아 사용), 부채를 감당하고 기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어야 함. (3) 회계채산을 독립적으로 하고 대차 대조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산업 활동기관은 반드시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함. (1) 한 개 장소에 위치하고 소프트웨어 개발과 서비스에 종사하거나 또는 주로 동 활동에 종사하고, (2) 상대로 독립적으로 생산, 경영 또는 업무활동을 조직하며, (3) 수입과 지출 등 계산서류를 주관할 수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산업 경영활동은 컴퓨터시스템서비스, 공공 소프트웨어서비스(기초 소프트웨어서비스와 응용 소프트웨어서비스)와 기타 소프트웨어서비스를 포함함. 기초 소프트웨어서비스는 일반 컴퓨터고객에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설계, 편제, 분석, 테스트 등 서비스를 가리킴.

2) 통계조사

국가는 소프트웨어 통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직, 구별하여 통계, 통일적으로 공포"의 관리방식을 실행함. 국가통계국과 정보산업부는 전국의 소프트웨어 통계업무를 조직하는 것을 책임지고 각각 관련 부서가 관련된 소프트웨어 통계업무를 진행하고 각 관련 부서가 통일적으로 협조한 후 대외로 관련 통계정보를 공포함.

소프트웨어 생산 활동의 통계는 정보산업부가 책임지고 소프트웨어 개발에 종사하는 기업과 산업 활동기관에 대하여 통계조사를 진행함. 중국 현재 통계업무의 실제 상황에 따라 통계범위를 임시로 연간 경영수입액이 50만 위안 및 이상의 소프트웨어기업, 소프트웨어산업 활동기관으로 정함. 일부 소프트웨어산업 활동기관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개발과 서비스

의 성과는 주로 동 법인기업(또는 기관)의 유효한 캐리어에서 동시 판매(예를 들면 수치 제어 선반, 대형 동력 전기제품, IT제품, 가전제품 등)로 나타나 단독 경영수입을 확정하기 어려운 산업 활동기관은 본 법인기업(또는 기관)이 동 산업 활동기관에 대한 경상 자금투입에 따라 계산하고 50만 위안에 도달하면 통계 계산기관(자금투입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인원의 임금, 장려금, 보조금,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의 원재료 등 방면의 투입 등을 포함)으로 함. 조사하는 주요 내용은 소프트웨어업의 기본상황, 인력상황, 재무상황, 소프트웨어제품 판매상황, 소프트웨어제품 수출 등을 포함함.

소프트웨어 수출통계는 해관총서가 책임짐. 해관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지원형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와 기타 소프트웨어(이미 컴퓨터에 설치한 소프트웨어를 포함)의 수출과 서비스형식으로 대외 수출되는 소프트웨어 수출 총액에 대하여 월별 통계를 진행함. 소프트웨어 수출 외환수입 상황의 통계는 국가외환관리국이 책임짐. 소프트웨어 개발기관의 과학기술활동 상황은 국가통계국이 책임짐. 국가통계국의 과학기술통계 회전계획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소프트웨어 개발기관의 과학기술활동 상황을 회전 조사하여 소프트웨어업의 R&D를 계산함. 조사범위는 모든 컴퓨터시스템서비스업, 소프트웨어산업을 포함함.

조사의 주요 통계지표: 종업원, 전문 기술인원, 공정 기술인원, 영업수입, 이윤총액 등을 포함한 기관의 기본상황, 공급, 중급 기술 직명인원, 연구와 발전인원을 포함한 과학기술활동, 기업자금, 금융기구 대출, 정부부서의 자금 등을 포함한 과학기술활동 경비조달상황, 내부 지출과 외부 지출로 나눈 과학기술활동 경비지출상황, 기초 연구, 응용 연구, 시험발전 등을 포함한 연구와 발전 경비지출, 과학기술항목상황, 소프트웨어 판매상황, 수출상황 등 방면의 지표를 포함한 과학기술활동성과.

3) 통계 서류의 제공

정보산업부,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외환관리국과 국가통계국은 정기적으로 통계서류를 상호 제공함.

제 4 절 SW산업 관련 중국 국내법제도의 문제점

1. 법체계의 혼란

중국의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국내법들을 살펴보면, 그 명칭 및 제정주체에 있어서, 상당히 혼란한 감을 준다.

우선, 명칭과 관련하여, 정책 · 조례 · 방법 · 의견 · 통지 등 다양한 형태를 띤다. 이 중, 국무원에서 제정한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와 『소프트웨어산업과집적회로산업의발전을장려하는것에관한약간의정책』은 중국의 법 체계 상 각각 국무원의 행정법규와 결정 · 명령에 속하며, 그 효력이 헌법과 법률 다음으로 된다. 반면에 나머지 방법 · 의견 · 통지 등은 부문규장에 속하며 그 법적효력이 상술한 국무원의 행정법규와 결정 · 명령에 비해 낮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주로 국무원에서 공포한 상술한 정책을 기반으로, 각 부처에서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각자 관련 규정을 제정한 것이다. 따라서, 무려 십 여개에 달하는 복잡한 법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또한 법령 간의 중복규정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제정부처와 관련하여, 국무원의 상술한 정책을 기초로, 공업정보화부 · 상무부 · 과학기술부 · 국가통계국 · 국가외환관리국 · 국가세무총국 · 교육부 · 재정부 · 국가판권국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인력자원사회보장부 · 국가표준위원회 · 외국전문가국 등 많은 부처에서 관련 부문규장의 제정에 참여한 상황이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상술한 부처들의 부문규장을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이 남는다. 더욱이 이들 법령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각 단계에 거쳐 제정, 공포되었으므로, 특히 부문규장의 경우, 그 제정부처가 이미 통 · 폐합 또는 변경된 경우도 많으며, 이를 적절히 파악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예를 들어, 국가계획위원회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로, 정보산업부는 공업 · 정보화부로,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상무부로, 인사부는 인력자원 · 사회보장부로 변경하였으며, 이 중에 각자 기능에도 일정한 변화가 생긴 것이다.

2. 내국민대우 관련

중국의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일부 내국민대우 위반의 소지가 있는 규정

들이 발견된다. 상술한 국무원의 정책 중 세수우대정책을 열거하고 있는 제3장의 제5조를 보면 다음의 규정이 있다.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가 그가 개발 생산한 자사 소프트웨어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2010년 전에는 17%의 법정세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실지 세부담에서 3%를 초과한 부분은 징수 즉시 환급하여 기업이 소프트웨어제품의 R&D 또는 재생산 확장에 사용하도록 한다”. 『소프트웨어산업과집적회로산업발전에있어세수정책과관련된문제에대한통지』의 1.1조에서도 동일한 규정을 반복하고 있다. 즉 이러한 경우, 상품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에 있어서 수입품에 불리한 대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프트웨어산업과집적회로산업발전에있어세수정책과관련된문제에대한통지』 1.1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가 수입한 소프트웨어를 전환 등 현지화 개조를 거쳐 외부에 판매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는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제품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술한 세수우대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지화 개조”란 수입소프트웨어에 대해 재 설계, 개선, 전환 등을 수행하는 것을 가리키며, 수입소프트웨어에 대해 한자식 처리 후 재판매하는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2009년 개정을 거친 『소프트웨어제품관리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 소프트웨어 중 중국 경내에서 현지화 개발 생산한 제품은, 그 중국 경내에서 개발한 부분은 저작권자와 기존 개발단위가 중국 경내에서 개발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아울러 동 방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 등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 등기를 거친 후에야 “산업정책”에서 규정한 관련 장려 장책을 적용할 수 있다”. 동 규정에서 보면, 국내제품과 수입제품에 대한 차별, 즉 내국민대우와 다른 내용이 더욱 명백히 느껴진다.

3. 수출보조금 관련

상술한 국무원의 정책 중, 제5장은 수출정책을 열거하고 있다. 그 중 제12조에 의하면, “소프트웨어수출을 중국 수출입은행의 업무범위에 넣는 동시에 우대이율의 대부금 지원을 받는다. 그리고 국가 수출신용보험기구는 수출신용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소프트웨어수출에관한통지』 1.5조에 의하여서도 반복되고 있다. 또한 동 정책의 제17조 및 『소프트웨어수출에관한통지』 1.4.2조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수출형 기업이 GB/T19000—ISO9000 시리즈 품질보증체계 인증과 CMM(능력 성숙도 모형) 인증을 취득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 인증비용은 중앙 대외무역 발전기금에서 적당히 지원한다”. 유사한 규정은 『소프트웨어및관련정보서비스수출에관한지도의견 11항에서도 발견된다. 즉 “국가의 정책은행

이 소프트웨어와 정보서비스수출항목에 대해 중, 단기 유동자금대출을 제공하는 것을 고무하며, 소프트웨어기업의 특점에 따라 지원을 제공한다. 정책신용보험회사가 기업에 무역융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무한다". 즉 이들 규정을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인증비용, 우대이율의 대부금, 강제적인 수출신용보험 등을 제공하는 바, 이는 보조금협정 상의 수출보조금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동 정책 제7조의 규정을 보면, "국가 계획내의 중점 소프트웨어기업에 대하여는 당 연도에 면세 우대를 향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10%의 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감소 징수한다". 여기에서 "국가계획분포내의 중점소프트웨어기업"의 정의에 대해 『국가계획분포내의중점소프트웨어기업인정관리방법(시행)』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계획분포내의 중점소프트웨어기업'이란 이미 소프트웨어기업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았고,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시키는 소프트웨어기업을 가리킨다. (1) 소프트웨어 연간 영업수입이 인민폐 1억 위안 이상인 경우. (2) 연간 수출액이 50만 달러 이상이며, 소프트웨어의 수출이 당해 기업의 연간영업수입 중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소프트웨어 수출액이 당해 기업 연간 영업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따라서, 상술한 규정을 분석하여 보면, 우선, 수출액의 다소에 따라서 "국가계획분포내의 중점소프트웨어기업"으로 분류하여 주는지 여부가 확정되며, 동 기업으로 분류되어야만 정책 제7조의 기업소득세 감면특혜를 향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하다면, 이러한 기업소득세의 감면특혜가 수출과 관련을 갖는 수출보조금으로 분류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다.

『소프트웨어및관련정보서비스수출에관한지도의견』 제20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수출기지에 국외지적재산권 정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프트웨어기업이 해외에서의 특허, 저작권, 상표 등 지적재산권을 신청하도록 지원 및 지도하며, 신청과 유지비용, 대리비용 등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은 소프트웨어수출기지의 기업들에 제공하는 것으로, 이 역시 수출과 관련한 지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소프트웨어수출에관한통지』 1.6조에 의하면 "소프트웨어수출기업은 소프트웨어제품을 수출한 후, 수출 세금반환비율이 세금징수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세무총국의 허가를 거쳐 세금징수비율에 따라 환급을 해줄 수 있다". 동 규정도 소프트웨어수출기업의 실제 수출 후, 세금을 반환하여 주는 제도로서, 역시 수출보조금으로 분류가 가능할 것이다.

4. 정부구매 관련

상술한 국무원의 정책 중, 제8장은 정부구매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동 정책의 제25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국가가 투자한 중대공사와 중점 응용시스템은 국내기업이 우선적으로 건설해야 하며, 성능가격을 대비하여 조건이 동등할 경우에는 국산 소프트웨어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제27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정부기구가 구입하는 소프트웨어, 국가 주권 및 경제안전과 관련되는 소프트웨어는 정부 구입방식을 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재정부와 공업 · 정보화부에서 제정을 논의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정부구매시행방법』(軟件政府采購實施辦法) 초안 제3조의 규정에도 이러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정부구매 시 동 방법에서 인정한 국산 소프트웨어와 국내 소프트웨어서비스를 구매하여야 하며, 비 국산을 구매할 경우, 반드시 동 방법에 따라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구매와 관련하여, 명백히 국산 소프트웨어의 우선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2009년 11월 현재, 중국은 아직 세계무역기구의 복수국간 무역협정인 정부구매협정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황이며, 따라서, 비록 상술한 규정이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표 II-1〉 중국의 SW산업 관련 주요 국내법 목록

법령명	소프트웨어산업과집적회로산업의발전을장려하는것에관한약간의정책(關于鼓勵軟件產業和集成電路產業發展的若干政策)
관련 부처	국무원
연혁	2000년 6월 24일 시행
법령명	국가소프트웨어산업기지관리방법(國家軟件產業基地管理辦法)
관련 부처	국가계획위원회, 정보산업부
연혁	2001년 12월 31일 시행
법령명	국가계획분포내의중점소프트웨어기업인정관리방법(시행)(國家規劃布局內的重點軟件企業認定管理辦法(試行))
관련 부처	국가계획위원회, 정보산업부,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국가세무총국
연혁	2001년 7월 24일 시행
법령명	소프트웨어기업인정기준및관리방법(軟件企業認定標準及管理辦法)
관련 부처	정보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국가세무총국
연혁	2000년 10월 16일 시행

〈표 II-1〉 중국의 SW산업 관련 주요 국내법 목록(계속)

법령명	소프트웨어기업인정기준및관리방법(軟件企業認定標準及管理辦法)
관련 부처	정보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국가세무총국
연혁	2000년 10월 16일 시행
법령명	소프트웨어제품관리방법(軟件產品管理辦法)
관련 부처	공업 · 정보화부
연혁	2009년 4월 10일 시행
법령명	중국소프트웨어기술혁신능력을제고하는것에관한시행의견(關于進一步提高我國軟件企業技術創新能力的實施意見)
관련 부처	과학기술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정보산업부, 국가표준위원회.
연혁	2004년 4월 20일 시행
법령명	중국소프트웨어산업기본공약(中國軟件行業基本公約)
관련 부처	중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법령명	소프트웨어수출관리와통계방법(軟件出口管理和統計辦法)
관련 부처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과학기술부, 정보산업부, 국가통계국, 국가외환관리국
연혁	2001년 10월 25일 시행
법령명	소프트웨어수출에관한통지(關于軟件出口有關問題的通知)
관련 부처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정보산업부,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 국가외환관리국, 국가통계국
연혁	2001년 1월 4일 시행
법령명	소프트웨어및관련정보서비스수출에관한지도의견(關于發展軟件及相關信息服務出口的指導意見)
관련 부처	상무부, 정보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 통계국, 외환국
연혁	2006년 9월 19일 시행
법령명	소프트웨어산업과집적회로산업발전에있어세수정책과관련된문제에대한통지(關于考慮軟件產業和集成電路產業發展有關稅收政策問題的通知)
관련 부처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
연혁	2000년 9월 22일 시행

〈표 II-1〉 중국의 SW산업 관련 주요 국내법 목록(계속)

법령명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등기방법(計算機軟件著作權登記辦法)
관련 부처	국가판권국
연혁	2002년 2월 20일 시행
법령명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計算機軟件保護條例)
관련 부처	국무원
연혁	2002년 1월 1일 시행
법령명	소프트웨어인재양성과대오건설에관한일부의견(關于加快軟件人才培養和隊伍建設的若干意見)
관련 부처	교육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인사부, 노동사회보장부, 정보산업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국가외국전문가국.
연혁	2003년 11월 21일 시행
법령명	소프트웨어산업 통계관리방법(시행)(軟件業統計管理辦法(試行))
관련 부처	국가통계국, 정보산업부,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외환관리국
연혁	2004년 6월 11일 시행

제3장 WTO 서비스 양허안 및 TPR 보고서 분석

제 1 절 SW산업 관련 중국의 서비스협상 내용 분석

제 2 절 SW산업관련 중국의 무역장벽 내용 분석

제 3 절 중국의 SW 분야 법적용의 문제점

제 1 절 SW산업 관련 중국의 서비스협상 내용 분석

1. 개요

일반적으로 WTO의 회원국별 서비스 양허표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로서 합의되어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의 통합된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WTO가 창립된 후 가입하는 중국의 경우처럼 신규 회원국의 경우 기존 회원국과 협상을 통하여 서비스 양허표가 작성되고 이는 가입의정서의 일부로 첨부된다. 따라서 중국의 WTO 가입에 관한 작업반 보고서의 343항[10]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중국과 WTO 회원국들 간의 협상 결과인 서비스에 관한 구체적 약속표[11]는 중국의 가입의정서 부속서 9 (ANNEX 9)로 첨부되어 있으며, 이 문서는 추가물 (addendum)[12]로 나와 있다.

중국은 2001년 12월 WTO에 가입하면서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상결과인 양허표[13]를 확정하였고 이것은 2002년 2월 14일 발행되었다. 이후 중국은 도하개발의제 (Doha Development Agenda: DDA) 협상의 일정에 따라 다른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2003년 9월 5일 서비스무역위원회의 회원들에게 회람되도록 할 것을 요청하면서 새로운 협상 제안

10)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China, WT/ACC/CHN/49, 1 October 2001, p. 71. 관련부분은 다음과 같다. "343. Having carried out the examination of the foreign trade regime of China and in the light of the explanations, commitments and concessions made by China, the Working Party reached the conclusion that China should be invited to accede to the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TO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XII. For this purpose, the Working Party prepared the Draft Decision and Draft Protocol reproduced in the Appendix to this Report, and took note of China's Schedule of Concessions and Commitments on Goods (document WT/ACC/CHN49/Add.1) and China's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on Services (document WT/ACC/CHN/49/Add.2) that were annexed to the Draft Protocol. It was proposed that these texts be adopted by the General Council when it adopted the Report. When the Draft Decision was adopted, the Draft Protocol would be open for acceptance by China which would become a WTO Member 30 days after it accepted the said Draft Protocol. The Working Party agreed, therefore, that it had completed its work concerning the negotiations for the accession of China to the WTO Agreement."

11) 서비스 양허표는 정확한 용어로는 '구체적 약속의 국별 시간표' (National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이며, 이를 간단히 서비스 양허표 내지는 구체적 약속표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12) WTO, WT/ACC/CHN/49/Add.2, 1 October 2001.

13) WTO, GATS/SC/135, 14 February 2002.

서[14]를 제출하였다. 이것은 2001년 11월 14일자 도하 각료선언 (Doha Ministerial Declaration)의 15항에 따라 중국이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상 하에서 신청을 제출한 것이었다. 그 후 2005년 7월 22일 중국은 개정 제안서[15]를 제출하면서 서비스무역위원회 회원국들에게 회람되도록 요청하였다. 이 개정 제안서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상의 맥락에서 제출된 것으로, 동 제안은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S)에 따라 진행 중인 서비스 규범 협상에서 합의될 내용과 중국이 제안한 구체적 약속에 대한 중국과 대상국간 협상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16] 중국은 다른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협상이 종결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제안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감축할 권리가 있으며, 동 제안서에 기술적 변경을 가하거나 착오, 누락 또는 부정확한 부분을 고칠 권리도 있다.

중국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구체적 약속표는 서비스 약속표에 양허한 내용을 기재할 때 모든 서비스 분야에 걸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수평적 약속 (horizontal commitments)과 서비스 분야별 구체적인 약속 (specific commitments)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S)에서는 서비스를 정의하지 아니하고 서비스 공급형태를 정의하고 있는데, 서비스 양허표는 서비스 공급 형태별로 기재되어 있다. 동 협정에서 정의하는 서비스 공급형태는 4가지로서: Mode 1 국경간 공급 (Cross-Border Supply); Mode 2 해외소비 (Consumption Abroad); Mode 3 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 Mode 4 자연인의 주재 (Presence of Natural Person)로 이루어져 있다.

서비스 양허표는 일반적으로 4개 칸으로 구성되며 서비스 분류 (Sector/Sub-sector)[17],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limitations on market access),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limitation on national treatment) 및 추가적 약속 (additional commitments) 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양허표에 언급된 분야만 개방된 것이며, 당해 서비스 분

14) WTO, TN/S/O/CHN, 15 September 2003. DDA 서비스분야 협상방식은 요청-제안 (request-offer) 방식으로서 각 회원국이 상대 국가에 대하여 서비스 분야의 개선 및 개방을 요청을 하면 요청받은 국가는 제안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요청이 없더라도 제안할 수 있으며, 처음 제안이 이루어진 후에는 수정된 제안이 제출될 수 있다. 2008년 6월 현재 71개 초기제안이 회람되었으며 31개 수정제안이 회람되었다. http://www.wto.org/english/tratop_e/ serv_e/s_negs_e.htm, 2009년 11월 12일 검색.

15) WTO, TN/S/O/CHN/Rev.1, 29 July 2005.

16) 서비스는 농업분야와 함께 기설의제 (Built-in Agenda)로서 GATS 자체적으로 WTO 설립 후에도 협상을 지속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특히 서비스 분야의 경우 2000년에 이미 협상이 개시되었다. 그러나 2001년 11월 도하개발의제 (DDA) 협상이 개시되면서 DDA의 협상의 일부로 편입되어 진행 중이다.

17) 서비스 양허표는 대부분 UN의 Provisional Central Product Code에 따라 서비스 분야를 분류하고 있다. 동 분류체계는 서비스를 대분류 (Sector: 분야) - 중분류 (Sub-Sector: 부문) - 소분류 (Activities: 업종)으로 분류한다.

야에서의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는 기재된 내용을 제외하고 개방된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Unbound"라고 기재된 경우 당해 서비스 분야의 공급형태에 대하여 어떤한 제한이나 조건을 부과할 것인지 양허약속을 하지 아니한 것이며, 반대로 ”None"이라고 기재된 경우 당해 서비스 분야의 공급형태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나 조건도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완전한 시장개방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 양허표와 개정 제안서의 내용을 함께 살펴본다.[18)]

2. 수평적 약속

A. 개요

수평적 약속은 이 양허표에 기재된 모든 관련 서비스 분야에 적용되는 것이다. 중국의 서비스 양허안은 서비스무역의 공급유형 중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Mode 1)과 해외소비 (Mode 2)에 대해서는 기재된 것이 없으므로 개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상업적 주재 (Mode 3)는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기재된 내용에 따라 개방이 이루어진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자연인의 이동 (Mode 4)은 내국민대우 분야에만 제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추가적 약속에 관한 사항은 없다.

B.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1) 상업적 주재

중국에서 외상투자기업은 외자기업 (foreign capital enterprises, 또는 완전외국인소유기업이라고도 함)과 합작기업 (joint venture enterprises)을 포함하고, 합작기업은 합자기업 (equity joint ventures)과 (계약)합작기업 (contractual joint ventures)[19)] 두 가지 종

18) 이하 중국의 양허안의 내용 중 개정안에서 변경되거나 추가된 내용은 본문이나 표에서 밑줄을 그어 최초 양허안과 구별하였음을 밝힌다.

19) 계약의 용어는 중국의 법, 규정 그리고 기타 조치들에 따라 결정된 것인데, “계약합작회사 (contractual joint venture)”를 설립하는 것은 합작회사 측의 투자나 기타 기여뿐만 아니라 합작회사의 운영과 관리의 문제와 같은 문제들을 다룬다. 계약합작회사의 모든 당사자들에 의한 자산참여 (equity participation)는 요구되지 않으나, 합작회사 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이 약속표에 있는 “외상투자기업”은 합법적으로 설립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국-외국 자산 합작기업에 관한 법”, “중국-외국 계약 합작기업에 관한 법” 그리고 “외국자본 기업에 관한 법”하에서 구성된 외상투자기업을 의미한다.

류가 있다. 합자기업에서 외국투자의 지분은 합작회사의 등록자본의 25% 이상 이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하부 각 서비스 부문에서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외국기업의 지사에 관한 법과 규제가 형성 중에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외국기업의 지사 설립은 양허하지 않는다.

외국기업의 대표사무소가 중국에 설립되는 것은 허용되지만, 대표사무소는 구체적 약속에서 CPC 861, 862, 863 그리고 865[20] 하에 있는 대표사무소를 제외하고 어떠한 이윤추구활동에도 관여해서는 안 된다.

계약 또는 주주 약정에서 각기 규정하고 있거나 기존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서비스의 운영이나 공급을 확립하거나 허가하는 라이센스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 활동의 소유권, 운영 그리고 범위의 조건은 중국의 WTO 가입 당시보다 더 엄격하게 만들어 지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 중국의 토지는 국가소유이다. 따라서 기업 및 개인의 토지 이용은 다음의 최대기간 제한의 대상이 된다.

(a) 거주 목적을 위해서는 70년
(b) 산업 목적을 위해서는 50년
(c) 교육, 과학, 문화, 공중보건 그리고 체육교육의 목적을 위해 50년
(d) 상업, 여행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목적을 위해서는 40년
(e) 종합적 이용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해서는 50년

중국은 2005년 서비스 양허표의 개정안을 제안하였는데, 동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 또는 주주 약정에서 각기 규정하고 있거나 기존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서비스의 운영이나 공급을 확립하거나 허가하는 라이센스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 활동의 소유권, 운영 그리고 범위의 조건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는 날로 기존의 것보다 더 엄격하게 만들어 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기술한 문장에 대하여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약속한 모든 새로운

20) CPC는 UN 통계국에서 사용하는 분류체계로서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의 약자이고, 상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서비스의 성질에 근거하여 상품을 분류하고 있다. CPC는 여러 다양한 분야의 경제 및 관련 통계상의 조화 (harmonization)를 이루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CPC는 1.0, 1.1, 2.0 버전이 나와 있는데, 2.0 버전은 draft 상태이다. 여기서는 CPC Ver.1.0을 사용하고 있으며, code 8은 Business and production service section 이고, 86은 Production services, on a fee or contract basis이며, 861은 Agricultural, hunting, forestry and fishing services, 862는 Mining services and electricity, gas and water distribution services (on a fee or contract basis), 863은 Manufacturing services, except of metal products, machinery and equipment, 그리고 865는 Installation services (other than construction) 이다.

서비스 분야이나 하부 부문은 전술한 문장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운 서비스 부문이나 그 하부 부문에 대해서는 기존에 없던 규제에 관한 법을 만들거나, 새로운 규제내용을 엄격한 방향으로 추가하는 것 역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SW산업과 관련한 분야는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 분야 (sector)로서 일부 하위 부문은 기존 양허안에서 기재된 반면, 일부 부문은 기재되지 아니하였는데, 미기재된 하위 부문은 개정안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2) 자연인의 이동

다음 분류중의 하나에 속하는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적 체류에 관한 조치를 제외하고 양허하지 않는다.

(a) 매니저, 임원 그리고 기업 내 전근자 (intra-corporate transferees)로서 일시적으로 이주하면서 중국의 영토 내에 대표사무소, 지사 또는 자회사를 설립한 WTO 회원국 기업의 상급 피고용인으로 정의된 전문가는 3년간의 초기 체류동안 입국이 허용됨.

(b) 매니저, 임원 그리고 WTO 회원국 기업의 상급 피고용인으로 정의된 전문가는 해당 계약서의 조건 또는 3년의 초기 체류에 명시된 대로 어느 것이 더 짧던지 간에 장기 체류 허가를 받게 됨.

(c) 서비스 판매원-중국 영토 내에 기반을 두지 않고 중국 내에 위치해 있는 공급자로부터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않으며, (i) 그러한 판매가 일반 대중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ii) 그 판매원이 그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종사하지 않는 경우, 그 공급자의 서비스 판매를 위한 협상을 목적으로 서비스 공급자를 대표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판매원의 입국이 90일 기간으로 제한된다.

자연인의 이동 부분의 개정안에서 수정된 바 없으므로 기존 양허표의 내용과 동일하다.

C.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1) 상업적 주재

시청각, 항공 그리고 의료 서비스 분야에 있는 국내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모든 기존 보조금에 대해서는 양허하지 않는다. SW산업 분야는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에 속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이 제시한 2005년 서비스 양허 개정안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약속한 모든 새로운 분야 및 부문에서 국내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는 양허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덧붙이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 분야 (sector) 및 부문 (sub-sector)는 대부분 가입시 양허된 분야이므로 중국 정부는 기재된 부문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으나 기재되지 아니한 하위 부문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2) 자연인의 이동

시장접근에서 언급한 범주에 속하는 자연인의 입국과 임시 체류에 관한 조치를 제외하고는 양허하지 않았으며, 이는 개정안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D. 평가

수평적 약속은 이 양허표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관련 서비스 분야에 적용되는 것이다. 중국의 2005년 서비스협상 개정안은 상업적 주재의 시장접근 제한에 대하여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약속한 모든 새로운 서비스 분야나 부문에 대해서는 기업 활동의 소유권, 운영 및 범위에 대한 조건을 기술한 문장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문장을 첨가하였다. 즉, 새롭게 추가되는 분야나 부문의 경우 중국이 WTO에 가입하는 날부터 기존의 것보다 더 엄격하게 만들어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이 부분의 조건은 더 엄격하게 만들어 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가입시의 기준보다 더 엄격해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또한, 내국민대우에 대해서도 개정안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약속한 모든 새로운 분야 및 부문에서 국내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는 양허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분야나 부문은 기존 양허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중국의 기존 분야별 양허표에서는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양허하였지만, 그 일부 하위 부문에 관하여는 양허하였으나 일부 부문에 대하여는 양허하지 아니하였다. 그 중에서 SW산업과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 데이터서비스 부문 (CPC 844) 및 기타 컴퓨터 서비스 부문 (CPC 849)에 대하여는 기존 서비스 양허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장접근에서 기업 활동의 소유권, 운영 및 범위에 대한 조건을 기술한 문장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며, 내국민대우에서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분야별 약속

A. 개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비스 양허표에서의 서비스의 분류는 UN의 Provisional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에 기반하고 있다. 서비스 분류에서 실제 SW산업이 별도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 양허표를 작성할 때 지침이 된 Provisional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는 잠정안으로서 동 분류코드는 이후 CPC Version 1.1 및 2.0까지 발전되었다.[21] 아래 [표 3-1]은 CPC 분류코드에 따라 SW 및 IT 서비스를 구분한 것으로서 가장 관련 있는 서비스 분야는 잠정 CPC 분류체계의 84에 해당하는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computer and related services) 분야임을 알 수 있다.

〈표 Ⅲ-1〉 CPC 분류체계에서의 SW 및 IT 관련 서비스

Prov. CPC	CPC Ver. 1.1	CPC Ver. 2.0	Product Description
Business and productivity software and licensing service			
84400	84300	84341	System software downloads
84400	84300	84342	Application software downloads
84400	84300	84392	On-line software
Information technology consultancy and services			
84250	85960	83117	Business process management services
84100	83141	83131	IT consulting services
84100	83141	83132	IT support services
84210	83142	83141	IT design and development for applications
84210	83142	83142	IT design and development for networks and systems
84250	85960	83151	Web hosting services

21) SW 분야가 발전되면서 개정되는 분류체제도 발전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화되었으나 WTO 서비스 양허표는 잠정안의 분류체제를 따르고 있으므로 구체화된 내용은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나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표 Ⅲ-1〉 CPC 분류체계에서의 SW 및 IT 관련 서비스(계속)

Prov. CPC	CPC Ver. 1.1	CPC Ver. 2.0	Product Description
84250	85960	83152	Application service provisioning
84250	85960	83159	Other hosting and IT infrastructure
84990	83149	83161	Network management service
84390	83150	83162	Computer systems management services

잠정 CPC 분류체계는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분야 (CPC 84)를 아래와 같이 하위 부문과 업종으로 분류된다:

CPC 841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와 관련된 상담 서비스 (Consultancy Services related to the installation of computer hardware)

CPC 842 소프트웨어 실행 서비스 (Software implementation services)

CPC 843 데이터 가공 서비스 (Date processing service)

CPC 844 데이터 베이스 서비스 (Data base service)

CPC 845 컴퓨터를 포함한 사무실기기 및 장비의 유지보수 서비스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 of office machinery and equipment including computer)

CPC 849 기타 컴퓨터 서비스 (Other computer services)

이 중에서 중국은 첫 3개 부문에 대하여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대한 약속을 기재하였고, 추가적 약속은 하지 않았다. 아래에서는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 분야에서 중국의 양허안의 내용과 개정안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개정안에서 변경되거나 추가된 내용은 본문이나 표에 밑줄을 그어 그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1)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와 관련된 상담서비스

시장접근은 국경간 공급 (Mode 1), 해외소비 (Mode 2)그리고 상업적 주재 (Mode 3)에 대해서는 전혀 제한이 없고, 자연인의 이동 (Mode 4)에 대하여는 수평적 약속에서 기

재된 것을 제외하고 양허하지 않는다.

내국민대우도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그리고 상업적 주재에 대해서는 전혀 제한이 없고, 자연인의 이동에 대하여는 면허증을 가진 기술자, 또는 학사 학위 (또는 그 이상)를 가진 사원 그리고 이 분야에서 3년의 경험을 가진 자로 자격 조건을 기재하고 있다. 개정안에도 별다른 내용은 없다.

(2) 소프트웨어 실행서비스

이 부문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상담 서비스 (CPC 8421), 시스템 분석 서비스 (CPC 8422), 시스템 디자인 서비스 (CPC 8423), 프로그래밍 서비스 (CPC 8424) 그리고 시스템 유지 서비스 (CPC 8425)를 포함하고 있다.

시장접근은 국경간 공급과 해외소비에 대해서는 전혀 제한이 없고, 상업적 주재에 대하여는 외국의 과반수 소유권을 가진 합작회사의 형태만 허용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접근에서 자연인의 이동에 대하여는 수평적 약속에서 기재한 것을 제외하고 양허하지 않는다. 내국민대우도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그리고 상업적 주재에 대하여는 전혀 제한이 없고, 자연인의 이동에 대하여 면허증을 가진 기술자, 또는 학사 학위 (또는 그 이상)를 가진 사원 그리고 이 분야에서 3년의 경험을 가진 자로 자격 조건을 기재하고 있다.

중국이 제출한 개정안은 기존 양허표와는 달리 하위 업종에 해당하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상담 서비스, 시스템 분석 서비스, 시스템 디자인 서비스, 프로그래밍 서비스 그리고 시스템 유지 서비스를 삭제하고 있다.

시장접근은 국경간 공급과 해외소비에 대해서는 전혀 제한이 없고, 상업적 주재에 대하여 외국의 과반수 소유권을 가진 합작회사의 형태만 허용되도록 기재하고 있던 것을 삭제하고, 완전히 외국인 소유 기업이 허용될 것으로 적고 있다. 그리고 시장접근에서 자연인의 이동에 대하여는 수평적 약속에서 기재한 것을 제외하고 양허하지 않는다. 내국민대우도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그리고 상업적 주재에 대하여는 전혀 제한이 없고, 자연인의 이동에 대하여 면허증을 가진 기술자, 또는 학사 학위 (또는 그 이상)를 가진 사원 그리고 이 분야에서 3년의 경험을 가진 자로 자격 조건을 기재하고 있다.

(3) 데이터 처리 서비스

이 부문은 입력준비서비스 (CPC 8431), 데이터 처리 및 도표작성 서비스 (CPC 8432)

그리고 시간분할 서비스 (CPC 8433)를 포함하고 있다.

시장접근은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그리고 상업적 주재에 대하여는 전혀 제한이 없고, 자연인의 이동에 대하여는 수평적 약속에서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양허하지 않는다. 내국민 대우도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그리고 상업적 주재에 대하여 전혀 제한이 없고, 자연인의 이동에 대하여는 면허증을 가진 기술자, 또는 학사 학위 (또는 그 이상)를 가진 사원 그리고 이 분야에서 3년의 경험을 가진 자로 자격 조건을 기재하고 있다. 이 부문 개정안은 양허안 내용과 동일하다.

(4) 평가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분야의 개정안은 최초의 양허안과는 달리 공급수단으로 컴퓨터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요구하는 콘텐츠 서비스 조항을 구성하는 경제활동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기재되지 아니한 부문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CPC 844), 컴퓨터를 포함한 사무실기기 및 장비의 유지 보수 서비스 (CPC 845) 및 기타 컴퓨터 서비스 (CPC 849) 부문이다. 이들 부문은 구체적인 업종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나 SW산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여야 한다. 또한, 개정안에서 SW 실행서비스는 양허표에서 세분화 하고 있던 하부부문을 삭제하고 있어서 이 부분의 개방범위는 좀 더 포괄적으로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시장접근 제한의 상업적 주재에 관하여 개정안은 외국의 과반수 소유권을 가진 합작회사 형태만 허용하던 것을 삭제하고 완전외국인소유기업이 허용되는 것으로 적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입장이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 기업에 대한 제한을 점차 완화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C. SW산업 관련분야 약속

대부분의 사업 관련 서비스에 대한 양허도 SW산업과 관련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회계, 세금, 부동산, 광고, 유통, 시청각 서비스 등도 SW산업과 관련하여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형태나 상업적 주재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기업의 활동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SW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 분야이거나 SW관련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서비스 분야에 대한 양허이므로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 분야에 대한 서비스 양허는 본 보고서에서 다루지 아니한다.

D. 최혜국대우 예외 목록

한편, 서비스 무역에서도 상품무역에서와 마찬가지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밖의 동종서비스와 서비스공급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최혜국대우원칙이 적용된다. 최혜국대우원칙은 최혜국대우 면제규정에 따라 그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를 면제목록에 기재하지 않는 한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도록 적극적 (positive)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구체적 약속표에 양허한 수준 이상의 혜택을 회원국 전체가 아닌 특정국가에 한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최혜국대우 의무면제를 받아야 한다. 최혜국대우 면제는 GATS '제2조의 면제에 관한 부속서'에 열거되어 있으며, 부속서상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최혜국대우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기재된 조치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원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중국의 경우, 서비스 무역에 관한 최혜국대우 면제는 해상운송 (maritime transport), 국제운송 (international transport) 그리고 화물과 여객 (freight and passengers)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다.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 제2조 최혜국대우와 모순되는 조치로 허용되는 것은, 양자협정을 통해서 이해당사국은 합작회사와 선박을 소유하거나 관련당사국의 운반선에 의해 운영되는 외국 자본 회사에 관하여 중국법에 따라 합작회사로나 완전 소유권을 가진 자회사로서 중국에서 통상적인 영업을 하는데 관여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러한 면제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기간도 예측할 수 없으며 면제에 대한 필요성을 창설하는 조건은 서명국가들 간에 무역의 현재 상태에 따른다. 그리고 알제리,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브라질, 태국, 미국 그리고 자이레와 화물 공유 협정을 맺었는데, 협정의 기간은 관련 협정의 실효적인 기간에 따르고 면제에 대한 필요성을 창설하는 조건은 역시 서명국가들 간에 무역의 현재 상태에 따른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들은 SW산업과 관련성이 낮거나 없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아니한다.

제 2 절 SW산업관련 중국의 무역장벽 내용 분석

1. WTO 무역정책검토 보고서

A. 중국의 전반적인 산업정책

중국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왔고, 개발목표의 이행을 위해 설립되었던 국가소유 부문의 역할도 감소하였다. 반대로 민간부문은 근래에 급속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자국의 계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정 산업 활동에 자원이 유입되도록 간접적인 정책 도구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정책 도구에는 관세 및 그 밖의 국경세 조치 등 무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치 외에도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 보조금, 가격 규제 및 세금 인센티브 또는 역인센티브 등의 간접적인 조치가 있다.

당국에 따르면, 중국의 산업정책은 2000년 이래 "산업정책의 전략적 조정"에 중점을 두어왔다. "산업정책의 전략적 조정"이란 경제에 있어서의 농업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 산업 및 농촌 지역 구조조정, 경제성장을 증진시키는 산업(정보기술, 신소재 및 생명공학)의 발전 장려, 신고도기술(新高度技術)의 이용을 통한 전통산업의 개량 및 저부가가치 공정("뒤떨어지는" 공정)의 제거를 의미하며 철강 등의 산업의 경우 경제적 · 법적 ·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여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많은 법규가 채택되었으며, 이러한 법규는 목표 산업 및 활동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거나 특정 산업 및 활동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법규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특정 부문에 대한 투자에 융자를 제공하지 않도록 지시를 내리거나 투자 승인 당국에 대하여 특정 부문에 대한 투자 제안을 승인하지 않도록 지시를 내리는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하며, 그 외에 취해질 수 있는 방식으로는 토지 및 세금 정책, 가격 정책 및 무역 제한이 있다.

최근 몇 년간 신용 정책의 완화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통화가 특정 부문에 유입되도록 "유도"되고 있으며 이는 세 곳의 정책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물론 정책은행만이 동원되는 것은 아니다.) 2004년 중국 정부는 특정 부문에 대한 투자가 지나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 당시 시행된

조치로는 은행 예치율 0.5% 포인트 인상 및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및 차입 1년 기준금리 0.27% 포인트 인상(10월 29일), 위안화 대출금리 변동폭 확대 및 위안화 예치율 하한선 폐지, 시중은행의 대출 확대 억제를 위한 공개시장조작의 강화, "고위험" 산업에 대한 대출을 중단시키기 위한 창구지도(window guidance)의 강화 등이 있다.

과거에 수입 억제를 위해 광범위하게 이용되었던 수입 제한 및 금지 조치는 중국의 WTO 가입 등의 이유로 인하여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도 특정 상품, 특히 국내 산업수요를 위해 필요한 상품의 수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출 허가 및 제한 제도, 변동적 VAT 환급, 수출세 등의 조치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수출품에 국내에서 생산된 부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장려책도 시행되고 있다.

B. 지적재산권 분야

(1) 개요

지적재산권 보호는 계속적인 FDI 유입 및 그와 결합된 신개발 기술의 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며, 보다 장기적으로는 중국 내 신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유용하다. 이에 따라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 체제에 중대한 변화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변화로는 특허법(2000년), 상표법(2001년) 및 저작권법(2001년)의 개정이 있으며, 이밖에도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규정(2001년), 식물신품종(plant varieties) 규정(2001년) 및 집적회로 배치설계 규정(2001년)이 신설되었다. 또한, 특허법에 대한 추가적인 개정이 계획되어 있다. 중국은 지적재산권의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광범위하고 세분화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표 1) 이 구조에는 2개 급의 행정부, 즉 국무원 산하의 행정당국과 지방행정당국이 개입되어 있다. 국무원 산하의 행정당국은 지적재산권의 심사 및 허가·등록을 담당하고 지방행정당국은 지방 단계에서의 지적재산권의 관리와 집행을 담당한다. 또한, 중국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가작업반 (National Working Group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과 1996년 설치된 지식재산재판부(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제3민사부)를 통하여 법 집행 측면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집행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중국은 1980년대 이래로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다수의 주요 국제협약에 가입하였으며, 다른 국제조약에의 가입을 검토 중에 있다. 현재 WIPO 저작권조약(WCT) 및 WIPO 실연

및 음반조약(WPPT) 가입을 위한 관련 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 및 지역과도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하나의 예로, 중국은 1992년 미국과 지적재산의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를 서명하고 2000년에는 지적재산에 관한 정기적인 협의체를 도입한 데에 이어, 2004년에는 중·미 통상무역공동위원회(JCCT)에 지적재산권 작업그룹을 설치하였다. 또한, 중국은 EU와 EU-중국 IP 협력프로그램을 1996년부터 6년간 실시하였고, 양국 간 지적재산에 관한 회담을 설치하는 내용의 협정을 2003년 10월 30일에 체결하였다. 이밖에도 중국은 일본, 한국,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과도 지적재산권에 관한 정기적인 회담을 갖고 있으며, 동 사안에 대한 세미나도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2) 특허

중국 내의 특허권은 특허법(Patent Law, 2000년 8월 25일 개정), 특허법 실시조례 및 특허법의 이행을 위하여 국가지식재산국(SIPO)가 제정한 규칙에 의거하여 보호된다. 특허법상 특허는 출원일자로부터 20년의 기간 동안 부여되며, 실용신안과 의장특허의 경우 그 기간은 10년이다.(특허법 제25조 및 제5조는 몇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동 법 제25조가 언급하는 예외로는 과학적 발견, 정신적 활동을 위한 법칙과 방법,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 방법, 동물 및 식물의 신품종, 핵 변형을 통해 획득한 물질 등이 있으며, 동법 제5조는 공화국의 법 또는 사회도덕에 반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발명-창작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허도 허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의장 및 실용신안에 대한 사법심사에 관한 것이었다. 중국은 지적재산 관련 조직을 재편하기 위하여 1998년 기존의 특허국(Patent Office)을 대신하여 국가지식재산국(SIPO)을 설치하였다. SIPO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무대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허 출원은 SIPO에 하여야 하며, SIPO는 동 출원이 특허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원일자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때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출원자는 이보다 빠른 공표를 요청할 수 있다. 출원자는 출원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실체심사(substantial examination)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원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출원에 대해 실체심사는 SIPO에 의해 실시된다. 실체심사의 기간을 확대하는 이유는 첫째 이러한 절차는 출원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원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출원자의 비용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둘째 SIPO의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심사에 대한 비용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허 출원 공표부터 특허 승인에 이르는 기간 동안 특허는 임시적으로 보호된다.

SIPO의 특허 승인 결정이 내려지고 이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면, 출원자는 통지를 접수한 후 2개월 내에 등록을 위한 구비요건(등록비, 연간수수료 및 인쇄비의 납부 등)을 갖추어야 한다. 출원자가 정해진 시한 내에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면, 특허 획득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당국에 따르면, 특허실체심사를 마치는 데에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26개월이다. 2000년에서 2004년까지의 기간 동안 특허 출원과 특허 승인의 수가 모두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허 출원은 재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1985년 설치된 특허재심사위원회(Patent Re-examination Board)에 의해 실시된다. 동 위원회는 특허법 실시조례에 따라 SIPO가 임명한 기술전문가와 법률전문가에 의해 구성되며, 국가지식재산국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위원회가 SIPO의 결정이 특허법 및 관련 규정과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동 결정을 취소하고 SIPO에 재심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004년까지 재심사위원회는 9,345건의 재심사 요청을 접수하였으며, 당시 그중 2,651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었다. 당국에 따르면 재심사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24개월로 나타났으나 이는 향후 5년 내에 12개월로 떨어질 것으로 관측되었다.

SIPO는 특허법 제6장에 따라 다음 두 경우에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e)를 허가할 수 있다. 첫째는 특허 공표 이후이며 국가비상상황인 경우, 둘째는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실체가 특허권자와 실시에 관한 합리적인 조건에 합의하지 못한 채 특허 공표로부터 3년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이다. 또한, 강제실시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가 있는 경우 선출원된 특허발명에 대해 허여될 수 있다. 강제실시의 범위와 기간은 "강제실시 허여의 사유에 근거하여" SIPO가 정한다. 강제실시권의 실시는 주로 국내시장에서의 공급으로만 제한된다. 반도체에 허여된 강제실시권의 경우, 실시는 공공의 비상업적 이용 또는 사법절차나 행정절차를 통하여 반경쟁적인 것으로 판명된 관행에 대한 구제조치에 제한된다. 허여된 강제실시권은 독점권이 아니며, 양 당사자는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실시 수수료"를 확정하고 특허를 실시하는 자는 반드시 이 수수료를 특허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수수료에 관하여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SIPO가 이에 관하여 결정을 내린다. 당국에 따르면 위의 규정에 따른 강제실시권의 허여는 아직까지 이루어진 바 없다. 특허권자가 SIPO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국의 특허 관련 법령은 병행수입(parallel imports)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법 개정 작업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인다.

(3)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저작권은 판권법(1990년 9월 7일 제정, 2001년 10월 27일 개정) 및 부속 규정에 의거하여 보호된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보호는 컴퓨터소프트웨어 보호에 관한 규정(2001년 12월 20일 공표, 2002년 1월 1일 발효)에 의해 규율된다.

저작권 보호는 전국 차원의 관리의 경우 국무원 하의 국가판권국(Copyright Administration Department)이 담당하고 각 성, 자치지역 및 시 차원의 관리의 경우 해당 지방정부의 저작권행정당국이 이를 담당한다. 영화와 사진의 보호 기간은 50년이며, 이는 첫 공표로부터 50년째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만기한다. 글자체(typographical design)의 보호기간은 10년이며, 이 기간은 해당 글자체가 사용된 서적 또는 정기간행물의 첫 출판으로부터 10년째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만기한다. 컴퓨터소프트웨어는 개발이 완료된 일자로부터 시작하여 저작권자의 사후 50년까지 보호되며, 이 보호기간은 저작권자의 사망(공동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개발자 중 가장 마지막까지 생존한 자의 사망)으로부터 50년째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만기한다.(저작권법 제2장 제3절, 컴퓨터소프트웨어규정 제14조) 법인 또는 기타 실체가 소유한 저작권의 경우, 보호기간은 50년이며, 소프트웨어의 첫 공표 후 50년째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만기한다. 그러나 개발일자로부터 50년이 지나는 동안 소프트웨어가 공개되지 않은 경우 그 이후로는 보호되지 않는다. 저작권자는 이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또는 저작권행정당국에 의해 정해진 적정 금액을 수령하고 저작물의 이용 또는 양도를 허락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27조에 따라, 저작물 사용료는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해질 수 있고, 저작권행정당국이 "저작물의 사용료에 관한 규칙"(1999년)에 규정해 놓은 세부 요율에 의해서도 정해질 수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경우, 중국 국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외국인에게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이용하도록 허락하거나 이를 외국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컴퓨터소프트웨어규정 제22조에 따라 "기술 수입 및 수출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에서 병행수입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병행수입은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상표권

상표는 상표법(1982년 제정, 최근 개정은 2001년 10월 27일) 및 "상표법 실시조례"(2002년 8월 3일 공표)에 의해 보호된다. 또한, 국가공상행정관리국(SAIC)은 2003년 4월 17일 "유명상표의 인정 및 보호에 관한 규정"을 채택한 바 있다.

상표는 “자연인,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이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단어, 의장, 문자, 숫자, 3차원 기호, 색채 배합, 또는 이상의 요소의 배합 등을 포함하는 시각적 표지”로 정의된다.(상표법 제8조) 모든 상표등록 출원자는 SAIC의 상표국(Trademark Office)에 상표를 등록하여야 한다. 외국인과 외국기업의 경우, 중국이 그 출신국가와 체결한 협정이 있는 경우 그 협정 및 양국이 모두 회원국으로 있는 국제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상표등록을 출원한다. 중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중국 내 산업시설이나 상업사무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중국에 그들의 상표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SAIC가 인정하는 자격 있는 대리인을 통하여 출원하여야 한다. 상표국이 등록출원된 상표가 관련 법 규정에 합치하고 다른 등록상표와 동일하지 않음을 확인한 후에는 가등록(preliminary registration)을 할 수 있다. 상표국이 상표를 등록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어떠한 이의도 접수되지 않은 경우 등록 승인이 이루어지고 상표등록증이 발부된다.

상표의 유효기간은 10년이고, 10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며, 연장 회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등록갱신 출원은 10년의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만료 이후에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추가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유예기간 중에도 갱신출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록상표는 취소된다.(제46조에 따라, 상표가 취소되었거나 등록갱신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표국은 취소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는 취소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출원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제44조에 따라 상표국은 등록된 상표가 일방적으로 변경되었거나 등록시의 정보(상표권자의 성명과 주소 등)가 일방적으로 변경되었거나 상표가 3년 연속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상표권자에게 그 상황을 시정하거나 상표를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년 연속 상표 미사용의 경우, 상표국은 상표를 취소하기 전에 상표권자에게 2개월의 기간을 주고 이에 대한 “적합한” 사유(수입제한 또는 불가항력 포함)를 제시하거나 상표가 실제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상표국이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내린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재심신청은 기각결정의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Trademark Review and Adjudication Board)에 하여야 한다.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는 경우, 동 위원회의 통지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결정을 내림에 있어 시한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2004년 한 해에 10,144건의 재심신청이 상표평심위원회에 제출되었고 이중 6,305건이 재심을 받았다.

등록된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상표를 침해하거나(제13조) 등록출원이 소유권자

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거나(제15조) 실제 상품의 원산지가 아닌 지역을 언급하는 지리적 표시가 상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제16조) 상표는 취소된다. 어떠한 상표가 다른 자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경우(제31조), 침해된 상표권자 또는 다른 이해관계자는 등록일자로부터 5년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등록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가해 상표의 등록이 부정하게 이루어진 경우, 저명 상표(well-known trademark)의 소유권자는 위의 5년 기한에 구속되지 않는다.(제41조)

특허와 저작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병행수입 문제가 상표법령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당국은 이 문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5) 지재권의 집행의 문제

중국은 첨단기술의 향상 및 고부가가치 생산으로의 진입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면서 신고도기술에 대한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뿐 아니라 집행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가 2005년 4월에 발간한 지적재산권백서는 지적재산권 관련 법제도가 점차 발전함에 따라 초점이 법제도 자체에서 집행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3년 10월 집행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IPR Leading Group이 조직되었다. 2004년 8월에는 전국적인 IPR 보호 증진을 위한 1년 기간의 캠페인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이 캠페인의 기간은 2005년 말까지 연장되었다. 또한, 2005년 5월에는 부수상이 이끄는 국가지식재산권작업반(State Intellectual Property Working Group)이 설립되었다. 이 작업반은 그 조직적 기반은 상무부에 두고 국가지식재산국의 감독을 받고 있다. 작업반은 IPR 보호에 관한 12개의 행정 및 사법 당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전국적인 IPR 보호를 위한 기획 및 조정 업무를 맡고 있거나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2004년 12월 22일에는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공동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시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의 해석"을 발표하였다. 이 해석은 형사책임 기준을 낮추고 다양한 IPR 침해 범죄 유형에 대한 처벌을 구체화하는 등 지적재산권 관련 형법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다.

중국의 주요 무역파트너가 제기하는 문제점으로는 주요 집행기관 간 조정의 부재, 지역보호주의와 부패, 과태료, 배상금 및 과태료(행정 · 민사 · 형사)를 통한 침해 억제의 불충분함, 관계자의 훈련 부족 등이 있다. 2003년 7월 국무원의 발전연구중심(Development Research Centre)은 중국 내 위조 상품의 시장가치를 미화 190억 달러에서 240억 달러

사이로 추산하였다. 2005년 지적재산권백서는 압수된 상표, 저작권 및 특허 위반 물품의 수가 2001년에서 2003년 사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행정절차를 통해 처리되는 사건의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법원으로 이관되는 사건의 수가 특히 저작권 침해의 경우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집행은 다수의 담당 부서가 관계되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국가지식재산국(SIPO)은 특허와 집적회로의 배치설계를 담당하며, 국가공상행정관리국(SAIC)과 상표국은 상표를 담당하고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과 함께 지리적 표시의 등록과 행정관리를 담당한다. 국가판권국(National Copyright Administration)은 저작권을, 상무부(MOFCOM, 종전에는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농업 관련 화학물질의 행정적 보호를, 농업부와 국가임업국은 식물신품종의 보호를 담당한다. 국경에서의 집행은 세관에서 수행하고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영업비밀의 보호 등 부당경쟁에 관한 법률의 집행을 담당한다. 이밖에도 신문출판서와 공안부와 같은 정부기관이 집행에 관련되어 있다.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집행은 행정조치와 사법조치 등 두 가지 수단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 행정조치는 중국 내 IPR 보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당국에 의한 조정(mediation)을 의미한다. 사법조치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추에 의한 조치를 모두 포함하며, 법원에 의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국가공상행정관리국(SAIC)의 행정조치 개시는 상표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제3자의 요청이나 직권으로도 이루어진다. 조정에 의해 만족스러운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 행정당국은 통상적으로 인민법원에 사건을 이관하고 인민법원에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또한, 판권법, 상표법 등 일부 법률 하에서는 행정당국이 IPR 침해당사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침해물품 또는 침해에 주요하게 사용된 도구, 장치 및 재료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판권법 하에서는 폐기도 가능함) 판권법에 따르면, 행정 과태료는 지적재산권자의 실제손실가치의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 실제손실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과태료는 위조된 상품의 가치에 기초하여 정하며, 100,000 위안을 넘을 수 없다. 또한, 행정당국이 권리자의 손실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500,000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배상금을 권리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 중 상당수가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처리되는 것으로 보인다. 상표의 경우에는 침해건수의 90% 이상이 행정조치를 통하여 처리되고 있다.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금의 경우, 특허법, 상표법 및 판권법에 규정되어 있다. 특허법 제58조는 타인의 특허를 자신의 특허인 양 사용한 경우 배상금을 50,000 위안 또는 불법소득의 3배까지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9조는 미특허 상품 또는 공정을 특허상품 또

는 공정인 양 사용한 경우 배상금을 50,000 위안까지 허용하고 있다. 상표법 제56조 하에서 인민법원은 500,000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손해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된 판권법 실시조례" 제36조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100,000 위안까지 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사조치로는 위조된 상품의 가격이나 수량 중 하나 또는 양자 모두를 근거로 산정한 벌금이 있다. "컴퓨터소프트웨어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컴퓨터소프트웨어 침해에 대해서는 사본 1건 당 100 위안 또는 침해상품의 가격의 5배에서 50,000 위안 사이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규정 제24조)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정 사건에서는 형사소추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형법은 7가지 종류의 IPR 침해를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이 7가지 IPR 침해 유형은 등록상표의 위조(제213조), 위조된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판매(제214조), 등록상표 연상물의 불법적 생산 및 판매(제215조), 타인의 특허 위조(제216조), 저작권 침해(제217조), 침해 복제물의 판매(제218조) 및 영업비밀 침해(제219조)가 있다. 공안당국이 IPR 침해에 관한 형사수사를 담당한다. 경미한 형사사건은 공안당국에서 바로 인민법원 1심의 심리에 회부하며, "공공질서와 국가이익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사건은 검찰원에서 담당한다. 지적재산권 관련 형사범죄는 최고 7년 이하의 금고 및/또는 벌금의 형에 처할 수 있다. 당국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사건 접수 후 1개월 반이 넘지 않는 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인민법원 2심으로의 항소 역시 같은 기간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국경에서의 지적재산권 집행을 위하여,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는 세관이 특허, 상표,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침해하는 수입 및 수출 상품을 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관은 올림픽, 세계박람회 등 주요 행사의 표장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수출입 금지를 위한 단속을 수행하기도 한다. 세관은 각각 2002년 2월 4일 및 2004년 12월 1일부터 올림픽 심벌과 세계박람회 심벌에 대한 단속을 개시한 바 있으며, 각각 "올림픽 표장 보호조례"와 "세계박람회표장 보호조례"에 의해 규율된다. 세관의 압수조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 보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문서로 세관에 '등록' 또는 접수할 수 있다. 세관은 권리자로부터 모든 관련 서류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지적재산권을 등록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권리자는 세관에의 지적재산권 등록시 800 위안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IPR 등록은 당국이 해당 IPR 및 권리자를 보다 잘 이해하고 조사 및 압수 업무의 처리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5년 4월 발간된 백서에 따르면, 2004년 말까지 세관은 6,257건의 IPR이 세관보호를 위해 등록되었다

고 확인한 바 있다.

IPR이 세관에 사전등록 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IPR 보호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IPR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세관은 물품이 IPR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국경에서 압수하고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통지한다. 권리자는 세관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물품의 유치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아울러 이에 대한 담보를 지불하여야 한다. 담보는 압수 물품의 가격에 의해 정해지는데, 물품의 가격이 20,000 위안 미만인 경우 담보는 물품 가격과 동일하게 책정되고 20,000 위안 이상인 경우 20,000 위안에서 200,000 위안 사이면 물품 가격의 절반, 200,000 위안보다 더 높으면 100,000 위안으로 담보가 책정된다. 세관은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을 최초로 유치한 후 30일(업무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IPR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물품은 세관에 의해 몰수되고 벌금이 부과된다. 침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물품은 반환된다.

세관에 등록이 되지 않은 IPR의 경우, 해당 IPR의 권리자는 권리자의 상세사항, 해당 IPR의 상세사항,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의 하주 및 하물 인수자의 상세사항,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의 명칭 및 상세사항, 그리고 중국에서 수출 또는 수입되는 물품의 수송, 항구 및 시간의 상세정보 등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IPR 권리자는 입항 중인 또는 통관 중인 물품이 IPR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하며, 물품이 유치되는 경우 유치 물품의 가격과 동일한 담보를 지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은 유치 물품의 침해 여부를 조사할 권한이 없으며, IPR 권리자가 법원의 명령을 받아 이를 세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세관이 물품을 유치한 시점으로부터 20일 이내에 법원의 명령을 받아 세관에 제공하지 않으면 세관은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 제18조에 따라, 세관은 직권에 의하여 물품을 압수할 수 있으나 담보는 관련 수수료와 경비를 차감하여 관련 당사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세관당국에 의한 침해 물품의 조사 및 압수 업무는 증가세를 보였다. 중국이 WTO에 통지한 바에 따르면, 세관이 조사하고 처리한 사건의 수는 2001년 330건에서 2002년 569건, 2003년 756건, 그리고 2004년 1,051건으로 증가하였다. 검찰원의 침해사범 체포 및 법적 조치 건수도 분명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집행의 강화를 위한 행정기관장, 인민검찰 및 공안부 간 긴밀한 업무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2004년 3월 발부한 "의견(Opinion)"으로 인하여 행정기관과 사법당국 간 조정 역시 강화되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행은 여전히 불충분하고 지적재산권 침해는 광범위하게 일

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소제도를 통한 침해의 억제가 불충분할 뿐 아니라 "지방 보호주의"가 IPR 침해의 주요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지방 보호주의의 원인은 지방 무역업자와 생산자에 특혜를 주는 자유재량적인 조치 및 지방의 위조물품 제조업자나 무역업자에게 경찰단속을 사전에 알리는 지방 부패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 행정기관이 IPR 집행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결여하고 있고 이에 대한 훈련 역시 미비하다는 우려도 있다.

C. 외국인 투자분야

(1) 법제도 및 절차

외국인투자(FDI)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법령으로는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및 이 법률들의 시행조례가 있다. 이 3개의 법률 하에서, 외국인투자기업(FIEs)은 합자기업(equity joint venture)[22], 합작기업(contractual joint venture) 및 외국인독자기업(wholly foreign-owned enterprises: WFOEs)을 의미한다. 중국의 WTO 가입 후 외국인투자기업(FIEs)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 2000년과 2001년에 위의 3개 법률이 개정되어 시장접근제한과 수출수지(export balancing) 요건이 축소되었고 기술이전요건 역시 완화되었다.[23]

(2) 심사 및 승인 절차

2004년 7월 국무원은 투자승인제도를 투자 확인 또는 등록제도로 대체하는 내용의 "투자제도개혁에 관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이 결정은 확인절차의 경우 "중요" 또는 "제한" 분야의 사업의 경우에만 요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04년 9월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정부확인을 요하는 투자사업 목록"을 발표하였다.[24] 이 목록에는 비정부 자금이 투자된 다양한 산업 부문의 중요한 또는 제한적인 고정자산 투자 사업이 열거되어 있으며, 몇 가지 예로는 농업 및 임업, 에너지, 운송, 정보기술, 원료, 제조, 경공업 및 담배, 신고도기술, 도시 인프라, 관광 등 사회적 사업 및 금융서비스가 있다.[25] 그 밖의 모든 투자 사업은 투자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지방의 발전개혁위원회(DRCs)와 같은

22) 등록자본금의 25% 이상이 외국인투자여야 함
23) WT/TPR/S/161/Rev.1, II.(6)(ii), 76항.
24) WT/TPR/S/161/Rev.1, II.(6)(iii), 83항.
25) WT/TPR/S/161/Rev.1, II.(6)(ii), 각주 104.

관련 당국에의 등록만을 요할 뿐이다. 또한, 위의 "결정"으로 확인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며 확인절차에 있어서의 지방당국의 권한이 확대되었다.[26)]

위의 "결정"과 "행정허가법"에 근거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외국인투자사업의 심사 및 확인을 위한 잠정조치"(2004년 10월 9일 발효)를 발표하였다. 동 조치는 중국-외국 간 합작기업(contractual joint venture), 중외 합자기업(equity joint venture), 외국인독자기업, 기업합병, 외국인투자자에 의한 국내기업 인수, 외국인소유기업의 자산 증가 등에 적용된다.(잠정조치 제2조) FIE의 설립을 위해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또는 다른 정부기관(지방의 DRC)에 심사 및 확인을 위한 신청이 제출되어야 한다. "허가" 및 "장려" 산업의 경우 미화 1억 달러 이상의 사업(제한 산업 부문의 경우, 미화 5천만 달러 이상의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미화 5억 달러 이상의 "허가" 및 "장려" 산업 부문의 사업(제한 산업 부문의 경우, 미화 1억 달러 이상의 사업)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확인을 받은 후 국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NDRC는 신청 접수 후 20일의 업무일 내에 심사와 확인을 완료하여야 하며, NDRC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기간을 10일의 업무일 만큼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결정이 있는 경우, NDRC는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 내 설립을 원하는 모든 FIE(금융부문의 FIE 제외)는 신청서를 상무부(MOFCOM)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무부는 승인된 사업에 대해 FIE 승인인증서(FIE Approval Certificate)를 발부한다. 이에 FIE는 기업등록, 세금, 외환 및 회사가 운영을 개시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요건을 완료할 수 있게 된다.

중국 정부는 분권화(decentralization)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며, 외국투자에 대한 확인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종전에는 지방정부의 승인 권한이 총 투자액이 미화 3천 달러 미만인 "장려" 분야 및 "허가" 분야의 외국인투자에만 국한되어 있었고, "제한" 분야의 외국인투자를 승인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2004년 7월부터는 국무원의 "투자제도개혁에 관한 결정"이 시행되어 지방 DRC가 총 투자가치가 미화 1억 달러 미만인 "장려" 또는 "허가" 분야의 외국인투자 및 총 투자가치가 미화 5천억 달러 미만인 "제한" 분야의 외국인투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잠정조치에 따라, 제한 산업에 대한 확인 권한은 지방의 발전개혁위원회보다 낮은 급의 기관에 위임될 수 없다.) 미화 3천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투자 사업의 경우, 지방정부는 심사 및 확인 일자로부터 20일의 업무일 내에

26) WT/TPR/S/161/Rev.1, II.(6)(iii), 83항.

NDRC에 심사 및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잠정조치 제20조) 이와 같은 절차는 NDRC가 사업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신청서에는 사업 상세정보[27], 투자할 총액, 등록자본 및 각 참여자의 출자분, 출자방식 및 계획, 수입되어야 하는 장비의 수량 및 가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른 구비서류로는 중국 내 및 외국의 사업참여자의 사업자등록증,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및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포함), 주거래은행이 발부한 자본신용증명서 등이 있다.

서비스 부문에 대한 시장접근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련의 투자 관련 규정이 새로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규정으로는 외국계 법률회사의 연락사무소 설치, 금융기관 · 보험 · 통신 · 자금운용 · 증권회사에 대한 외국인투자, 여행사 · 운송 · 유통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이 있다. 당국에 의하면, 중국 국내은행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출에는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다고 한다. 당국은 사업과 기업이 이윤 가능성이 있고 대부금을 갚을 능력만 있다면 대출이 승인된다고 한다. 기업의 소유권자에 근거한 제한사항이나 기업의 다른 항목에 근거한 제한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28]

(3) FDI 인센티브

1) 세금 인센티브

중국은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하여 저세금(low-tax) 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중국은 투자 장려가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 및 지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세금특혜대우를 제공한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자에 적용되는 세금은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매출세(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 포함), 관세, 토지증치세(land appreciation tax)[29], 자원세(resource tax), 도시부동산세, 농업세, 인화세(인지세), 계세(契稅, deed tax)[30], 차량선박사용허가세, 차량구입세, 선박톤세 등이 있다.

---

27) 이러한 정보로는 사업 명칭, 사업 운영 기간, 투자자에 관한 기본정보, 건설규모, 주요 건설 사업, 사업의 생산품, 주요 기술 및 채택된 기법, 상품의 목표 시장, 예상되는 고용인원, 사업의 건설부지, 토지, 물, 에너지 등 자원수요, 주요 원자재의 소비량, 환경에 대한 영향 평가, 관련 공공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등이 있다.

28) WT/TPR/S/161/Rev.1 각주 111.

29) 증치세는 한국의 부가세에 해당함

30) 중국내 토지 또는 부동산 권리 이전시 부과되는 세금임

중국 세제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기업소득세에 있어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FIEs)을 달리 대우한다는 점이다. 중국 세제는 기업소득세 외에도 세금에 있어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간 다른 대우를 하고 있는데, 그 예로는 FIEs는 경지점유세와 도시유지보호건설세 납부 의무가 없는 반면 도시부동산세, 차량선박사용허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국내기업은 주택재산세, 도시토지사용세 및 차량선박사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업소득세 기준세율은 33%이지만, 특별경제구역(SEZs) 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이나 경제기술개발구(ETDZs) 내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FIE에 적용되는 기업소득세 세율은 15%이다. 연해경제개방지역(coastal economic open zone)에 위치하며 제조업에 종사하는 FIE 또는 특별경제구역(SEZ)이나 경제기술개발구(ETDZ)가 있는 구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제조업에 종사하는 FIE의 경우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FIE가 서로 다른 지역에 복수의 자회사를 두고 있는 경우, 자회사들은 상이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세금 특혜는 국가급 하이테크 산업 개발단지나 서부지역에 설립된 국내기업 외의 국내기업에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0년 이상 운영된 제조업 관련 FIE는 수익을 내고 처음 2년 동안은 소득세 면제를 받고, 그 후 3년 동안은 50%의 감세혜택을 받는다. 이에 대한 예외로는, 석유, 천연가스, 희소금속(rare metal), 귀금속 등의 자원 개발에 종사하는 기업이 있으며, 이러한 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국무원에 의해 별도로 규율된다.(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관한 소득세법 제8조) 하이테크 산업 개발단지 내 하이테크 FIE 역시 2년간의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으며, 제조업에 종사하는 하이테크 FIE는 그 후 3년간 50%의 소득세 감세 혜택을 받는다. 수출에 주력하는 FIE 역시 연간 수출물량이 기업의 총 판매의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2년간의 소득세 면제 혜택 및 3년간의 50%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FIE가 국내에서 생산된 장비를 구입하였고 동 장비가 수출시에 관세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FIE는 동 장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FIE는 중국 서부지역이나 중앙지역의 지정 제조업에 종사하는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수익을 낸 처음 2년 동안 완전한 면세기간(tax holiday)을 누리게 되며, 그 후 6년간은 50%의 소득세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FIE가 조세당국의 승인을 받아 세금이 공제된 수입을 바로 재투자하거나 등록자산을 확대하거나 운영기간이 5년 이상 되는 다른 FIE를 설립하는 데에 수익을 사용하는 경우, 재투자액에 대한 기업소비세의 40%를 반환한다. 또한,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외국인투자자가 지급받은 배당금은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FIE에 발생한 실제손실(actual loss)은 다음 납부

년도에 차감 계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완전히 상쇄되지 않는 경우 최대 5년의 납부년도에 걸쳐 이월할 수 있다.

2) 투자촉진

상무부(MOFCOM)는 산하의 투자진흥청(Investment Promotion Agency) 및 국제투자진흥중심(International Investment Promotion Centre)을 통하여 외국인투자를 촉진한다. 상당수의 지방당국이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지방마다 투자진흥기관이 설립·운영 중이다. 또한, 중국은 국제투자무역박람회(International Fair for Investment and Trade), 하이테크 교역회(Hi-Tech Fair) 및 수출상품교역회(Export Commodities Fair)의 개최를 통하여 투자 증진을 꾀하기도 한다.

상무부(MOFCOM)는 FDI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영문으로 제공하고(http://english.mofcom.gov.cn) 매년 '중국 외국인투자 보고서'를 중문 및 영문으로 발간하는 등 투자자를 위한 정보 제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밖에도 "Invest in China" 사이트(http://www.fdi.gov.cn)에서는 FDI에 관련된 연구 및 세미나에 관한 정보, 뉴스, 법령 정보 및 경제·기술개발지역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얻을 수 있다.

D. 경쟁정책 분야

(1) 개요

중국의 경쟁정책은 중국의 경제가 중앙계획체제에서 보다 시장중심적인 경제로 점차 전환함에 따라 발생한 몇 가지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는 중국경제의 이원성 문제(공공소유체제가 경제의 주요 축임과 동시에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발전이 평행적으로 이루어짐), 독점기업이 경제에서 계속적으로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내국무역에 대한 장벽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있다.

중국은 1990년대에 불공정 경쟁 및 입찰 담합(collusive tendering) 등 특정 반경쟁 행위에 대응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해왔으나 카르텔, 반경쟁적 합병, 지배적 지위의 남용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현대적인 경쟁법은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입법구조상의 공백은 현재 진행 중인 제10차 NPC 중에 포괄적인 경쟁법인 반독점법의 제정으로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반독점법은 중국으로 하여금 중국 내 민간기업과 국영기업

간 비차별 대우를 보장하고, 독점 및 기타 반경쟁 조치에 의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며, 중국 내에서 운영 중인 외국기업에 대해 비차별 대우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것이다.

(2) 중국의 경쟁정책관련 문제

중국 경제는 그 구조상 경쟁의 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중국 경제는 비교적 집중화되지 않은 부문이 많이 있어 비경쟁적 관행의 범위와 영향이 최소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중국 경제의 또 다른 특성이 광범위한 독점기업에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독점기업에 주어진 배타적인 권리와 특권은 관련 상품과 시장에 대한 진입의 용이성과 경쟁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 또한, 자본시장의 불완전성, 지방정부의 규제 및 재산권의 불명료함은 신규사업과 자원의 효과적인 배분에 장벽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문제점으로는 지방정부의 행정 및 규제 조치에 따른 시장 "봉쇄"(blockage)라는 것이 있으며 이 문제는 국무원 및 기타 당국이 법령을 제정하여 대응한 바 있다.(2001년 국무원의 '시장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지역봉쇄 금지에 관한 규정, 2004년 상무부의 '시장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지역봉쇄결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등) 따라서 국내시장의 규모가 크고 경제의 일부 부문이 집중화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로 인해 반경쟁 시장 구조와 사업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법률과 정책 탐색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함에 있어, 지나치게 개입적이거나 차별적인 방식을 피하기 위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효과적인 국내 경쟁법률을 도입한 국가의 경험을 살펴보면, 정확한 경제 분석에 기초한 신중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격고정 행위, 시장분할 등의 경성카르텔(hardcore cartel) 및 입찰 담합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합병은 기업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것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하고 비차별적 집행이고, 시장의 경쟁에 대한 행정적인 억제의 제거는 집행에 중요한 보조요소가 된다.

중국에서는 효과적인 경쟁 정책의 이행이 "대기업과 대그룹" 전략으로 알려진 정부개발전략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대기업 · 대그룹" 전략의 목표는 규모의 경제와 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잘 계획된 경쟁법은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의 축적 및 이와 관련된 남용의 가능성을 방지하면서도 효율성이라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

(3) 경쟁정책 관련 법규정

중국의 반부정경쟁법(Law Countering Unfair Competition)은 1993년 12월 1일에 시행된 법으로 공정한 경쟁을 장려 및 보호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금지하며 사업 운영자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동 법은 위조, 뇌물수수, 허위광고 등의 "불공정 경쟁" 행위 외에도 다소 논란이 있지만 경쟁법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주장되는 다섯 가지 행위—입찰 담합, 약탈적 가격 설정, 공기업의 시장지배지위의 남용, 행정적 독점 및 묶음판매—를 그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동 법을 이행할 책임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SAIC)에 있다.

중국의 가격법(Price Law)은 1998년 5월 1일에 시행되었다. 동 법의 상당 부분은 경쟁문제보다는 가격에 관한 행정적 규제에 더 관련되어 있지만, 가격고정 카르텔, 약탈적인 또는 착취적인 가격 설정 및 가격차별에 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의 입찰법(Law on Bid Invitation and Bidding or Tendering)은 2000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으며, 입찰 담합의 금지에 관한 법이다. 이는 경쟁정책의 중요한 요소이며, 정부조달체제의 투명성과 경쟁성을 강화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중국의 대외무역법(Foreign Trade Law, 2004년에 채택됨) 제32조와 제33조는 구체적으로 대외무역에 있어서의 독점적인 행위와 불합리한 저가 판매 문제를 다루고 있다. 현재까지 동 규정에 의거하여 조사가 진행된 바는 없다. 2004년 5월 공평무역국 반독점과의 설치를 위하여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현재까지 동 연구의 결과를 이행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조치가 계획된 바는 없다.

반독점법(Anti-monopoly Law)은 제8회 및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NPC)의 의제로 논의 중이다. 2003년 승인된 국무원 조직개편안에 따라, 상무부(MOFCOM)는 반독점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상무부의 역할은 시장조작과 '유통질서' 규제, 시장독점과 지역봉쇄정책 해소, '유통질서' 정리, 유통체제 개혁, 개방적이고 경쟁적이며 질서 있고 통합적인 시장의 구축과 개선 촉진, 시장체제에 관련된 법률, 규정 및 기준의 연구와 제정, 시장독점, 산업독점 및 지역봉쇄의 해체 작업의 조정 등을 포함한다. 국가공상행정관리국(SAIC)의 소관업무는 불법적인 반경쟁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다. 이러한 당국 간 경쟁관련 조치의 집행 책임은 반독점법에 의해 할당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의 승인대상이다. 상무부는 반독점 관련 국제교류, 입법 및 조사를 책임지는 반독점조사국(Anti-monopoly Investigation Office)을 설치하였다.

신 반독점법안은 2005년 5월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공개된 바 있으며, 동 법안

은 모든 종류의 주요 반경쟁 행위(카르텔과 그 밖의 반경쟁 협정, 지배적 지위의 남용, 합병 및 지방당국의 경쟁 제한 조치, 즉 행정독점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동 법안의 주요 목적은 독점적 행위의 금지에 있다. 또한, 제1조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 보장이라는 목표를 언급하고 있다.

신 반독점법의 채택은 중국의 입법 발전에 중요한 진일보인 것이 분명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행에 달려있다. 동 법안에 대한 지적 중에는 이행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성 및 이행에 있어서 경제에 기초한 비차별적인 접근법을 채택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있었다. 또한, 동 법안의 효과적 이행과 관련된 다른 중요한 고려사항으로는 동법의 적용범위에 어떠한 부문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국유기업(SOEs)과 독점기업에 대한 동법의 적용 문제가 있다.

(4) 경쟁정책관련 국제협력

중국은 경쟁정책에 관한 다자적 및 양자적 협력 활동에 점차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특히 APEC, UNCTAD, OECD, WTO 등의 경쟁정책 관련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 함께 양자적 경쟁 정책 및 법률 교류와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 있다. 2004년 5월 중국 상무부(MOFCOM)는 경쟁 문제에 관한 중국-유럽간 회담(China-Europe Dialogue on Competition)을 위하여 EC와 협정을 체결하였다. 동 협정에 따라, EC는 중국에 대하여 강화된 기술지원과 역량구축(capacity building)을 제공하게 된다. 중국은 다른 국가 및 전문가 집단과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EC는 중국이 이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새로 제정되는 경쟁법을 경쟁, 무역 및 경제효율을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 미국의 국별무역장벽보고서

A. 개관

중국은 미국에 대하여 매년 무역흑자를 기록해오고 있으므로 미국에게 중국은 주요한 교역국 중 하나이다. 미국의 2009년 국별무역장벽보고서[31]에 따르면 중국은 2001년 12월

31) 미국은 매년 주요 교역대상국의 무역 및 투자관련 장벽들에 대한 국별무역장벽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동 보고서는 미무역대표부 (USTR)가 업계의 의견 등을 기초로 작성하여 매년 대통령과 상원금융위원회 및 하원 관련 위원회에

WTO 가입이래 전면적인 개편을 하였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WTO 가입시 약속을 온전하게 이행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양자간 및 다자간 채널을 통하여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다자간 채널로서는 WTO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여 중국을 제소하였으며, 양자간 채널로서는 1983년 설립된 미-중 통상무역위원회 (United States-China Joint Commission on Commerce and Trade: JCCT)의 감독 하에 다양한 작업반의 활동과 정례회의 등을 개최해오고 있으며 2006년 12월부터는 미-중 전략경제대화 (United States-China Strategic Economic Dialogue: SED)를 개시하였다. 이러한 채널을 통하여 미국은 특정한 무역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중국이 정부간섭에서 벗어나나 시장메커니즘의 제도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사실상 양국은 점진적이지만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예건대, 중국은 미국 첨단기술 상품을 중국 시장에서 잠재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정보보안 인증에 대한 최종적인 규정의 공포를 지연시키고, 그동안 양국 전문가들이 더 나은 방법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국은 국유기업이 국내 소프트웨어를 선호하도록 하는 정부의 간섭이나 영향력 없이 시장 조건에만 의존하여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도록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은 효과적인 지재권 (IPR)의 집행, 수입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 제한, 세관 및 검역 관료의 자의적인 관행, 서비스 분야에서의 규제, 투명성 등의 분야에서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SW산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서비스, 지재권, 경쟁정책, 표준/인증 절차, 투자, 정부조달 및 기타 분야에 한정하여 기술한다.

B. 서비스분야

중국의 서비스 시장은 장·단기적으로 잠재적인 성장가능성이 큰 분야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중국은 외국 서비스 공급자들이 시장접근 및 시장접근의 확장을 방지 또는 단념시키고 있다. 예컨대, 일부 분야에서 중국은 외국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자산제한이나 차별적인 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다른 분야에서는 최소 자본 요건의 수준이 높아 외국 공급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때때로 규제 또는 제한이 지나치게 부담스럽게 적용되기도

제출하는 연례보고서로서, 미국이 교역대상국별 양자 통상현안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진전 사항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지목된 국별 무역장벽에 대응토록 하는 기초를 제공한다. 2009년에 발간된 NTE 보고서는 교역량을 기준으로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58개국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범위는 수입정책, 표준/테스트/라벨링/인증, 정부 조달, 수출 보조금, 지재권 보호상태, 서비스 장벽, 투자 장벽, 반경쟁관행, e-교역 저해 무역장벽, 기타 장벽으로 분류된 10개 카테고리의 무역장벽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다. 미국 국별무역장벽보고서는 보험서비스, 개인연금 서비스, 은행서비스, 유가증권 서비스, 금융정보 서비스, 전자지불처리 서비스, 소매서비스, 우편서비스, 건설/엔지니어링/건축/계약서비스, 물류서비스, 통신서비스, 온라인 서비스, 시청각서비스, 관광서비스, 교육서비스, 법무서비스 각각에 대한 무역장벽을 기술하고 있다. 당해 서비스 분야는 SW산업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한다.

C. 표준, 테스팅, 라벨링 및 인증 분야

(1) 개관

WTO 가입과 동시에 중국 규제당국은 수입품과 국산품에 대하여 동일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를 적용하고, 동일한 요금과 처리 기간 그리고 항의절차(complaint procedures)를 적용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중국은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중의 또는 이중적인 적합성 평가절차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배타적으로 수입품에만 요건을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으며, 자국의 표준 개발자, 규제기관 및 적합성평가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며, 제안된 표준,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한 합리적인 기회를 허락하였다.

이러한 약속에 대비하여 중국은 WTO 가입 이전 표준, 테스팅 및 인증 (certification) 체제를 개편하려고 노력하였다. 2001년 4월 중국은 국내 표준 및 적합성 평가 기관과 입출검역 기관을 국가품질검험검역총국 (AQSIQ)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기관으로 통합하였다. 중국 관료들은 이러한 통합이 수입품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제거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중국은 국가품질검험검역총국 (AQSIQ) 산하에 준독립적인 두 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였다: a)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CNCA)는 국가의 적합성평가 체제를 통합하고, 실행하며 운영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b) 중국 국가표준화관리국 (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SAC)은 의무적인 국가표준을 설정하고 중국의 상품표준의 행정을 통합하며, 중국 표준 제도을 운영하고 자국 표준과 기술규정을 WTO 기술무역장벽협정하의 중국의 약속과 국제적 관행을 제휴하는 기능을 한다.

중국은 2002년 자국의 표준제도와 국제관행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개시하였고, 국제 표준의 사용과 채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고안된 국가품질검험검역총국(AQSIQ) 규정을 발표

하였다. 중국은 국제표준과의 관련성 및 일치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현행의 21,000건의 모든 기술규정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영향을 받는 분야에는 자동차, 자동차 부품, 통신장비, 무선네트워크, 시각 및 청각 코딩, 비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특정적인 표준은 때때로 특별한 기술적 또는 과학적 기반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특정적인 표준에 일치시키려면 상품생산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중국으로 시장 진입시 상당한 장벽이 되기도 한다.

중국의 표준 개발 절차에서의 개방성과 투명성의 부족은 많은 외국 기업에게 문제가 되고 있다. 방대한 중국의 표준 기관은 외국기업의 참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외국 회사의 회원 자격(membership)을 거부하기도 하고 외국인 소유 기업의 투표를 거부하기도 한다. 일부 경우 외국 회사에게 투표권이 없는 옵저버 지위를 허락하는 경우도 있으나 국내 투표권있는 회원들이 지불하는 수수료(fee)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업 및 산업계는 2005년 중국이 다른 국가의 표준기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자국의 관행을 국제관행에 일치시킴으로써 표준개발제도를 개편하는데 진전이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중국은 상무부(MOFCOM)을 공지기관으로 설정하였고, 상무부(MOFCOM)은 기술무역장벽협정에 따라 제안된 기술규정이나 적합성 평가절차를 WTO 회원국에게 공지해왔다. 그러나 실제 공지된 대부분의 모든 조치가 AQSIQ, CNCA 및 SAC로부터 나왔으며 다른 기관이 작성한 무역관련 기술규정은 거의 공지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간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경우 관련 기관은 의견을 제출하기에 불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당해 기관이 최종적인 조치를 내리기 전에 제시된 의견을 고려하는 시간은 거의 할당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수입품과 국산품에 대하여 동일한 표준과 수수료를 적용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국 기업들은 중국이 국내 산업이 개발한 토착 표준과 기술규정을 선호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SAC는 2004년 9월 관세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국의 표준 및 기술규정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의 전략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수입업자들은 지방 관료들이 중국의 WTO 가입약속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자의적인 기술규정과 표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기술규정과 표준에 대한 AQSIQ과 유관 기관, CNCA, SAC간의 협력의 부족, 중국 세관과 다른 정부부처 및 기관간의 협력의 부족, 중앙 및 지방 정부간의 협력의 부족으로 심화되고 있다.

미국의 국별무역장벽 보고서에서는 기술적 무역장벽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적합성 평가

절차, 무선인터넷망 인증, 제3세대 통신표준, IT상품의 의무적인 테스팅 및 인증, 신규 화학물 등록, 위험물질에 대한 제한, 재활용, 의료기기, 중국 국가 표준에 사용된 특허에서의 무역장벽 등을 지적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그중에서 SW 산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와 IT상품의 의무적인 테스팅 및 인증 분야에서의 무역장벽을 검토한다.

(2) 적합성 평가 절차

중국은 2003년 8월 중국강제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CCC) 마크를 중국 국산품 및 외국산 상품에 적용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인증마크가 요구되는 분야는 159개 카테고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자기기, 정보기술장비, 가전제품 및 부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은 중국강제인증 마크를 요구하는 상품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불만을 제기해오고 있다. 이들은 또한 중국이 강제인증마크 규정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많은 국내 상품들이 CNCA 규정에 따라 인증마크 요구하고 있음에도 당해 인증마크 없이도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일부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은 중국강제인증 마크 요건과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부담스럽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예컨대 당해 절차에 따르면 제조업체는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CNCA)나 그 위임자의 현장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현장조사의 비용은 제조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에 주재하지 아니하는 중소 기업의 경우 중국강제인증마크를 신청하는 것이 훨씬 더 부담스러운데, 그 이유는 신청서를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의 북경 사무소에 직접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저위험 상품이나 부품과 같이 더 이상 의무적인 인증을 보장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상품에까지 강제인증마크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는 중국강제인증마크를 위한 14개 인증기관과 153개 테스팅 기관을 두고 있다. 중국이 적합한 외국인 소유 합작회사를 적합성평가기관으로서 인증자격이 있는 경우 내국민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외국 적합성 평가기관은 인정된 바 없다. 결과적으로 수출자들은 이미 해외에서 평가되었던 테스트를 중국 실험실에 다시 받도록 요구받고 있으며 이는 비용 발생과 시장 진입의 지체라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미국에 주재하는 단 하나의 적합성평가 기관이 중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제조업체의 공장에 대한 추후 검사를 수행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에 주재하는 다른 적합성 평가기관에게는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가별 하나의 양해각서만 허락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제

한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설명된 바 없다. 미국의 여러 테스팅 실험실과 동 실험실의 서비스에 의존하는 미국의 수출자들은 중국의 강제인증마크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강제인증마크의 범위에 포함되는 상품의 범위가 늘어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04년부터 강제인증마크를 받아야 하는 몇몇 신규 상품 카테고리가 추가되었다.

적합성 평가와 관련하여 몇몇 수입자들은 수입품이 지정된 실험실에서만 테스트를 받을 수 있고 테스팅 및 인증 능력이 제한되어 때때로 적합성 평가가 국제적인 관행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된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고 불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기업들은 인증절차에서의 투명성의 부족과 부담스러운 요건들 그리고 인증처리과정 기간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의무적인 테스팅을 위하여 샘플과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기밀정보와 지적재산권의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인증을 위하여 상품을 평가하는 기술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정부,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풀(pool)로부터 구성이 되는데, 이들이 경쟁자들과 지나치게 밀접할 수 있고, 따라서 이익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업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일부 경우에는 수입상품을 테스팅하는 실험실이 국내 경쟁자와 제휴된 경우도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훔쳐갈 가능성이 높다.

(3) 일부 IT상품에 대한 의무적인 테스팅 및 인증

중국은 2007년 8월 WTO 기술무역장벽위원회에 일부 IT상품의 정보 보안(information security) 기능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하는 테스팅 및 인증에 대한 13개의 규정을 통고하였다. 동 규정은 최종적인 것은 아니며 제안된 규정으로 중국의 정보보안 국가표준에 대하여 테스팅과 인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국제시장에서 사용되는 국제적 표준과 다를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중국의 표준은 중국 규제자들이 요구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도 요구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만약 그렇다고 해도 그러한 알고리즘을 적용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도 불투명하다. 또한, 제안된 규정은 정보보안 분야로까지 강제인증마크 상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국제적 관행 하에서 적합성평가 절차의 대상이 아니다. 중국이 WTO 기술무역장벽위원회에 제안된 규정을 통고할 당시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제안된 규정의 이행일자를 구체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품질검험검역총국(AQSIQ)은 2008년 1월 28일 모든 13개 규정이 대상 상품에 대하여 2009년 5월 1일부터 의무적이라고 발표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WTO 회원국들은 여러 양국간 회의, 기술무역장벽위원회 회의, 중국 무역정책검토 회의, 그리고 2008년 9월 미-중 통상무역위원회(JCCT) 회의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중국은 2008년 9월 미-중 통상무역위원회(JCCT) 회의에서 중국 국내외 전문가들이 정보보안을 보장하는 최선을 방법을 논의하는 동안 동 규정의 최종 이행규정의 공고를 지연한다고 발표하였으며 미국은 지속적으로 이를 감시하고 있다.

D. 관세평가

중국 세관당국은 2002년 2월 수입품의 관세평가 검토 및 결정에 대한 조치를 발표하였다. 동 규정은 중국의 관세평가 방법과 WTO 관세평가협정 간의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정되었다. 관세당국은 뒤이어 수입품과 관련 로열티 및 인증 수수료의 관세 평가 결정에 대한 규칙(Rules on the Determination of Customs Value of Royalties and License Fees Related to Imported Goods)을 발표하였고, 동 규칙은 2003년 7월 발효하였다. 중국은 뒤이어 2003년 12월 11일 CD-ROM이나 플로피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포함하는 콘텐츠에 귀속된 가치보다는 CD-ROM이나 플로피디스크와 같은 전송매체의 가치에 기반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세를 부여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규정들은 5년이 지난 현재에도 조화롭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 미국 수출자들은 대부분의 항구에서 관세평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수출업자에 따르면 2002년 규정과 2003년 이행규칙에 따라 수입품이 일반적으로 거래 가격, 즉 실제 수입자가 지불하는 가격에 기반하여 평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세관 관료들은 여전히 더 높게 평가되는 '기준 가격'을 사용한다. 또한, 일부 중국 세관 관료는 SW 로열티나 인증 수수료와 관련하여 2002년 규정과 2003년 이행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들 관료들은 2003년 이행규칙에서 명백하게 수입에 관련되었거나 상품의 판매조건이 평가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WTO 가입이전 관행에 따라 관세 가능한 가치에 대하여 (예컨대, 수입된 개인용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사전에 설치된 경우) 자동적으로 로열티와 인증 수수료를 추가하고 있다.

미국 수출자들은 관세당국이 DVD와 같은 상품의 복사본의 생산과 같은 설명서가 포함된 디지털 미디어의 수입을 다루는데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중국 세관당국이 아직 생산되지 아니한 복사본의 추정가치에 기반하여 관세를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 수출자들은 비효율적이고 일관성 없는 통관절차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는 항구별로 다르고, 상당히 지체되고 있으며, 부과되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게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 지적재산권 분야

(1) 개관

중국은 WTO에 가입함으로서 미국을 비롯한 해외 기업과 개인이 소유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을 위한 국제적 기준을 따르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중국은 WTO 가입절차의 일부로서 관련 법체제를 개편하였고 국내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체적인 법과 규정을 마련하였다. 후진타오와 원자바오를 비롯한 중국의 지도자들은 지속적으로 지재권 보호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였으며 중국은 제기된 우려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법체제의 개선이 필요로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적재산권법과 규정을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써 법체제는 만연한 위조 행위 및 저작권 침해를 포함하는 여러 형태의 지재권 침해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마땅한 억제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낮은 지재권보호 수준은 중국의-형사, 민사, 행정적-집행체제가 취약함으로서 더욱 악화된다. 특히, 형사수사 개시에 대한 높은 법적 기준, 상품 (work)이 검열 승인을 받기전 기간 동안의 저작권 집행가능성 문제, 그리고 국경 통제(border enforcement)에 대한 중국법의 취약성은 우려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 간의 노력은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따라서 미국은 2007년 4월 WTO 분쟁해결제도에 협의를 요청하였고, 이후 2007년 12월 패널이 설치되었고, 2009년 1월 미국이 제기한 3개의 주요 쟁점 중에서 2개의 쟁점에서 미국이 승소하는 내용의 패널보고서가 회람되었다.

중국에서 영화, DVD 디스크, 음악, 책, 신문, 저널과 같은 합법적인 저작권 중심(copyright-intensive) 상품의 수입 및 유통에 대한 제한 조치와 관련 해외서비스 공급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한적인 조치가 유지됨으로서 지재권 보호수준은 여전히 낮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지재권으로 보호되는 상품의 도입을 지연시켜서 침해 상품이 중국내에서 당해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배하도록 해준다. 미국의 무역권한과 유통서비스 분야에서의 이러한 제한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7년 4월 WTO에 제소한바 있다.

미국은 지적재산권 보호 및 집행과 관련한 지속적인 우려를 반영하여 2008년 중국을 우선감시대상국에 포함시켜두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세관 자료에 의하면 2008년 미국 국경에서 압수된 지재권 침해 상품 중에서 중국이 8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중국의 지재권 및 표준에 대한 지침의 개발, 지재권 및 인터넷 침해에 대한 논의 및 침해물품 및 위조품의 판매 감시 등에 대하여 2008년 9월 미-중 통상무역위원회(JCCT) 산하 지재권 작업반의 정례회의 등, 여러 채널의 논의과정을 활용하였다. 중국과 미국은 2008년 10월 미-중 통상무역위원회(JCCT) 회의에서 저작권과 상표권의 보호/집행의 행정 및 실효성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인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기로 합의하였다.

(2) 지적재산권 법제도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중국의 법, 규정 및 시행규칙은 대부분 만족스러운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최근 WIPO의 인터넷 관련 조약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여러 주요 분야에서 여전히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에서 인터넷 접속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침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 및 지방 수준의 개정이 요구된다. 권리자들은 중국의 형사조치의 결여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범죄행위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적 부담이나 형사 소추기준도 중국의 지재권 보호체제를 약화시키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은 WTO에 가입하면서 전반적인 지재권 관련 법, 규정 및 시행조치를 개정해왔다. 중국은 특허법 및 규정, 상표법 그리고 저작권법의 개정을 완료하였고, 가입 후 상표법과 저작권법의 규정과 시행조치도 완료하였다. 또한, 중국은 특정한 분야, 즉, 폐쇄회로, 컴퓨터 SW 및 의약품과 같은 구체적인 분야를 포함하는 규정과 시행조치를 제정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WTO 회원국들은 2002년 TRIPs 이사회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법 및 규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중국은 2003년 새로운 지적재산권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에는 정보망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특허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고, 미-중 양자간 논의와 TRIPs 이사회에서 동 조치들이 검토되었다.

중국은 2008년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체제를 개편하는 행동계획 (Action Plan)를 발표하였다. 행동계획은 2008년 전국인민대표회의(NPC)에서 통과된 특허법과 상표법 및 여러 법과 규정을 개정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중국은 또한, 외국 권리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타 법조치에 대하여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07년 8월 반독점법을 제정하였으며, 동법은 2008년 발효하였다.

중국은 2008년 6월 국가지적재산전략을 발표하였다. 동 정책 문서는 중국에서 지적재산

의 창조, 개발 및 관리를 촉진하고 원활화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동 정책문서는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지재권 남용을 방지하며 중국에서의 지재권 문화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동 국가지적재산전략은 외국 특허 및 기술표준을 획득하기 위한 주요 분야를 선별하고 있다. 또한, 지리적표시의 보호,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속지식, 폐쇄회로 설계 등의 분야에서 보호수준을 개선하고 특허의 질을 개선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동 문서에서 중국은 지재권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법원을 설립하도록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미국은 반복적으로 중국이 추가적인 입법적 규제적 변화를 도입하도록 촉구해오고 있다. 양국간 회의 및 WTO TRIPs 이사회의 연례 검토회의에서 미국은 민사, 형사, 행정적 지재권 집행과 입법적 및 규제적 개정과 분야에서 중국이 법체제를 개선하도록 설득해왔다. 예컨대, 중국의 형사 수사의 기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형벌, 저작권 사건에서 이익 및 동기요건, 위조품 사건에서 동일한 상표의 요건, 최소 비례적 결과의 부재 및 범죄행위와 관련한 경찰조사의 개시 기준 등을 포함하는 형법의 집행 부분에서의 장애물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행정적 및 민사적 집행체제에서도 다양한 개선을 고려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디지털환경에서의 침해문제와 관련하여 전자적 정보망의 측면에서 중국의 저작권 보호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2006년 5월 정보망에서의 저작권보호 규정과 같은 인터넷 관련 주요 조치를 채택하였다. 동 조치는 2006년 7월 발효하였으며, 중국이 인터넷에 기반한 통신권의 보호를 개선하고자하는 노력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조치는 여러 측면에서 명확화 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중국은 침해를 효과적으로 촉진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인터넷의 “deep linking"이나 기타 서비스가 불법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지 아니하였다. 동 조치의 발표는 인터넷기반저작권보호행정조치에 환영할만한 조치로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권리자의 불만을 접수하면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에는 불법적 이익물의 몰수에서 10만 위안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미국은 중국이 2007년 WIPO 인터넷 조약에 가입한 것에 대하여 환영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여전히 국내체제에서 중국의 의무를 온전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조약들은 인터넷에서 저작권 보호를 보장하는 중요한 국제적 규범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중국의 경우 브로드밴드 (broadband) 접속의 국내 인터넷 사용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가입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은 또한 중국의 지재권 법체제에서 여전히 여러 취약점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즉, 외국기업의 이름에 대한 사이버 스쿼팅(squatting)이나, 디자인 도용, 상표, 다른 기업의 상표를 디자인 특허로서 등록하거나 허위 인증 문서나 위조품을 위한 문서 위조, 지리적 원산지의 허위 표시 등의 분야에서 중국의 법체제가 여전히 침해 활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때때로 이러한 침해활동을 조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중국과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중국공상행정관리국(State Administration of Industry and Commerce: SAIC)은 2007년 8월 기업의 등록절차에서 잘 알려진 상표와 기업명의 무허가 사용에 대한 6개월 캠페인을 개시하였다.

미국은 의약품 분야에서도 일련의 우려를 표명하였다. 외국제약회사가 이들의 상품을 승인받기 위하여 제공한 비공개실험과 기타자료가 불공정한 상업적 사용에 이용되지 않도록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또한, 미국은 중국이 좀 더 건전한 특허제도를 채택하도록 장려하여왔다. 추가적으로 중국의 의약품 마케팅 승인제도에서의 지체는 위조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국내 화학물 제조업자들에 의한 의약품 재료 생산에 중국의 규제감시가 부적합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은 2008년 의약품 분야에서 중국의 규제체제를 개선하려는 노력해오고 있다.

중국의 특허관련법과 관련하여 권리자들은 특허 가능한 대상의 범위가 좁아 유전자 식물, 동물 및 치료방법이나 진단에 대한 특허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최근 개정된 특허법에서는 발명에서 사용된 유전자적 자원의 출처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특허 신청이 당해 공개요건을 기반으로 거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3) 지적재산권의 집행

중국의 중앙정부가 WTO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의 지적재산권 법 및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데 강력한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효과적인 지재권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재권 침해는 중국에서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다. 지재권 집행은 중국 정부부처와 기관간의 협력 부족, 하위 국가기관과 중앙정부간 협력 부족과, 훈련의 부족, 제한된 자원, 집행절차와 그 결과로서의 투명성 부족, 그리고 지방의 보호주의와 부패로 인하여 효과적인 집행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의 반복되는 지재권보호 캠페인과 중국 법원에 제기되는 민사적 지재권 소송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침해 및 위조 행위는 2008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지재권 침해는 영화, 음악,

사운드레코딩, 의류, 출판, 사업 및 오락 소프트웨어, 의약품, 정보기술, 의류 등 넓은 범위의 산업에서의 상품, 브랜드 및 기술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이 중국에서 외국 권리자들을 대표하는 무역협회의 운영에 대하여 고용인 수의 제한 등의 제한을 두고 있어 중국의 법체제를 이용하여 지재권 집행을 지원함으로써 권리자들을 돕기 위한 무역협회의 능력은 저해되고 있다.

미국 산업계는 중국에서의 침해수준이 2008년 데이터 기준으로 레코딩 및 음악 산업에서만 90%에 달하며, 비즈니스 SW 침해율도 대략 80%에 이른다고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2007년보다 전혀 나아지지 않은 수치로서, 침해된 광디스크의 무역은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공장에서 공급되고 있고, 밀수업자에 의하여 공급되어 지속적으로 번창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소규모 소매점은 지재권이 침해된 영화 및 음악의 주요 상업적 판매처가 되고 있다. 정부당국의 지속적인 캠페인의 결과로 거리에서의 지재권 침해상품의 판매는 감소하였으나, 서적이나 저널의 침해와 비즈니스 SW의 최종사용자의 침해는 여전히 우려의 대상이다. 중국의 규제기관은 2006년 후반 및 2007년 대학캠퍼스에서 교과서의 지재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으며, 2008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저작권 당국 (NCA)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침해와 대학 등의 네트워크에서의 침해는 증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침해와 관련하여 중국은 2006년 JCCT 회의기간동안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였다. 동 규정은 컴퓨터에 허가받은 운영체제 SW를 사전에 장착하도록 하고, 정부기관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컴퓨터만을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은 영화 분야의 침해에 대하여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해왔으나, 권리자들은 몇몇 주요 도시에서 미개봉 영화의 침해에서는 의미 있는 개선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한 예로써 중국에서 개봉 승인이 나지 않은 작품에 대한 지재권 보호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미국이 2007년 제소한 WTO 사건에서 쟁점화 되었다.

세관 집행 분야에서, 미국은 중국 세관당국이 수출용 위조품과 침해상품에 대한 효과적인 집행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2007년 중국 세관 당국은 미국의 세관당국과 협력하기로 협정을 맺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국무원이 2003년 12월 공포한 세관의 지적재산권보호규정과 세관당국이 2004년 5일 공포한 동 규정의 시행규칙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동 규정은 압수된 위조 및 침해상품이 상표만 제거하고 공개적으로 경매되도록 허락하고 있다. 이러한 외조 및 침해 상품들을 다시 시장에 돌려보내는 것은 소비자를 혼란시킬 수 있으며, 합법적인 상품의 명성을 저해

할 것이며 침해행위를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원활화시켜줄 것이다.

미국은 2008년 중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 관료와 지재권 집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협력해오고 있다. 특히 형사적 구제제도의 활용을 증대시킬 필요성과 민사적 및 행정적 집행 메커니즘을 개선하기 위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 당국은 중국의 상대 기관과 정례적인 양자간 논의를 지속해오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지재권 기준, 지재권 집행방법 및 기타 법의 지배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오고 있다. 추가적으로 2008년 9월 미국과 중국은 JCCT 지재권 작업반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8년 11월 미국과 중국 정부 및 산업관료들이 함께 모이는 회의가 개최된바 있다.

미국은 WTO 회원국과 함께 중국의 지재권 집행에서의 개선을 추구하기 위하여 노력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TRIPs 이사회 회의와 WTO 분쟁해결제도의 이용을 통하여 이루어진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지재권 침해 수준과 집행활동에 대한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하여 TRIPs 협정 제63조 3항에 따른 요청을 하였으나 이러한 요청에는 일본과 스위스도 참여하였다. 추가적으로 미국과 EC는 지난 2년 동안 중국의 지재권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증대하고 있다. 중국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APEC)의 회원국 지위도 지역적 지재권 관행을 발전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평가된다.

중국은 지재권 집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간 협력은 일부 성공적인 집행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예컨대, 중국의 공공안전부(Ministry of Public Safety: MPS)는 법집행에서의 협력의 일환으로 미-중간 지재권 범죄, 특히 조직적인 지재권 침해 범죄 및 공공의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항하기 위하여 양국 간 협력해오고 있다. 특히 중국 공공안전부는 미-중 공동 침해조사 및 작전을 실시하여 29만개의 위조된 SW 디스크를 압수하고, 25명의 중국인을 체포하였으며, 중국 현지에서 여러 불법적 공장을 제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협동작전으로 20억 개의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복사본을 유통한 것으로 추산되는 범죄 집단이 해체되었다.

긍정적인 측면은 중국 국내사업의 구조가 지재권 보호와 집행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중국의 권리자는 수많은 디자인 특허, 상용모델(utility models), 상표 및 식물 종에서의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들이 주요 특허 신청자들이다. 대부분의 지재권 집행 노력은 이제 중국인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미국 산업은 일부 중국의 특별 캠페인이 실제 체포 및 침해물품의 압수의 결과가 되었다는 점을 확인하고는 있으나 압수된 물건의 처리와 형사사건의 결과는 투명성의 부족으로

불투명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2008년 행동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지재권 침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좀 더 특별한 노력을 개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미국은 중국이 그러한 노력을 인터넷 상의 침해 및 위조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이 전문적인 지재권 법원의 설치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속한 상표권 검토를 적용하고 지방행정, 경찰 및 사법당국이 이용 가능하도록 전문 검사 제도를 고려하도록 제안한바 있다.

F. 투자 장벽

(1) 개관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는 새로운 투자 장벽에도 불구하고 증가하였다. UN무역개발회의 2008 세계투자보고서 (World Investment Report)에 따르면 중국은 2007년 외국인 직접투자로 835억 달러를 받았다. 중국은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계 제3위의 투자대상국이나 세계은행의 2009 Doing Business Report에 의하면 사업하기 쉬운 국가 순위는 83위이다. 투자자들은 2008년에도 지속적으로 투명성, 일관되지 아니한 법규정의 집행, 취약한 지재권 보호, 부패와 계약과 판결을 집행하지 못하는 신뢰할 수 없는 사법체제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중국의 지도부는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중국을 더 개장하겠다는 약속을 해오고 있다. 예컨대, 중국은 2007년 12월 개최된 미-중 통상무역위원회(JCCT) 회의에서 투자규정에서의 비차별 원칙과 투자개방에 대한 약속을 반복하여 확인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근래 외국인 투자를 차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예컨대, 2006년 12월 국유자산감독위원회(SASAC)는 국유자본조정및국유기업구조조정추진에관한의견을 발표하였다. 동 의견은 국가경제에 중대한 것으로 간주되는 분야의 목록을 제시하였는데, 동 목록에는 핵심 산업으로서 장비제조, 자동차, 전자정보, 건설, 철강, 화학, 연구 및 디자인, 과학기술산업과 같은 중점 산업을 포함하고 있다. 국유자산감독위원회(SASAC)는 이러한 분야에서 국유산업에 외국인투자를 금지함으로써 외국인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2006년 채택된 중국의 외국인투자자에 의한 국내기업의 합병인수에 대한 규정에서 '국가경제안보'나 '핵심 산업'과 같은 용어를 포함하였는데, 이러한 용어는 보호주의적인 정책의 증대를 암시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2007년 발간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Foreign Investment

Catalogue)에 따르면 향후 중국의 투자 정책이 기본적인 제조업이 아닌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첨단기술 연구개발, 에너지 효율, 현대화된 농업 및 서비스 등)를 대상으로 더욱더 선별적일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중부, 서부 및 북동부에 다국적 기업의 현지 본부를 설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의 혜택을 골고루 분배되도록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의 증가하는데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때때로 중국에 특정적인 표준의 개발이나 보조금의 사용 증대와 같은 산업정책이 수반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는 경쟁으로부터 비효율적이거나 독점적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경제원칙에 반하는 보호적인 수단으로 보인다.

(2) 투자요건

중국은 WTO 가입으로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TRIMs Agreement)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동 협정은 투자조치가 GATT Ⅲ조상의 내국민대우 의무나 GATT Ⅺ조상의 수량제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가입의정서에서 자국의 법, 규정 및 조치에서 수출실적 요건, 현지부품사용, 외국 환율거래요건 등을 제거하기로 약속하였고, 이러한 요건들을 계약에 포함하지 않도록 약속하였다. 또한, 중국은 기술이전과 같은 요건이나 이러한 요건들에 대한 투자 승인이나 수입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데 합의하였다.

중국이 자국의 법과 규정을 WTO 투자협정에 일치시켰으나 일부 개정된 법과 규정은 공식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으면서도 중국으로의 기술이전을 장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전히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 미국 기업들은 이러한 장려가 실제로 많은 경우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

중국의 외국인투자의 목적은 2년에 한 번씩 발간되는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Foreign Investment Catalogue)에 정의되어 있다. 가장 최근의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은 2007년 11월에 발간된 것으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상무부(MOFCOM)가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발표하였다. 동 목록에 화학물, 자동차 부품, 신재생 연료생산 등을 포함한 몇몇 분야에서 새로운 제한조치가 있었으며, 저작권 중심의 상품과 유전자변형 종자에 대한 금지 및 제한은 유지되었다. 또한, 안티몬(Antimony), 형석(Flourite), 몰리브덴

(Molybdenum), 주석(tin), 텅스텐(tungsten)과 같은 광물은 제한된 카테고리에서 금지된 카테고리도 편성되었다. 또한, 동 목록은 고속도로 화물운반 및 현대적 물류에서의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였으나, 모든 생산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을 장려되는 카테고리에서 제외하였다.

2006년 및 2007년 중국 규제자들은 외국인 회사가 중국 시장의 투자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몇몇 조치를 발표하였다. 예컨대, 2006년 국무원(State Council)은 산업용기계제조산업의 재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는데, 동 의견은 16개 종류의 장비제조업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시장점유를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부품에 대한 특혜 수입 관세와 같은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주요 국내 회사를 소유 또는 통제하는 외국기업 및 개인에 대하여 행정적 승인에 대한 요건을 두는 방법 등으로, 산업용기계 제조 산업 분야에서의 외국인 투자를 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상무부(MOFCOM)와 5개 정부기관은 외국인투자에 의한 국내기업의 인수규정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2006년 9월 발효되었다. 동 조치는 외국인투자자가 참여하는 인수 합병의 현행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서 제안된 거래를 거부할 수 있는 '국가경제안보' 검토 절차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동 규정은 외국인의 국내기업의 인수 합병으로 국가경제안보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산업 분야의 국내기업을 외국투자자가 실제적으로 통제하게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상무부(MOFCOM) 승인을 요구하는 유명한 중국 상표나 브랜드의 권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동 규정은 국내인수 대상이 적절하게 가치평가 되었는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상무부(MOFCOM)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에 의한 일정한 인수의 경우 상무부(MOFCOM)가 반독점 심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상무부(MOFCOM)은 2007년 3월 동 규정에 따라 반독점 공지의 내용에 대한 요건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상무부(MOFCOM)는 공지 및 허가절차를 제공하였으나 당해 거래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당해 회사를 대표하는 외국 법률회사의 번호사 면담을 거부하였다. 2008년 12월 현재 어떠한 외국 인수 및 합병이 이러한 규정에 따른 반독점 심사 절차에서 공식적으로 거부된 적은 없다. 시행조치가 아직까지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외국인투자자는 이미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저명한 중국기업의 지배적인 주식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제안되었던 거래는 중단 상태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동 규정은 이제 외국인 소유 주식을 합병의 대가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를 원활하게 하는 변화에 해당한다. 상무 (MOFCOM) 관

료에 의하면 2008년 8월에 발효되는 반독점법은 인수합병의 반독점 심사에 관한 2006년 규정을 대체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2006년 11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5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외국 자본 사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동 계획에 따르면 2006~2010년 동안 양적인 외국인 투자에서 질적인 투자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되고 있다. 투자에서의 초점은 국내자본 및 해외 환율 부족분을 보완하는 것에서 선진 기술, 경영 전문성 및 재능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생태계, 환경 및 에너지 효율성에 좀 더 관심을 두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m 동 계획은 외국 기업에 대한 과세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자본 독점의 출현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경제안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지재권 남용을 망지하기 위하여, 외국 기업의 주요 국내기업 인수를 제한하고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국유자산감독위원회(SASAC)는 2006년 12월 국유자본조정및국유기업구조조정추진에관한의견을 발표하였다. 동 의견에서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것으로 간주되는 분야를 제시하였는데, 동 목록에는 자동차, 전자정보, 건설, 철강, 화학, 연구 및 디자인, 과학기술산업과 같은 핵심 산업이 비교적 엄격한 국가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국유자산감독위원회(SASAC)는 방위산업, 전력, 석유화학, 통신, 석탄, 민간항공, 해운 등의 7대 전략사업을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핵심 중점산업으로 지정하고, 이들 분야에서 국유자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국유자산감독위원회(SASAC)가 이러한 정책을 어떻게 이행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4) 기타 투자 관련 쟁점

1) Venture capital and private equity

중국은 2003년 3월 첨단 기술 및 신기술의 창업 자본을 제공하는 외국 기업의 외국인투자회사의 설립을 허락하는 신규규정을 발효시켰다. 이러한 규정은 자본 요건을 낮추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해외로부터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기금을 운영할 외국인 투자회사에 의한 투자를 허락하고 있으나 법인 형태, 주식 발행 및 이전, 투자회수권한(investment exit option)에 대한 제한이 있다.

중국의 venture capital 과 private equity 분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투자회

수권한은 일정정도 외국인 참여를 제한시켜왔다. 대부분의 외국 venture capital 과 private equity 투자는 실제로 역외지주회사 형태이며, 이는 기타 해외 FDI와 같이 과거 중국정부의 승인 없이 이전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2006년 9월 신규규정을 발표하였는데, 동 규정은 이러한 방법으로 지방의 자산이 해외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Vehicle)[32]로 이전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한다. 2006년 규정은 중국 회사가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기 위하여 적어도 6개 기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2006년 9월 해외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규정을 시행하였으나 동시에 내국이 전용 A-share market에 상장하는 것은 용이하게 변경하였다. Private equity 투자자는 A-share market에 상장하는데 성공하더라도 이들의 상장된 주식(holdings)을 3년 동안 현금화 할 수 없다.

중국 정부는 2005년 가을 국내 venture capital 기업에 대한 신규규정을 제정하였고 동 규정은 2006년 5월 1일 발효하였다. 동 규정은 국내 venture capital 산업을 양성하는 목적의 규정으로서 회사설립절차를 간소화하고 venture capital 회사의 자본요건을 완화하였다.

개정된 합작회사법(Partnership Law)은 2007는 6월 발효하였고 제한된 합작회사의 형성을 허락하고 있다. 동 법은 투자자의 책임을 제한하고 합작회사의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법은 국내합작 회사만을 규율하며, 외국합작회사는 외국인투자합작회사규정에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동 규정의 초안은 관련 정부기관과 협의 중이다. 새로운 규정은 private entity 및 venture capital 기업을 포함하는 외국인투자합작회사에 대하여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지주회사(holding companies)

중국은 지주회사의 설립이 몇몇 대규모 투자의 회사에만 적합하도록 최소자본요건을 규정하였으나 지주회사의 범위와 운영에 대하여 일부 제한을 완화하였다. 지주회사는 자회사를 통하여 인적자원을 경영하며 특정한 시장조사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환율수지 규형을 유지하기 위한 제한과 지주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지주회사의 재정적 운영에 대한 제한은 그대로 있다. 지주회사내의 수익과 손실의 통합(consolidation)은 금지되어 있다.

32) 특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Vehicle)이란 부동산이 딸린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사들인 뒤 이를 근거로 만기 5~7년짜리 채권(자산담보부채권 · ABS)을 발행, 국내외에 매각하는 전문회사를 의미한다. 현대시사용어사전, http://www.donga.com/fbin/dict?n=sisa&a=v&l=1330, 2009년 11월 10일 검색

중국은 국내 주식시장(equity market)을 해외 기업의 투자에 개방하기 시작하였다.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QFII) 프로그램을 통하여, 외국의 유가증권 기업들이 QFII 지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안화로 표시된 A-share market에 제한된 접근이 허락된다. 2008년 12월 현재 중국은 72개 외국 기업에 대하여 QFII 지위를 허락하였다.

4) 자본시장의 접근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은 국내 및 해외 주식시장에 접근할 수 없으며, 채권이나 자산(equity)을 매각할 수 없고, 정상적인 합병, 인수 및 매각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은 2007년 12월 개최된 미-중 전략경제대화(SED) 회의에서 관련 건전성 규정에 따라 적격외국인투자회사가 위안화로 표시된 주식을 발행하도록 허락하고, 적법하게 상장된 기업은 위안화로 표시된 회사채권도 발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일부 외국 투자로부터의 자본유입 압력, 지나친 유동성에 대한 중국의 정책입안자들의 우려 및 국내경제의 인플레이션 상승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 환율거래는 사안별로 공식적인 검토에 따라 결정되며 승인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자본유출을 허락하는 최근 규정과 중국 기업이 해외로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중국 정부 관료의 발언은 중국이 지속적인 대규모 자본유입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였다는 것을 임시한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업은 이익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동시에 대부분의 주요 외국 기업들은 이익을 중국 시장에서 내보내기 보다는 재투자하는 것을 선호한다.

G. 정부조달

정부조달은 정부기관이 그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WTO에서 정부조달 분야는 정부조달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GPA)에 규정되어 있다. 정부조달협정 (이하 “GPA”라 함)은 복수국간 협정으로서 WTO 회원국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의무를 부담할 것으로 요구되는 다른 WTO 협정과는 달리 동 협정에 서명을 하고 약속을 한 국가에게만 적용된다.[33]

33) 현재까지 유럽연합을 1개국으로 하였을 때 14개국이 가입하였다: 캐나다, EC, 홍콩,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가입한 국가에게만 유효하기 때문에 현재 중국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협정이다. 그러나 중국은 WTO 가입시 약속한바와 같이 2002년 정부조달위원회의 옵저버가 되었다.

중국은 또한 가입시 GPA에 가능한 한 빨리 가입하기로 약속하였고, 이러한 약속에 기반하여 2006년 4월 JCCT회의에서 가입신청과 2007년 12월 그 범위에 대한 초기 제안(Initial Offer)을 제출함으로서 GPA의 가입절차를 시작하였다. 미국은 2008년 5월 중국의 초기 제안의 부속서I에 대한 초기 요청(Initial Request)을 제출하였다. 중국은 2008년 9월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된 제안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미국과 다른 GPA당사국들은 중국의 정부조달범위를 다른 가입국의 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중국의 초기제안에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중국은 이제 대하여 2008년 9월 GPA 가입과 관련한 정보제공을 위한 체크리스트 목록(Checklist of Issues for Provision of Information)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2008년 미국과 중국은 중국의 GPA 가입 조건에 대한 3번의 협상을 개최하고 중국의 GPA 가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들의 제한적인 조달체제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은 2008년 12월 미국의 조달체제 및 미국의 GPA 대상분야의 범위에 대한 중국의 질문에 답변하였다. GPA가입이 완료될 때까지 중국은 가입의정서에서 모든 중앙 및 지방정부가 이들의 조달업무를 투명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중국은 또한, 만약 외국 공급자에게 조달분야를 공개하는 경우 이는 모든 외국 공급자에게 입찰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MFN대우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는데 합의하였다.

중국은 2003년 1월 정부조달법(Government Procurement Law)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동 법은 GPA의 원칙을 반영하고 UN의 상품조달 모델법의 조항들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조달법은 중앙 및 하부 정부기관이 현지 상품과 서비스에 우선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달법의 채택 이래 재무부(MOF)는 여러 시행조치를 제정하였으며, 그중에는 상품 및 서비스의 정부조달을 위한 입찰의 신청, 제출, 평가에 대한 상세한 절차에 대한 규정과 정부조달법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규정이 있다. 재무부는 또한 정부조달기회에 대한 공지 및 정부조달관련 공급자에 의한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조치를 마련하였다. 정부조달법은 공공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데, 공공사업분야는 적어도 중국의 조달분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2000년 입찰경쟁법(Bidding and Tendering Law)에 속한다.

일본, 한국, 리히텐슈타인, 아루바에 대한 네덜란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미국. http://www.wto.org/english/tratop_e/gproc_e/memobs_e.htm, 2009년 11월 12일 검색.

중국은 2005년 정부조달에서 무선암호화표준(WAPI)에 맞는 상품을 선호하는 조치를 제정하였다. 국무원은 2006년 중장기과학기술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국가바전개혁외원회(NDRC) 및 기타 정부부처 및 기관이 이러한 전략을 이행하는 규정을 작성하게 된다. 그러한 전략은 중요한 산업정책의 수단으로서 국내상품의 구매를 선호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국가발전개혁외원회(NDRC)는 2007년 9월 전자정부 프로젝트에 대한 규정을 시행하였는데, 동 규정은 국가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위하여 국내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우선권을 두도록 의무화하였다.

중국 재무부는 2007년 12월 중국 정부의 외국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두 가지 조치를 발표하였다. 첫 번째는 수입품의 정부조달에 대한 행정조치로서 외국 수입 상품과 기술의 정부조달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두 번째 조치는 초기조달 및 토착혁신상품(Initial Procurement and Ordering of Indigenous Innovation Products)에 대한 정부조달 행정지침으로서 토착혁신상품의 정부조달을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이 개발한 중국 상품으로 제한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중국은 GPA 가입을 완료할 때까지 이러한 조치들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사태의 추이를 감시하고 있고, 또한, 중국의 GPA 가입이 신속하게 건전한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국 및 다른 GPA 당사국들과 논의하고 있다.

H. 반경쟁행위

(1) 경쟁정책 법규정

중국은 경쟁정책과 관련한 여러 법과 규정을 유지해오고 있다. 중국의 주요 경쟁정책 법은 반/부경쟁법(Anti-Unfair Competition Law)로서 1993년 전국인민대표회의 (NPC)에서 제정되었다. 동 법은 (a) 상표, 이름 또는 무허가 라이선스 패키징, 허위광고 및 기타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할 의도의 관행을 금지하며; (b) 뇌물수수, 영업비밀의 구매 및 판매의 불법화하고; (c) 한 상품의 판매에 다른 판매를 묶거나 판매에 비합리적 조건을 부과하는 기업의 능력을 제한하며; (d) 담합을 금지하고 경쟁자를 해하는 거짓 사실의 유포를 금지하며; (e) 이론적으로 법적으로 권한 있는 독점에 대한 기업의 관행을 제한하고 사기업이 국영기업과 일정한 상업거래에 있도록 요구하는 정부의 권한을 제한한다.

중국은 경쟁을 제한하는 일부 법과 규정을 유지해오고 있다. 예컨대, 중국 정부는 특정

분야에서의 생산이 독점이나 인정된 과점 또는 이에 가깝게 집중되도록 입법해왔다. 다른 국가에서 이러한 기업들은 전기나 운송과 같은 자본집약적인 분야 또는 고정된 회선의 전화 및 우편 서비스와 같이 전국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산업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주요한 법으로서는 전력법(Law on Electricity), 민간항공법(Civil Aviation Law), 통신규정(Regulations on Telecommunication), 우편법(Postal Law), 철도법(Railroad Law) 및 상업은행법(Commercial Bank Law)이 있다. 이러한 법과 규정의 집행은 그 본래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불공평하며, 지방에서의 일관성 없는 집행의 결과로서 불공평하기도 하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특정한 기업들, 즉, 국유 기업들과의 경쟁을 규제하기 위한 중국 정부 당국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주로 고용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과적인 조치의 궁극적인 수혜자는 분명하지 않다. 또한, 지방정부는 빈번하게 각 성간(interprovincial) 무역을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하기도 한다. 중앙정부가 자신의 경쟁정책 조치를 지방에서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방정부의 규정은 계속해서 특정 수입상품의 시장접근을 제한 할 것이며, 생산비를 상승시키고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시장기회를 제한할 것이다.

전국인민대표회의(NPC)는 2007년 8월 반독점법(Antimonopoly Law)을 통과시켰고 동법은 2008년 8월 발효하였으며 현재 중국은 이행규정을 작성하고 있다. 중국의 반독점집행 당국이 관련 법 또는 행정규정에 의해 허락된 무역에 대한 제한을 다룰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또한, 채택절차에서 전국인민대표회의(NPC)는 제IV조와 제VII조를 추가하였는데, 동 규정은 국가경제에 중요한 것으로 결정된 국가의 자회사(state-affiliated enterprises)를 보호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소비자 복지가 아닌 거시경제적 요소들 (e.g. 사회적, 고용의 목표)에 기반 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잠재적인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반독점법의 제XXXI조에 따르면 중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안된 대내투자(inward investment)를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동 법이 외국기업을 목표로 하고 지방의 기업들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 대내투자(Inward investment) 제한 조치

중국은 2006년 대내투자 정책을 수정하였다. 여전히 외국인투자를 받아들이는 한편 중국은 해외경쟁으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이는, "전략적" 범위에서 대내투자(Inward investment)를 제한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투자 장벽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정책에 따라 국무원의 2006년 산업기계제조산업의재활성화에대한의견(Opinions on the Revitalization of the Industrial Machinery Manufacturing Industries)은 16개 장비제조산업분야에서 국내기업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도록 요구하였다. 상무부 및 5개 기관은 2006년 8월 해외 M&A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였는데, 동 규정은 해외거래에 대한 반독점검토는 물론 제안된 거래를 거부하는데 애매한 "국가경제안보"(national economic security)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2006년 외국인투자에 대한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동 계획은 외국기업이 주요 중국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제한하고, 해외자본 독점의 출현을 방지하며, 산업적 안보를 제공하고,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국유자산감독위원회(SASAC)는 2006년 12월 중국이 외국인 참여를 제한하여야 하는 주요 경제 분야 목록을 발표하였다. 2007년 11월에 발간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Foreign Investment Catalogue)에 따르면 중국의 대내투자 정책은 매우 선별적이며, 기본적인 제조업보다는 고부가가치 분야 (e.g. 첨단기술 연구개발, 에너지 효율, 현대적인 농업 및 서비스, 등)를 적극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 중 일부는 동일 분야에서 경쟁하는 국유기업을 운영하는 기관에 규제권한을 부여함으로서 이익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정책에서 "국가경제안보"라는 용어는 정의되지 아니한 상태이며 이러한 애매한 기준과 불확실하게 정의된 절차로 인하여 중국 투자 정책은 더욱더 불투명해졌다.

I. 기타 장벽

(1) 투명성

중국은 가입의정서에서 무역과 관련된 모든 법, 규정 및 기타 조치를 공고하겠다고, 이들을 집행하기 전에 이들에 대한 의견을 받는 합리적인 기간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중국은 또한 무역관련 조치들의 공고를 위한 관보를 설립 또는 지정하겠다고 합의하였다. 중국은 신규 무역관련 법, 규정 및 기타 조치를 집행 90일 전 WTO 공식 언어로 번역하여 제네바에 위치한 WTO 사무국에 제출하겠다고 합의하였다. 중국은 WTO 교역국 및 해외기업들이 이러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여러 문의처를 설치하는데 합의하였다.

2001년 12월 국무원 규정에 따르면 신규 또는 개정된 규정은 시행 30일 전 공개되어야

하며, 거의 모든 신규 및 개정된 법과 규정은 제정일 직후 그리고 시행일 이전에 공지되어 왔으며 이는 WTO 가입이전의 관행에서 개선된 측면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과 규정은 여러 저널이나 인터넷에 공고되어오고 있다.

중국은 2002년 후반 중국해외경제무역관보(China Foreign Economic and Trade Gazette)를 무역관련 조치를 공개하는 관보로 지정하였다. 국무원은 2006년 3월 상무부(MOFCOM) 관보에 공지하기 위하여 모든 중앙, 성 및 지방 정부로 하여금 그들의 무역관련 조치를 상무부(MOFCOM)로 보내도록 하는 고시를 내렸다. 지금까지 국무원의 고시는 온전하게 이행되지 못하였다.

국무원은 2001년 12월 명시적으로 의견을 제기하는 기회와 공청회를 허락하는 규정을 제정한바 있다. 그러나 많은 중국의 부처와 기관은 WTO 가입이전의 관행을 따르고 있다. 새로운 법과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안을 작성하는 부처 또는 기관은 일반적으로 다른 부처, 기관, 중국인 전문가, 영향을 받게되는 중국 기업들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그들에게 초안을 보낼 것이다. 또한, 관련 부처나 기관은 선별된 외국 기업에게만 자문을 구하지만, 이들과 법안의 초안을 공유할 필요는 없다. 결과적으로 신규 또는 개정된 법과 규정의 일부 부분데 대하여 공개적 의견을 구하는 기간은 이후에 주어졌으며, 그러한 경우에도 동 기간은 일반적으로 짧았다.

2008년 6월 중국은 미-중 전략경제대화(SED) 회의에서 사전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도록 모든 무역 및 경제관련 행정 규정 및 부처 규정을 공개하도록 합의하였고, 공개일로부터 30일 동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은 이후 단일한 장소, 즉, 국무원 입법부서의 중국정보 입법정보 웹사이트(Chinese Government Legislative Information Website of the Legislative Affairs Office of the State Council)에서 그러한 조치들을 공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로 미국은 이러한 약속의 실효성을 검토하였으며, 제안된 조치의 공개의 측면에서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고 중국은 당해 약속을 이행해보고 있고 모든 제안된 조치가 단일한 장소에서 공개되었다.

(2) 법체제

1) 법과 규정

중국에서 법과 규정(Laws and regulations)은 상대적으로 일반적이고 애매한 조항을 두

고 있다. 이러한 접근 때문에 중국 당국은 법과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으나 이는 적용에서의 일관성 부족이나 혼란을 가져온다. 기업들은 종종 이들의 활동이 특정 법 또는 규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

중국에서 규정은 여러 정부부처 및 중앙, 성(provincial) 및 지방 수준의 정부가 공포하며 결과적으로 규정들이 서로 조화롭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중국은 이제 최종적인 규정을 공개하지만 여전히 자의적인 적용이나 불일치성의 여지가 있다. 사실 정부 관료들은 때때로 선택적으로 규정을 적용함으로서 비난을 받고 있다. 중국은 많은 엄격한 규범들을 갖고 있으나 이러한 규범들은 한 사람/기업이 관료의 눈 밖에 날 때까지 실제로 무시되고 있다. 정부 관료는 외국 투자자나 눈 밖에 난 투자자에게 자의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들을 단순히 단속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특별한 요구를 할 수 있다.

법과 규정의 명확하고 일관된 기본체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 국내시장에서 외국 기업의 참여에 장벽이 있다. 전면적인 법적 기본체제는 물론, 법과 규정의 변동사항에 대한 적절한 사전 공지 및 이러한 변동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기업의 활동환경을 증진시키고, 상업을 촉진하며 부패의 기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입법적 또는 규제 법안 작성절차에서의 개선을 촉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중국의 정부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왔다. 중국의 가입의정서에서 중국은 무역관련 법, 규정, 사법결정 및 행정적 판결 (rulings)의 이행과 관련한 모든 행정조치를 검토할 재판부 (tribunal)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러한 재판부는 분쟁대상의 행정 집행을 위임받은 정부당국에 공평하고 독립적이어야 하고, 이들의 검토절차에는 항소권 (right of appeal)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오늘날까지 이러한 재판부의 검토 빈도수나 결과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또한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 상품 및 서비스 무역과 관련한 법과 규정 그리고 기타 조치를 일관되고 공평하게 적용, 이행 및 관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동 약속과 관련하여 중국은 2002년 일관성 없는 법적용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내부적인 검토 메커니즘을 확립하였고, 동 메커니즘은 상무부의 WTO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메커니즘의 실제적인 활동은 아직 불투명하다.

2) 상사 분쟁해결

중국의 국내외 기업들은 중국법원을 통하여 상업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회피한다. 그 이유는 중국법제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하여 그리고 법원의 판결의 집행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판사들은 특히 중국의 대도시 이외의 지역의 판사들은 지방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business) 압력에 영향을 받는다는 선입견이 만연하다. 많은 판사들이 법에 대하여 훈련이 되어있지 아니하며 높은 수준의 교육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개선된 법조 윤리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법적용을 강조함으로써 통일된 신뢰할만한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확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가 1995년 제정한 판사법(Judges' Law)에 따르면 판사는 법학 또는 전문화된 법지식을 획득한 기타 전공의 학위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명된 판사들은 법집행 이전에 필요한 훈련(training)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중국 대법원은 1999년 정치나 편파성이 아닌 실력과 학력 및 경험에 근거하여 판사가 임명되도록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2년 대법원은 상품/서비스/지재권의 국제무역과 관련한 행정기관의 결정이 포함된 사례를 심리하기 위한 고등법원 (higher level courts)을 지정하는 규정을 제정하였다. 대법원에 따르면 중국의 경험 있는 판사들이 지정된 법원에 임용될 것이며, 지정된 각각의 법원의 관할권 하의 지리적 범위는 지방의 보호주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확대될 것이다. 동 규정은 해외 또는 중국 기업과 개인이 지정된 법원에서 행정소송법에 따라 국제무역관련 사안에 대한 중국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동 규정은 또한, 법 또는 규정이 하나 이상의 해석이 가능한 경우 법원은 WTO규범 같은 중국이 약속한 국제협정의 조항과 일치하는 해석을 채택하여야 한다고(should) 규정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초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국제경제및무역중재위원회(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가 무역 분쟁에서 중재의 포럼을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일부 외국 기업은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기도 하였으나 다른 기업이나 법전문가들은 중재관 선정에서의 제한과 순리적이고 공정한 사건의 진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적 규정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 또는 중재패널이 외국투자기업이 승소하는 판결을 내린 경우 판결의 집행이 매우 어렵다고는 점이 지적된다. 집행을 담당하는 관료들은 지방의 이익에 의존하고 있고 지방의 권력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 반하는 법원판결을 집행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3) 노동 문제

최근 중국은 노동법 및 규정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2008년에도 신규 노동법인 노동계약법(Labor Contact Law)과 노동분쟁의조정및중재법(Labor Dispute Medication and Arbitration Law)이 제정되었다. 노동계약법은 더 나은 노동관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동자와 고용자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노동분쟁의조정및중재법은 노동 분쟁해결절차를 개선하고 능률화하였다. 이러한 입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집회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에 대하여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 여러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근로시간, 직업안전 및 건강, 아동의 노동에 대한 금지 및 사회보장프로그램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한 노동법 및 규정이 실제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또한, 수형자들의 강제노동의 사용에 대하여 지속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고용자가 부담해야하는 국가연금제도, 실직보험,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여전히 초기단계이며 부분적으로 국내기업에게서 만연한 불이행 때문에 기금의 부족한 것이 특징이다. 2006년 11월 발간된 중국정부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적어도 2조 위안 중에서 700만 위안의 사회보장기금이 사라졌다고 한다. 이러한 보험프로그램은 주로 도시 거주자들에게 사용되며, 상당한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지방 거주자나 이주 노동자는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받고 있다.

노동 비용은 낮으나 2008년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지방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많지만 그 중 상당 부분이 도시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으며, 숙련된 노동자는 비교적 공급이 모자라다. 노동력의 이동에 대한 제한이 노동 비용을 왜곡하고 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노동자의 이동을 제한하여왔던 호구등록제도하의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많은 이주 노동자들의 임금은 특히 건설 분야의 경우 중국 노동법 및 규정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월별로 제공되지는 않는다. 높아지는 실업율과 국제적인 경제위기로 임금수준이 비슷해질 것이며, 임금 미지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중국 정부는 고용자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채택함으로서 고용을 안정화시키고 정리 해고된 노동자에게 새 직업과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대응하고 있다.

4) 부패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WTO 가입으로 관세가 상당히 인하되었고 따라서 밀수와 관련된 부패도 줄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실제 WTO 가입으로 중국이 국제관행에 노출되는 빈

도가 높아지고 전반적인 투명성에서의 개선이 있었으나 여전히 부패가 만연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중국 관료 자신들도 자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가 부패라는 점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중국의 새 지도부도 지방 관료를 면밀히 감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중국 반부패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관영 언론에 의하면 중국은 2006년 중국 공산당 관료를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 캠페인을 시작하였으며 지금까지 97,000명의 관료가 처벌되었다.

중국은 2004년 7월 새로운 행정허가법(Administration Licensing Law)를 이행하였다. 동 법은 오랫동안 관료들의 부패원인이 되었던 허가절차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동 법은 기업과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효과적인 행정관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이 허가를 위한 특별 사무소를 설치하고 20일내에 신청에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행정허가권한의 합리적인 사용을 보장한다. 동법이 시행된 2004년 이래 동 법은 허가절차 분야에서 투명성을 높였으며, 절차적 어려움을 줄이고 국내외 기업들을 위한 법적인 환경을 강화하였다고 평가된다.

중국은 1993년 처음으로 불공정 경쟁에 관한 법을 공포하였으며, 중앙 정부는 모든 단계에서 자정적인 반부패 노력을 지속하도록 요구하였다. 최근 중앙정부는 상업적 요건(criteria)에 기초하여서만 계약을 허가하도록(awarding)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얼마나 신속하게 그리고 어느 정도로 정부가 이러한 약속을 지킬지는 불투명하다. 미국 공급자들은 중국에서 만연한 불공정한 입찰관행으로 이들이 경쟁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5) 부동산 문제

중국의 헌법에 따르면 모든 부동산(land)은 모든 인민이 공동으로 소유한다. 실제로 지방공산당 대표(Community Party chairman)의 엄격한 통제 하에 지방 사람들에게 농지가 분배되는 반면 시정부는 주거용 및 산업용으로 토지를 분배한다. 기업들은 비용을 지불하여야 토지사용권을 부여받거나 또는 분할 받을 수 있다. 토지 사용권이 부여된 기업의 경우 만약 국가가 당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토지 사용권이 없었던 경우 보상이 제공되지 아니한다) 부여된 토지사용권의 비용은 할당된 권리의 비용보다는 높지 않으나 법적으로 보상에 대한 기준이 정의되어 있지는 않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외국 투자자가 토지를 비워줘야 하는 불확실성이 발생한다. 공공 프로젝트 계획에 대한 공청회 제도가 없어 영향을 받게 되는 당사자들은 사전에 경고를 받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자의 토지사용권의 시한은 산업적 및 상업적 목적의 기업의 경우 50년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주요한 문제는 토지사용권을 받을 수 있는 일련의 규정이다. 현지에서 동 규정의 집행은 중앙정부의 기준과 다를 수 있으며, 한 지역에서는 금지된 관행은 다른 지역에서는 집행되는 관행일 수 있다. 대부분의 외국기업은 기업 운영(operation)을 위하여 가장 신뢰할만한 보호수단으로서 국가 소유의 도시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받고자 한다. 중국-해외 합작투자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현재 파트너와 함께 리스(lease)나 비용분담약정(contribution arrangement)을 통하여 토지사용권을 부여받으려고 한다.

중국의 현행 지방토지법은 2003년에 발효하였으며 농민에게는 확정된 계약을 통하여 30~50년을 부여하고 있고, 당해 계약을 유지하면서 토지사용권을 빌려주거나 교환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근시일내에 토지 사용권을 토지 소유권으로 변경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2004년 이래 중국의 지도부는 농민에 대하여는 좀 더 탄탄한(sturdier) 토지 사용을 추구해오고 있는 반면, 토지를 산업용 또는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는 법절차에 대하여 좀 더 엄격하게 통제해오고 있다. 농민이 상업적 사용자들과 직접적으로 토지 보상비용을 협상할 수 있으므로 지방 정부는 더 이상 상업용 토지를 수용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행은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NPC)는 2007년 3월 16일 재산권법(property right law)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1949년 중국의 설립 이래 첫 번째 사유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하는 법이다. 동 재산권법은 그동안 중국 정부 내에서 수년간 논쟁이 되어왔으나 공개되지 아니하였는데, 개인, 지방, 단체 소유의 재산(property)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이러한 보호로는 공장과 같은 생산수단을 포함하고 있으나 농지의 경우 30년 리스로 단체 소유가 된다. 현재로서는 동 법이 언제 이행될지 불투명하다.

중국에서 토지의 희소성을 고려해볼 때, 토지 사용권의 가격이나 토지 할당은 시장접근 및 경쟁에 있어서 그리고 보호 및 무역에 미치는 장래적인 영향에 있어서 중요하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 정부가 의무적인 국가의 토지사용계획 및 지방의 산업개발정책에 따라 토지사용권이 할당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토지관련 행정을 다시 중앙집권화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제 3 절 중국의 SW 분야 법적용의 문제점

본 장은 중국의 WTO 서비스 양허안을 검토하여 SW산업 분야의 시장개방 여부를 살펴

보고, 무역정책검토보고서와 미국의 국별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하여 SW 관련 분야의 무역장벽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중국의 서비스 양허에서 SW산업 분야는 대부분 개방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SW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융합산업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WTO의 통일된 서비스 분류가 부재한 상황에서 SW산업을 정의내리기는 쉽지 않다. 다만, 국제무역의 측면에서 서비스분야의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의 일부로 분류될 수 있다. 당해 분류의 하위 부문이 모두 개방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SW 산업분야가 개방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대부분의 SW산업관련 서비스는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와 관련된 상담 서비스(CPC 841), 소프트웨어 실행 서비스(CPC 842) 및 데이터 가공 서비스(CPC 843)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데이터베이스 서비스(CPC 844), 컴퓨터를 포함한 사무실기기 및 장비의 유지 보수 서비스(CPC 845) 및 기타 컴퓨터 서비스(CPC 849) 부문은 서비스 양허에서 제외되었는데, 기존의 분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SW 산업은 기타 컴퓨터 서비스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SW산업의 발전과정과 국가들의 분류체제에 대한 견해를 주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역검토보고서와 무역장벽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가입이후 전반적인 법제도의 개편을 이루었고,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SW 산업에 특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분야가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외국인 투자분야인데, 동 분야는 전체적인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라고 볼 수 있다.

다만, SW는 지재권의 보호가 필수적이므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중국의 지재권 보호제도는 그 자체로는 만족할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지재권의 집행이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지재권의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 부처간 정보교환과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집행절차에서의 투명성이 부족하여 실제 운용하기에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투자분야를 지속적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중국이 선별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제한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으므로 향후 SW산업의 일부가 중국이 핵심 중점 사업 분야로 선정되는 경우 투자에 제한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지재권 분야와 마찬가지로 투자 분야도 법적인 제한보다는 절차적인 제한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명성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중국이 국가안보를 위한 대내투자를 감시하는 검토절차의 경우 국가경제안보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투자제한 조치로

사용될 여지가 높다.

중국은 경쟁정책과 관련한 여러 법과 규정을 마련해오고 있으나, 국유기업 및 일부 독점기업에 대하여는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제한 조치는 중국의 경제가 개편되고 민영화되면 개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경쟁정책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은 중앙정부가 경쟁정책 조치를 지바에서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SW산업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중국의 무역장벽으로 지적되는 분야는 첫째 투명성 부분이다. 중국은 전반적인 법제도를 개편하고 집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여 법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분야는 중국의 법제도로서, 중국의 법과 규정은 상대적으로 일반적이고 애매한 조항을 두고 있어 당국의 자의적인 적용이 가능하여 적용시 일관성 부족이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더욱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규정이 상이하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진출한 외국 기업은 물론 국내기업들도 기업 활동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외국 기업의 참여에 높은 장벽이 된다. 또한, 중국의 법제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높아 법적인 해결을 회피하는 경향이 높다. 공정한 사건의 진행을 보장하는 절차적 규정이 미비하며, 특히 지방의 경우 특히 판사이나 중재관들이 지방 이익에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다. 셋째 분야는 토지사용문제가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 중국에서 토지는 소유할 수 없고 사용권을 획득하거나 할당받아야 하는데, 외국인 기업의 경우 내국인과 합작하는 방식으로 사용권을 할당받거나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국가가 수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사전통지나 공청회 없이 국가의 공공프로젝트를 이유로 토지를 비워줘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불확실성이 발생한다. 넷째 분야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부패가 무역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 정부 당국도 관료의 부패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반부패 캠페인을 개시하였고, 부패관료를 처벌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부패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관련법을 정비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데, 2004년 신규 행정허가법의 경우, 오랫동안 관료들의 부패원인이 되었던 허가절차의 투명성이 높이고 절차적 어려움을 줄여 국내외 기업들의 활동 환경을 강화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SW를 상품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즉, CD형태의 상품이나 IT상품에 설치된 프로그램으로 보는 경우, 표준 및 인증 분야와 관세평가 부분에서의 무역장벽이 있을 수 있다. 표준 및 인증분야는 중국이 국제기준보다 자국의 강제인증제도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자국내 실험실에서 테스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품수출시 비용을 증가시키고 시장진입을

지연할 수 있어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 특히 테스트를 위하여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 상품을 평가하는 기술위원회 일부가 경쟁자들과 밀접한 관계일 수 있으며, 당해 실험실 자체가 국내경쟁자와 제휴된 경우가 있어 지적재산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관세평가 분야에서는 수입품에 대한 로얄티 및 인증수수료의 관세평가부분에서 무역장벽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중국내 규정이 조화롭게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거나 지방 관료의 인식 부족으로 WTO 가입이전의 방식으로 관세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관세평가와 관련한 국내법이 정비되고 지방 관료의 훈련이 이루어지면 이 분야의 무역장벽은 일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까지는 중국의 정부조달분야가 개방되지 아니하였으나 정부가 자발적으로 SW의 구매시 시장조건에 의하여 구매하겠다고 언급함으로써 좀 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종류의 SW인지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무역장벽보고서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음) 그러나 정부조달분야가 개방될 때까지 국내 상품 및 서비스를 선호하는 관행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 Ⅲ-2〉 중국 수평적 약속 양허표[34]

Mode of supply: (1) Cross-border supply (2) Consumption abroad (3) Commercial presence (4) Presence of natural persons		
Sector or sub-sector	Limitations on market access	Limitation on national treatment
Ⅰ. HORIZONTAL COMMITMENTS ALL SECTORS INCLUDED IN THIS SCHEDULE	(3) In China, foreign invested enterprises include foreign capital enterprises (also referred to as wholly foreign-owned enterprises) and joint venture enterprises and there are two types of joint venture enterprises: equity joint ventures and contractual joint ventures.[35] The proportion of foreign investment in an equity joint venture shall be no less than 25 per cent of the registered capital of the joint venture. The establishment of branches by foreign enterprises is unbound, unless otherwise indicated in specific sub-sectors, as the laws and regulations on branches of foreign enterprises are under formulation. Representative offices of foreign enterprises are permitted to be established in China, but they shall not engage in any profit-making activities except for the representative offices under CPC 861, 862, 863, 865 in the sectoral specific commitments. The conditions of ownership, operation and scope of activities, as set out in the respective contractual or shareholder agreement or in a licence establishing or authorizing the operation or supply of services by an existing foreign service supplier, will not be made more restrictive than they exist as of the date of China's accession to the WTO. Any new sector and sub-sector scheduled after China's accession to the WTO shall not be subject to the preceding sentence. The land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State-owned. Use of land by enterprises and individuals is subject to the following maximum term limitations: (a) 70 years for residential purposes; (b) 50 years for industrial purposes; (c) 50 years for the purpose of education, science, culture, public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d) 40 years for commercial, tourist and recreational purposes; (e) 50 years for comprehensive utilization or other purposes.	(3) Unbound for all the existing subsidies to domestic services suppliers in the sectors of audio-visual, aviation and medical services. Unbound for all the subsidies to domestic services suppliers in any new sector and sub-sector scheduled after China's Accession to the WTO. (4) Unbound except for the measures concerning the entry and temporary stay of natural persons who fall into the categories

	(4) Unbound except for measures concerning the entry and temporary stay of natural persons who fall into one of the following categories: (a) Managers, executives and specialists defined as senior employees of a corporation of a WTO Member that has established a representative office, branch or subsidiary in the territor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emporarily moving as intra-corporate transferees, shall be permitted entry for an initial stay of three years; (b) Managers, executives and specialists defined as senior employees of a corporation of WTO Members, being engaged in the foreign invested enterprises in the territor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 conducting business, shall be granted a long-term stay permit as stipulated in the terms of contracts concerned or an initial stay of three years, whichever is shorter; (c) Service salespersons - persons not based in the territor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receiving no remuneration from a source located within China, and who are engaged in activities related to representing a service supplier for the purpose of negotiation for the sale of services of that supplier where: (a) such sales are not directly made to the general public and (b) the salesperson is not engaged in supplying the service: entry for salespersons is limited to a 90-day period.	referred to in the market access column.

34) 양허안은 중국의 가입의정서에 기반한 양허표를 발췌하였으나, 제안된 개정내용은 추가적으로 포함되었음.

35) The terms of the contract, concluded in accordance with China's laws, regulations and other measures, establishing a "contractual joint venture" govern matters such as the manner of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joint venture as well as the investment or other contributions of the joint venture parties. Equity participation by all parties to the contractual joint venture is not required, but is determined pursuant to the joint venture contract.

〈표 Ⅲ-3〉 중국의 개정된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양허표

Mode of supply: (1) Cross-border supply (2) Consumption abroad (3) Commercial presence (4) Presence of natural persons		
Sector or sub-sector	Limitations on market access	Limitation on national treatment
II. SPECIFIC COMMITMENTS B. Computer and Related Services *(Computer and related services do not cover the economic activity consisting of the provision of content services which require computer and related services as means of supply)*		
(a). Consultancy services related to the installation of computer hardware (CPC 841)	(1) None (2) None (3) None (4) 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horizontal commitments.	(1) None (2) None (3) None (4) Qualifications are as follows: certified engineers, or personnel with Bachelor's degree (or above) and three years of experience in these fields.
(b) Software implementation services (CPC 842) - Systems and software consulting services (CPC 8421) - Systems analysis services (CPC8422) - Systems design services (CPC 8423) - Programming services (CPC 8424) - Systems maintenance services (CPC 8425)	(1) None (2) None (3) Only in the form of joint ventures, with foreign majority ownership permitted. None *Wholly foreign-owned enterprises will be allowed.* (4) 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horizontal commitments.	(1) None (2) None (3) None (4) Qualifications are as follows: certified engineers, or personnel with Bachelor's degree (or above) and three years of experience in these fields.
(c) Data processing services (CPC 843) - Input preparation services (CPC8431) - Data processing and tabulation services (CPC 8432) - Time-sharing services (CPC 8433)	(1) None (2) None (3) None (4) 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horizontal commitments.	(1) None (2) None (3) None (4) Qualifications are as follows: certified engineers, or personnel with Bachelor's degree (or above) and three years of experience in these fields.

제4장 SW분야 중국의 FTA 내용 분석

제 1 절 서비스
제 2 절 투자
제 3 절 정부조달
제 4 절 표준 및 인증
제 5 절 지적재산권
제 6 절 경쟁
제 7 절 자연인의 이동
제 8 절 원산지규정
제 9 절 중국이 체결한 FTA가 주는 시사점

제 1 절 서비스

제Ⅲ장이 중국이 다자간 무역체제 속에서 어떠한 시장개방에 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가를 살펴보았다면, 제Ⅳ장에서는 그동안 중국이 체결한 FTA를 검토하여 양자간 차원에서 중국이 FTA를 통해 어떤 시장개방을 이루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36] 앞서 제Ⅱ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중국에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핵심을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37] 중국의 서비스업 관련 FTA 추진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중-ASEAN FTA

우선, 중-ASEAN FTA는 다자간 서비스교역협정(WTO GATS 제5조 1항b)에 의해 허용한 조치는 제외하되 GATS에서 ASEAN과 중국이 양허한 서비스교역 자유화 범주를 확대 심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 WTO 회원국의 관심이 높은 투자와 관련해서는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통해 투명하고 선진화된 투자제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투자 관련 법과 관행, 각종 규제조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2. 중-칠레 FTA

중-칠레 FTA에서는 별도의 서비스 장(chapter)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전체적인 FTA 내용에서 서비스 무역에 대한 양국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확대와 촉진을 위해 규칙적인 정보의 교환과 정책 회담 등을 개최할 것을 장려

36) 중국의 FTA 추진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단계	국가
발효 및 타결	ASEAN,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협상	싱가포르, 호주, GCC(걸프협력회의), 아이슬란드, 페루, 노르웨이, 코스타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검토	한국, 인도, 모잠비크, 미국

〈출처〉 지만수, 「한-중 FTA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한-일, 한-중 FTA 어떻게 볼 것인가』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미나 발표자료, 2008. 4. 1. 이후 필자가 최근 자료를 업데이트 하여 수정함.

37) 즉, 중국에서는 소프트웨어의 대량복제는 제조업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그 밖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 본 연구보고서 제 8쪽 참조.

하고 있다.(제105조) 또한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칠레 FTA 타결 이후라도 서비스 무역과 투자 분야에 대한 협상을 계속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제120조)

3. 중-홍콩 CEPA

한편, 중국이 체결한 FTA 중 실질적으로 서비스무역 자유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중-홍콩 CEPA이다. 2003년 6월 29일 홍콩의 주권 반환 6주년을 계기로 중국과 홍콩은 자유무역협정인 CEPA(Closer Economic Partner Arrangement)를 체결하였다. CEPA는 2003년 6월 체결되고 2004년 1월 발효된 이래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양측은 2004년 8월의 CEPA 체결과 2005년 11월의 CEPA 체결을 통해 무관세품목을 확대하고 서비스시장 개방조치를 확대하여, 현재는 홍콩이 중국에 수출하는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2006년 6월 29일 금융과 법률 등 10개 서비스분야에 대해 추가적인 개방조치를 포함하는 CEPA 가 체결되어 2007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현재까지 중-홍콩 CEPA를 통해 자유화한 서비스부문은 경영컨설팅, 회의전시, 광고, 법률, 회계, 의료, 부동산, 건축서비스, 운송, 소매, 물류운송, 여행, 시청각, 은행, 증권, 보험 등이다. 2006년 6월 말 현재 홍콩에는 978개의 서비스 공급자 증명서가 발급되었으며 이 중 물류 및 운송, 유통이 각각 451개 및 252개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CEPA로 인해 중국기업의 대홍콩 투자가 간소해짐에 따라 2006년 6월 말 현재 378개에 달하는 중국기업이 홍콩에 투자하고 있다. 또한 CEPA 체결 이후 중국 개인관광객의 홍콩 방문이 허용됨에 따라 2005년 한 해 동안 2,300만 명의 관광객이 홍콩을 방문하고 있다.

4. 중-뉴질랜드 FTA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서비스시장 개방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론 FTA 서비스 부문 개방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중-ASEAN FTA에서 중국의 서비스시장 개방은 GATS와 거의 같은 수준이며, 뉴질랜드와의 FTA에서도 기존의 GATS 양허안에서 크게 나아가는 개방을 실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협정 발효 후 3년 이후 시점에서 아무 때나 개방일정을 개정하거나 취소(withdraw)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방정책의 융통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하였

다.[38]

그러나 중-뉴질랜드 FTA 서비스 분야에서 '상호 최혜국대우(Reciprocal MFN provision)'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중국의 기체결 FTA와는 매우 차별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중국은 현재 ASEAN 및 칠레와 서비스 FTA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이들 국가와는 MFN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MFN 조항의 의미는 향후 중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FTA에서 중-뉴질랜드 FTA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허용할 경우 이러한 조건이 뉴질랜드에 자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39] 중국이 뉴질랜드에 대한 MFN 의무를 가지는 서비스 부문에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분야가 포함된다.[40] 한편, 중-뉴질랜드 FTA의 중국 내 서비스시장 개방 면에서 중국의 WTO 양허안보다 개방 수위가 높은 분야는 "컴퓨터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다: 1) 컴퓨터 관련 서비스, 2) 경영컨설팅 관련 서비스, 3) 교육 서비스, 4) 환경서비스, 4) 스포츠 및 레저 서비스, 5) 항공운송 서비스, 6) 육상운송 서비스.

한편 중-뉴질랜드 FTA는 정부의 서비스 규제권한의 중요성과 공공서비스 제공 및 지원의 중요성 인식 규정을 삽입하여 정부의 서비스 규제자로서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국가의 정책목적과 지방의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과 양국서비스 규제의 발전정도에 관한 불균형적 요소를 인식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제111조)

5. 시사점

이상에서와 같이 중국은 현재 자국의 서비스 산업의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서비스업의 경우 중국은 중-ASEAN FTA와 중-칠레 FTA에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이고, 호주와의 협상에서도 서비스분야를 포함시키는 데 대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서비스업 시장이 미성숙하여 개방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38) 본 항목의 내용은 주로 김한성 · 여지나, "중국-뉴질랜드 간 FTA 협정 체결결과 및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년 5월 8일, 6쪽을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39) 중-뉴질랜드 FTA 제107조.

40) 중국이 뉴질랜드에 MFN의무를 가지는 분야로는 1) 건축서비스: 건물건축, 조립식 건축물의 조립 및 건설, 설치공사 및 건물 완공과 마무리 공사, 2) 환경서비스, 3) 농임업 관련 서비스(단, 중국이 OECD 국가와 체결하는 FTA 협정의 경우에만 적용됨), 4) 엔지니어링 서비스, 5)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6) 컴퓨터 관련 서비스, 7) 여행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한 홍콩 등과의 CEPA에서 폭넓은 서비스 개방 역시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양안사지(兩岸四地: 대륙, 대만, 홍콩, 마카오)'를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계함으로써 정치적 통합을 모색하려는 중국 지도부의 통치전략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한국은 중국에 대해 투자 서비스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요구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향은 기존에 중국이 체결한 FTA와 가장 최근 체결된 중-뉴질랜드 FTA를 비교해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표 Ⅳ-1〉 중국의 기체결 FTA간의 규율대상 비교[41]

협정 / 규율대상	ASEAN (2005)	칠레 (2005)	파키스탄 (2006)	뉴질랜드 (2008)	호주 (추진 중)
상품무역 분야	○	○	○	○	○
최혜국대우	X	X	X	X	X
내국민대우	○	○	○	○	○
관세철폐	○	○	○	○	○
원산지규정	○	○	○	○	○
관세평가	X	X	X	○	○
통관절차	X	○	X	○	○
기술규정의 상호인정	X	X	X	○	○
위생 및 검역조치	○	○	○	○	○
세이프가드 조치	○	○	○	○	○
반덤핑 및 상계조치	○	○	○	○	○
특정상품의 규율	X	X	X	X	X
서비스무역 분야	○	○	X	○	○
특정 서비스의 규율	○	○	X	○	○
자연인의 이동	X	X	X	○	○
투자분야	X	X	○	○	○
지적재산권 분야	X	X	X	○	○
정부조달 분야	X	X	X	X	○

41) 김한성 · 여지나, 앞의 주 3) 4쪽 표의 내용을 일부 수정.

〈표 Ⅳ-1〉 중국의 기체결 FTA간의 규율대상 비교(계속)

협정 / 규율대상		ASEAN (2005)	칠레 (2005)	파키스탄 (2006)	뉴질랜드 (2008)	호주 (추진 중)
기타 특정분야						
	경쟁정책	X	X	X	X	○
	환경	X	○	X	○	X
	노동	X	○	X	○	X
	전자상거래	X	X	X	X	○
	투명성	X	○	○	○	-
조직규범분야						
	협정운영조직	○	○	○	○	○
	분쟁해결제도	○	○	○	○	○

특히 중-뉴질랜드 FTA에는 일부 분야이지만 중국의 WTO 서비스 양허안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안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이 체결하게 될 FTA에서 보다 높은 서비스 시장 개방이 있을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기존에 뉴질랜드와 체결한 “상호 최혜국대우” 조항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것인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다만, 서비스 분야에서의 MFN 인정은 한-미 FTA 및 한-EU FTA 에서도 협상의 쟁점이 되었으며, 두 FTA에서 모두 중-뉴질랜드 FTA와 마찬가지로 소급적용은 인정하지 않고 미래 적용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한바, 한-중 FTA 협상시에도 동 쟁점에서 큰 이견 없이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 2 절 투자

1. 중-ASEAN FTA

중-ASEAN FTA는 투자에 대한 별도의 장을 두고 있지 않다. 기본협정 제5조는 당사국이 투자체제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하기 위하여 협상을 하고, 투자와 관련하여 협력을 강화하

고, 투자 규칙과 규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투자 보호를 제공하는 것에 합의하였음을 규정하고 있다.

2. 중-칠레 FTA

중-칠레 FTA 역시 투자 장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42] 중-칠레 FTA에서는 협력 사항에 관해 규정한 제13장에 투자 증진에 관한 협력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제112조에 따라, 당사국은 매력적이고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증진하기 위하여 협력하며, 투자 관련 법률, 경제·통상에 관한 정보 교류, 투자증진 메커니즘 구축 가능성 탐색 및 잠재적 투자자에 대한 국가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그 채널을 구축한다.

3. 중-파키스탄 FTA

중국과 파키스탄 간에는 1989년 2월 12일 체결되어 1990년 9월 30일 발효된 양자투자협정이 있으나 중-파키스탄 FTA는 제11장에 투자에 관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제11장은 투자유치국의 실체적 의무를 규정함과 아울러 이러한 실체적 의무에 대한 분쟁 발생시 투자자가 이용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 중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A. 투자유치국의 실체적 의무

중-파키스탄 FTA는 제47조~제51조에 투자유치국의 실체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47조 2항에 따라, 당사국의 투자자의 투자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지속적인 보호와 보장을 향유하며, 동조 3항에 따라 양 당사국은 당사국의 투자자의 투자의 운영, 유지, 사용, 향유 및 처분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제48조는 당사국에 대해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내국민대우를 규정한 제48조 2항의 경우, "당해 당사국의 법률과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는 것은 한-미 FTA 등 다른 투자협정의 일반적인 내국민대우 규정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특기할 사항이다.

42) 중국과 칠레 간에는 기체결 된 양자투자협정이 존재한다. 동 협정은 1994년 3월 23일 체결되어 1995년 10월 14일 발효하였다.

제49조는 당사국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의 투자를 수용 또는 국유화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9조가 규정한 일정한 조건은 수용 또는 국유화가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일 것, 국내법 절차에 따른 것일 것, 비차별적일 것, 그리고 보상이 지급될 것이다. 한-미 FTA의 경우, '국내법 절차의 준수' 요건이 아니라 수용 또는 국유화가 '적법절차와 최저기준대우'를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파키스탄 FTA와 차이가 있다.

또한, 중-파키스탄 FTA는 송금조항을 두고 있다. 제51조에 따라, 당사국은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의 송금을 국내 법률과 규정에 따라 보장하여야 한다.

B. 투자자-국가 중재 규정

여타 FTA상의 투자협정과 양자투자협정과 마찬가지로 중-파키스탄 FTA 역시 분쟁해결수단으로 국가간 중재(제53조)와 투자자-국가 중재(제54조)를 규정하고 있다.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수단을 살펴보면, 동 협정은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 법적 분쟁이 우선 당사자간 협상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3조 1항) 한-미 FTA의 투자규정이 당사자들이 협의와 협상을 통해 분쟁해결을 시도할 것을 규정하면서 'should'라는 표현을 쓰는 것과 달리 중-파키스탄 FTA는 'shall'이라는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파키스탄 FTA의 협의는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에 대한 중재를 제기하기 전에 완수하여야 하는 의무적인 요건임을 의미한다. 중-파키스탄 FTA는 중재에의 회부를 위한 조건으로 분쟁의 우호적 해결을 요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53조 2항에 따라, 투자자는 두 가지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쟁을 제기할 수 있다. 하나는 분쟁당사국의 권한 있는 법원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이하 'ICSID 협약')에 따른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국제센터(이하 'ICSID')이다. 동 협정은 후자의 경우와 관련하여 분쟁당사국이 중재의 제기 전에 자국의 관련 법령에 따른 국내 행정심사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ICSID 절차에 대한 중재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국내구제절차를 완료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 규정은 투자자가 분쟁을 권한 있는 국내법원 또는 ICSID에 회부한 경우, 더 이상의 절차 선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즉, 국내법원에 제소한 분쟁과 동일한 청구원인을 근거로 다시 국제 중재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Fork-in-the-road 조항이라고 한다.

4. 중-뉴질랜드 FTA

중-뉴질랜드 FTA는 종전에 중국이 체결한 여타 FTA의 투자규정이나 투자협정에 비하여 구체화된 규정을 담고 있다. 동 협정의 투자규정은 중-파키스탄 FTA의 투자규정과는 달리 제1절과 제2절로 분리되어 규정되고 있으며, 제1절에서는 투자에 관한 규정 및 투자유치국의 실체적 의무 규정을 두고 있고 제2절에서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A. 투자유치국의 실체적 의무

중-뉴질랜드 FTA 제138조는 내국민대우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동조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된 투자 및 활동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 있는 자국의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된 투자 및 활동에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41조는 제138조가 적용되지 않는 비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s)를 규정하고 있다. 즉, 동 규정에 따르면, 당해 당사국의 기존의 비합치조치, 동 조치의 존속 및 동 조치의 개정—개정이 제138조의 의무에 대한 비합치의 정도를 높이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 한함—에 대해 제13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혜국대우 의무를 규정한 제139조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 투자 및 동 투자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 있는 제3국의 투자 및 관련 활동에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39조 2항은 동 규정의 최혜국대우 의무가 동 협정에 규정된 것 이외의 분쟁해결절차를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확대하는 요건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가 다른 FTA상의 투자규정 및 양자투자협정에 규정된 것보다 유리한 투자자-국가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최혜국대우를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제143조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의해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는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칙에 따른 완전한 보호와 보장, 사법거부(denial of justice)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소송 및 행정절차에서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포함한다.

제145조의 수용 규정은 중-파키스탄 FTA의 수용 규정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으나 당사국이 투자를 수용 또는 국유화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공공목적, 국내법 준수, 비차별 및 보상의 지급뿐 아니라 당사국이 투자자와 체결한 약정(undertaking)을 합치하여야 한다

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항은 체약국이 투자자와의 투자계약을 수용을 통해 무효화시키는 것을 방지하지 위한 것이다.[43] 또한, 보상 기준과 관련하여, 동 협정은 공정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을 평가 기준으로 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파키스탄 FTA의 투자규정과 차별성을 갖고 있다.

이행의무의 규제와 관련하여, 제140조는 WTO의 무역관련투자조치에 관한 협정(이하 'TRIMs 협정')을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TRIMs 협정은 GATT의 내국민대우 의무나 수량제한금지 의무와 상충되는 이행의무의 부과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부속서에서 금지되는 무역관련투자조치들을 예시하고 있다.

제142조의 송금 규정은 각 당사국으로 하여금 투자와 관련된 모든 지급의 자유로운 송금을 투자자에게 허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지급의 예를 예시 규정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42조 3항은 중국으로부터의 송금 보장에 대해서 별도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즉, 중국의 경우 대상 송금이 외환규제와 관련된 중국의 기존의 법률 및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절차를 준수한 경우에만 송금 보장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다. 또한, 142조는 송금 규정에 대해서 제202조상의 세이프가드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국제수지 위기 및 외환위기 상황에서 송금 보장 의무에 대한 한시적인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B. 투자자-국가 중재 규정

중-뉴질랜드 FTA는 제11장 제2절에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 협정은 중-파키스탄 FTA와 마찬가지로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 법적 분쟁이 우선 당사자간 협의와 협상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52조) 동 규정의 협의와 협상은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에 대한 중재를 제기하기 전에 완수하여야 하는 의무적인 요건이다. 또한, 중재에의 회부를 위한 조건으로 분쟁의 우호적 해결을 요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153조에 따라, 투자자는 두 가지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쟁을 제기할 수 있다. 하나는 ICSID 협약에 따라 ICSID의 조정 또는 중재에 회부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상거래법위원회(이하 'UNCITRAL') 규칙에 따른 중재에 회부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는 중재 제기 3개월 전에 분쟁당사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53조 2항은 당사국이 통지 접수

43) 장승화, 「양자간 투자협정 연구」, 법무부, 2001년, 102면.

후 투자자가 중재 제기 전에 자국의 법률과 규정이 정하는 국내 행정심사를 완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국내 행정심사절차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투자자가 권한 있는 국내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황인 경우에는 최종 판결 이전에 당해 소송을 취하하여야만 같은 분쟁을 국제 중재에 분쟁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투자자는 협정상의 의무 위반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했던 시점, 그리고 협의·협상 요청서를 제출한 일자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동 협정에 따라 중재를 제기할 수 없다.(제154조 1항)

5. 시사점

중국은 독일, 스위스, 영국, 이집트,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및 한국과 더불어 가장 많은 수의 양자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이다. ICSID가 제공하는 정보에 따르면, 중국은 90개국과 양자투자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다. 그러나 중국이 이렇게 많은 수의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중국에 대해 투자자-국가 중재의 신청이 제기된 일은 한 번도 없다.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명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중국이 체결한 투자협정의 규정상 투자자-국가 중재의 제기에 있어 비교적 많은 제한—국제구제절차완료에 관한 규정 등—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중국과의 정치적 갈등이나 중국 국내에서의 투자환경의 악화를 염려하여 투자자나 투자자의 본국 정부가 투자자-국가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이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독일 및 네덜란드와 기존의 양자투자협정을 재협상하였는데, 새로이 체결된 중-독일 투자협정[44]과 중-네덜란드 투자협정[45]은 투자자-국가 중재 규정에 있어 상당한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앞서 살펴본 중-뉴질랜드 FTA의 투자규정 역시 투자자-국가 중재에 대해 비교적 적은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투자유치국의 실체적 의무와 분쟁해결절차에 대해 상당히 세부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9월 30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과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이는 1992년 12월 4일에 발효하였다.

44) 2003년 12월 1일 체결되어 2005년 12월 11일 발효하였다.
45) 2001년 11월 26일 체결되어 2004년 8월 1일 발효하였다.

제 3 절 정부조달

1. 중-칠레 FTA

중국이 체결한 FTA 중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이 언급된 FTA는 중-칠레 FTA가 현재까지는 유일하다. 그러나 동 FTA에서조차 정부조달 분야는 독립된 장(chapter)이 아니라 제13장 협력(cooperation)의 큰 틀 속에서 당사국들의 협력의 한 축으로 경제협력,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서의 협력, 투자 분야의 협력과 함께 정부조달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설립하는 것을 촉진한다는 내용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46]

2. 시사점

결국 현재 중국과의 FTA 추진과정에서 정부조달을 독립된 장으로 다루고 있는 FTA는 없으며 다만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중국-호주 FTA에 정부조달 분야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중국과 FTA를 추진하는 경우 정부조달 분야를 FTA 협상의제로 포함시킬 수 있을지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중국과 호주와의 FTA 협상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파악하고 그 내용을 분석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볼 때 불확실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제 4 절 표준 및 인증

1. 중-뉴질랜드 FTA

우선 만약 소프트웨어 제품이 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제기되는 표준 및 인증 문제에 대하여 중-뉴질랜드 FTA 제8장에서 양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46) 중-칠레 FTA 제105.2조의 (e) 참조.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분야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표준(standards)이나 규제(regulations) 및 적합성 평가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등이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이 되지 않도록 합의하였다.(제90조) 즉, 중국과 뉴질랜드는 동 FTA 제8장을 통해 적절한 관리나 규제권한 기관(regulators) 및 기술전문가들 사이에서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양국 간의 불필요한 기술무역장벽을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양 당사국은 상대국의 기술규제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며, 제품의 샘플링이나 검사 등을 위한 다른 당사국의 절차(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기로 장려하였다.(제97조) 또한 중-뉴질랜드 FTA는 공동표준 및 규제를 설정하기 위한 작업을 담당할 공동 기술무역장벽 위원회(Joint TBT Committee)를 설립하기로 하였다.(제100조) 한편, TBT관련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 당사국들은 동 FTA에 따른 분쟁해결 조항을 이용하거나 또는 WTO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소프트웨어 자체가 서비스로 분류되는 경우 중-뉴질랜드 FTA에서 표준 및 인증 분야와 관련되는 조항으로는 제112조가 있다. 동 조항은 교육서비스를 예정한 조항이긴 하지만 서비스 공급자의 허가, 인가 및 증명을 위한 기준 또는 표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에게 적절한 권한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다른 당사국 내에서 부여된 인가 또는 증명, 충족요건, 경력 또는 교육 등을 인정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인증제도는 당사국 또는 각 당사국의 적절한 권한 있는 기관들 사이에서 체결된 협정에 기초하거나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제112조)

한편 소프트웨어와 직접 관련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중-뉴질랜드 FTA에서는 기존에 중국이 체결한 FTA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상호인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동 FTA는 전기전자설비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o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Components)을 부속서 14에 포함시켰다. 전기전자설비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은 중국의 강제인증제도(the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CCC)에 대해 뉴질랜드 국내에서 합격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로써 중국이 승인한 뉴질랜드 기관에 의해 신뢰성과 적합성 평가를 받으면 CCC 마크를 붙여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뉴질랜드에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감독을 용이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동 FTA에서의 MRA는 중국이 맺은 최초의 기술상호인증협정으로서 앞으로 중국은 국외에서 테스트・검사되어 인증 받은 결과를 처음으로 수용하게 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2. 시사점

우선 중국과의 FTA 문제에서 표준과 인증 부분은 별개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즉 상품으로서의 소프트웨어의 경우 표준 문제는 기존의 WTO에서의 기술무역장벽협정(TBT협정)에 따른 내용과 중국이 체결한 FTA에서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표준 문제가 FTA의 직접적 협상의제가 될 경우 이를 해결하는 것은 기존의 WTO법과 중국이 체결한 FTA 조항들을 통해서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증 부분에 있어서는 협상의 여지가 많아 보인다. 다시 말해 현재 중-뉴질랜드 FTA에서 예정하고 있는 서비스 분야의 인증 문제는 비록 교육 서비스에 한정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강제규정(shall)이 아니라 권고규정(may)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상대국의 표준이나 증명, 요건, 경력 등을 얼느정도 인정할 것인가 여부, 또 누가 어떤 방법으로 인정할 것인가 여부 등이 모두 협상을 통해서 그 범위가 결정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동 FTA에서 최초로 전기전자설비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MRA)에 합의하였다는 사실은 한-중 FTA 협상에서도 양자간 상호인증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관련 품목의 대중 수출기업들의 기술인증과 관련한 비용절감과 수출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SW산업 분야에서 이러한 방식의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제 5 절 지적재산권

1. 중-칠레 FTA

중-칠레 FTA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별도의 장을 두고 있지 않다. 협력에 관한 제13장하의 제111조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에는 지적재산권의 사용에 관한 교육・보급사업, 공무원에 대한 훈련 및 전문화 과정, 지적재산권 이행・지적재산권에 관한 인식 제고・지적재산권 정책의 입안에 관한 정보교환 등이 포함된다.

2. 중-뉴질랜드 FTA

중-뉴질랜드 FTA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별도의 장(제12장)을 두고 있다. 제161조에 따라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에 있어서의 확실성을 부여하고 기업의 규제순응비용(compliance cost)을 최소화하고 아이디어 · 기술 및 창작물의 보급을 통한 국제무역을 촉진하는 투명한 지적재산권 체제와 제도를 확립 · 유지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이하 'TRIPs 협정') 및 다른 지적재산권 관련 협정 하에서 각 당사국이 부담하는 의무를 재확인하고 있으며, TRIPs 협정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중 · 뉴질랜드 FTA의 일부를 이룬다.

제12장하에서 당사국은 새로이 발효하는 자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을 타방 당사국에 통지하고, 지적재산권 정책의 입안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지적재산권 제도의 이행에 있어서의 변화와 발전을 타방 당사자에 통지하고, 지적재산권 이행의 증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통보 및 정보교환의 의무가 있다. (제163조) 또한, 당사국은 지적재산권 정책의 입안에 대한 역량을 제고하고 지적재산권 침해 상품의 교역을 철폐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데에 합의하고 있다.(제164조)

3. 시사점

중-뉴질랜드 FTA 지적재산권 부분은 지재권 관련 양자간 협력과 협의를 강화하며, TRIPs를 준수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등 선언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양국은 지재권 관련이슈들을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 상대국에게 협의(Consultation)를 요청할 수 있으며 60일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이 불가할 경우, 당사국은 중-뉴질랜드 FTA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

중-뉴질랜드 FTA의 지적재산권(IPR) 조항은 중국이 체결한 FTA 협정문에 최초로 포함되었다는 의미는 있으나 그 내용면에서는 구체성이 없으며, 중국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효성에 있어서는 매우 미진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47]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중국과 FTA 협상을 할 때 지적재산권 분야는 그 자체의 포함여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실효성 확보라

47) 김한성 · 여지나, 앞의 주 3) 8쪽.

는 측면에서 중요한 협상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 6 절 경쟁

1. 중-파키스단 FTA

중국이 체결한 FTA 중 경쟁(competition) 분야를 내용으로 하는 FTA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중-파키스탄 FTA의 전체적인 목적을 설명하는 시작조항(Initial Provisions) 제2조에서 동 FTA의 목적 중 하나로 중-파키스탄 FTA가 당사국들 사이에서 무역을 위한 경쟁의 공정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 동 FTA 내에서 유일한 경쟁 관련 조항이다.

2. 중-칠레 FTA

중-칠레 FTA 또한 경쟁정책을 독자적인 장(chapter)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중-파키스탄 FT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칠레 FTA의 전체적인 목적을 설명하는 시작조항(Initial Provisions) 제2조에서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내의 공정한 경쟁조건의 촉진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전체적인 FTA에서 유일한 경쟁 관련 조항이다.

3. 중-뉴질랜드 FTA

중국이 체결한 FTA 중 가장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는 중-뉴질랜드 FTA에서 조차 경쟁(competition) 분야는 독립적인 장(chatper)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앞서 중-파키스탄 FTA 및 중-칠레 FTA의 경우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시작조항(Initial Provisions) 제2조에서 중-칠레 FTA에서와 동일한 조항을 두고 있다.

4. 시사점

현재까지 중국이 체결한 FTA 중 경쟁(competition) 정책을 독립적인 장(chapter)으로

구성한 FTA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아직까지 중국의 산업과 국내법제도가 경쟁 분야를 다룰 정도로 성숙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생각된다. 즉, 중국의 반독점법은 각 규제 대상 행위에 대하여 기본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을 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족하고, 경쟁당국의 재량권이 매우 넓으며, 반독점법 적용이 제외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내 거대 자본 및 소수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바탕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 SW기업들에 대하여 행정독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중국 SW산업의 사전규제로 인한 우리 SW산업에 대한 피해는 어느 정도 예상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협상의제 설정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 경우 중국의 경쟁분야에 대한 태도에 따라 아주 다양한 접근방법이 가능할 것이므로 향후 협상 전략을 마련할 때 경쟁분야의 협상의제 순위에 따라 보다 복합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제 7 절 자연인의 이동

1. 중-뉴질랜드 FTA

중-뉴질랜드 FTA 제10장은 자연인의 이동(Movement of Natural Persons: 인력이동)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즉, 중국은 GATS 양허안에서 최대 90일까지 허용했던 기업인 방문기간을 뉴질랜드 기업인에 대하여 최대 6개월까지 허가하고, 감독 혹은 임원이나 전문인력으로서 기업 내 전근자(Intra-corporate transferees)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혹은 3년간의 근로허가(work permit)를 부여하는 데 합의하였다. 또한 뉴질랜드가 mode 1-3 서비스 양허를 한 분야(교육, 환경, 컴퓨터, 사진, 복제와 건축 서비스)에서 12개월 이상 고용된 중국인 임원 혹은 감독은 3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3년 더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48]

한편 뉴질랜드는 아래 [표 IV-2]에서 언급하고 있는 분야의 중국인 숙련인력이 임시고용을 위해 뉴질랜드에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되, 특정한 자격조건과 경험을 갖춘 자에 한하도록 하였다.

48) 이하의 내용은 김한성 · 여지나, 앞의 주 3) 7쪽 내용을 정리한 것임.

〈표 Ⅳ-2〉 인력이동에 대한 뉴질랜드의 양허(Temporary Employment)

직업	수용 인원
한의사 및 간호사	최대 200명 (총 인원 기준)
중국요리 요리사	최대 200명 (총 인원 기준)
중국어 강사	최대 150명 (총 인원 기준)
우슈 강사	최대 150명 (총 인원 기준)
투어 가이드	최대 100명 (총 인원 기준)

자료: 중-뉴질랜드 FTA, 부속서 11

또한 뉴질랜드는 자국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서 중국 숙련 노동력 임시고용을 양허하였고, 최대 1,000명의 중국 인력에 대하여 3년간 임시고용이 허가되며, 각 직업에 대해 100명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였다. 특히, 컴퓨터 응용엔지니어, 고급 테스트 분석가, 건축 엔지니어, 수의사, 간호사, 용접공, 대학 이상 강사, 영유아 교사, 설계 엔지니어, 회계사, 전자기술자, 방사선치료사, 배관공, 디젤기계공, 자동차 기술자 등의 분야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였으며, 또한 매년 중국인 최대 1,000명에 대하여 1년간의 워킹 홀리데이(working holiday)를 도입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2. 시사점

자연인의 이동(인력이동)은 중국이 체결한 기존 FTA에서는 없었던 매우 새로운 시도였으며, 이 부분에서도 중국은 뉴질랜드로부터 많은 양허를 얻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동 FTA에서 뉴질랜드가 중국으로부터 컴퓨터 엔지니어에 대하여 임시고용을 허가한 것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즉, 향후 중국과 FTA 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현재 우리나라 SW산업에서 중국 국적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인력수급이 직접적인 문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자연인의 이동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양허수준에 따라 중국의 저임금 SW 엔지니어가 직접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고임금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기회를 박탈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수준은 동 쟁점이 향후 FTA에서 의제로 설정되는 경우와 구체적 양허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 8 절 원산지규정

1. 중-ASEAN FTA

A. 원산지결정기준

2002년 체결된 중-ASEAN FTA 기본협정 제3조에서 당사국은 상품무역에 대한 관세와 제한을 철폐하는 내용의 협상을 수행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4년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따라, 동 협정의 범위에 속하는 상품 및 기본협정의 선자유화조치(Early Harvest Programme)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과 증명에 관한 운영절차가 부속서 III(Annex III)에 규정되었다.

중-ASEAN FTA는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과 실질변형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은 어느 상품이 완전히 한 국가 내에서 모든 생산과정이 이뤄진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중-ASESAN FTA는 당해 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 조건의 상품 목록을 두는 방식으로 완전생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부속서 III의 규칙 3은 완전 생산된 상품으로 당해 국가에서 생산된 식물 및 관련 상품, 당해 국가에서 사육된 동물 및 관련 상품, 당해 국가에서 사냥·트래핑 또는 어획에 의해 생산된 상품, 당해 국가의 토양 또는 해저에서 생산된 광물, 국제법상 당해 국가가 이용할 권리가 있는 수역·해상 또는 해저에서 채취된 상품, 당해 국가가 기국인 선박이 공해에서 어획 또는 채취한 상품, 당해 국가가 기국인 가공선박에서 처리·생산된 상품, 원자재 처리·재생용으로만 적절한 수집 중고 제품 또는 폐기물, 앞의 상품만을 이용하여 당사국 내에서 획득 또는 생산한 상품 등을 규정하고 있다.[49]

실질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은 생산과정이 2 개국 이상에 걸쳐 이루어진 물품에 대해서는 당해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중-ASEAN FTA는 실질변형기준으로 부가가치기준만을 채택하고 있다. 부속서 III의 규칙 4는 상품이 원산지를 부여받기 위해서 재료의 40% 이상이 당사국산이거나 수입 재료 또는 부품의 총 가치가 생산된 상품의 FOB 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고 최종 생산 공정이 당해 당사국에서 이루

49) 완전생산기준은 본 연구용역과의 관련성이 낮으므로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어졌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최소 40%가 되어야 한다.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방법의 경우, 협정은 비역내 재료 가치와 불확정 원산지 재료 가치를 합산한 가치가 FOB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에서 공제한 것을 역내가치포함비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역외산 재료비가 상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역내 부가가치를 계산한 것이므로 일종의 공제법(build-down method)이라고 할 수 있다.

협정은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보충기준으로 중간재 규정과 원산지 누적 규정을 두고 있다. 규칙 4의 (d)는 명시적으로 중간재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지만, 비원산지 재료가 일정한 요건—동 협정의 경우 부가가치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경우, 당해 재료가 최종 제품에 체화되면 동 재료는 역내산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50] 원산지 누적에 관한 부속서 III의 규칙 5는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등 FTA 역내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치는 모두 원산지 가치로 인정하는 완전누적(full cumulation)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51]

일부 지역무역협정에서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원산지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하다고 간주되는 공정을 열거한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 공정은 원산지 결정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52] 중-ASEAN FTA 역시 불인정공정 기준 규정(규칙 7)을 두고 있는데, 동 규정은 운송 또는 보관을 위한 상품의 보존 공정, 선적 또는 운송 촉진 공정 및 포장 공정(전자산업의 밀봉 공정 및 전시는 제외)을 열거하고 있다. 중-ASEAN FTA는 원산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는 비역내산 재료의 일정한 최대 비율을 허용하는 최소허용수준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규칙 9는 당사국이 관세평가의 목적을 위하여 포장을 상품과 분리하여 취급하는 경우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에 대해서도 포장의 원산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장이 상품 전체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수송 또는 보관에 필요한 포장은 상품 전체의 원산지를 판단함에 있어 역외에서 수입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속품 · 예비부품 및 공구와 관련하여, 규칙 10은 상품과 함께 인도된 상품의 부속품 · 예비부품 및 공구의 원산지가 동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있어 고려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이 경우 부속품 · 예비부품 및 공구는 상품과 함께 분류되어

50) 고준성, 자유무역협정(FTA)의 조문별 유형 분석: 한국의 FTA 상품무역규정협정상 가이드라인의 모색, 산업연구원, 2003년, 60면.
51) 조미진 · 여지나 · 김민성,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35면.
52) 고준성, 앞의 책, 62면.

관세를 부과 받아야 한다.

부속서 III의 규칙 11은 간접재료 또는 중립요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 규정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되지 않는 중립요소로 상품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된 전력 · 연료, 공장 · 설비 또는 기계 · 도구 또는 제조에 사용되었으나 상품에 남아있지 않거나 상품의 일부분을 구성하지 않은 재료를 나열하고 있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경우, 부속서 III의 부록 B에 규정될 예정이었으나 2004년 6월 30일 협상에서 제외되어 지금까지 구체적인 법률문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53]

B. 원산지확인절차

중-ASEAN FTA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있어 기관증명제를 채택하고 있다. 규칙 12는 상품의 원산지는 수출국의 정부당국에 의해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에 의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출국의 정부당국에 의해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는 동 협정의 증명에 관한 운영절차에 따라 타방 당사국에 통보되어야 한다.

중-ASEAN FTA는 원산지 증명서 확인을 위해서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동 협정은 수입국 세관에서 수출국의 원산지 발급기관에 검증을 요청하고 6개월 이내에 회신을 받는 것으로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으며 원산지 검증을 수행하는 기관이 원산지 증명 발급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다.[54]

2. 중-칠레 FTA

A. 원산지결정기준

중-칠레 FTA는 제4장(Chapter IV)에 원산지 규정을 두고 있다. 동 협정 역시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과 실질변형기준을 채택하고 있다.(제15조) 완전생산기준의 경우, 협정은 두 가지 접근법을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상품이 일방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역내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제16조에 일정 조건의 상품 목족을 두고 있다. 다른 하나는 상품이 동 협정에 따라 역내 재료로 인정된 재료만으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전적으로 생산된 경우 역내 원산지

53) 조미진 · 여지나 · 김민성, 앞의 책, 33면.
54) 앞의 책, 36-37면.

로 인정하는 것이다.

실질변형기준의 경우, 동 협정은 부가가치기준을 주로 사용하면서 세번변경기준을 일부 보충하는 방식을 채용하였다.[55] 제15조에 따르면,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충족하는 비역내 재료를 사용하여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생산된 경우 동 상품은 역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동 협정이 규정하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은 40% 이상이나 부속서 3에 열거된 상품의 경우, 동 부속서에 특정된 별도의 조건—세번변경기준 또는 50% 이상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속서 3은 HS 2단위 기준으로 1~19류와 22류에 해당하는 농림수산품에 대해서는 세번변경기준—CC기준(Change of Chapter: HS 2단위 변경기준) 및 CTH기준(Change of Tariff Heading: HS 4단위 변경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외에도 역내가치포함비율을 50% 이상 요구하는 품목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SW산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제품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역내가치포함비율 산정 방법의 경우, 협정은 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협정은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보충기준으로 최소허용수준 규정, 원산지 누적 규정, 중간재 규정 및 불인정 공정 규정을 두고 있다. 제17조 3항은 중간재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되어 원산지 재료가 생산되었고 추후 동 원산지 재료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경우,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역내가치에 반영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9조는 불인정공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운송 및 저장을 위한 보존 공정, 포장의 해체 및 조립, 간단한 포장 작업, 제품 표시 부착 또는 프린팅 작업, 부품의 단순 조립 등이 이에 포함된다. 원산지 누적과 관련하여, 제20조는 일방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나 재료가 타방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타방 당사국을 그 상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칠레 FTA는 최소허용기준 규정을 두고 있다. 제21조는 부속서 3에 따라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품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상품가격의 8%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품의 세트[56]와 관련하여, 제22조는 세트 내의 모든 구성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에 세트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고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세트가 원산지 상품과 비원산지 상품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전체 세트 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않아야 세트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55) 앞의 책, 34면.
56) HS체계의 일반해석규칙 3에 따라 세트로 분류되는 경우를 뜻한다.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와 관련하여, 제23조는 상품과 함께 인도된 상품의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의 원산지가 동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있어 고려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이 경우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는 상품과 함께 분류되고 송장에 함께 기재되었을 것, 그리고 그 양이 통상적인 수준일 것이 요구된다.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와 관련하여, 제24조는 부속서 3에 따라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상품의 경우와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요건이 적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포장재료와 용기가 상품과 같은 함께 분류된다면 동 포장재료와 용기의 원산지는 상품의 원산지 판정에 고려되지 않는다. 후자의 경우,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의 가치가 상품의 원산지 판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산지 판정에 있어 고려되지 않는 간접재료 또는 중립요소와 관련하여, 중-칠레 FTA는 중-ASEAN FTA에 비해 보다 세부적인 규정을 할애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칠레 FTA는 환적에 관한 규정과 전시회를 위해 수출된 상품의 원산지 규정을 두고 있다.

B. 원산지확인절차

중-칠레 FTA는 중-ASEAN FTA와 마찬가지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있어 기관증명제를 채택하고 있다. 수입국 세관당국이 원산지증명서의 진실성이나 상품의 원산지 지위에 대해 의심을 갖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수출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증명서의 사본을 송부하고 이와 함께 그 사유를 제출한다. 이에 따라, 수출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원산지의 검증을 수행하며 이를 위하여 수출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권한을 갖게 된다. 검증결과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검증을 요청한 세관 당국에 회신되어야 하며, 문제가 된 서류의 진실성과 문제 상품의 원산지 여부를 분명하게 명기하여야 한다. 6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또는 회신된 결과에 서류의 진실성이나 상품의 실제 원산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입국의 세관 당국은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3. 중-파키스탄 FTA

A. 원산지결정기준

중-파키스탄 FTA는 제4장(Chapter IV)에 원산지 규정을 두고 있다. 동 협정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변형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완전생산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제14조에 일정 조

건의 상품 목록을 두고 있다. 실질변형기준의 경우, 동 협정은 부가가치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제15조는 상품이 40% 이상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역내가치포함비율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협정은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보충기준으로 원산지 누적 규정 및 불인정 공정 규정을 두고 있다. 제16조는 동 협정에 따라 역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은 상품이 어느 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료로 사용되어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는 최종상품이 생산된 경우 최종상품의 공정이 동 당사국에서 이루어지고 중국·파키스탄 원산지 재료의 총합이 최종상품의 40% 이상이 되면 재료로 사용된 상품을 동 당사국의 상품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는 불인정공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운송 및 저장을 위한 보존 공정, 먼지 제거·스크리닝·분류·체계화·매칭·세척·페인팅·커팅, 포장 변경, 화물의 분해와 조립, 마크, 라벨 등 제품이나 포장 식별 사인의 부착 작업, 완전한 제품을 구성하기 위한 제품 부분의 조합 등이 이에 포함된다.

동 협정은 최소허용기준이나 소매판매용 포장 및 용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와 관련하여, 제21조는 상품과 함께 인도된 상품의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가 상품과 함께 분류되고 관세의 부과를 적용받는 경우 동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있어 고려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2조는 간접재료의 원산지 또는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었으나 상품에 잔존하지 않는 재료의 원산지는 고려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B. 원산지확인절차

중-파키스탄 FTA 제23조는 원산지증명서가 수출국이 지정한 정부당국에 의해 발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출국의 정부당국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증명에 관한 운영절차에 따라 타방 당사국에 이를 통보한다.

4. 중-뉴질랜드 FTA

A. 원산지결정기준

중-뉴질랜드 FTA는 제4장(Chapter 4)에 원산지 규정을 두고 있다. 동 협정은 완전생산기준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접근법을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상품이 일방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역내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이고(제19조 (a)호),

이에 대해서는 제20조에 일정 조건의 상품 목록을 두고 있다. 다른 하나는 상품이 동 협정에 따라 역내 재료로 인정된 재료만으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전적으로 생산된 경우 역내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이다.(제19조 (b)호)

실질변형기준의 경우, 동 협정은 부가가치기준, 세번변경기준 및 특정가공공정기준을 채용하였다. 제19조에 따르면, 상품이 세번변경기준, 역내가치포함비율 또는 공정요건을 충족하는 비역내 재료를 사용하여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생산된 경우 동 상품은 역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세번변경기준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비원산지 재료가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공정의 결과로 그 세번이 변경된 경우 당해 상품에 역내 원산지가 부여된다는 것이다.(제21조) 역내가치포함비율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협정은 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제22조)

협정은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보충기준으로 최소허용수준 규정, 원산지 누적 규정 및 불인정 공정 규정을 두고 있다. 원산지 누적과 관련하여, 제23조는 일방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나 재료가 타방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타방 당사국을 그 상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4조는 불인정공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운송 및 저장을 위한 보존 공정, 단순공정, 화물의 해체 및 조립, 간단한 포장 작업, 제품 표시 부착 또는 프린팅 작업 등이 이에 포함된다. 또한, 동 협정은 중-칠레 FTA와 마찬가지로 최소허용기준 규정을 두고 있다. 제31조는 동 협정에 따라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품도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 재료—불확정 원산지 재료 포함—의 가치가 상품가격(FOB 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와 관련하여, 제28조는 세 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상품과 함께 인도된 상품의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가 상품과는 별도의 송장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있어 고려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의 가치는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 산정에 있어 원산지 재료 또는 비원산지 재료 중 하나로 고려된다.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와 관련하여, 제27조는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상품의 경우와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요건이 적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포장재료와 용기가 상품과 같은 함께 분류된다면 동 포장재료와 용기의 원산지는 상품의 원산지 판정에 고려되지 않는다. 후자의 경우,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의 가치가 상품의 원산지 판정에 있어 원산지 재료 또는 비원산지 재료 중 하나로 고려된다.

원산지 판정에 있어 고려되지 않는 간접재료 또는 중립요소와 관련하여, 중-뉴질랜드 FTA는 중-칠레 FTA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B. 원산지확인절차

중-뉴질랜드 FTA 제40조는 원산지증명서가 수출국의 승인된 기관에 의해 발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승인된 기관이란 수출국의 국내법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당국 또는 기타 기관이다.(제33조) 당사국은 승인된 기관의 명칭과 기타 관련 사항을 타방 당사국의 세관당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수입국 세관당국은 상품의 원산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입자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수출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검증을 요청하거나 양 당사국의 세관당국이 공동으로 정해놓은 절차가 있는 경우 이 절차에 의해 검증할 수 있다.

5. 중국이 체결한 FTA의 특징

중국이 체결한 FTA는 완전생산기준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일정 조건의 상품 목록을 제시하는 형태를 선호하며, 실질변형기준의 경우 부가가치기준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ASEAN FTA와 중-파키스탄 FTA는 부가가치기준만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칠레 FTA는 부가가치기준을 주로 사용하면서 세번변경기준을 일부 보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중-뉴질랜드 FTA는 세번변경기준, 역내가치포함비율 및 특정가공공정기준을 모두 채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체결한 FTA는 역내가치포함비율 산정 방법의 경우 공제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ASEAN FTA, 중-칠레 FTA, 중-파키스탄 FTA 및 중-뉴질랜드 FTA는 모두 공제법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직접법을 규정한 경우는 없다.

6. 시사점

실질변형기준과 관련하여, 세번변경기준과 특정가공공정기준은 부가가치기준과 비교할 때 그 적용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특

정가공공정기준은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방식 및 공정의 선택을 상당히 제약할 뿐만 아니라 그 요건이 매우 복잡하여 원산지를 부여받기가 쉽지 않다. 세번변경기준이나 특정가공공정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된 제품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최소허용기준을 도입할 경우 낮은 기준이 우회수입의 방지를 위해 유리하겠지만 비교적 높은 기준을 채택하여야 FTA 체결에 따른 특혜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상품의 범위가 확대된다. 부가가치기준과 관련하여 역내가치포함비율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높게 규정할 경우 역내 생산자가 FTA에 따른 특혜원산지를 부여받기 위해 역내 부품이나 재료를 그만큼 많이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역외국가로부터의 우회수입 방지에는 효과적이지만, 생산자로서는 경쟁적인 역외부품이나 재료의 글로벌 아웃소싱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57]

제 9 절 중국이 체결한 FTA가 주는 시사점

앞서 [표 IV-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중국이 체결한 FTA는 주로 상품무역 분야의 개방이라는 측면에서는 일견 의미가 있으나, SW산업의 본질과 관련된 서비스 분야의 개방에서는 그동안 큰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뉴질랜드와 3년에 걸친 15차례의 협상 끝에 양자간 FTA를 체결하면서 중국의 FTA에 대한 방향이 점차 변화하게 되었다. 즉, 중-뉴질랜드 FTA는 중국이 OECD 회원국과 체결한 최초의 FTA인 동시에 서비스와 투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기존에 체결된 FTA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인력의 이동, 지적재산권, 기술규정의 상호인정 등이 협정문에 포함되게 되었다.[58] 따라서 현재까지 중국이 체결한 FTA 중 우리나라가 참고할 수 있는 유일한 모델이 되는 것이 바로 중-뉴질랜드 FTA이며, 이에 따라 동 FTA는 향후 우리나라가 중국과 체결하게 될 FTA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특히 동 FTA에서 눈에 띄는 중국의 입장변화는 원산지 규정에 대한 것이다. 비록 원산지 규정이 SW산업과 직접 관련은 없다고 하나, 중국의 입장변화를 알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점, 그리고 중국에서 제작·서비스되는 소프트웨어의 원산지 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

57) 고준성, 앞의 책, 206-207면.
58) 이하의 내용은 김한성·여지나, 앞의 주 3)의 자료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으며, 필자의 소견을 덧붙여 작성된 것임을 밝힌다.

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동 규정의 내용 변화는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즉, 과거 중국이 체결한 FTA에서는 앞서 제4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원산지 판단기준으로 부가가치 기준을 이용하였으나, 이번 중-뉴질랜드 FTA에서는 부가가치 기준과 함께 세번변경기준을 원산지 판단기준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세번변경기준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주요 FTA에서와 같은 기준으로 향후 우리나라와 중국의 FTA 체결논의에서 보다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SW산업과 직접 관련되는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는 앞서 제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서비스 시장개방을 실시하였고, FTA를 통한 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중-ASEAN FTA에서 중국의 서비스 시장개방은 WTO 서비스 개방수준과 거의 비슷하며, 이는 뉴질랜드와의 FTA에서도 기존의 GATS 양허안에서 크게 발전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중-뉴질랜드 FTA는 협정 발효 후 3년 이후 시점에서 아무 때나 개방일정을 개정하거나 취소(withdraw)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방정책의 융통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서비스 분야에서 '상호 최혜국대우'(Reciprocal MFN) 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중국이 기존에 체결한 FTA와는 매우 차별되는 부분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향후 중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할 FTA에서 중-뉴질랜드 FTA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허용할 경우 이러한 조건이 뉴질랜드에 자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59] 따라서 이러한 조항이 향후 중국이 우리나라와 FTA를 협상할 때 취할 입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미리 예상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동 FTA는 중국의 서비스 시장개방이 WTO 양허안보다 높아진 분야도 존재하지만,[60] 정부의 서비스 규제권한의 중요성과 공공서비스 제공 및 지원의 중요성 인식규정을 포함하여 정부의 서비스 규제자로서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밖에 중-뉴질랜드 FTA에서는 투자 분야와 관련하여 투자보호는 설립 이후만 내국민대우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투자자유화가 아닌 투자보장 협정 수준으로 합의되었으며, 서비스 협상에서와 같이 투자부문에서도 최혜국대우를 명시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중-뉴질랜드 FTA가 우리나라에게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

59) 상호 최혜국대우가 인정되는 서비스 분야는 다음과 같다: 건축서비스, 환경서비스, 농임업 관련 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컴퓨터 관련 서비스, 여행 서비스.

60) 이러한 서비스 분야로는 컴퓨터 관련 서비스, 경영컨설팅 관련 서비스, 교육 서비스, 환경 서비스, 스포츠 및 레저 서비스, 항공운송 서비스, 및 육상운송 서비스 등이다.

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서비스와 투자, 원산지 규정을 비롯한 FTA의 주요 내용에서 동 FTA는 기존에 중국이 체결한 FTA에서 보다 발전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우리나라가 향후 중국과 FTA 협상을 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산지 규정의 경우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는 세번변경을 위주로 하는 혼합기준을 선호하고 있어 중국이 뉴질랜드와의 FTA에서 이를 수용한 것은 향후 한-중 FTA 논의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비스 분야에서의 MFN 인정은 한-미, 한-EU FTA에서도 쟁점이 되었던 것으로, 두 FTA에서 모두 중-뉴질랜드 FTA와 마찬가지로 소급적용은 인정하지 않고 미래적용만을 인정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므로, 향후 한-중 FTA 협상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이 서비스 분야에서 개방한 정도가 WTO 양허안 수준에서 나아진 점이 별로 없다는 점은 FTA를 통해 중국 서비스 시장개방을 이끌어 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게다가 중-뉴질랜드 FTA는 지적재산권 조항을 포함한 최초의 FTA라는 점에 있어서는 평가될 수 있으나 그 내용에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실행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FTA를 통한 지적재산권의 효과적 보호의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중국이 뉴질랜드와 체결한 FTA가 중국 최초의 포괄적 FTA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이 협정문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다른 선진국과의 FTA에서도 같은 매뉴얼로 적용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극히 불분명하다는 점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이 남아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중국과 호주의 FTA가 어떤 방식으로 타결되는지 여부에 따라 중국의 향후 FTA에 대한 방향성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5장 한-중FTA 협상을 대비한 SW분야 협상쟁점

제 1 절 서비스 분야 협상 쟁점
제 2 절 투자 분야 협상 쟁점
제 3 절 정부조달 분야 협상쟁점
제 4 절 기술규정 · 표준 및 적합성평가 분야 협상쟁점
제 5 절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쟁점
제 6 절 경쟁 분야 협상 쟁점
제 7 절 인력이동 분야 협상쟁점

제 1 절 서비스 분야 협상 쟁점

1. 협상 쟁점의 범위

FTA에서 서비스 분야는 투자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다.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 시장의 개방 범위를 확대하고 개방 수준을 높임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서비스 무역을 보다 자유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 분야에 대한 양허 및 시장 자유화와 관련된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한다. 한편 투자 분야의 일반적 형태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만을 정하거나 또는 이에 더하여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 자유화를 위한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여기에서 투자자 보호 규정의 대상은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 뿐 아니라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

서비스 무역에서 상업적 주재를 양허하는 것은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 개방이다. 그러므로 서비스 분야에서 상업적 주재를 개방하는 것은 투자 분야에서 서비스 산업을 개방하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FTA의 서비스 챕터와 투자 챕터 협상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서비스 분야와 투자 분야의 협상 쟁점이 상이하게 될 것이다. 즉 일부 쟁점은 협상 방식에 따라 서비스 분야의 쟁점이 되거나 또는 투자 분야의 쟁점이 된다.

한-중 FTA의 서비스 분야와 투자 분야의 협상 형태로 (i) 서비스 챕터에 서비스 무역의 모든 방식 즉 국경간 공급, 해외 소비, 상업적 주재, 자연인 주재를 포함하고 투자 챕터에 투자보장 규정을 포함하는 방법(또는 양국 사이에 이미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투자 챕터를 포함하지 않는 방법), (ii) 서비스 챕터에 국경간 공급, 해외 소비, 자연인 주재를 포함하고 투자 챕터에 상업적 주재와 투자보장규정을 포함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FTA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며 서비스 산업에 대한 자유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i)의 방식에 따라 서술한다.

2. WTO 양허 이행 관련 쟁점

A. 의의

중국은 2001년 12월에 WTO에 가입하면서 서비스 무역의 일부 분야에 대하여 양허하였다. 중국이 양허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상담 서비스(CPC 8421), 시스템 분석 서비스(CPC

8422), 시스템 디자인 서비스(CPC 8423), 프로그래밍 서비스(CPC 8424)와 시스템 유지 서비스(CPC 8425)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실행서비스를 개방하였다.

중국은 소프트웨어 실행서비스와 관련하여 국경간 공급 및 해외 소비에 대한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어떠한 제한도 유보하지 않았다. 그리고 상업적 주재와 관련하여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으로 합작회사의 형태만 인정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의 지사 설립을 양허하지 않았고,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을 유보하지 않았다. 자연인 주재와 관련해서 일정한 경우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적 체류에 관한 조치를 제외하고 이를 양허하지 않았으며, 예외적인 입국 및 일시적 체류의 경우에도 면허를 소지한 기술자 또는 학사 학위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원 그리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자로 자격 조건을 정하고 있다.

한-중 FTA 소프트웨어 서비스 분야 협상에서는 중국의 국내 법규 또는 관행이 중국의 기존 양허를 위반하는 등 중국의 양허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가지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요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B. 주요 쟁점

(1) 내국민대우 의무의 이행

1) 부가가치세 환급

중국의 『소프트웨어산업과집적회로산업발전에있어세수정책과관련된문제에대한통지』는 2000년 6월 24일부터 2010년 말까지 소프트웨어 생산자가 자체 개발하여 생산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17%의 세율을 적용하여 징수한 부가가치세 가운데 3%를 초과하는 부분을 즉시 환급해 준다. 그리고 수입된 소프트웨어를 '현지화 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역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된다. 다만 수입 소프트웨어를 한자식으로 처리한 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국에서 생산된 소프트웨어 및 현지화 개조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수입 소프트웨어에 대한 차별로서 GATT 제III조 제4항을 위반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제작되어 수출된 소프트웨어가 차별대우를 받게 되어 국내에서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수출하는 기업이 불리한 경쟁적 지위에 놓이게 된다. 이 문제는 소프트웨어의 상품 분야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투자자가 설립한 기업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를 수입하여

한자식으로 처리한 소프트웨어는 중국 제품이므로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업적 주재에 의하여 중국에 진출한 소프트웨어 실행 서비스에 종사하는 국내 기업이 만일 국내에서 수입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상대적으로 저가의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된다. 이 경우 GATS 제XVII조가 규정한 내국민대우에 위반된다.

중국에서 개발될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이들 제품에 대한 판매를 상대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며 따라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유통업을 불리하게 차별하게 된다. 그러므로 소프트웨어 유통 서비스에 진출한 국내 유통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GATS 제XVII조의 내국민대우를 위반한다.

2) 국내 규제

GATS 제6조 제1항은 회원국들이 구체적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 있어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한다. 이를 위하여 각 회원국은 영향을 받는 서비스 공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결정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정당화되는 경우 행정결정에 대한 적절한 구제를 제공할 사법, 중재, 또는 행정 재판소 또는 절차를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유지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관련 행정결정을 위임받은 기관과 독립적이지 아니한 경우 회원국은 동 절차가 실제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평한 검토를 제공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중국은 국내적으로 관련 절차를 제공하는 법제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에 있어 구제가 적절한 지가 의문이다. 특히 중국의 조치로 인하여 서비스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서비스 공급자는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한 검토를 받아야 하는 바 그 절차의 신속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 따라서 이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를 조사하여 한-중 FTA 협상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3. 중국의 DDA 양허안

A. 의의

중국은 2001년 12월에 WTO 가입할 당시에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를 양허한 후 DDA

협상 과정에서 개방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양허안을 제시하였다. 중국이 제시한 양허안은 기존 양허를 유지하고 있으나 상업적 주재에 관한 시장 접근의 제한으로 합작회사 형태의 시장접근 만을 허용하던 것을 완전한 외국인 소유 기업 형태의 시장접근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한-중 FTA 소프트웨어 서비스 분야 협상에서는 중국이 DDA 협상 과정에서 제시한 개방안에 포함된 내용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이 이미 DDA 협상 과정에서 양허할 의향을 표시한 내용이므로 우리나라가 이를 요구하고 관철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B. 주요 쟁점

(1) 외자기업

중국은 DDA 협상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의 상업적 주재에 관하여 합작회사 형태만을 인정하던 기존의 입장에서 벗어나 외국인 투자자가 완전히 지분을 소유하는 형태의 기업 설립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DDA 협상이 종결되지 않아 중국의 양허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한-중 FTA에서는 우리나라 투자자가 100% 지분을 소유하는 외자기업의 설립을 양허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중국이 이미 양허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이다.

4. 중국의 FTA 관련 쟁점

A. 의의

중국은 ASEAN, 칠레, 홍콩, 뉴질랜드와 이미 FTA 또는 CEPA를 체결하였다. 중국이 소프트웨어 서비스 분야에 있어 WTO에서 양허한 수준을 넘어서 FTA에서 양허한 내용을 파악하여 한-중 FTA 협상에서 이를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이 다른 국가와의 FTA에서 이미 양허를 한 내용이므로 우리나라가 이를 요구하고 관철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B. 주요 쟁점

(1) 서비스 분야 포함 여부

중국이 이미 체결한 FTA는 서비스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것도 있으나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도 있다. 중국이 서비스 분야 개방에 소극적인 점에서 한국과의 FTA에 이를 포함하고자 할지는 불분명하다. 그런데 산관학 연구에서 중국의 입장은 서비스 분야를 포함하되 그 개방 수준을 WTO에서 양허한 수준으로 유지하려 한다. 그러므로 FTA에 서비스 분야를 포함하는 것은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 않으나 높은 수준의 개방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협상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최혜국대우 의무

과거 중국이 체결한 FTA 서비스 분야는 다른 국가와 체결한 FTA를 통하여 이들에게 부여하는 혜택을 상대국에 부여하는 최혜국대우 규정을 포함하지 않았다. 그런데 중국은 뉴질랜드와의 FTA에서 서비스 분야에 최혜국대우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만일 한-중 FTA에 최혜국대우 규정을 포함하지 않게 되며 추후 중국이 다른 국가와 FTA를 체결하면서 부여하는 특혜를 자동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중국과의 FTA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을 비롯한 서비스 산업에 적극 진출하려던 노력의 결과가 반감될 것이다. 중국은 이미 뉴질랜드와의 FTA를 통하여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우리나라와의 FTA에 이를 도입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5. 한-중 FTA에서 추가될 쟁점

A. 의의

중국이 WTO에서 양허하지 않았거나 또는 양허하였더라도 시장접근이나 내국민대우에 대한 유보를 하였으므로 중국이 현재 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의 중국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한-중 FTA 협상에서 제기되어야 할 쟁점이 있다.

한-중 FTA에서 추가될 쟁점을 중국이 수용할 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그 수용 여부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산업에 대한 중국의 정책 변경 가능성과 다른 분야에서의 협상 결과와

연결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B. 주요 쟁점

(1) 투명성

서비스 무역을 포함한 국제 무역에서 투명성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투명성이란 서비스 무역에 장벽이 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와 관행이 분명하고 대외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이전하고 2001년 12월에 WTO에 가입하면서 많은 법제가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불분명하고 이를 집행하는 관행이 불투명하며 차별적이어서 무역에 장벽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제 2 절 투자 분야 협상 쟁점

1. 협상 쟁점의 범위

FTA의 투자챕터는 서비스챕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는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 무역의 개방이 서비스 무역의 한 형태로서 서비스챕터에서 규율될 수도 있으며 상업적 주재는 서비스 제공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업, 자회사 또는 지사를 설립하는 행위이므로 투자 챕터에서 규율될 수 있다. 따라서 투자 챕터의 도입 여부와 투자 챕터의 규율 범위에 따라 서비스챕터의 규율 범위가 다르게 된다.

2. 투자 챕터의 방식

A. 투자챕터 포함 여부

한-중 FTA에 투자챕터를 포함할 지가 양국이 협상을 시작하기 이전 협상 범위를 정하는 시점에 문제가 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1992년에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07년에 개정하였다. 그러므로 양국 사이의 투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한-중 FTA에 이를 포함하는 경우 보호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투자와 관련된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 한-중 FTA 이행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될 FTA 공동위원회를 활용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중 FTA에 투자챕터를 포함하는 문제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비롯한 모든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적용되는 쟁점이 된다.

중국은 ASEAN, 칠레 등과의 FTA에 별도의 투자챕터를 포함하지 않았다. 그리고 중국은 과거 한국과의 산관학 합동 연구에서 투자챕터를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근자에 체결된 중국-파키스탄 및 중국-뉴질랜드 FTA는 투자 챕터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중 FTA에 투자챕터를 포함하는 것을 중국이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한-중 FTA 협상에서는 투자챕터가 포함되는 경우 그 형식과 투자 보장을 위한 규정의 수준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B. 투자챕터의 형식

(1) 한-미 FTA 방식

한-미 FTA 투자챕터는 서비스 무역자유화와 투자자 보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추구하고 있다. 한-미 FTA 투자챕터는 서비스 무역의 상업적 주재 자유화와 제조업 및 서비스에 대한 투자 및 투자자 보장을 내용으로 한다. 서비스 무역자유화와 관련하여 한-미 FTA는 Negative 방식을 택함으로써 서비스 무역에 관한 투자 즉 WTO 서비스무역협정 상 Mode 3의 상업적 주재를 원칙적으로 모든 분야에 대해 허용한다. 그리고 양허하지 않는 Mode 3 서비스 분야와 양허를 하였더라도 시장접근 제한 및 내국민대우 제한을 비합치 조치로 유보한다.

한-중 FTA 투자챕터가 한-미 FTA 방식을 택할 경우 투자 개방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개방 범위와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한-미 FTA를 통하여 이미 높은 수준의 투자 개방을 이룬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식의 투자챕터로 볼 수 있다. 다만 서비스 무역 자유화에 소극적인 중국이 이를 수용할 지는 매우 회의적이다.

투자 또는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방식을 택하는 지가 보호 수준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투자 및 투자자 보호 수준은 관련 규정을 어느 정도 상세하게 추가적으로 규정할 지와 중국이 투자챕터 상의 의무를 얼마나 신의성실하게 이행할 지가 문제된다.

(2) 한-EU FTA 방식

한-EU FTA 방식은 투자와 관련하여 WTO GATS 협정과 같이 양허표에 개방할 분야를 열거하고 이에 대한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을 기재하는 방식이다. 다만 다른 FTA와 달리 일부 제조업에 대한 시장접근 즉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의 양허를 포함한다. 그리고 투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는 FTA 협상 권한을 보유한 EU 집행위원회가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EU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투자 및 투자자 보호는 우리나라가 EU 회원국들과 개별적으로 체결된 양자간 투자보장협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한-중 FTA가 한-EU 방식을 따를 경우 양허한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 개방이 이루어지고 소프트웨어 제작업 등 제조업에 대한 양허를 포함할 수 있다. 중국이 소프트웨어 제조업을 양허한다면 현재 국내법에 의한 투자 허용이 국제법에 의한 투자 허용으로 변경된다. 그 결과 현재 국내법에 의한 투자 허용의 경우 중국이 관련 법규를 해외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한-EU FTA 방식으로 제조업을 양허하는 경우 관련 법규를 해외 투자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 없다.

이 경우 투자 및 투자자 보호는 한-중 FTA에 포함되지 않으며 현재의 양자간 투자보장협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관련 제조업과 서비스에 대한 투자 및 투자자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양자간 투자보장협정을 개선하고 중국이 이를 신의성실하게 운영하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한-EU FTA의 경우 투자 기업 설립에 적용되는 내국민대우 규정이 투자보호에 적용되어 양자간 투자보장협정에 따른 내국민대우보다 강화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국의 소프트웨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중국에 진출하여 당면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중국 기업과의 차별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3) BIT 방식

1) 기존 투자보장협정의 수용

한-중 FTA에 투자 및 투자자 보호 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현재의 양자간 투자보장협정을 통하여 투자 및 투자자 보호를 추구하는 방식이 있다.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한-중 FTA 투

자챕터에 현재의 양자간 투자보장협정을 그대로 또는 그 것을 개선하여 포함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투자 및 투자자 보호는 투자챕터에 포함된 기존의 투자보장협정 또는 개선된 투자보장협정의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다. 양국 사이에 이미 체결된 투자보장협정을 FTA 투자챕터로 포함하는 경우 양국 사이에 이행과 관련되는 문제가 야기될 경우 한-중 FTA에 따라 설치될 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되는 장점이 있다.

중국과 뉴질랜드는 2008년 4월 7일에 FTA에 서명하였고, 이 FTA는 2008년 10월 1일부터 발효하였다. 중국-뉴질랜드 FTA의 투자챕터는 투자설립 이후에만 내국민대우를 적용하며, 투자자유화가 아닌 투자보장협정 수준으로 합의하였다. 다만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비합치조치와 역진방지(ratchet mechanism), 투자자-국가 중재제도(ISD) 등 중국-칠레 FTA의 투자부분에 포함하지 않았던 내용을 포함하여 합의하였다. 따라서 한-중 FTA의 투자챕터도 중-뉴질랜드 FT의 투자챕터와 같은 수준으로서 기존 한-중 투자보장협정을 수용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중 FTA에 투자챕터를 포함하던지 아니면 투자보장협정의 내용을 투자챕터에 포함하던지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 무역에 관한 사항은 국경간 공급, 해외 소비 및 자연인 주재에 의한 서비스 무역과 함께 서비스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2) 한-중 투자보장협정

우리나라와 중국은 '투자 촉진 및 보장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07년 9월 8일 이를 개정하였다. 한-중 투자보장협정은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공평하고 공정한 대우 및 완전하고 지속적인 보호와 안전 등 투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유치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유치국이 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투자자는 투자유치국을 대상으로 국제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투명성 규정을 도입하여 투자유치국은 투자자의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협정과 자국의 법률 · 규칙 · 절차 · 행정판결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법적 결정을 즉시 공표하거나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중 투자보장협정은 설립 전 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현행 비합치조치에 내국민대우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내국민대우의무에 대하여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비합치조치에 대한 역진방지를 인정하고 있어 비합치조치에 개정이 비합치효과를 증가시키지 않아야 한다.

이행요건부과 금지와 관련하여 투자보장협정은 일반적으로 부과를 금지하는 요건을 열거하지 않고, 투자자가 투자를 관리 · 유지 · 사용 · 향유 또는 처분하는 것에 대하여 부당하거

나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며, 국내산 사용·기술 이전 또는 수출이행 의무에 관하여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규정한다.

3. 패키지 서비스 관련 쟁점

A. TRIMs 상의 쟁점

(1) 부가가치세 환급

중국은 소프트웨어 생산자가 자체 개발하여 생산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17%의 세율을 적용하여 징수한 부가가치세 가운데 3%를 초과하는 부분을 즉시 환급해 준다. 그리고 수입된 소프트웨어를 '현지화 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역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되지만 수입 소프트웨어를 한자식으로 처리한 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됨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WTO TRIMs 협정은 투자 관련 조치가 내국민대우 의무를 규정한 GATT 제III조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TRIMs 규정 위반으로 규정한다. 우리나라 투자자가 투자한 중국 내의 기업이 국내에서 반제품을 수입한 후 추가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만일 중국에서 완전히 개발된 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우리나라 반제품에 대한 차별로서 GATT 제III조 제4항을 위반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투자 관련 조치로서 TRIMs 협정 제2조 제1항을 위반한다.

한편 중국의 부가세 환급 규정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를 수입하여 한자식 처리를 한 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차별로서 GATT 제III조 제4항을 위반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은 GATT 제III조 제4항을 위반하는 투자 관련 조치로서 TRIMs 제2조 제1항을 위반한다.

(2) 국산부품 사용 의무

TRIMs 제2조 제1항은 회원국이 1994년도 GATT 제3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무역관련투자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와 관련하여 1994년도 GATT 제3조제4항에 규정된 내국민대우 의무와 1994년도 GATT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수량제한의 일반적인 철폐의무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무역관련투자조치의 예시목록을 이 협정의 부

속서에 포함하고 있다.

부속서는 1994년도 GATT 제3조제4항에 규정된 내국민대우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무역관련투자조치는 국내법 또는 행정적인 판정에 의하여 의무적이거나 집행가능한 조치 또는 특혜를 얻기 위하여 준수할 필요가 있는 조치로서, 기업으로 하여금 국산품 또는 국내 공급제품을, 특정 제품을 기준으로 하거나 제품의 수량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또는 자신의 국내생산량 또는 금액에 대한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구매 또는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SW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중 소프트웨어를 제작할 때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위의 TRIMs 제2조를 위반한다.

B. 투자 보장 규정상의 쟁점

소프트웨어 패키지 서비스에 진출한 투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는 규정상의 쟁점은 아래 설명하는 소프트웨어 실행 서비스에 진출한 투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는 규정과 동일하므로 이는 아래에서 설명한다.

4. 소프트웨어 실행 산업 관련 쟁점

A. 투자 보장 규정상의 쟁점

(1) 내국민대우 의무의 이행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된 소프트웨어를 수입하여 한자식으로 처리하여 판매한 경우 부가세 환급 혜택에서 배제되므로 이를 수입하여 한자식 처리 후 판매하는 우리나라 투자 기업이 상품 판매에 있어 불리한 경쟁적 지위에 놓이게 된다. 국산 소프트웨어를 수입하여 한자식 처리 후 판매하는 기업은 비록 우리나라 자본에 의해 설립되었어도 이는 중국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국 국적의 기업이다. 그러나 비록 이 기업이 중국 기업이라도 이에 투자한 우리나라 투자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는 기업에 투자한 중국 투자자와 비교하여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 이는 현행 한-중국 투자보장협정의 내국민대우 규정을 위반한다.

(2) 설립전 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적용

내국민대우 의무는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에 대하여 내국 투자자 및 투자와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상대국의 투자자와 투자에 대하여 내국 투자자와 투자에 대한 대우와 비교하여 최소한 동등한 대우를 하여야 하는 의무이다.

과거 대부분의 FTA 또는 BIT는 투자의 설립(establishment), 인수 (acquisition), 확장(expansion)을 포함하지 않아 내국민대우의무의 대상을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의 활동으로 제한하였다. 그런데 NAFTA 이후 투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활동에 대하여도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KORUS FTA도 내국민대우의무를 투자 이후 뿐 아니라 투자, 인수, 확장 등 투자와 관련된 투자 이전의 활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한편 한국이 중국과 체결한 투자보장협정도 이미 설립된 투자에 한하여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투자를 확장하는 것에도 내국민대우를 부여한다. 그러나 투자를 하려는 단계, 그리고 투자하는 단계와 기존 기업을 인수하는 단계에서는 내국민대우가 부여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의 투자자가 차별을 받을 수 있다.

최근의 FTA 또는 양자투자협정은 설립전 투자에 대하여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한-중 FTA를 계기로 설립전 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시장접근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제작업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서비스업에 내국민대우를 통하여 중국 투자자와의 차별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과의 투자보장협정 이후 체결된 중국-뉴질랜드 FTA는 설립, 인수 뿐 아니라 확장을 내국민대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내국민대우 의무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중국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매우 회의적이다.

(3) 비합치조치의 완화

WTO에서 중국이 비록 소프트웨어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였으나 한-중 투자보장협정은 투자 및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협정 발효 당시에 협정과 합치하지 않는 조치 전부를 포괄적으로 유보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포괄적으로 비합치조치를 유보하는 경우는 국제투자협정의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외국 투자자에 대하여 내국민대우를 배제하는 효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내국민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중국에게 민감한 조치를 제외하고 비합치조치를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4) 이행요건 부과 금지

이행요건 부과 금지란 투자유치국이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하여 협정에 규정된 요건을 부과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대한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강요할 수 없는 의무이다. 오늘날 투자보장협정은 일반적으로 (i)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수출하는 것, (ii)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산부품 사용을 달성하는 것, (iii)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또는 사용하거나 이에 대하여 선호를 부여하는 것, 또는 자국 영역에 있는 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것, (iv)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그러한 투자와 연계된 외화유입액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키는 것, (v) 투자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킴으로써 자국영역에서 판매를 제한하는 것, (vi) 자국 영역의 인에게 특정한 기술, 생산공정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지식을 이전하는 것, 또는 (vii) 투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공급하는 서비스를 당사국의 영역으로 부터 특정한 지역시장 또는 세계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투자유치국이 투자자에 대하여 이행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투자유치국이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경우 이를 조건으로 위의 (i), (vi), (vii)의 요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정부조달 등 일정한 경우 예외가 있다.

한-중 투자보장협정은 당사국이 국내산 사용, 기술 이전 또는 수출이행의무에 관하여 상대국 투자에 대하여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양자간 투자보장협정이 일반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금지하여야 할 이행요건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자국 기업과 동등하게 발동하는 이행요건이 비차별적 조치로 허용될 소지가 있다. 특히 조치의 비합리성에 관한 판단에 따라 이행요건의 부과가 허용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일반적 양자투자협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금지해야 할 이행요건을 명시하는 것이 중국이 우리나라 투자자에게 이행요건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확실한 방안이 될 것이다.

(5) 국제관습법상 대우의 최저기준

대우의 최저기준 원칙은 투자유치국이 국제관습법상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한 대우의 최저기준 이상의 대우를 상대국의 투자에 대해 부여해야 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투자유치국이 자국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와는 별도로 외국 투자에 대한 대우가 국제법상의 최저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내국민대우원칙과 최혜국대우원칙이 비교 대상이

있는 상대적 개념인 반면, 대우의 최저기준은 절대적 개념이다. 그러므로 투자유치국이 비록 상대국의 투자에 대하여 내국민대우의무와 최혜국대우의무를 준수하더라도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외국인에 대한 대우의 최저기준 이상의 대우를 하지 않는다면 투자협정에 위반된다.

대우의 최저기준과 관련하여 공정한 대우란 세계의 주요 법률체계에 구현된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형사·민사 또는 행정적 심판절차에 있어서의 정의를 부인하지 아니할 의무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의무이며, 공평한 대우의 개념은 상이한 부류의 투자자, 즉, 자국민 및 공평하게 대우받는 외국인 간에 공평성을 가하는 것과 투자자의 보호와 당시 지배적인 특정 상황에 비추어 투자유치국이 정당하게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 간에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할 의무이다. 충분한 보호와 안전은 국제관습법에 따라 요구되는 수준의 경찰보호를 제공을 의미한다.

한-중 투자보장협정은 상대방의 투자에 '공평하고 공정한 대우' 및 '완전하고 지속적인 보호와 안전' 등 투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유치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공평하고 공정한 대우'는 법규의 내용, 집행, 관행이 투명하게 운영될 것을 하나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해외 투자에 대하여 투명한 법규를 제정하고 집행하는지 의문시되는 다수의 중국 관행이 존재하므로 그러한 관행의 철폐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한-중 투자보장협정 협정의 문언은 양자투자협정이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국제관습법상의 대우의 최저기준 보장을 규정하지 않고 그 내용의 일부인 공평하고 공정한 대우' 및 '완전하고 지속적인 보호와 안전'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투자가 충분하고도 완전하게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제투자협정이 사용하는 문언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협정 이행의 투명성 확보

투명성이란 법규의 내용이 명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투명성은 법규의 제정 뿐 아니라 집행 단계에서도 요구되는 것이다. 중국의 법제도는 일반에 공표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지만 그 내용이 불명확한 것들이 있으며 특히 집행 단계에서 불투명한 면이 있다.

B. 소프트웨어 실행 산업 투자자유화상의 쟁점

소프트웨어 실행 산업에 대한 투자자유화는 서비스 분야에 포함될 수도 있으며 한-미 FTA와 동일한 형태의 협상 방식을 택하는 경우 투자 분야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소프트웨어 실행 산업에 대한 투자 자유화는 서비스 분야의 소프트웨어 실행 산업의 상업적 주재에 관한 양허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여기에서 반복하지 않는다.

제 3 절 정부조달 분야 협상쟁점

1. 개요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은 정부기관이 그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조달은 그 재원이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국내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국내 산업 활성화, 고용 창출, 기술 개발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종 이용된다. 따라서 정부조달분야는 외국 상품, 서비스 등에 대한 차별과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분야이다. 그러나 정부조달시장이 꾸준히 성장하여 세계 전체 GDP의 약 10%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정부조달에 대한 국제규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고, 이에 따라 WTO GPA 협정이 탄생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정부조달은 FTA에서도 별도의 장으로 논의되어 오고 있다. 중국이 아직 GPA 회원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중간에 GPA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중 FTA가 추진된다면, 정부조달분야에서 어떠한 쟁점이 있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중국의 GPA 가입

A. 개요 및 현황

정부조달에 관한 국제규범인 GPA는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을 구성하는 4개의 부속서(Annex) 중 하나로 소위 복수국가간 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s)

에 포함되어 있다. 복수국가간 무역협정은 다른 부속서와는 달리 복수국가간 무역협정에 가입한 국가에만 적용된다. 다시 말해 GPA는 본 협정의 적용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국가들에 대하여만 적용되는데, GPA의 가입국 수는 2009년 1월 현재 약 40여 개국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GPA는 정부조달 자유무역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투명성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양허내용은 양허협상에 따라 각국별 양허표가 협정문에 부속되어 있고, 국제경쟁입찰을 규율하기 위한 상세한 절차조항(입찰공고, 개찰, 낙찰과정)을 협정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WTO GPA에서는 정부조달의 주체와 객체로 나누어 정부조달의 범위를 확정하고 있다. 정부조달주체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열거방식으로는 개별열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부속서 Ⅰ는 중앙정부의 조달주체(중앙정부기관)을 열거하였고, 부속서 Ⅱ는 2차 중앙기관의 조달주체(지방정부기관)를, 부석서 Ⅲ는 GPA에 근거하여 조달을 진행하는 기타 모든 주체들을 열거하고 있다. 부속서 Ⅳ는 GPA의 적용을 받는 용역을 열거하고 있고, 부속서 Ⅴ는 GPA의 적용을 받는 건축서비스를 열거하였다. GPA 상 나타나고 있는 조달객체는 최저 한도액을 초과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와 건축서비스, 최저 한도액을 초과하는 조달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1) 중국

GPA는 가입한 국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중국에는 적용되지 않는 협정이다. 그러나 중국은 WTO 가입시 GPA에 가능한 한 빨리 가입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2006년 4월 JCCT회의에서 가입신청과 2007년 12월 그 범위에 대한 초기 제안을 제출함으로서 GPA의 가입절차를 시작하였다. 미국 등 GPA당사국들은 중국의 정부조달범위를 다른 가입국의 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중국의 초기제안에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중국은 이에 대하여 2008년 9월 GPA가입과 관련한 정보제공을 위한 체크리스트 목록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2008년 미국과 중국은 중국의 GPA가입 조건에 대한 3번의 협상을 개최하고 중국의 GPA 가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들의 제한적인 조달체제와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은 2008년 12월 미국의 조달체제 및 미국의 GPA 대상 분야의 범위에 대한 중국의 질문에 답변하였다. GPA 가입이 완료될 때까지 중국은 가입의정서에서 모든 중앙 및 지방정부가 이들의 조달업무를 투명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중국은 또한, 만약 외국 공급자에게 조달분야를 공개하는 경우 이는 모든 외국 공급자들에게 입찰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MFN대우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는데 합

의하였다.

(2) 한국

우리나라는 지난 1979년부터 1990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GATT-GPA에 가입신청을 했고 1991년 협정 적용 확대와 협정문 개선을 위한 협상에 참여하였다. 1992년 제1차 양허안을 GATT에 제출하였고, 1993년에는 2차 양허안, 1993년에는 최종양허안을 제출하였다. 1994년 4월 UR 최종안에 서명하여 GPA의 24번째 가입국이 되었으며, 42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광역 자치단체 및 23개 정부투자기관을 개방대상으로 하였다. 협정 발효시점은 97년 1월 1일로 하였다.

B. 중국의 GPA 가입 유도 및 FTA와의 연계방안

중국이 GPA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중 FTA 협상을 계기로 중국에 GPA에 조속히 가입하도록 압력을 넣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GPA가 복수국간 협상에 머물고 있지만 정부조달에 관한 가장 정리된 형태의 국제규범이라는 점에서 볼 때, 중국이 GPA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이미 GPA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중국에 GPA에 가입하여 상호 GPA의 적용을 받도록 유도하는 접근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중국으로서도 현재 중국이 수출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GPA에 가입함으로써 중국이 여타 GPA 회원국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GPA가입 시의 양허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 중국이 GPA에 가입하여 GPA상의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투명성 원칙 등을 준수하게 된다면, 현재 중국 정부조달시장이 가지는 문제점 중 상당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이 현재 GPA 가입과 관련하여 가입절차를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가입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FTA협상과의 연계가능성을 검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내국민대우

A. 개요 및 현황

(1) 개요

중국의 GPA가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GPA상의 주요 원칙들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과 양자협의 또는 중국의 국내절차를 이용하여 차별적인 조치를 시정할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하여는 정부조달과 관련된 중국 국내법, 제도, 관행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사례분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은 내부적으로 정부조달분야에 대한 정비작업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03년 1월 정부조달법(Government Procurement Law)을 제정, 시행해오고 있다. 동 법은 GPA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으며, UN의 상품조달 모델법의 조항들도 반영하고 있다. 동 법의 시행으로 정부조달과 관련된 중국의 제도적 틀이 제공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이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외국산 상품이나 서비스에 비해 내국산 상품이나 서비스에 우선권을 주는 등 내국민 대우 위반 규정이나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또한 그 이행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는 여전히 큰 숙제로 남겨져 있다.

(2) 현황

국무원이 2000년과 2002년에 각각 발표한『소프트웨어산업과집적회로산업의발전을고무하는것에관한약간의정책』(關于鼓勵軟件産業和集成電路産業發展的若干政策)과『소프트웨어산업진흥행동개요(2002-2005)』(振興軟件産業行動綱要)를 보면, 중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내소트프웨어에 대한 구매정책조치를 취하여 국산소프트웨어의 시장공간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다각적인 투자와 융자시스템을 구축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지원을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 국무원의 정책 중 제8장이 정부구매정책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25조는 “국가가 투자한 중대공사와 중점 응용시스템은 국내기업이 우선적으로 건설해야 하며, 성능가격을 대비하여 조건이 동등할 경우에는 국산 소프트웨어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7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정부기구가 구입하는 소프트

웨어, 국가 주권 및 경제안전과 관련되는 소프트웨어는 정부 구입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재정부와 공업 · 정보화부에서 제정을 논의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정부구매시행방법』(軟件政府采購實施辦法) 초안 제3조의 규정에도 이러한 내용을 볼 수 있다. 동 초안에 따르면, "정부구매 시 동 방법에서 인정한 국산 소프트웨어와 국내 소프트웨어서비스를 구매하여야 하며, 비 국산을 구매할 경우, 반드시 동 방법에 따라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정부구매와 관련하여, 국산 소프트웨어의 우선 사용을 명시하고 있다.

중국은 2005년 정부조달에서 무선암호화표준(WAPI)에 맞는 상품을 선호하는 조치를 제정하였다. 국무원은 2006년 중장기과학기술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및 기타 정부부처 및 기관이 이러한 전략을 이행하는 규정을 작성하게 된다. 동 전략은 중요한 산업정책의 수단으로서 국내 상품의 구매를 선호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2007년 9월 전자정부 프로젝트에 대한 규정을 시행하였는데, 동 규정은 국가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위하여 국내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우선권을 두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중국 재무부는 2007년 12월 중국 정부의 외국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두 가지 조치를 발표하였다. 첫 번째는 수입품의 정부조달에 대한 행정조치로서 외국 수입 상품과 기술의 정부조달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두 번째 조치는 초기조달 및 토착혁신상품(Initial Procurement and Ordering of Indigenous Innovation Products)에 대한 정부조달 행정지침으로서 토착혁신상품의 정부조달을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이 개발한 중국 상품으로 제한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B. GPA 가입과정 및 FTA에서 논의 가능성

위에서 상술한 외국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내국산 상품 및 서비스를 우대하는 중국의 국내법, 조치 및 관행 등은 중국이 GPA 가입을 완료할 때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제도나 조치의 경우에는 GPA가입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법, 조치 및 관행 등과 관련하여 GPA상의 원칙들에 배치되는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 분석을 통하여 GPA 가입과정에서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중국 국내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한편으로 이러한 연구 · 분석작업은 추후 FTA협상에서 정부조달을 다룰 경우에도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투명성 확보

A. 개요

일반적으로 중국의 법령은 상대적으로 일반적이고 애매한 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접근 때문에 중국 당국은 법령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도 하지만, 이는 적용에서 일관성 부족이나 혼란을 가져온다. 정부조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서 법령은 여러 정부부처 및 중앙, 성(provincial)및 지방 수준의 정부가 공포하는데, 각급 정부가 공포하는 법령의 규정들이 서로 조화롭지 않은 경우가 많고, 법령의 이행에 있어서 자의적인 해석이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정부조달과 관련된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 외국기업에 이와 같은 내용이 적시에 제공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이를 공정하게 다툴 수 있는 제도가 중국내에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B. FTA에서의 투명성 확보 방안

중국의 정부조달분야에는 여전히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FTA를 통하여 이와 같은 부분을 얼마만큼 어떻게 제거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조달 시장의 불명확성은 체계적인 정부조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미비, 정부조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정부조달과 관련된 정보 및 사례 부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부족 등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물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퍼져 있는 부정부패도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FTA가 이러한 문제 해결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는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투명성 규정을 다수 두고 있는데, 이와 같은 투명성 규정이 한-중 FTA에서 어떤 방식으로 포함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연구 · 분석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5. 중국이 체결한 여타 FTA협상과 관련된 시사점

A. 개요

중국이 체결한 FTA 중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이 언급된 FTA는 중-칠레

FTA가 현재까지는 유일하다. 그러나 동 FTA에서조차 정부조달 분야는 독립된 장(chapter)이 아니라 제13장 협력(cooperation)의 큰 틀 속에서 당사국들의 협력의 한 축으로 경제협력,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서의 협력, 투자 분야의 협력과 함께 정부조달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설립하는 것을 촉진한다는 내용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61]

따라서 현재 중국이 체결한 FTA에서 정부조달을 독립된 장으로 다루고 있는 FTA는 없다. 다만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중국-호주 FTA에 정부조달 분야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중국과 FTA를 추진하는 경우 정부조달 분야를 FTA 협상의제로 포함시킬 수 있을지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중국과 호주와의 FTA 협상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파악하고 그 내용을 분석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볼 때 불확실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B. FTA 협정문 포함여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중국은 정부조달분야를 FTA의 핵심 쟁점의 하나로 상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일단 중국이 WTO GPA 가입국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할 경우에 중국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에 대한 검토 내지는 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의 FTA협상에서도 중국은 정부조달을 FTA 협정문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나올 공산이 크다고 여겨지며, 따라서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WTO GPA 회원국이며,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 정부조달을 별도의 장으로 하여 포함시켜 왔다. 다만 인도 등 개발도상국과의 FTA에서는 정부조달을 별도의 장이 아닌 협력에서 다루고 있다.

중국은 GPA 회원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FTA에서 정부조달이 포함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으나, 이는 반대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GPA에서 보장받지 못하던 권리를 FTA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는 면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FTA 협상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중국이 진행 중인 호주 등과의 협상 경과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향후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FTA 협상에 어떤 시사점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해 나

61) 중-칠레 FTA 제105.2조의 (e) 참조.

가야 할 것이다.

6. 기타 고려해야 할 사항

중국은 컴퓨터정보시스템통합자격인정제도(자격 등급제)를 통하여 사업자의 자격 심사에 의한 인증 및 자격레벨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SW사업자 신고제도는 누구나 아무 제약 없이 공공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중국 조달 분야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조건 충족이 요구되나, 중국 기업은 아무 장애가 없으므로 양 국 기업간 상대국 사업 참여에 심한 불평등 조건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의 대기업 입찰참여 하한제의 경우, 매출 기준 및 종업원 수를 국내 매출 및 종사자 수로 한다면 우리나라 대기업에게는 제한되는 사업을 중국 기업은 제한 받지 않고 참여 가능하여 국내 대기업의 역차별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제 4 절 기술규정 · 표준 및 적합성평가 분야 협상쟁점

1. 개요 및 현황

A. WTO TBT 협정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이란 상품의 특성 또는 그와 관련된 공정 및 생산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문서로서 그 준수가 강제되는 것을 말하며, 표준(standards)이란 상품 또는 그와 관련된 공정 및 생산방법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규정한 문서로 인정된 기관에 의하여 승인되고 그 준수가 강제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적합성평가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는 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절차를 의미한다. 각 나라마다 고유의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판정절차를 운용함에 따라 국제교역에 장애를 유발하고, 특히 동 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가 수입상품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적용됨으로써 무역방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을 없애기 위하여 WTO TBT협정문이 탄생하였으며, WTO 회원국은 TBT협정문의 의무를 준

수하여야 한다. 중국의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의 경우 그 차별적인 적용과 투명성의 부족 등으로 무역장벽으로 간주되고 있다. WTO 회원국간의 FTA협상에서는 통상적으로 WTO TBT협정상의 권리 · 의무를 재확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련 위원회 설치, 투명성 제고방안 등 추가적으로 기술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를 통하여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국법, 제도, 관행을 수정하는 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중 FTA에서 투명성 확보, 내국민 대우 원칙, 상호인정제도 등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B. 중국의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현황

WTO 가입과 동시에 중국 규제당국은 수입품과 국산품에 대하여 동일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를 적용하고, 동일한 요금과 처리 기간 그리고 항의절차(complaint procedures)를 적용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중국은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중의 또는 이중적인 적합성 평가절차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배타적으로 수입품에만 요건을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으며, 자국의 표준 개발자, 규제기관 및 적합성평가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며, 제안된 표준,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한 합리적인 기회를 허락하였다.

이러한 약속에 대비하여 중국은 WTO 가입 이전 표준, 테스팅 및 인증 (certification) 체제를 개편하려고 노력하였다. 2001년 4월 중국은 국내 표준 및 적합성 평가 기관과 입출검역 기관을 국가품질검험검역총국 (AQSIQ)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기관으로 통합하였다. 중국 관료들은 이러한 통합이 수입품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제거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중국은 국가품질검험검역총국 (AQSIQ) 산하에 준독립적인 두 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였다: a)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CNCA)는 국가의 적합성평가 체제를 통합하고, 실행하며 운영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b) 중국 국가표준화관리국 (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SAC)은 의무적인 국가표준을 설정하고 중국의 상품표준의 행정을 통합하며, 중국 표준 제도을 운영하고 자국 표준과 기술규정을 WTO 기술무역장벽협정하의 중국의 약속과 국제적 관행을 제휴하는 기능을 한다.

중국은 2002년 자국의 표준제도와 국제관행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개시하였고, 국제 표준의 사용과 채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고안된 국가품질검험검역총국(AQSIQ) 규정을 발표하였다. 중국은 국제표준과의 관련성 및 일치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현행의 21,000건의 모

든 기술규정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영향을 받는 분야에는 자동차, 자동차 부품, 통신장비, 무선네트워크, 시각 및 청각 코딩, 비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의 특정적인 표준은 때때로 특별한 기술적 또는 과학적 기반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특정적인 표준에 일치시키려면 상품생산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중국으로 시장 진입시 상당한 장벽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가 FTA협상을 계기로 촉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투명성 등 TBT협정상의 의무

A. 개요 및 현황

WTO TBT협정문에 의하면, 각국의 중앙정부 기관은 기술규정을 마련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무역상의 장애를 초래할 것을 의도해서는 안되며, 그러한 의도를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과도한 무역상의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규정을 제정하거나 이를 적용해서는 안된다. 만약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표준을 활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다른 WTO회원국 기술규정의 동등성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회원국과의 교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규정을 채택하려 하는 경우, 그 조치에 관한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조치가 기존 국제표준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회원국의 이해 당사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공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WTO TBT협정상의 의무들에 대하여 중국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최근 다른 국가의 표준기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자국의 관행을 국제관행에 일치시킴으로써 표준개발제도를 개편하는데 진전이 보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으나, 여전히 중국의 표준 개발 절차에서의 개방성과 투명성의 부족은 많은 외국 기업에게 문제가 되고 있다. 방대한 중국의 표준 기관은 외국기업의 참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외국 회사의 회원 자격(membership)을 거부하기도 하고 외국인 소유 기업의 투표를 거부하기도 한다. 일부 경우 외국 회사에게 투표권이 없는 옵저버 지위를 허락하는 경우도 있으나 국내 투표권있는 회원들이 지불하는 수수료(fee)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요구하기도 한다.

중국은 상무부(MOFCOM)을 공지기관으로 설정하였고, 상무부(MOFCOM)은 기술무역장벽협정에 따라 제안된 기술규정이나 적합성 평가절차를 WTO 회원국에게 공지해왔다.

그러나 실제 공지된 대부분의 모든 조치가 AQSIQ, CNCA 및 SAC로부터 나왔으며 다른 기관이 작성한 무역관련 기술규정은 거의 공지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간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경우 관련 기관은 의견을 제출하기에 불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당해 기관이 최종적인 조치를 내리기 전에 제시된 의견을 고려하는 시간은 거의 할당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이 수입품과 국산품에 대하여 동일한 표준과 수수료를 적용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외국 기업들은 중국이 국내 산업이 개발한 토착 표준과 기술규정을 선호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SAC는 2004년 9월 관세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국의 표준 및 기술규정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의 전략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수입업자들은 지방 관료들이 중국의 WTO 가입약속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자의적인 기술규정과 표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기술규정과 표준에 대한 AQSIQ과 유관 기관, CNCA, SAC간의 협력의 부족, 중국 세관과 다른 정부부처 및 기관간의 협력의 부족, 중앙 및 지방 정부간의 협력의 부족으로 심화되고 있다.

B. FTA에서의 논의 방향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는 TBT 장을 별도로 두고, 이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WTO TBT협정상의 권리 · 의무를 재확인하면서, 양국간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관련 현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또한 양국간 대화채널 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TBT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양국 관련기관이 이를 논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중국과의 FTA에서도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TBT 협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중국 법, 제도, 관행 등에 대한 사례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FTA 협상을 계기로 이를 제기하는 한편,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현안을 다룰 기구 등을 설치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불만이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3. 일부 IT 상품에 대한 의무적인 테스팅 및 인증

A. 개요 및 현황

중국은 2007년 8월 WTO 기술무역장벽위원회에 일부 IT상품의 정보 보안 (information security) 기능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하는 테스팅 및 인증에 대한 13개의 규정을 통고하였다. 동 규정은 최종적인 것은 아니며 제안된 규정으로 중국의 정보보안 국가표준에 대하여 테스팅과 인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국제시장에서 사용되는 국제적 표준과 다를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중국의 표준은 중국 규제자들이 요구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도 요구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만약 그렇다고 해도 그러한 알고리즘을 적용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도 불투명하다. 또한, 제안된 규정은 정보보안 분야로까지 강제인증마크 상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국제적 관행 하에서 적합성평가 절차의 대상이 아니다. 중국이 WTO 기술무역장벽위원회에 제안된 규정을 통고할 당시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제안된 규정의 이행일자를 구체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품질검험검역총국(AQSIQ)은 2008년 1월 28일 모든 13개 규정이 대상 상품에 대하여 2009년 5월 1일부터 의무적이라고 발표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WTO 회원국들은 여러 양국간 회의, 기술무역장벽위원회 회의, 중국 무역정책검토 회의, 그리고 2008년 9월 미-중 통상무역위원회(JCCT) 회의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중국은 2008년 9월 미-중 통상무역위원회(JCCT) 회의에서 중국 국내외 전문가들이 정보보안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을 논의하는 동안 동 규정의 최종 이행규정의 공고를 지연한다고 발표하였으며 국제사회는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B. FTA에서의 논의 방향

중국이 일부 IT상품에 요구하고 있는 정보 보안 (information security) 기능에 대한 인증과 관련하여, 이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의 부담이 얼마나 증대되는지에 대한 분석작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우리나라 기업의 부담이 크다면, 이에 대한 논의를 FTA협상과정에서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관련 국제표준에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다른 국가, 예를 들면 미-중 간의 논의 진행상황을 확인하면서 이를 FTA 협상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4. 중국강제인증마크 부착 및 적합성 평가절차

A. 개요 및 현황

중국은 2003년 8월 중국강제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CCC) 마크를 중국 국산품 및 외국산 상품에 적용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인증마크가 요구되는 분야는 159개 카테고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자기기, 정보기술장비, 가전제품 및 부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외국 기업들은 중국강제인증 마크를 요구하는 상품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불만을 제기해오고 있다. 중국은 강제인증마크 규정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많은 국내 상품들이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규정에 따라 인증마크를 요구받고 있음에도 당해 인증마크 없이도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다. 일부 분야에서 외국 기업들은 중국강제인증 마크 요건과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부담스럽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예컨대 당해 절차에 따르면 제조업체는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나 그 위임자의 현장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현장조사의 비용은 제조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에 주재하지 아니하는 중소 기업의 경우 중국강제인증마크를 신청하는 것이 훨씬 더 부담스러운데, 그 이유는 신청서를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의 북경 사무소에 직접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저위험 상품이나 부품과 같이 더 이상 의무적인 인증을 보장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상품에까지 강제인증마크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제기된다.

현재까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는 중국강제인증마크를 위한 14개 인증기관과 153개 테스팅 기관을 두고 있다. 중국이 적합한 외국인 소유 합작회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 기관으로서 인증자격이 있는 경우 내국민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외국 적합성 평가기관이 인정된 적이 없다. 결과적으로 수출자들은 이미 해외에서 평가되었던 테스트를 중국 실험실에 다시 받도록 요구받고 있으며 이는 비용 발생과 시장 진입의 지체라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중국은 각국별로 1개 기관만이 중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제조업체의 공장에 대한 추후 검사를 수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제한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설명된 바 없다. 또한, 강제인증마크의 범위에 포함되는 상품의 범위가 늘어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04년부터 강제인증마크를 받아야 하는 몇몇 신규 상품 카테고리가 추가되었다.

적합성 평가와 관련하여 몇몇 수입자들은 수입품이 지정된 실험실에서만 테스트를 받을

수 있고 테스팅 및 인증 능력이 제한되어 때때로 적합성 평가가 국제적인 관행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된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고 불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외국의 기업들은 인증절차에서의 투명성의 부족과 부담스러운 요건들 그리고 인증처리과정 기간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의무적인 테스팅을 위하여 샘플과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기밀정보와 지적재산권의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인증을 위하여 상품을 평가하는 기술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정부,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풀(pool)로부터 구성이 되는데, 이들이 경쟁자들과 지나치게 밀접할 수 있고, 따라서 이익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업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일부 경우에는 수입상품을 테스팅하는 실험실이 국내 경쟁자와 제휴된 경우도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훔쳐갈 가능성이 높다.

B. FTA에서의 논의 방향

중국이 중국강제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CCC) 마크를 중국 국산품 및 외국산 상품에 적용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산품에 비하여 외국산 상품에 대하여 엄격하게 이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외국산 상품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부담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분석작업을 토대로 하여, 만약 우리나라 기업에 많은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면, 한-중 FTA에서 동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기관이 적합성평가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입상품에 대한 테스팅 과정에서 지재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만큼 이 경우에는 지재권 분야의 협상과도 연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나라에도 보안제품의 경우 국정원의 CC인증이 필요하며, GS인증 제품 우대정책이 있으므로 양 국간에 동일한 조건이 될 수 있다. 다만 양 국 인증을 상호 인정해 주는 방향의 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기타 FTA에서의 기술규정 · 표준 · 적합성평가절차 규정 방식

A. 개요 및 현황

중국이 칠레와 체결한 FTA에서도 TBT장을 두고 있으나 원칙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는데, 최근 체결된 중-뉴질랜드 FTA에서는 일부 주목할 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가 중국과의 협상을 준비하는데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보인다. 중-뉴질랜드 FTA는 중-뉴질랜

드 FTA 제8장에서 양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분야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표준(standards)이나 규제(regulations) 및 적합성 평가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등이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0조) 즉, 중국과 뉴질랜드는 동 FTA 제8장을 통해 적절한 관리나 규제권한 기관(regulators) 및 기술전문가들 사이에서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양국 간의 불필요한 기술무역장벽을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양 당사국은 상대국의 기술규제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며, 제품의 샘플링이나 검사 등을 위한 다른 당사국의 절차(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기로 장려하였다.(제97조) 또한 중-뉴질랜드 FTA는 공동표준 및 규제를 설정하기 위한 작업을 담당할 공동 기술무역장벽 위원회(Joint TBT Committee)를 설립하기로 하였다.(제100조) 한편, TBT관련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 당사국들은 동 FTA에 따른 분쟁해결 조항을 이용하거나 또는 WTO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소프트웨어 자체가 서비스로 분류되는 경우 중-뉴질랜드 FTA에서 표준 및 인증 분야와 관련되는 조항으로는 제112조가 있다. 동 조항은 교육서비스를 예정한 조항이긴 하지만 서비스 공급자의 허가, 인가 및 증명을 위한 기준 또는 표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에게 적절한 권한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다른 당사국 내에서 부여된 인가 또는 증명, 충족요건, 경력 또는 교육 등을 인정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인증제도는 당사국 또는 각 당사국의 적절한 권한 있는 기관들 사이에서 체결된 협정에 기초하거나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제112조)

한편 소프트웨어와 직접 관련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중-뉴질랜드 FTA에서는 기존에 중국이 체결한 FTA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상호인정 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동 FTA는 전기전자설비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o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Components)을 부속서 14에 포함시켰다. 전기전자설비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은 중국의 강제인증제도(the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CCC)에 대해 뉴질랜드 국내에서 합격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로써 중국이 승인한 뉴질랜드 기관에 의해 신뢰성과 적합성 평가를 받으면 CCC 마크를 붙여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뉴질랜드에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감독을 용이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동 FTA에서의 MRA는 중국이 맺은 최초의 기술상호인증협정으로서 앞으로 중국은 국외에서 테스트・검사되어 인증 받은 결과를 처음으로 수용하게 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B. 한-중 FTA에서의 규정 방식

우리나라는 기존에 체결한 FTA에서 모두 TBT 장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협정문마다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도 칠레, 뉴질랜드와의 FTA에서 TBT 장을 별도로 두고 있다. 중국은 뉴질랜드와의 FTA에서 일부 추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그 내용이 WTO TBT 협정상의 권리, 의무를 재확인하는 내용과 협력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 TBT 장에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의 법, 제도, 관행 등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S/W 산업의 경우, TBT 관련 어떤 쟁점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필요시 이를 TBT 장에 규정할 수 있도록 협상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중국이 뉴질랜드와의 FTA에서 최초로 전기전자설비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MRA)에 합의하였다는 사실은 한-중 FTA 협상에서도 참고할 만하다. 만약 한-중 FTA를 통하여 S/W분야에서 양자간 상호인증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관련 품목을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기술인증과 관련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가격 경쟁력확보를 통하여 수출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호인정협정은 우리나라도 중국의 인증을 수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중국상품의 접근성을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상호인정협정 체결시 이로 인한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시장 접근과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중국기업의 접근, 양자를 모두 고려하여 상호인정협정 문제를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제 5 절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쟁점

1. 소프트웨어 등록의 문제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제7조는 소프트웨어의 등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등록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은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 등기방법'에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업무는 국가판권국에서 관리하며, 등록기관은 중국저작권

보호센터다. 외국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중국에서 소프트웨어를 등록하면, 권리존재에 대한 입증이 불필요하다. 외국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를 중국 내에서 누군가가 등록한다면 침해자가 누리는 소프트웨어 보호조례상의 이익에 대한 반대 증거를 외국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62] 또한 불법 소프트웨어 소지자가 자신은 그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제26조가 프로그램 저작권의 등록시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의 설정, 프로그램저작권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의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프로그램저작권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 변경 · 소멸 또는 처분제한 등의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위 규정에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때 '제3자'라고 함은 권리변동에 관계한 당사자와 그 권리 · 의무의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의 흠결을 주장하는데 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 곧 권리변동에 관계한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가진 제3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 예컨대 불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무단이용자가 제3자라고 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무단의 소프트웨어 등록의 효과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에는 그러한 효과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 해석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 특히 저작권 등록기관은 외국인이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는 등록을 허가하여야 하는데, 등록을 신청하는 소프트웨어가 권리관계에 대하여 분쟁이 있을 때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등(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방법 제21조) 해석상 모호한 규정들이 있어 운용상 행정기관의 재량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상표등록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중국에 진출한 많은 외국기업들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중국 현지 판매망 개척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하여 현지 기업과의 합작, 합자, 라이센스 계약의 체결 등과 같이 상호협조를 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때 상표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외국 기업의 소프트웨어 판매를 대리하고 있는 중국 현지 기업이 무단으로 그 상표를 등록한 후 상표 라이센스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있다. 특히 새로운 상표를 계속적으로 출시하는 상품의 경우 그 상표가 미처 등록되지 않은 것을

62) 이충훈, 중국에서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사전적 보호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제17호), p.192.

이용하여 그 기업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제휴관계에 있는 현지 기업에 의한 상표권 침해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중국 내에서 브랜드 가치를 가지게 된 후 상표권을 침해하는 모조 프로그램의 유통과 함께 해당 상품의 브랜드 가치에 편승하여 타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유사한 상품에 그 상표를 선점하여 등록하는 행위도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선점행위로 인하여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다양한 부분의 사업영역을 확대하고자 할 때 축적된 브랜드 가치를 살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2. 프로그램 저작권 귀속의 문제

프로그램 저작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만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프로그램저작권을 양수한 자는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저작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2차적 프로그램 작성자에게 귀속된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 저작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프트웨어 보호조례의 규정이 있음에도 그것이 충분치 않은데다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사용허락제도와 소프트웨어 저작권 양도제도는 본질적으로 다른 제도인데,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외국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중국의 소프트웨어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할 시 그것이 사용허락계약인지, 아니면 양도계약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소프트웨어 사용허락계약이 외국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제3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P2P파일공유 소프트웨어 배포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이나 실연 · 음반 ·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은 해당 서비스제공자 '자신의' 정보통신망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컴퓨터끼리 직접 연결되어 파일공유, 즉 복제 또는 전송이 이루어지는

P2P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역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

P2P 소프트웨어인 소리바다 5 서비스와 관련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63]은 이 서비스가 이용자들이 다른 이용자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음원 파일(MP3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는 '음을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이므로 음반제작자인 신청인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개별 이용자가 자신의 다운로드 폴더로 음원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음원 파일을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하는 행위는, 그 이용자가 '소리바다 5 서비스'의 접속을 유지하고 있는 한 다른 이용자들은 이미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위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는 다른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어서 음반제작자인 신청인들의 전송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특히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는 타인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 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복제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만 인식하는 방조도 가능함은 물론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한데, 과실에 의한 방조에 있어서 그 과실의 내용은 복제권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침해의 방조행위에 있어서 방조자는 실제 복제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나 장소, 복제의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 복제행위를 실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전송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면서, 비록 '소리바다 5 프로그램'이 종전의 소리바다 1, 2, 3에 비하여 저작인접권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는 하나, 현재 '소리바다 5 서비스' 운영자가 취하고 있는 '소극적 필터링 방식(저작인접권자 등 권리자들로부터 필터링(공유금지)을 요청받거나 이미 위 운영자가 공유금지로 설정하여 놓은 음원 파일들에 대하여만 필터링을 실시하는 방식)'의 내재적 한계상 음반제작자들의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의 침해행위는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침해행위의 발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위 운영자가 그 보완책으로 들고 있는 '그린파일 시스템(저작인접권자 등 권리자들이 위 서비스 운영자에게 자신들의 음원 정보를 제공하여 필터링을 요청한 후, 위 운영자의 승인절차를 거쳐 파일공유를 금지하는 시스템)'만으로는 그와 같은 권리침해를 제때 방지하거나

63) 서울고법 2007.10.10. 자 2006라1245 결정

중단시킬 수 있을 것으로도 보기 어렵고, '소리바다 5 프로그램'의 개발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운영자 역시 음반제작자들의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의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리바다 5 서비스'의 운영자는 그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다.

미국의 경우에도 Napster 사건을 통하여 넵스터가 작곡자, 가수, 음반업자 등 저작권자 내지 인접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직접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넵스터의 이용자들이 MP3파일을 P2P방식으로 전송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및 디렉토리 리스트를 제공함으로써 기여침해책임(Contributory Infringement Liability)내지는 대리침해책임 (Vicarious Infringement Liability)를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쟁점이 되었다. 미 고등순회법원은 컴퓨터 시스템 운영자가 그의 시스템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알았다면 기여침해책임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동일한 문제가 P2P 소프트웨어 및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를 매개하여 중국 온라인 사용자의 불법 다운로드에 의한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그에 대한 현상의 검토와 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4.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의 저작권 문제

소프트웨어 스트리밍이란 특정 응용 프로그램을 서버에 설치하고, 접속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스트리밍 방식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즉 다운로드나 설치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서도 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구성 파일을 스트리밍 서버로부터 분산 페이징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가져와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것이다. 스트리밍 방식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사용자 PC에 그 흔적이 남지 않아야 하지만, 사용할 때 마다 송·수신이 이루어질 경우,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한번 전송한 파일은 사용자 PC에 남아 있게 된다. 물론 사용자 PC에 남아있지 않게 할 수도 있으며, 남아 있는 파일들로 단독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단체, 대학 등의 매수인은 그 매도인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는 매수인(이용자로서의 최종매수인)과의 사이에 라이선스계약 또는 사용허락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64]

소프트웨어의 스트리밍 과정에서 클라이언트 하드디스크에 복제되는 영구적 복제의 경우

인터넷의 속성상 다양한 종류와 범위의 프로그램 조각이나 저작물 단편들이 인터넷이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볼 때, 그러한 단편들의 저장도 복제권 침해에 해당될 우려가 있을 수 있고,[65] 프로그램 역분석과 관련하여도 소스코드의 획득과 관련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다.[66]

FTA 체결과정에서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스트리밍과 관련하여 라이센스 받은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용 및 복제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겠으나, 그 허락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동시사용(concurrent use)의 경우처럼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5. 지적재산권 보호조치 관련

우리나라의 기업이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보안SW 솔루션을 개발/판매하며, 이러한 솔루션을 중국 Contents 시장을 겨냥하여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으나, 중국의 모호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와 정부에 의한 법규 이행의 미비 또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미온적 조치, 그리고 법 집행을 위한 이행조직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그러한 소프트웨어의 시장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위반행위에 관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민사적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으나, 직접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 방치되거나, 문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제도상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법 제도상의 개선과 함께 그러한 이행조치의 실효성 확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의 개발 기업에 대한 지재권 상용화에 많은 융통성을 주는 방향으로 국가계약법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방향 설정이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선행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중국에서는 지재권 사용을 제한할 경우, 우리 공공 시장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상품화하기 용이하나, 우리 기업이 중국 공공시장에서 개발한 시스템의 상품화는 어려워 상대적으로 시장 상호 개방의 기

64) 정상조 소프트웨어 스트리밍(software streaming)의 법적 문제점, 인터넷과 법률II, 법문사, p.424.
65) 윤선희, "Software Streaming 방식의 법적 연구",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2004.7.
66) 박인회,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적 문제에 관한 연구 Law & technology 제3권 제6호(2007년 11월) 박인회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p.108.

대 이익에 불균형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

제 6 절 경쟁 분야 협상 쟁점

1. 중국의 경쟁법 규정

중국 반독점법(反壟斷法)은 총 8장 57조로 구성되어 있고, 2007년 전국인민대표자 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2008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중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그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독점적 합의를 통한 담합행위,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과도한 경제력 집중(기업결합)의 규제, 독점적 행위의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조사 및 법적 책임 등을 담고 있어서 우리나라 및 EU의 독점규제법 체계와 기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으나, 행정권력에 의한 경쟁제한행위를 별도의 조문으로 두고 있다. 각 규제대상 행위에 대하여 기본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을 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족하고, 경쟁당국의 재량권이 매우 넓으며, 반독점법 적용이 제외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끼워팔기

끼워팔기(Tying)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이하 '주된 상품'이라 한다)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이하 '종된 상품'이라 한다)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이다. 우리 법 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일 유형으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규제되는 끼워팔기는 경쟁 수단이 불공정함과 동시에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한 행위로 이해되고 있다. 반면 결합판매(Bundling)는 순수결합판매(pure Bundling)와 혼합결합판매(mixed Bundling)으로 구분되는데, 끼워팔기와 순수결합판매는 주된 상품을 구매시 반드시 종된 상품을 구입하여야 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구매의 비율에 차이가 있고, 끼워팔기와 혼합결합판매는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개별적인 판매의 가능성과 함께 혼합 결합판매는 결합판매될 때 가격의 인하가 있다는 차이가 있다. 즉, 순수결합

판매는 위법성에 있어서 끼워팔기와 별 차이가 없으나, 혼합 결합판매의 경우에는 구매강제성이 없어서 끼워팔기와 구별된다.[67]

MS 사건에서 유럽 제1심 법원(CFI)은 끼워팔기가 성립하려면 (i) 주된 상품(윈도우 PC 운영체제)과 종된 상품(WMP)이 별도의 상품일 것, (ii) 문제의 사업자가 주된 상품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질 것, (iii) 문제의 사업자가 고객에 대하여 종된 상품과 별개로 주된 상품을 획득할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을 것, (iv) 문제의 행위가 경쟁자를 배제할 것 등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4가지 요건을 인용하고 MS가 WMP와 윈도우 PC 운영체제를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68]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의 끼워팔기에 관한 MS 사건은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문제가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윈도우즈와 미디어서비스, 메신저 등의 끼워팔기가 쟁점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 2. 24. 이 결합판매행위가 공정거래법제3조의2 제1항 제3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2-6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IV. 3. 라. (3)(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와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5호 (가)목 '끼워팔기'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면서, MS에게 272억 3,000만 원, 한국 MS에게 52억 6,000만 원 등 총 324억 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 사건에서 주된 상품 시장은 비인텔 호환 PC 운영체제가 인텔 호환 PC 운영체제를 대체하기 어렵고, 두 운영체제는 서로 다른 사업자에 의하여 공급되어 왔다는 점에서 '인텔 호환 PC 운영체제 시장'이고, 종된 상품 시장은 일반용 메신저와 기업용 메신저의 용도가 상이하고, 수요자와 구매 형태도 다르다는 점에서 '일반용 메신저 시장'으로 획정되었다.

특정시장의 경쟁상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관련시장의 획정이 필요한데, 관련시장은 관련 상품시장과 관련 지역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FTA 체결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관련 지역시장이다. 관련 지역시장이란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당해 상품의 가격이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67)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9.2.9., Guidance on the Commission's enforcement priorities in applying Art. 82 of the EC Treaty to abusive exclusionary conduct by dominant undertakings, C(2009) 864, 48항.

68) CFI 2007.9.17. T-201/04 2007 ECR II-3601 "*Microsoft Corp. v. Commission*".

대표적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를 의미하고, 특정 지역이 동일한 거래 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특성 및 판매자의 사업 능력,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전환행태, 판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와 시간적, 경제적, 법제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앞선 MS사건에서 PC 서버 운영체제는 소프트웨어라는 제품의 특성상 국가간 그 운송 및 거래비용이 미미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공급자 또는 소비자가 PC 서버 운영체제의 판매 또는 구매를 외국의 제품으로 전환하는데 별다른 장애가 없으며, PC 서버 운영체제 사업자들은 대부분 세계적으로 동일한 제품을 원칙적으로 동일한 가격 및 거래 조건에 판매하고 있고, 제품의 개발 및 판매 전략을 비롯한 중요한 사업전략을 세계시장에서 유사하게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PC 서버 운영체제 시장의 관련 지리적 시장은 세계 시장이다. 그러나 일반용 메신저의 지리적 시장은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메신저는 대부분 한국어 버전이고, 메신저 시장은 서비스 시장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현지화하지 않고서는 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점에서 '국내 시장'으로 보았다.

그런데 앞으로 소프트웨어의 서비스 시장이 개방된다면 그러한 지리적 시장은 중국과 한국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획정될 수 있어서 중국 법 상으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가 아닐 수 있으나, 우리 법 상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서 양자간의 규범 충돌의 우려가 있다. 특히 특정한 운영체계에 결합되는 여러 부가적 서비스에 관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끼워팔기나 구매강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끼워팔기 또는 결합판매의 여부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강제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생길 소지가 많다.

3. 부당염매

부당염매라 함은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약탈적 가격설정(predatory pricing)이라고 한다. 이는 착취적 남용의 일종으로 해석된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제3항 가목 소정의 부당염매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상품 또는 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등 그 염

매행위에 있어서 부당성이 있어야 할 것인바, 부당성이 있는지 여부는 염가의 의도·목적, 염가의 정도, 염가판매의 기간, 반복계속성, 대상 상품·용역의 특성과 수량, 행위자의 사업규모 및 시장에서의 지위, 염매의 영향을 받는 사업자의 수 및 사업규모, 시장에서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지역정보화시스템통합용역사업의 경쟁입찰에서 시스템통합사업자가 최소한의 인건비조차도 반영되지 않은 저가로 입찰하여 낙찰받은 경우, 이 사건 용역과 관련된 각종 장비 및 용역을 추가로 구매함에 있어서 낙찰자인 원고에게 연고권 등 사실상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고 그 때마다 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공급자를 정하기로 방침을 세워놓고 있었으며, 용역사업은 계속성 사업이 아니라 보고서의 제출로써 종료되는 1회성 사업이라서,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저가로 낙찰받았다고 하여 이로 말미암아 원고의 경쟁사업자들이 향후 위 신규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부당성을 지닌 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69] 이 판결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으로 염가여부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위법성을 심사하지 않고 곧바로 부당성 판단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서 염매의 정도 등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시된다는 비판이 있는데[70], 이러한 해석상의 논란은 중국 기업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미국의 경우 사업자의 약탈적 행위는 i) 비용기반분석(cost-based analysis)이라고 하여, 사업자가 책정한 가격이 비용을 상회하는지를 분석하는 단계가 있고, ii) 다음으로 시장구조 및 복원(recoupment), 즉 시장구조상 사업자가 원가이하의 가격책정으로부터 손실을 만회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예측을 했을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게 되며, iii) 이에 더하여 사업자의 의도, 즉 문제된 가격책정에 관한 사업자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규명하면서 주로 두 번째 관점에서 검토가 강조되고 있다.

만일 중국 또는 한국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중국의 소프트웨어 내지 시스템 업체와 우리나라의 업체가 경쟁을 할 경우에 이러한 규정이 없는 중국 경쟁법상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하며, 관련 규정의 해석이나 위법성 판단의 실무과정이 체계화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논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지도 쟁점이 될 것이다.

69)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4686 판결
70) 신영수, 부당염매의 위법성 판단과 경쟁사업자 경제법판례 연구.제1권(2004.07) p.275.

4. 차별취급과 행정독점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는 차별취급으로서 금지된다.

중국은 국무원에서 공포한『소프트웨어산업과집적회로산업의발전을장려하는것에관한약간의정책』을 이행하고, 국가계획분포내의 중점 소프트웨어기업을 합리적으로 확정하며, 중국 소프트웨어산업의 빠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계획분포내의중점소프트웨어기업인정관리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 소프트웨어 연간 영업수입이 인민폐 1억 위안 이상인 경우. (2) 연간 수출액이 50만 달러 이상이며, 소프트웨어의 수출이 당해 기업의 연간영업수입 중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소프트웨어 수출액이 당해 기업 연간 영업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국가소프트웨어산업발전계획의 요구에 근거하여, 국가의 소프트웨어산업 투자지침에 부합되고, 일부 소프트웨어 중점분야에서의 판매수입이 5위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핵심소프트웨어기업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지원이 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과 차별취급을 낳을 우려가 있다. 즉 혜택을 받는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이 경쟁중립성의 관점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을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차별적 취급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의 중국내 판권을 중국 기업만 가지게 될 경우 중국내의 유통을 담당하는 중국 대기업과 우리 나라의 중소 소프트웨어 제조업체간에 지위의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대규모 자본과 중국 이용자에 대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 중국의 대규모 소프트웨어 발주 기업들로 하여금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영세한 소프트웨어 공급자들에 대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소스 코드를 개방하지 않으면 거래를 거절하거나, 배타적 독점계약을 통하여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퍼블리싱하지 않음으로서 자신의 계열회사를 차별하여 유리하게 취급 하는 등의 시장에서의 지위남용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중국 정부의 사전규제가 강한 산업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그러한 사전 규제를 빙자하여 행정 독점 내지 행정부에 의한 불공정 행위를 조장하거나 행정부의 행정지도에 기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담합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특히 상용암호화 제품 인증제도의 조례에 따르면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보안제품의 경우, 중국 경내의 모든 조직과 중국인, 중국 경외의 중국인 또는 중국국적의 조직은 중국정부가 인증 허가한 보안

제품만을 써야 한다. 중국 경내의 외국기업의 경우는 중국정부 관할기관에 비 인증 보안 SW 사용 신청을 하여 비준을 득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산 보안제품은 이 인증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다.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어 있고 암호화 툴을 제한 없이 개인들이 쓰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그러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법 집행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고, 행정권에 의한 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MS등의 Global 기업의 경우 정치적인 이유로 적용을 하지 않는 모호한 법집행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하니,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른바 경쟁중립성(competitive neutrality)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와의 협상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익목적 뿐만 아니라 산업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EC조약 87조에 따라 EU에서는 국가보조(State aid)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각 국의 사정에 따라 통신, 금융, 운송, 농업, 수산업 등 산업별 예외조항 및 규모에 있어서의 예외조항(exemption)을 두고 있음. 따라서 행정독점과 관련하여 경쟁중립성의 논의를 이끌기 위해서는 그 원칙과 예외가 무엇인지를 관계법령의 목적론적 해석과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5. 소프트웨어 사업의 하도급 거래 관련 이슈

소프트웨어 사업은 무형적 요소와 유형적 요소가 결합된 시스템 사업으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중대형 사업의 경우에는 일괄수주의 형태로 구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직접 수주하는 형태보다 대형 사업자의 계약하에 하도급 형태로 납품하거나 공급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대금지급, 사업관리상의 책임소재 등의 불공정 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많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일반 건설하도급과는 달리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역할이 계약 내용의 핵심가치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하도급법 상의 원리가 수정되어 새로운 하도급 거래관행이 필요하다.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2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 포함)·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 등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대가로

하도급대금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산업에서 문제가 되는 하도급의 유형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컨설팅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시스템 구축 관련설계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시스템 구축관련 설계(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설계 등)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시스템 개발 및 운영과 이에 따른 자료/도면입력, Database 구축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및 관련된 유지보수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71]

이러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하도급 거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대금지급 지연, 발주자로부터 받은 비율보다 낮은 현금비율, 검사지연, 완성품 납품 후 검사결과 통지 지연, 계약의 일방적 취소 및 변경, 추가용역 대금 미지급 등이다.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은 대기업 계열의 사업자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독립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은 하도급 기업으로 존속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며, 이는 중국에 진출한 기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다. FTA를 체결하여 중국의 시스템 구축작업에 중국의 현지 대기업이 그를 수주하고, 우리나라의 중소 소프트웨어업체가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그러한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가 또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 불공정한 약관의 문제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이용계약은 약관의 형식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규범통제 방법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약관규제법은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있으며,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의성실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

71) 김중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SI학회지 제4권 제2호(2005), p.36.

관은 무효이며,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소프트웨어 이용에 관한 약관의 경우에는 전자약관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약관이 계약내용으로 편입되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이 있다. 그 다음으로 약관의 불공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개별규정이 약관규제법 상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심사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또는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은 무효가 된다.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무효인 경우에는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때가 아니면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문제는 약관규제법에 의한 불공정 약관의 규제는 사후적인 규제라는 점에서 거래상대방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는 미흡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즉, 이미 부당한 약관을 기반으로 하여 사업자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사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배상에 충분한 자력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중국 사업자가 약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이러한 약관의 불공정 내지 무효통제 장치가 충분한지 의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약관에 의하여 실제로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보상을 받을지의 법적 구제장치에 대해서도 FTA 협상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 7 절 인력이동 분야 협상쟁점

1. 개요

이미 제II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중국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에서의 인재강국전략을 시행하고자, 『소프트웨어산업과집적회로산업의발전을장려하는것에관한약간의정책』과 『소프트웨어산업의진흥에관한행동개요』의 요구에 따라 소프트웨어인재양성과대오건설에관한일부의견(關于加快軟件人才培養和隊伍建設的若干意見)을 제정하였다. 동 의견은 중국 내에서의 SW기능인력 양성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인재전략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전문 기술인원과 소프트웨어 기능요원의 직업자격증서제도를 구축하여 정부가 이러한 기능 인력에 대한 자격인증 제도를 실시하고자 한다.

한편 중국의 WTO 서비스분야 양허표에 따르면 인력이동에 해당하는 서비스 유형, mode 4에 대하여 전 서비스 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수평적 약속 중 시장접근 분야에서 다음 분류중의 하나에 속하는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적 체류에 관한 조치를 제외하고 양허하지 않고 있다.[72] 또한 내국민대우 분야에서 역시 시장접근에서 언급한 범주에 속하는 자연인의 입국과 임시 체류에 관한 조치를 제외하고는 양허하지 않았으며, 이는 개정안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또한 SW분야의 구체적 약속인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도 자연인의 이동(mode 4)의 경우 각 세부 서비스 모두 공통적으로 수평적 약속에서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양허하지 않는다.

또한 중국이 체결한 FTA에서의 인력이동에 대한 내용은 뉴질랜드와 체결한 FTA에서 최초로 구체화 되었다. 즉, 중-뉴질랜드 FTA 제10장은 자연인의 이동(Movement of

72) (a) 매니저, 임원 그리고 기업 내 전근자 (intra-corporate transferees)로서 일시적으로 이주하면서 중국의 영토 내에 대표사무소, 지사 또는 자회사를 설립한 WTO 회원국 기업의 상급 피고용인으로 정의된 전문가는 3년간의 초기 체류동안 입국이 허용됨. (b) 매니저, 임원 그리고 WTO 회원국 기업의 상급 피고용인으로 정의된 전문가는 해당 계약서의 조건 또는 3년의 초기 체류에 명시된 대로 어느 것이 더 짧던지 간에 장기 체류 허가를 받게 됨. (c) 서비스 판매원-중국 영토 내에 기반을 두지 않고 중국 내에 위치해 있는 공급자로부터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않으며, (i) 그러한 판매가 일반 대중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ii) 그 판매원이 그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종사하지 않는 경우, 그 공급자의 서비스 판매를 위한 협상을 목적으로 서비스 공급자를 대표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판매원의 입국이 90일 기간으로 제한됨.

Natural Persons: 인력이동)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중국은 GATS 양허안에서 최대 90일까지 허용했던 기업인 방문기간을 뉴질랜드 기업인에 대하여 최대 6개월까지 허가하고, 감독 혹은 임원이나 전문인력으로서 기업 내 전근자(Intra-corporate transferees)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혹은 3년간의 근로허가(work permit)를 부여하는 데 합의하였다. 또한 뉴질랜드가 mode 1-3 서비스 양허를 한 분야(교육, 환경, 컴퓨터, 사진, 복제와 건축 서비스)에서 12개월 이상 고용된 중국인 임원 혹은 감독은 3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3년 더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결국 중국과의 FTA 협상의 쟁점으로서 자연인의 이동(인력이동)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중국 시장의 개방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 인력이 한-중 FTA를 통해서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 여부와, 둘째 중국의 저임금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이 동 FTA를 통해 우리나라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FTA 체결을 대비하는 플러스 요인이 된다면, 후자의 경우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경우 강점은 보다 강하게 그리고 약점은 보완하는 정책적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자연인의 이동(mode 4)의 양허 여부

A. 국내 인력의 중국시장 진출 가능성

우선 우리나라 SW인력이 자연인의 이동(mode 4)의 방식으로 중국 SW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경우는 현재 중국의 WTO 양허안에 따르면 자회사로의 이동을 제외하고는 구체적 약속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의 서비스 양허안 중 SW산업과 직접 관련이 되는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도 수평적 약속의 경우[73]를 제외하고는 인력이동을 양허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향후 한-중 FTA의 협상 쟁점은 명확하다.

즉, 이 분야의 쟁점으로 제기될 것은 중국 시장으로 국내인력이 진출하기 위한 협상에서 SW개발 및 관리, 운영 등 전체적인 범위에서의 인력이동에 대한 양자간 협상을 이끌어 내는 것이 급선무이다. 즉, 다자간 체제인 WTO 차원에서 중국 시장 자체가 폐쇄되어 있다면 이를 양자간 FTA를 통해 추가적인 개방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러한 접근이 FTA의 본

73) 앞의 주 12)번의 내용 이외에 예외적인 입국 및 일시적 체류의 경우에도 면허를 소지한 기술자 또는 학사 학위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원 그리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자로 자격 조건을 정하고 있다.

연의 기능에 보다 충실한 것이다. 이는 인력이동의 문제를 중국과의 FTA 협상에 의제로서 포함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중국이 기 체결한 FTA 중 중-뉴질랜드 FTA에서 인력이동의 문제가 협상쟁점이 되었고, 이에 대한 구체적 결과가 나왔다는 점은 우리나라에 긍정적 시사점을 준다.[74] 따라서 일단 국내 SW 전문가들이 중국으로 인력이동 자체가 가능하게 된 후에라야 그 조건에 대하여 논의를 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쟁점은 같은 또는 차등적인 조건에 따라 국내시장 역시 중국에 개방되어야 하는 상호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B. 중국 인력의 국내시장 진출 가능성

지난 두 차례의 기업간담회와 설문지 결과에 따르면 중국 인력의 국내진출에 대하여 대부분 국내기업들은 자국민인 우리나라 SW개발 인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임금의 중국 인력이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 이를 고용할 의사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국내 SW산업의 전체로서 판단해 볼 때 정부의 동 사안에 대한 입장이 반드시 기업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정부가 국내 SW산업에서의 인력 구조가 취약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앞서 국내 인력이 중국에 진출하게 되는 경우와는 상반되는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즉, 중국 SW산업 전문 인력이 국내 시장에 자연인의 이동이라는 방법을 통해 진출하게 되는 경우 국내산업의 보호를 고려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면 이를 제한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제기될 수 있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의 서비스 양허에서는 자연인의 이동을 수평적 약속에서 제한하고 있다. 특히 현재 쟁점이 될 수 있는 외국 인력이 국내로 들어와 국내에서 급여를 받으며 체류하는 유형은 수평적 약속에서 양허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구체적 분야별 약속에서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부분에서 역시 별도의 양허 없이 수평적 약속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75] 따라서 국내 시장을 보호하려는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에서는 WTO에서 약속한 수준 이상의 시장개방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74) 이러한 해석은 인력이동 그 자체가 중국과의 FTA협상의 의제로 설정되었고 그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 그 자체에 한정한다. 왜냐하면 중-뉴질랜드 FTA에서 인력이동 문제는 결국 중국이 뉴질랜드 시장접근을 이루어낸 성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내용과는 상관없이 인력이동 문제가 FTA 협상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는 점만을 고려한 것이다.

75) WTO, GATS/SC/48, 15 April 1994 참조.

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협상의 쟁점이 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인력이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상정한다면 동일한 논리에 의하여 중국이 우리나라 시장에 진출하게 되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한-중 FTA SW분야에서 인력이동 부분이 쟁점이 된다면 현재로서는 상대적으로 중국의 공세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 시장으로의 인력이동의 개방 정도를 강하게 주장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3. 상호자격인정 여부

만약 앞서 언급한 협상 쟁점으로서의 중국 인력이동 시장접근이 이루어진 후라면 인력이동의 조건과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개방의 정도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 때 인력이동 분야에서의 두 번째 쟁점은 양국의 약속에 따라 이동 가능하게 되는 사람의 자격에 대한 것으로 양국간의 상호자격인정 여부가 핵심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가 부여하는 소프트웨어 전문 기술인원과 소프트웨어 기능요원의 직업자격증서제도를 우리나라 정부가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이다.[76] 따라서 FTA 협상에서 인력이동의 경우 양국의 전문가 인력에 대한 상호자격인정 여부가 협상의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77]

4. 인력이동 개방의 범위와 정도

마지막으로 SW산업 분야에서 만약 우리나라 정부의 FTA 협상 목표가 국내시장의 보호

76) 이는 일단 양자 협상을 통해 인력이동 시장을 개방한다 하더라도 다른 자격요건의 제한을 통해 실질적으로 개방의 효과를 차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상호자격인정이 된 상황에서 별도의 제한을 통해 인력이동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 내국민대우 위반의 소지가 제기될 수 있다. 이는 FTA 서비스 협상과정에서 함께 제기될 것이며 구체적 약속을 통해 명시될 것이다.

77) 우리나라는 경쟁력을 갖춘 분야를 중심으로 한-중 FTA를 통해 중국의 개방 확대를 유도하고 있지만 중국은 중의사(한의사) 등 국내에서 민감한 사안인 자연인의 이동(mode 4)을 비롯해 이들과 관련된 시장개방과 교육 분야까지 진출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미 FTA 체결과정에서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한의사인력의 상호자격인정 논의가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적이 있었다. 따라서 한-중 FTA에서 역시 한의사의 자격인정 부분은 커다란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측했다. http://www.medipharmnews.com/newsbuilder/service/article/mess.asp?P_Index= 43296 2009년 11월 23일 뉴스. 비록 이러한 기사는 SW산업과 직접 관련은 없으나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한 산·관·학 공동연구를 통해 서비스 시장에서의 인력이동과 관련하여 상호자격인정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를 가져오는지 알 수 있다.

라면 인력이동 분야에서의 개방 문제, 상호자격인정 문제 등과 더불어 구체적인 개방 분야와 범위, 인원 및 기간 등 세부적인 협상 내용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을 보수적으로 예상한다면 개방의 범위, 즉 인력이동이 가능하게 되는 직업의 수와 범위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협상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 인원과 기간 역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범위로 한정하게 될 것이다. 기존의 중-뉴질랜드 FTA에서의 경우와 같이 1년에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는 중국인의 수를 최대 1,000명으로 제한하는 것 역시 이러한 협상 쟁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동 FTA에서 뉴질랜드가 중국으로부터 컴퓨터 엔지니어에 대하여 임시고용을 허가한 것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즉, 향후 중국과 FTA 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현재 우리나라 SW 산업에서 중국 국적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인력수급이 직접적인 문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자연인의 이동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양허수준에 따라 중국의 저임금 SW 엔지니어가 직접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고임금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기회를 박탈 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수준은 동 쟁점이 향후 FTA에서 의제로 설정되는 경우와 구체적 양허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의 기술자 경력관리 제도가 중국 기업으로서는 진입 장벽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양 국 모두 유입 기술자에 대한 역량 검증 작업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기술자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자경력관리제도에 준하는 경력확인을 중국의 특정 기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기술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력관리기관이 발급하는 경력확인서를 중국에서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 등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한-인도 CEPA의 인력이동

우리나라는 2006년 3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총 12 차례의 공식협상을 통해 인도와 2009년 8월 7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하였다. 인도측은 체결 당시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6일 국회에서 동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었다. 한-인도 CEPA는 세계 경제를 이끄는 새로운 축인 BRICs 국가와 체결하는 첫 번째 FTA로, 인도는 중국과 더불어 경제규모, 인구, 시장규모, 성장세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기대가 큰 시장으로 평가된다. 또한 인도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함께 한-인도

CEPA의 효과도 향후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인도 CEPA의 타결 내용 중 본 연구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것은 서비스 분야에서의 협상 결과로서 인력이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전문 인력 시장을 최초로 개방한 것이다. 즉 한-인도 CEPA를 통해 우리 업계가 인도의 컴퓨터, 경영컨설턴트, 엔지니어, 기초과학관련 전문가와 초중등 영어보조교사 등 160여개 분야의 서비스 전문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바탕으로 전문 인력들의 한국내 체류 및 재입국 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며, 특히, 인도의 경쟁력 있는 IT 전문가들의 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국내 IT업계의 고비용 문제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78)]

인도에는 IT 소프트웨어 전문 기술 인력이 50만 명이 넘고 이 중 과반수는 경력 5년 이상의 숙련 인력이고, 매년 약 12만 명의 IT관련 인력이 배출되고 있다. 한편, 미국 실리콘 밸리의 경우 기술자 중 30~40%를 인도인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미국 취업비자인 H1B 비자 중 85%가 인도 소프트웨어 인력에 발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79)] 실제로도 2002년에 2007년까지 입국한 IT관련 전문인력의 46%는 인도 출신이며, IT인력 선호도에 관한 관련 업계 설문에서도 인도 출신 IT전문가에 대한 선호 의견 개진이 3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0)]

〈표 Ⅴ-1〉 IT인력 국적선호

(단위: %)

인도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러시아	기타
34	16	13	10	8	6	13

특히, 한-인도 CEPA는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 요건을 유지하고 발효 후 2년 이내 불법입국 사례 발생시 권한을 유보하는 등 출입국 조치에 대한 포괄적 규제권을 확보하여 인도 인력의 대량 유입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더욱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된

78)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한-인도 CEPA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와 향후 과제, 2009년 8월, p. 17. 이러한 평가는 이번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SW기업들이 향후 중국과 FTA가 체결되어 값싼 중국 인력이 국내에 들어온다면 고용할 의사가 있다는 답이 다수를 이루었다는 점과 일맥상통 한다.

79) 한국수출입은행 『인도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2007년 12월 Country Report 2007-4.

80) 2009년 3월 "2009년 우리나라 통상정책 방향 모색 세미나" 조충제「한-인도 CEPA협상 평가」발표 자료에서 인용한 한국 IT벤처기업연합회 「IT벤처기업연합회 소속 105개 회원사 대상조사」를 재인용함.

다. 따라서 향후 동 협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인도의 고급 서비스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매칭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인도 인력이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한국에서의 적응력을 높이고 한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결국 한-인도 CEPA는 SW분야에서 해외의 전문 인력의 이동이 양자간 협정을 통하여 구체화된 첫 번째 FTA가 되었다. 특히 SW 분야의 전문 인력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가 더 구체화 된 협정으로 동 협정의 시행이 갖는 의미는 한-중 FTA 협상에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한-중 FTA에서의 인력이동 분야의 핵심 쟁점은 한-인도 CEP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중국의 SW 인력을 얼마나, 어느 정도, 어떤 조건으로 수용하는가 여부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

제6장 결론

본 연구는 한-중 FTA 협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SW분야에서의 협상쟁점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협상의 의제를 설정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하였다. 즉, 본 연구의 핵심 의도는 한-중 FTA 체결 준비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협상 쟁점을 파악하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기초 작업은 우선 협상 상대국인 중국의 SW산업과 관련된 법제도를 파악하고, 해당 법제도가 WTO 규범 등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통상규범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본문에서 4단계 접근법을 취하여 제1단계에서는 중국의 SW산업과 관련된 국내법제도를 ⅰ) 중국의 SW 산업 분류체계 및 정책 방향, ⅱ) 중국의 SW산업 관련 정부기관(부처) 및 기능, 그리고 ⅲ) SW산업 관련 중국의 주요 국내법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제2단계 분석에서 국제사회의 다자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ⅰ) WTO에서의 SW분야에 대한 양허수준과, ⅱ) WTO 및 미국이 바라본 중국의 SW산업에서의 각종 무역장벽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제3단계는 국제무역의 양자간 차원에서의 논의 결과인 중국이 기 체결한 FTA에서의 양허수준에 대한 분석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기초 자료에서 대한 분석을 마치고 본 연구는 마지막 4단계 분석에서 이번 연구의 최종 목적인 한-중 FTA협상을 대비한 SW분야의 협상쟁점 파악을 시도하였다. 제4단계 협상쟁점 의제발굴은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기술규정·표준 및 적합성 평가, 지적재산권, 경쟁, 및 인력 이동 분야에서 향후 한-중 FTA 협상쟁점으로 핵심적인 의제가 될 수 있는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우선 본문의 제Ⅱ장 중국의 국내법 분석 결과 가장 크게 제기되는 문제점으로는 중국에서 SW분야를 다루는 국내법체계가 정돈되어 있지 못하고 매우 혼란스럽다는 점이다. 즉, 국내법 체계상으로 상위법과 하위법이 혼재되어 있어 그 근거가 모호한 경우도 나타나고 있으며, 때로는 법령간의 중복규정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제기되기도 하였다. 또한 SW산업을 관장하는 중국 국내법의 제정부처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어 협상의 상대국 입장에서는 이들 각 부처들마다 제정한 부문규장까지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이 제기된다. 한편 SW산업 관련 중국의 국내법에서 제기되는 또 다른 통상법적 문제점으로는 법제도에서 자주 발견되는 내국민대우 위반 문제와 국내기업에 대한 수출보조금 지급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국내법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법령의 존부 여부가 아니라 법집행의 투명성, 일관성 및 객관성이 답보되지 않은 현실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제Ⅲ장은 중국의 WTO 서비스 양허안 분석과 기타 무역장벽 보고서의 분석 등 크게 2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우선 중국의 WTO 서비스 양허안에 따르면 SW산업 분야는

대부분 개방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SW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융합산업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WTO의 통일된 서비스 분류가 부재한 상황에서 SW산업을 정의내리기는 쉽지 않다. 다만, 국제무역의 측면에서 서비스분야의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의 일부로 분류될 수 있다. 당해 분류의 하위 부문이 모두 개방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SW 산업분야가 개방된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기존의 분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SW 산업은 기타 컴퓨터 서비스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SW산업의 발전과정과 국가들의 분류체제에 대한 견해를 주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의 WTO 무역검토보고서(TPR)와 미국 무역대표(USTR)가 작성한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가입이후 전반적인 법제도의 개편을 이루었고,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SW 산업에 특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분야가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외국인 투자분야인데, 동 분야는 전체적인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중국의 지재권 보호제도는 그 자체로는 만족할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지재권의 집행이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지재권의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 부처간 정보교환과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집행절차에서의 투명성이 부족하여 실제 운용하기에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투자분야를 지속적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중국이 선별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제한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으므로 향후 SW산업의 일부가 중국이 핵심 중점사업 분야로 선정되는 경우 투자에 제한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지재권 분야와 마찬가지로 투자 분야도 법적인 제한보다는 절차적인 제한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명성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중국의 SW산업에서의 무역장벽은 제II장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제도 자체의 문제이기 보다는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예: 투명성, 객관성, 일관성 등)가 보다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객관적 사실의 분석에 해당하는 부분 중 마지막에 포함되는 제IV장에서는 중국이 기존에 체결한 주요 FTA에서의 내용들을 검토하였다. 제III장에서의 분석이 다자간 차원에서의 접근이라면, 제IV장에서의 분석은 양자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결과에 대한 접근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중국이 체결한 FTA는 주로 상품무역 분야의 개방이라는 측면에서는 일견 의미가 있으나, SW산업의 본질과 관련된 서비스 분야의 개방에서는 그동안 큰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뉴질랜드와 3년에 걸친 15차례의 협상 끝에 양자간 FTA를 체결하면서 중국의 FTA에 대한 방향이 점차 변화하게 되었다. 즉,

중-뉴질랜드 FTA는 중국이 OECD 회원국과 체결한 최초의 FTA인 동시에 서비스와 투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기존에 체결된 FTA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인력의 이동, 지적재산권, 기술규정의 상호인정 등이 협정문에 포함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까지 중국이 체결한 FTA 중 우리나라가 참고할 수 있는 유일한 모델이 되는 것이 바로 중-뉴질랜드 FTA이며, 이에 따라 동 FTA는 향후 우리나라가 중국과 체결하게 될 FTA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우선 서비스와 투자, 원산지 규정을 비롯한 FTA의 주요 내용에서 동 FTA는 기존에 중국이 체결한 FTA에서 보다 발전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우리나라가 향후 중국과 FTA 협상을 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비스 분야에서의 MFN 인정은 한-미, 한-EU FTA에서도 쟁점이 되었던 것으로, 두 FTA에서 모두 중-뉴질랜드 FTA와 마찬가지로 소급적용은 인정하지 않고 미래적용만을 인정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므로, 향후 한-중 FTA 협상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이 서비스 분야에서 개방한 정도가 WTO 양허안 수준에서 나아진 점이 별로 없다는 점은 FTA를 통해 중국 서비스 시장개방을 이끌어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게다가 중-뉴질랜드 FTA는 지적재산권 조항을 포함한 최초의 FTA라는 점에 있어서는 평가될 수 있으나 그 내용에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실행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FTA를 통한 지적재산권의 효과적 보호의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중국이 뉴질랜드와 체결한 FTA가 중국 최초의 포괄적 FTA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이 협정문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다른 선진국과의 FTA에서도 같은 매뉴얼로 적용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극히 불분명하다는 점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이 남아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중국과 호주의 FTA가 어떤 방식으로 타결되는지 여부에 따라 중국의 향후 FTA에 대한 방향성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향후 중국과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에서 FTA 협상을 할 때 참고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료들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결국 본 연구의 최종목적인 제Ⅴ장 SW분야 협상쟁점을 파악하기 위한 1차 자료로서의 성격을 갖는데 그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제Ⅴ장은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기술규정·표준 및 적합성 평가, 지적재산권, 경쟁, 및 인력의 이동 분야로 한-중 FTA 협상 분야를 나누고, 각 분야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첫째, 서비스 분야에서의 협상 쟁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선 협상의 형태로는 서비스 장(chapter)에 서비스 무역의 모든 방식 즉 국경간 공급, 해외 소비, 상업적 주재, 자연

인 주재를 포함하고 투자 장(chapter)에 투자보장 규정을 포함하는 방법(또는 양국 사이에 이미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투자 챕터를 포함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일부 중국 국내법은 GATT 제III조 4항 및 GATS 제XVII조 내국민대우 위반과, GATS 제VI조 1항에서의 국내규제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중국은 DDA협상 과정에서 서비스 산업의 상업적 주재 형태에서도 합작회사 형태만을 인정하던 기존의 입장에서 벗어나 외국인 투자자가 완전히 지분을 소유하는 형태의 기업 설립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비록 이러한 중국의 양허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한-중 FTA에서는 우리나라 투자자가 100% 지분을 소유하는 외자기업의 설립을 양허 받도록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 국제무역에서의 투명성 확보 노력은 협상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다.

둘째, 투자 분야에서는 한-중 FTA에 투자챕터(chapter)를 포함하는 경우 보호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투자와 관련된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 한-중 FTA 이행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될 FTA 공동위원회를 활용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그 형식과 투자 보장을 위한 규정의 수준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즉, 한-중 FTA 투자챕터가 한-미 FTA 방식을 택할 경우 투자 개방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식의 투자챕터로 볼 수 있다. 다만 서비스 무역 자유화에 소극적인 중국이 이를 수용할 지는 매우 회의적이다. 반면 한-EU FTA 방식을 따르게 되면 투자 및 투자자 보호는 한-중 FTA에 포함되지 않으며 현재의 양자간 투자보장협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관련 제조업과 서비스에 대한 투자 및 투자자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양자간 투자보장협정을 개선하고 중국이 이를 신의성실하게 운영하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한-EU FTA의 경우 투자 기업 설립에 적용되는 내국민대우 규정이 투자보호에 적용되어 양자간 투자보장협정에 따른 내국민대우보다 강화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과 국산부품 의무사용 문제는 내국민대우와 TRIMs 협정을 위반하며, 소프트웨어 실행 산업의 경우에도 내국민대우 및 이행요건 부과금지, 투명성 등 다양한 법적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정부조달 분야에서는 현재 중국이 GPA의 회원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자간 차원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중국이 체결한 FTA에서는 정부조달 분야가 포함된 사례가 있으므로 우선적 쟁점으로 정부조달 분야를 한-중 FTA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정부조달 분야가 FTA에 포함되거나 또는 중국이 GPA의 회원국이 되는 경우 가장 크게 제기될 쟁점으로는 내국민대우 위반과

투명성 확보 문제가 핵심쟁점이 될 것이다.

넷째, 기술규정·표준 및 적합성 평가 분야에서의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제기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는 TBT 장(chapter)을 별도로 두고, 이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WTO TBT협정상의 권리·의무를 재확인하면서, 양국간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관련 현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또한 양국간 대화채널 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TBT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양국 관련기관이 이를 논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중국과의 FTA에서도 이와 같은 접근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이 일부 IT상품에 요구하고 있는 정보 보안(information security) 기능에 대한 인증과 관련하여, 이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의 부담이 얼마나 증대되는지에 대한 분석 작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우리나라 기업의 부담이 크다면, 이에 대한 논의를 FTA협상과정에서 제기할 수 있으며, 특히 관련 국제표준에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국이 중국강제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CCC) 마크를 중국 국산품 및 외국산 상품에 적용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산품에 비하여 외국산 상품에 대하여 엄격하게 이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외국산 상품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협상 쟁점은 우선적으로 소프트웨어의 등록과 저작권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한 집행 수단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특히 기존에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중국에 법이 없어서 보호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민간 차원뿐만 아니라 행정 및 사법당국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이행의지가 부족한 것이 문제의 핵심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이행수단의 확보가 필요하다.

여섯째, 경쟁분야에서의 협상 쟁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정한 운영체계에 결합되는 여러 부가적 서비스에 관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끼워 팔기나 구매강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끼워 팔기 또는 결합판매의 여부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강제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생길 소지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부당염매(약탈적 가격설정)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규정이 없는 중국 경쟁법상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하며, 관련 규정의 해석이나 위법성 판단의 실무과정이 체계화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논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지도 쟁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 한편 중국 대기업과 우리 나라의 중소 소프트웨어 제조업체간에 지위의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즉, 대규모 자본과 중국 이용자에 대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 중국의 대규모 소프트웨어 발주 기업들로 하여금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영세한 소프트웨어 공급자들에 대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소스 코드를 개방하지 않으면 거래를 거절하거나, 배타적 독점계약을 통하여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퍼블리싱하지 않음으로서 자신의 계열회사를 차별하여 유리하게 취급 하는 등의 시장에서의 지위남용 행위를 막는 것 역시 경쟁 분야에서 주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또한 불법하도급거래 및 불공정 약관의 경우도 문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이다.

마지막으로 인력이동 분야에서의 협상 쟁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자연인의 이동(인력이동, mode 4)의 경우 시장의 방향에 따라 중국시장에 우리나라 사람이 이동하는 경우와 우리나라 시장에 중국인이 이동하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각각 지향하는 바가 달리 나타나게 된다. 즉, 우리나라 입장을 보수적으로 볼 때 중국 시장에 보다 많이 진출하길 원하지만 반대로 중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게 여길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의 쟁점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켜 시장 접근을 이룰 것인가 하는 점이다. 또한 인력이동의 쟁점 중에는 이동하는 사람의 자격에 대한 상대방 국가의 인정여부, 즉 상호자격인정이 핵심 쟁점으로 등장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인력이동이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범위와 정도 등은 인력이동에 FTA의 한 분야로 다루어진다면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핵심 쟁점으로 제기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전문 인력의 이동이 양자간 협정을 통해 구체화 된 첫 번째 FTA인 한-인도 CEPA를 통해 짐작해 볼 때, 인력이동 분야에서의 가장 핵심적 쟁점은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중국의 SW 인력을 얼마나, 어느 정도, 어떤 조건으로 수용하는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중 FTA 협상을 대비한 SW분야 협상 쟁점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거대한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검토된 것들은 이러한 협상의 수많은 쟁점 중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쟁점에 한정되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협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기술이고,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변수로 인하여 큰 논의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향후 중국과의 FTA협상을 준비하면서 SW산업 분야에서 특히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은 이러한 협상이 과연 국내 SW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산업계 전반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다. 그래야 변화하는 쟁점과 협상과정 속에서도 국내기업들의 이익을 위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FTA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FTA를 통해서 국내기업이 이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 기초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물이 보다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연구진의 학술적 접근뿐만 아니라 산업계 및 정부기관의 정책적 의견 조율과 토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즉, 연구의 목적이 국내 SW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 관련 당사자들의 활발한 의견 제시는 연구결과물의 효용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비록 몇 차례의 기업 간담회와 설문 조사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였다고는 하지만 충분하지 못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또 다른 한계로는 연구의 범위가 협상쟁점의 발굴까지에 제한되며, 보다 구체적인 협상전략의 마련은 이번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SW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각 SW유형별 경제효과 분석을 통해 FTA 추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 역시 포함되지 못한 점은 논리적 설득의 한계를 노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서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중국 자료]

1. 법령

關于鼓勵軟件産業和集成電路産業發展的若干政策
國家軟件産業基地管理辦法
國家規劃布局內的重點軟件企業認定管理辦法(試行)
軟件企業認定標準及管理辦法
軟件産品管理辦法
關于進一步提高我國軟件企業技術創新能力的實施意見
中國軟件行業基本公約
軟件出口管理和統計辦法
關于軟件出口有關問題的通知
關于發展軟件及相關信息服務出口的指導意見
關于考慮軟件産業和集成電路産業發展有關稅收政策問題的通知
計算機軟件著作權登記辦法
計算機軟件保護條例
關于加快軟件人才培養和隊伍建設的若干意見
軟件業統計管理辦法(試行)

2. 기타 자료

國民經濟行業分類
文化及相關産業分類
統計上劃分信息相關産業暫行規定
高技術産業統計分類目錄
軟件産業十一五專項規劃
國務院辦公廳 2008年 7月 11日 公布, "工業和信息化部主要職責內設機構和人

員編制規定"(國發[2008]11號)

[국내 자료]

고준성, 자유무역협정(FTA)의 조문별 유형 분석: 한국의 FTA 상품무역규정협정상 가이드라인의 모색, 산업연구원, 2003년

김한성 · 여지나, "중국-뉴질랜드 간 FTA 협정 체결결과 및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년 5월 8일

박인회,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적 문제에 관한 연구", Law & technology 제3권 제6호(2007년 11월)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신영수, "부당염매의 위법성 판단과 경쟁사업자", 경제법판례 연구 제1권, 2004.7.

윤선희, "Software Streaming 방식의 법적 연구",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2004.7.

이충훈, "중국에서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사전적 보호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제17호)

장승화, 「양자간 투자협정 연구」, 법무부, 2001년

정상조 "소프트웨어 스트리밍(software streaming)의 법적 문제점", 「인터넷과 법률 II」, 법문사

조미진 · 여지나 · 김민성,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년

지만수, 「한-중 FTA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한-일, 한-중 FTA 어떻게 볼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미나 발표자료, 2008.4.1.

[판례 및 법령자료]

CFI 2007.9.17. T-201/04 2007 ECR II-3601 "*Microsoft Corp. vs. Commission*"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9.2.9., Guidance on the Commission's enforcement priorities in applying Art. 82 of the EC Treaty to abusive exclusionary conduct by dominant undertakings,

C(2009) 864, 48항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4686 판결

[WTO 자료]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China, WT/ACC/CHN/49, 1 October 2001
WT/ACC/CHN/49/Add.2, 1 October 2001
GATS/SC/135, 14 February 2002
TN/S/O/CHN, 15 September 2003
TN/S/O/CHN/Rev.1, 29 July 2005
WT/TPR/S/161/Rev.1, 26 June 2006
GATS/SC/48, 15 April 1994

[FTA 자료]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4 November 2002 (including following FTAs: China-ASEAN FTA trade in goods, 2004 and China-ASEAN FTA trade in services, 2007)
Mainland and Hongkong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29 June 2003
Mainland and Macao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17 October 2003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le, 18 November 2005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24 November 2006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7 April 2008

[기타 인터넷 자료]

http://rjfwys.miit.gov.cn/n11293472/n1298028/index.html.

http://www.wto.org/english/tratop_e/ serv_e/s_negs_e.htm

http://www.wto.org/english/tratop_e/gproc_e/memobs_e.htm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이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연 구 진

주관연구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과제책임자 지은희 팀장

과제수행자 손소현 책임

연구수행기관 성신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성신여대 연구책임자 권현호 교수)

(홍 익 대 연구수행자 강준하 교수)

(고 려 대 연구수행자 공수진 박사)

(성신여대 연구수행자 이상희 조교)

정책연구센터 09-05

한-중 FTA 협상에 대비한 SW분야 협상쟁점 연구

2009년 12월 18일 인쇄
2009년 12월 21일 발행

발행인 정 경 원
발행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38-711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본동 79-2 NIPA빌딩
TEL. 02-2141-5000 FAX. 02-2141-5199
인쇄처 신생용사촌 (TEL. 02-426-4415)